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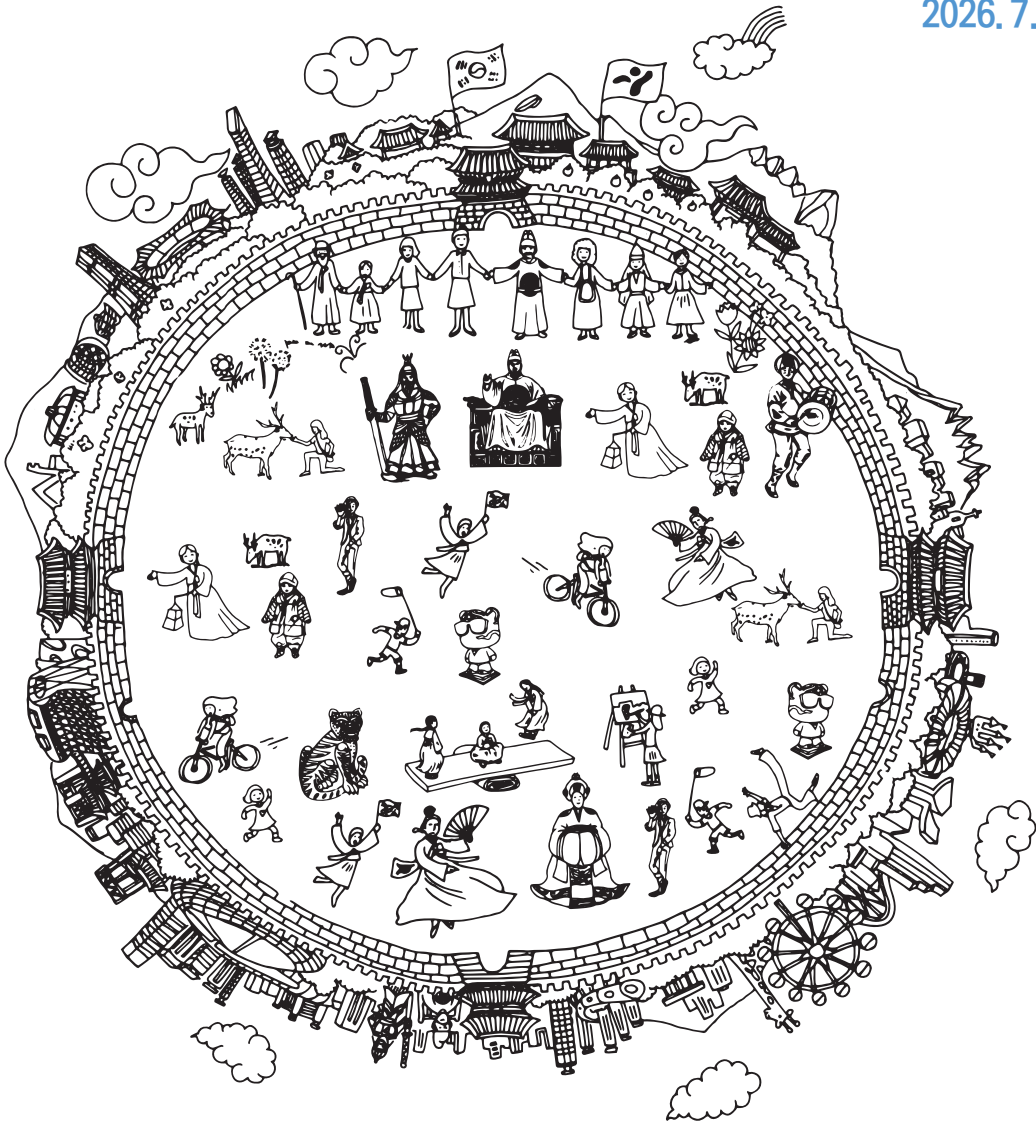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68호
2026. 7. 30.(목)



목 차

◆ 고 시

제2026-425호	중랑캠핑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제2026-431호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2026-432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제2026-433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상계5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9
제2026-43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01
제2026-43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04
제2026-4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민대학교)	107
제2026-437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22
제2026-438호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42
제2026-440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161
제2026-441호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77
제2026-442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181
제2026-4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7
제2026-44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1

◆ 공 고

제2026-2164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7
제2026-216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12
제2026-217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21
제2026-217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22
제2026-218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223
제2026-218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25
제2026-2184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227
제2026-2185호	비영리법인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조서 등 공시송달 공고	228

제2026-219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29
제2026-2195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231
제2026-22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32
제2026-22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235
제2026-220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37
제2026-220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239
제2026-22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41
제2026-2207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56
제2026-220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58
제2026-220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61
제2026-2210호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공람 공고	262
제2026-221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64
제2026-2212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265
제2026-221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79
제2026-2221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280
제2026-22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81
제2026-222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286
제2026-222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87
제2026-223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88
제2026-2235호	지방세 공시송달	289
제2026-224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290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26-8호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292
----------	--------------------	-----

◆ 구 고 시

제2026-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지하공공보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302
제2026-3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구)	305
제2026-120호	사도 허가 취소(폐지) 고시(영등포구)	311

제2026-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및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313
--	-----

◆ 구 공 고

제2026-10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용산구)	316
제2026-1056호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성동구)	357
제2026-98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광진구)	358
제2026-109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랑구)	359
제2026-12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360
제2026-1201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마포구)	363
제2026-1530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영등포구)	402
제2026-1451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관악구)	404
제2026-1543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28-10, 29-7번지 신사역C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420
제2026-1559호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최초) 열람공고(서초구)	423
제2026-14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429

◆ 사업소고시

제2026-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31
제2026-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31
제2026-334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구역)(미래한강본부)	432
제2026-3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37
제2026-3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37
제2026-3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38

◆ 사업소공고

제2026-33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439
--	-----

제2026-33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448
제2026-9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454

◆ 기 타

제2026-24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55
제2026-2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56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25호

중랑캠핑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6호(2007.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14호(2024.10.3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중랑캠핑숲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중랑몽땅 누리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
3. 면 적 : 147,66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2289-4063)

중랑캠핑숲그린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 축 물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본 시 설	계	147,666.00	37,302.69	9	1,397.58	2,298.90	148	37,302.69	9	1,397.58	2,298.90	148			
	소계	11,773.74	11,773.74	-	-	-	-	11,773.74	-	-	-	-	-		
		도로	9,523.20	9,523.20	-	-	-	-	9,523.20	-	-	-	-	-	
		광장	2,250.54	2,250.54	-	-	-	-	2,250.54	-	-	-	-	-	
조경시설	9,290.27	9,290.27	-	-	-	15	9,290.27	9,290.27	-	-	-	15			
휴양시설	5,303.58	5,303.58	-	-	-	80	5,303.58	5,303.58	-	-	-	80			
유희시설	1,468.20	1,468.20	-	-	-	21	1,468.20	1,468.20	-	-	-	21			
운동시설	434.00	434.00	-	-	-	6	434.00	434.00	-	-	-	6			
교양시설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의시설	4,004.55	4,004.55	3	363.80	421.89	14	4,004.55	4,004.55	3	363.80	421.89	14		
관리시설	227.42	227.42	2	119.38	223.74	2	227.42	227.42	2	119.38	223.74	2		
녹지	110,363.31		-	-	-		110,363.31		-	-	-			
시설물 (법정 40%이하)	37,302.69 ÷ 147,666.00 × 100 = 25.26%						37,302.69 ÷ 147,666.00 × 100 = 25.26%							
건폐율 (법정 10%이하)	1,397.58 ÷ 147,666.00 × 100 = 0.95%						1,397.58 ÷ 147,666.00 × 100 = 0.95%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간 요소 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적률 (%)					
							비단면적 (㎡)	연면적 (㎡)							비단면적 (㎡)	연면적 (㎡)						
합 계				147,666.00	37,302.69	9	1,397.58	2,298.90	148			147,666.00	37,302.69	9	1,397.58	2,298.90	148					
		소계			11,773.74	11,773.74	-	-	-	-			11,773.74	11,773.74	-	-	-	-	-	-		
도로		가	전지역	9,523.20	9,523.20	-	-	-	-	가	전지역	9,523.20	9,523.20	-	-	-	-	-	-	-		
광장		소계		2,250.54	2,250.54	-	-	-	-	소계		2,250.54	2,250.54	-	-	-	-	-	-	-		
광장		나	56	2,250.54	2,250.54	-	-	-	-	나	56	2,250.54	2,250.54	-	-	-	-	-	-	-		
진입광장1		나-1	56	94.29	94.29	-	-	-	-	나-1	56	94.29	94.29	-	-	-	-	-	-	-		
진입광장2		나-2	56	288.97	288.97	-	-	-	-	나-2	56	288.97	288.97	-	-	-	-	-	-	-		
진입광장3		나-3	56	438.07	438.07	-	-	-	-	나-3	56	438.07	438.07	-	-	-	-	-	-	-		
진입광장4		나-4	56	735.20	735.20	-	-	-	-	나-4	56	735.20	735.20	-	-	-	-	-	-	-		
소광장1		나-5	56	120.11	120.11	-	-	-	-	나-5	56	120.11	120.11	-	-	-	-	-	-	-		
소광장2		나-6	56	58.95	58.95	-	-	-	-	나-6	56	58.95	58.95	-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구조 물용량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비단면적 (㎡)	연면적 (㎡)								비단면적 (㎡)	연면적 (㎡)					
	소광정3	나-7	56	263.24	263.24	-	-	-	-	-	나-7	56	263.24	263.24	-	-	-	-	-	-	-		
	소광정4	나-8	56 외 1필지	160.98	160.98	-	-	-	-	-	나-8	56 외 1필지	160.98	160.98	-	-	-	-	-	-	-		
	소광정5	나-9	56	90.73	90.73	-	-	-	-	-	나-9	56	90.73	90.73	-	-	-	-	-	-	-		
	소계			9,290.27	9,290.27	-	-	-	-	15			9,290.27	9,290.27	-	-	-	-	-	-	15		
조경 시설	그늘시렁1	다	56	16.00	16.00	-	-	-	-	1	다	56	16.00	16.00	-	-	-	-	-	-	1		
	그늘시렁2	다-1	56	16.00	16.00	-	-	-	-	1	다-1	56	16.00	16.00	-	-	-	-	-	-	1		
	그늘시렁3	다-2	56	16.00	16.00	-	-	-	-	1	다-2	56	16.00	16.00	-	-	-	-	-	-	1		
	수생습지 원	라	56	1,199.77	1,199.77	-	-	-	-	1	라	56	1,199.77	1,199.77	-	-	-	-	-	-	1		
	건천	라-1	56	581.64	581.64	-	-	-	-	3	라-1	56	261.97	261.97	-	-	-	-	-	-	3		
레안기든	라-2	56	220.38	220.38	-	-	-	-	-	라-2	56	220.38	220.38	-	-	-	-	-	-	-	3		
																				합) 319.6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면적 (㎡)	연면적 (㎡)	비면적 (㎡)	
조경 시설	테라스정원	라-3 56 외 1필지	632.90	632.90	-	-	-	라-3 56 외 1필지	632.90	632.90	-	-	-	-	라-3 56 외 1필지	632.90	632.90	-	-	-	-	-	-	-	-	-	-	-	-	-	-	-
	계류	라-4 56	711.50	711.50	-	-	-	라-4 56	711.50	711.50	-	-	-	-	라-4 56	711.50	711.50	-	-	-	-	-	-	-	-	-	-	-	-	-	-	-
	정원	라-5 56	882.55	882.55	-	-	-	라-5 56	882.55	882.55	-	-	-	-	라-5 56	882.55	882.55	-	-	-	-	-	-	-	-	-	-	-	-	-	-	-
	생태연못	라-6 56 외 1필지	875.10	875.10	-	-	-	라-6 56 외 1필지	875.10	875.10	-	-	-	-	라-6 56 외 1필지	875.10	875.10	-	-	-	-	-	-	-	-	-	-	-	-	-	-	-
	잔디마당1	마 56	3,459.79	3,459.79	-	-	-	5 마	56	3,779.46	3,779.46	-	-	-	5 마	56	3,779.46	3,779.46	-	-	-	-	-	-	-	-	-	-	-	-	-	증) 319.67㎡
	원두막	마-1 56	36.00	36.00	-	-	-	1 마-1	56	36.00	36.00	-	-	-	1 마-1	56	36.00	36.00	-	-	-	-	-	-	-	-	-	-	-	-	-	-
	잔디마당2	마-2 56	600.84	600.84	-	-	-	-	마-2 56	600.84	600.84	-	-	-	-	마-2 56	600.84	600.84	-	-	-	-	-	-	-	-	-	-	-	-	-	-
	파고라1	① 56	25.80	25.80	-	-	-	1 ①	56	25.80	25.80	-	-	-	1 ①	56	25.80	25.80	-	-	-	-	-	-	-	-	-	-	-	-	-	-
	파고라2	② 56	16.00	16.00	-	-	-	1 ②	56	16.00	16.00	-	-	-	1 ②	56	16.00	16.00	-	-	-	-	-	-	-	-	-	-	-	-	-	-
소계		5,303.58	5,303.58	-	-	-	80		5,303.58	5,303.58	-	-	-	80		5,303.58	5,303.58	-	-	-	-	-	-	-	-	-	-	-	-	-	-	80
휴양 시설																																

변경																	비고		
구분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형인공시설	이영장1	바	56	4,289.27	-	-	-	-	80	바	56	4,289.27	4,289.27	-	-	-	-	80	
	이영장2	바-1	56	811.71	-	-	-	-	-	바-1	56	811.71	811.71	-	-	-	-	-	
	섬터1	카-1	56	168.30	-	-	-	-	-	카-1	56	168.30	168.30	-	-	-	-	-	
	섬터2	카-2	56	34.30	-	-	-	-	-	카-2	56	34.30	34.30	-	-	-	-	-	
유형인공시설	소계			1,468.20	-	-	-	-	21			1,468.20	1,468.20	-	-	-	-	21	
	숲속이터	하	56	238.20	-	-	-	-	2	하	56	238.20	238.20	-	-	-	-	2	
	체험의숲	하-1	56	1,230.00	-	-	-	-	19	하-1	56	1,230.00	1,230.00	-	-	-	-	19	
유형인공시설	소계			434.00	-	-	-	-	6			434.00	434.00	-	-	-	-	6	
	채력단면장	사	56	434.00	-	-	-	-	6	사	56	434.00	434.00	-	-	-	-	6	

구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변경			변경			변경				후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
교양 시설	소계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4,800.93	4,800.93	4	914.40	1,653.27	10		
		관찰데크	아	56	325.20	-	-	-	-	-	아	56	325.20	325.20	-	-	-	-	-
	생태학습 원1	아-1	56	207.14	-	-	-	-	-	아-1	56	207.14	207.14	-	-	-	-	-	-
	생태학습 원2	아-2	56	268.42	-	-	-	-	-	아-2	56	268.42	268.42	-	-	-	-	-	-
	생태학습 원3	아-3	56	778.06	콘크리트	지상1	110.94	110.94	2	아-3	56	778.06	778.06	콘크리트	지상1	110.94	110.94	2	조류처리소
	생태학습 원4	아-4	56	438.70	-	-	-	-	-	아-4	56	438.70	438.70	-	-	-	-	-	-
	생태학습 원5	아-5	56	102.76	-	-	-	-	-	아-5	56	102.76	102.76	-	-	-	-	-	-
	테라스갤 러리	아-6	56	441.57	콘크리트	지상1	155.20	155.20	7	아-6	56	441.57	441.57	콘크리트	지상1	155.20	155.20	7	
	숲속도서관	아-7	56	710.61	-	지상2	485.39	970.78	-	아-7	56	710.61	710.61	-	지상2	485.39	970.78	-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아-8	56	214.44	콘크리트	지상3	162.87	416.35	-	아-8	56	214.44	214.44	콘크리트	지상3	162.87	416.35	-	
편의	아외극장	아-9	56	1,314.03	-	-	-	-	1	아-9	56	1,314.03	1,314.03	-	-	-	-	1	위치변경
	소계			4,004.55	-	3	363.80	421.89	14			4,004.55	4,004.55	-	3	363.80	421.89	1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시설	비저터센 터	자 56 외 1필지	787.88	787.88	콘크리트	지상2	-	309.51	367.60	-	자 56 외 1필지	787.88	787.88	콘크리트	지상2	309.51	367.60	-	
	약수터	차 56	39.20	39.20	-	-	2	-	-	-	차 56	39.20	39.20	-	-	-	-	2	
	취사장	차-1 56	86.77	86.77	콘크리트	지상1	-	23.01	23.01	-	차-1 56	86.77	86.77	콘크리트	지상1	23.01	23.01	-	
	바베큐가든	차-2 56	271.59	271.59	-	-	12	-	-	-	차-2 56	271.59	271.59	-	-	-	-	12	
	주차장1	파-1 56	242.48	242.48	-	-	-	-	-	-	파-1 56	242.48	242.48	-	-	-	-	-	
	주차장2	파-2 56	1,493.65	1,493.65	-	-	-	-	-	-	파-2 56	1,493.65	1,493.65	-	-	-	-	-	
	주차장3	파-3 56 외 1필지	501.06	501.06	-	-	-	-	-	-	파-3 56 외 1필지	501.06	501.06	-	-	-	-	-	
	주차장4	파-4 56	46.90	46.90	-	-	-	-	-	-	파-4 56	46.90	46.90	-	-	-	-	-	
	주차장5	파-5 56	52.69	52.69	-	-	-	-	-	-	파-5 56	52.69	52.69	-	-	-	-	-	
	주차장6	파-6 56	362.33	362.33	-	-	-	-	-	-	파-6 56	362.33	362.33	-	-	-	-	-	
캠핑장과 정원	거 56	120.00	120.00	컨테이너 조이동식)	지상1	-	31.28	31.28	-	거 56	120.00	120.00	컨테이너 조이동식)	지상1	31.28	31.28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응답 (기)					
관리시설	소계			227.42	227.42	2	119.38	223.74	2							
	관리사무소	타	56	117.79	콘크리트 지상2	98.70	203.06		56	117.79	117.79	콘크리트 지상2	98.70	203.06		
	야외배전반	타-1	56	60.63	콘크리트 지상1	20.68	20.68	2	56	60.63	60.63	콘크리트 지상1	20.68	20.68	생태학습장고	
	태양광에너지설비		숲속도서관 옥상층	-	-	-	(47.74)	(47.74)		숲속도서관 옥상층	-	-	-	(47.74)	(47.74)	
녹지 및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장	하		49.00	49.00				하	49.00	49.00					
				110,363.31							110,363.31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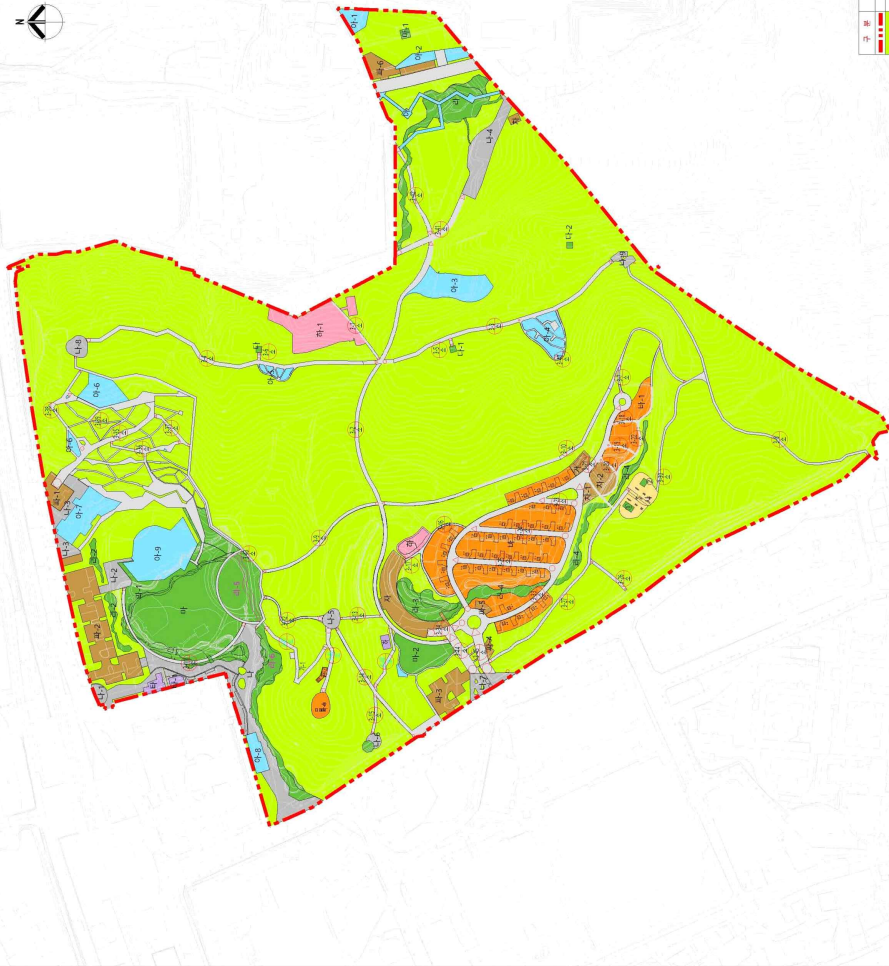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739.00	9,523.20				
당초	소로	소 계			3,739.00	9,523.20				
당초		3	1	1.8	51.00	90.9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소로3-2	
당초		3	2	3.0	312.00	937.40	산책로	소로3-41	소로3-44	
당초		3	3	3.0	167.00	501.80	산책로	소로3-2	소광장5	
당초		3	4	3.5	205.00	613.90	산책로	소광장4	소로3-2	
당초		3	5	2.5	5.00	12.70	산책로	소로3-3	그늘시령2	
당초		3	6	2.0	5.00	10.50	산책로	소로3-4	그늘시령1	
당초		3	7	1.2	17.00	20.40	산책로	소로3-21	소로3-10	
당초		3	8	1.5	231.00	344.5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선	소광장5	
당초		3	9	2.5	90.00	225.60	산책로	소로3-2	분수연못	
당초		3	10	2.5	292.00	730.00	산책로	소로3-8	소로3-2	
당초		3	11	2.0	125.00	249.30	산책로	분수연못	진입관장2	
당초		3	12	1.8	50.00	90.60	산책로	소광장1	분수연못	
당초		3	13	1.8	27.00	47.90	산책로	소광장1	소로3-2	
당초		3	14	1.8	84.00	151.70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선	소광장1	
당초		3	15	2.0	27.00	54.00	산책로	소로3-14	소광장2	
당초		3	16	1.8	75.00	134.90	산책로	소로3-21	소로3-21	
당초		3	17	1.8	14.00	24.70	산책로	비지터센터	소로3-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8	1.8	16.00	29.0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19	1.8	18.00	33.0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20	1.8	13.00	23.30	산책로	소로3-22	소로3-21	
당초		3	21	4.0	193.00	772.30	산책로	주차장5	소로3-7	
당초		3	22	1.8	115.00	207.00	산책로	소로3-10	취사장	
당초	소로	3	23	4.0	24.00	95.4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4	4.0	57.00	229.7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5	4.0	61.00	244.70	산책로	소로3-33	소로3-21	
당초		3	26	1.9	29.00	63.00	산책로	남서측 대지경계선	소로3-28	
당초		3	27	2.0	151.00	282.3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29	
당초		3	30	1.5	90.00	148.40	산책로	소로3-29	소로3-28	
당초		3	31	1.8	15.00	27.00	산책로	소로3-29	소로3-28	
당초		3	33	3.5	117.00	409.50	산책로	소로3-34	소로3-21	
당초		3	34	5.0	23.00	115.00	산책로	비지터센터	소로3-33	
당초		3	35	3.0	119.00	357.00	산책로	주차장1	소로3-38	
당초		3	36	2.0	54.00	108.00	산책로	소로3-35	소로3-37	
당초		3	37	2.0	32.00	64.00	산책로	소로3-43	소로3-35	
당초		3	38	1.8	47.00	84.60	산책로	소로3-35	소로3-43	
당초		3	39	1.8	49.00	88.20	산책로	소로3-35	소로3-38	
당초		3	40	1.5	75.00	112.50	산책로	소로3-3	소로3-3	
당초		3	41	4.0	64.00	256.0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약수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42	2.5	63.00	157.5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선	소로3-41	
당초		3	43	1.5	265.00	397.50	산책로	소광장4	생태연못	
당초		3	44	6.0	32.00	192.0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34	
당초		3	45	2.0	70.00	420.00	산책로	소광장3	소로3-21	
당초		3	46	2.0	45.00	112.60	산책로	소광장1	쉼터1	
당초		3	47	2.0	80.00	169.60	산책로	소로3-46	소로3-43	
당초		3	48	2.0	45.00	83.30	산책로	소로3-2	소로3-14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SCALE=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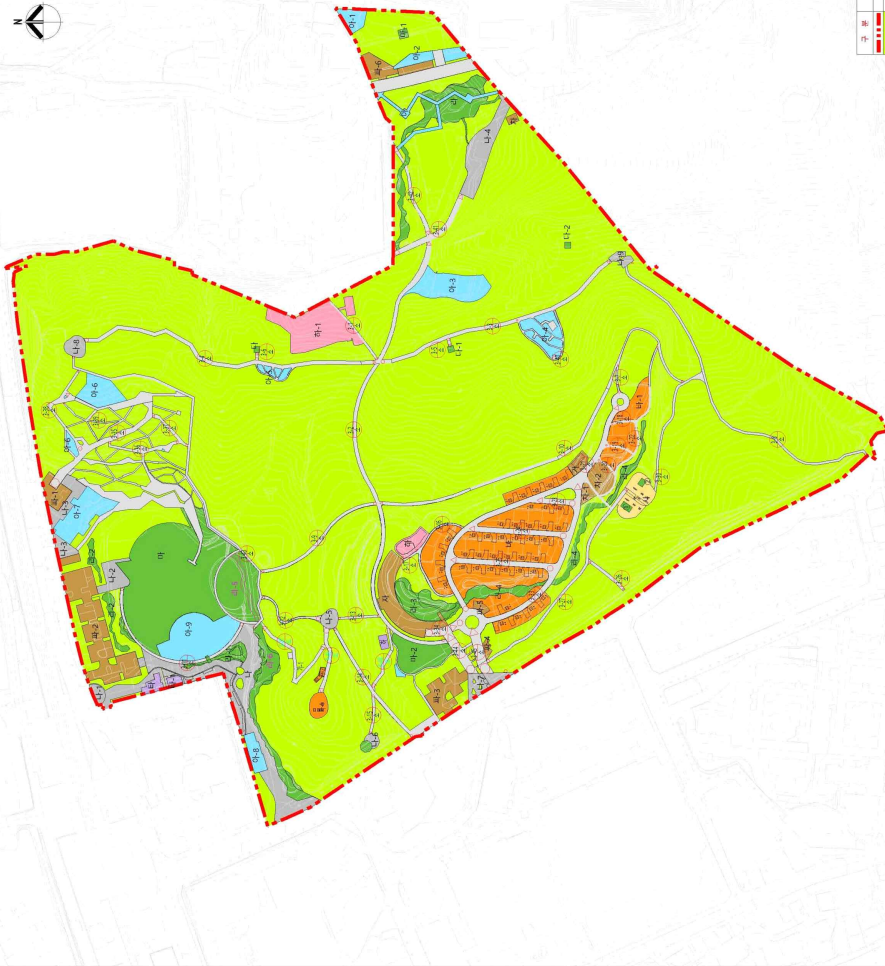
■ 범례

구분	시정명	부호	면적(㎡)	소유권자(㎡)	용역 범위	비고
자연경관	조성지	01	11,713.24	11,713.24	148	
	노지	02	3,522.20	3,522.20		
	농지	03	2,568.29	2,568.29		
	농지(농지)	04	2,568.29	2,568.29		
	농지(농지)	05	2,568.29	2,568.29		
	농지(농지)	06	2,568.29	2,568.29		
	농지(농지)	07	2,568.29	2,568.29		
	농지(농지)	08	2,568.29	2,568.29		
	농지(농지)	09	2,568.29	2,568.29		
	농지(농지)	10	2,568.29	2,568.29		
자연경관	조성지	11	3,292.27	3,292.27	15	
	노지	12	1,100.00	1,100.00	1	
	농지	13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4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5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6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7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8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19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0	1,100.00	1,100.00	1	
자연경관	조성지	21	3,292.27	3,292.27	16	
	노지	22	1,100.00	1,100.00	1	
	농지	23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4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5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6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7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8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29	1,100.00	1,100.00	1	
	농지(농지)	30	1,100.00	1,100.00	1	

구분	용역 범위	면적(㎡)
자연경관	자연경관	11,713.24
자연경관	자연경관	11,713.24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SCALE=1/1,200



■ 범례

구분	시정명	부호	면적(㎡)	시설면적(㎡)	용역면적(㎡)	비고
관리시설	관리소	101	11,713.14	3,522.20	148	
	도로	102	9,522.20	3,522.20		
	관리소	103	11,713.14	3,522.20		
	관리소	104	11,713.14	3,522.20		
주거시설	주거시설	201	84,290	288.97		
	주거시설	202	84,290	288.97		
	주거시설	203	84,290	288.97		
	주거시설	204	84,290	288.97		
	주거시설	205	84,290	288.97		
	주거시설	206	84,290	288.97		
	주거시설	207	84,290	288.97		
	주거시설	208	84,290	288.97		
	주거시설	209	84,290	288.97		
	주거시설	2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301	84,290	288.97		
	주거시설	302	84,290	288.97		
	주거시설	303	84,290	288.97		
	주거시설	304	84,290	288.97		
	주거시설	305	84,290	288.97		
	주거시설	306	84,290	288.97		
	주거시설	307	84,290	288.97		
	주거시설	308	84,290	288.97		
	주거시설	309	84,290	288.97		
	주거시설	3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401	84,290	288.97		
	주거시설	402	84,290	288.97		
	주거시설	403	84,290	288.97		
	주거시설	404	84,290	288.97		
	주거시설	405	84,290	288.97		
	주거시설	406	84,290	288.97		
	주거시설	407	84,290	288.97		
	주거시설	408	84,290	288.97		
	주거시설	409	84,290	288.97		
	주거시설	4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501	84,290	288.97		
	주거시설	502	84,290	288.97		
	주거시설	503	84,290	288.97		
	주거시설	504	84,290	288.97		
	주거시설	505	84,290	288.97		
	주거시설	506	84,290	288.97		
	주거시설	507	84,290	288.97		
	주거시설	508	84,290	288.97		
	주거시설	509	84,290	288.97		
	주거시설	5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601	84,290	288.97		
	주거시설	602	84,290	288.97		
	주거시설	603	84,290	288.97		
	주거시설	604	84,290	288.97		
	주거시설	605	84,290	288.97		
	주거시설	606	84,290	288.97		
	주거시설	607	84,290	288.97		
	주거시설	608	84,290	288.97		
	주거시설	609	84,290	288.97		
	주거시설	6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701	84,290	288.97		
	주거시설	702	84,290	288.97		
	주거시설	703	84,290	288.97		
	주거시설	704	84,290	288.97		
	주거시설	705	84,290	288.97		
	주거시설	706	84,290	288.97		
	주거시설	707	84,290	288.97		
	주거시설	708	84,290	288.97		
	주거시설	709	84,290	288.97		
	주거시설	7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801	84,290	288.97		
	주거시설	802	84,290	288.97		
	주거시설	803	84,290	288.97		
	주거시설	804	84,290	288.97		
	주거시설	805	84,290	288.97		
	주거시설	806	84,290	288.97		
	주거시설	807	84,290	288.97		
	주거시설	808	84,290	288.97		
	주거시설	809	84,290	288.97		
	주거시설	8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901	84,290	288.97		
	주거시설	902	84,290	288.97		
	주거시설	903	84,290	288.97		
	주거시설	904	84,290	288.97		
	주거시설	905	84,290	288.97		
	주거시설	906	84,290	288.97		
	주거시설	907	84,290	288.97		
	주거시설	908	84,290	288.97		
	주거시설	909	84,290	288.97		
	주거시설	910	84,290	288.97		
주거시설	주거시설	1001	84,290	288.97		
	주거시설	1002	84,290	288.97		
	주거시설	1003	84,290	288.97		
	주거시설	1004	84,290	288.97		
	주거시설	1005	84,290	288.97		
	주거시설	1006	84,290	288.97		
	주거시설	1007	84,290	288.97		
	주거시설	1008	84,290	288.97		
	주거시설	1009	84,290	288.97		
	주거시설	1010	84,290	288.97		

구분	면적(㎡)	비고
주거시설	84,290	
관리시설	11,713.14	
도로	9,522.20	
합계	105,525.3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1호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38호(2021.11.2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15호(2023.04.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2, 13호(2025.01.02.)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계 및 획지선 조정으로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경미한사항)하고자 함.

II.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78,758.2	증 8.2	78,766.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8호 (2021. 11. 2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78,758.2 → 78,766.4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 지역	합 계	78,758.2	증) 8.2	78,766.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235.5	증) 3.7	2,239.2	2.8	
	제3종일반주거지역	65,208.7	증) 45.7	65,254.4	82.9	
	준주거지역	11,314.0	감) 41.2	11,272.8	14.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235.5 → 2,239.2 (증 3.7)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65,208.7 → 65,254.4 (증 45.7)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준주거지역	11,314.0 → 11,272.8 (감 41.2)	

2) 용도지구 결정: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결정(변경)

(1) 도 로

-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443	7,807.7	1	64	664.9	1	219	1,831.0	4	1,160.0	5,311.8
중로	4	1,160	5,311.8	-	-	-	-	-	-	4	1,160.0	5,311.8
소로	2	283	2,495.9	1	64	664.9	1	219	1,831.0	-	-	-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443	7,812.6	1	64	663.3	1	219	1,834.0	4	1,160.0	5,315.3
중로	4	1,160	5,315.3	-	-	-	-	-	-	4	1,160.0	5,315.3
소로	2	283	2,497.3	1	64	663.3	1	219	1,834.0	-	-	-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교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3-A	중로 3-A	• 면적 : 1,008.8㎡ → 1,009.2㎡(증 0.4㎡)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중로 3-B	중로 3-B	• 면적 : 3,076.3㎡ → 3,076.1㎡(감 0.2㎡)	
중로 3-D	중로 3-D	• 면적 : 1,226.7㎡ → 1,230.0㎡(증 3.3㎡)	
소로 1-A	소로 1-A	• 면적 : 664.9㎡ → 663.3㎡(감 1.6㎡)	
소로 2-B	소로 2-B	• 면적 : 1,831.0㎡ → 1,834.0㎡(증 3.0㎡)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①	특별계획구역 ①	4,682.6 4,643.0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682.6 4,643.0	업무시설용지
기정	②	특별계획구역 ②	5,966.5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966.5	공동주택용지1
기정 변경	③	특별계획구역 ③	41,473.7 41,516.6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1,473.7 41,516.6	공동주택용지2
기정	④	특별계획구역 ④	4,250.8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250.8	청소년교육문화 복합시설용지
기정	⑤	특별계획구역 ⑤	9,506.9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9,506.9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기정	⑥	특별계획구역 ⑥	5,070.0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070.0	주민소통거점용지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①	4,682.6㎡ → 4,643.0㎡ (감 39.6㎡)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③	특별계획구역 ③	41,473.7㎡ → 41,516.6㎡ (증 42.9㎡)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1)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 2)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2)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3)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공공기여 총량	●총 공공기여 토지면적은 기준대지면적(78,758.2㎡)의 29.39%로 함 (' 21.10월 감정평가 기준 302,764,705,490원)	
	기반시설	●공공기여는 커뮤니티시설 및 주민복지기능 도입 등 상위계획 실현을 고려하여 시행 ●공공기여 제공 방식은 기반시설(도로), 기반시설(토지), 기반시설(건축물)로 제공 - 기반시설(도로) : 7,807.7㎡(36,763,373,000원) - 기반시설(토지, 획지 ④~⑥) : 18,827.7㎡(238,513,565,000원) · 획지④ : 4,250.8㎡(54,622,780,000원) · 획지⑤ : 9,506.9㎡(120,262,285,000원) · 획지⑥ : 5,070.0㎡(63,628,500,000원) - 기반시설(건축물) : 총 공공기여 잔여분(27,487,767,490원) ※ 제2기동대 부지 북측 도로 확장시, 조성비용의 50% 공공기여 인정	
변경	공공기여 총량	●총 공공기여 토지면적은 기준대지면적(78,766.4㎡)의 29.38%로 함 (' 21.10월 감정평가 기준 302,704,581,662원)	
	기반시설	●공공기여는 커뮤니티시설 및 주민복지기능 도입 등 상위계획 실현을 고려하여 시행 ●공공기여 제공 방식은 기반시설(도로), 기반시설(토지), 기반시설(건축물)로 제공 - 기반시설(도로) : 7,812.6㎡(36,785,992,074원) - 기반시설(토지, 획지 ④~⑥) : 18,827.7㎡(238,513,565,000원) · 획지④ : 4,250.8㎡(54,622,780,000원) · 획지⑤ : 9,506.9㎡(120,262,285,000원) · 획지⑥ : 5,070.0㎡(63,628,500,000원) - 기반시설(건축물) : 총 공공기여 잔여분(27,405,024,588원) ※ 제2기동대 부지 북측 도로 확장시, 조성비용의 50% 공공기여 인정	

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기준 및 서울시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인 감정가액 기준 적용

■ 공공기여계획(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기준대지면적 : 78,758.2㎡ → 78,766.4㎡ ● 공공기여율 : 29.39% → 29.38% ● 공공기여 비용 : 302,764,705,490원 → 302,704,581,662원 - 기반시설(도로) : 7,807.7㎡(36,763,373,000원) → 7,812.6㎡(36,785,992,074원) - 기반시설(건축물) : 27,487,767,490원 → 27,405,024,588원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준대지면적 및 공공기여량 변경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①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682.6	감) 39.6	4,643.0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②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966.5	-	5,966.5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③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1,473.7	증) 42.9	41,516.6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④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250.8	-	4,250.8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⑤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9,506.9	-	9,506.9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⑥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070.0	-	5,070.0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①	4,682.6㎡ → 4,643.0㎡ (감 39.6㎡)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③	특별계획구역 ③	41,473.7㎡ → 41,516.6㎡ (증 42.9㎡)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선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①(업무시설용지)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①	좌 동
면 적		4,682.6㎡	4,643.0㎡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좌 동
건축물 용 도	불 하	• 공동주택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권 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좌 동
	1층 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용적률		• 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12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 동
건축물 높이		• 85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좌 동
배 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복측 저층주거지 및 획지②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 동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공개공지 제외)	좌 동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폭 5m 이상 확보	좌 동
교통처리계획		• 오금로38길변(북측), 신설도로 및 각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3) 특별계획구역 ③(공동주택용지2)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③	좌 등
면 적		41,473.7㎡	41,516.6㎡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등
건축물 용 도	불 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등
	지 정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등
건폐율		• 50% 이하	좌 등
용적률		•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3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 등
건축물 높이		•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등
배 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 등
	중저층배치 구간(15층)	• 획지⑤, 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좌 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사중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좌 등
교통처리계획		•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변 및 각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등
기타사항		•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좌 등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변경없음

IV. 관계도면 : 불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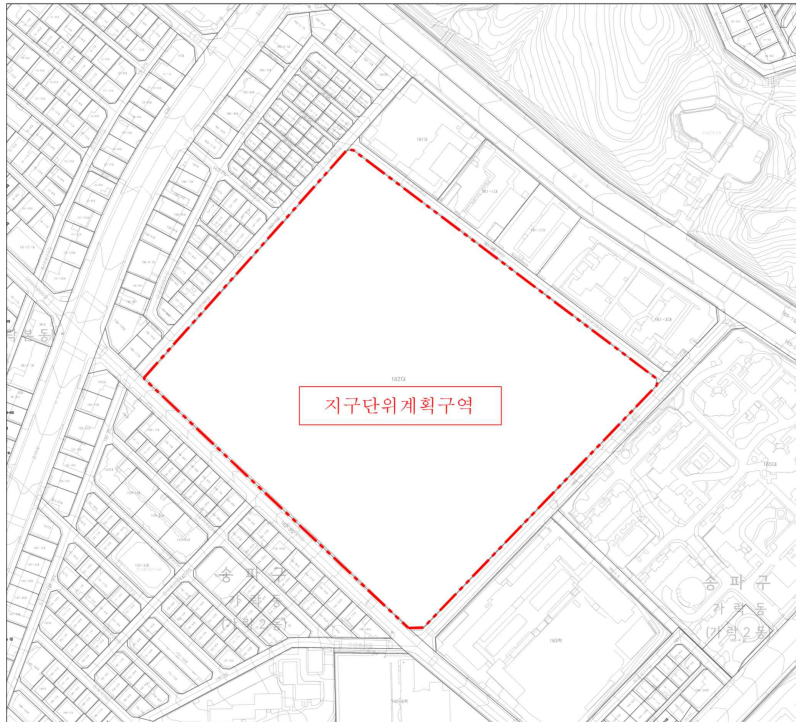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VI.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 2133-8359)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3000)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2부(☎ 02-3410-75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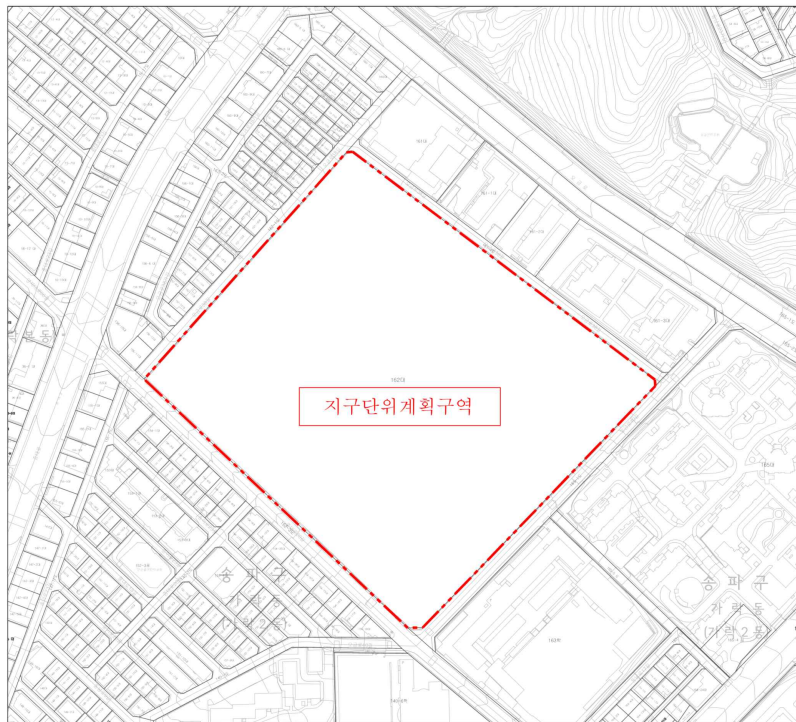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Scale :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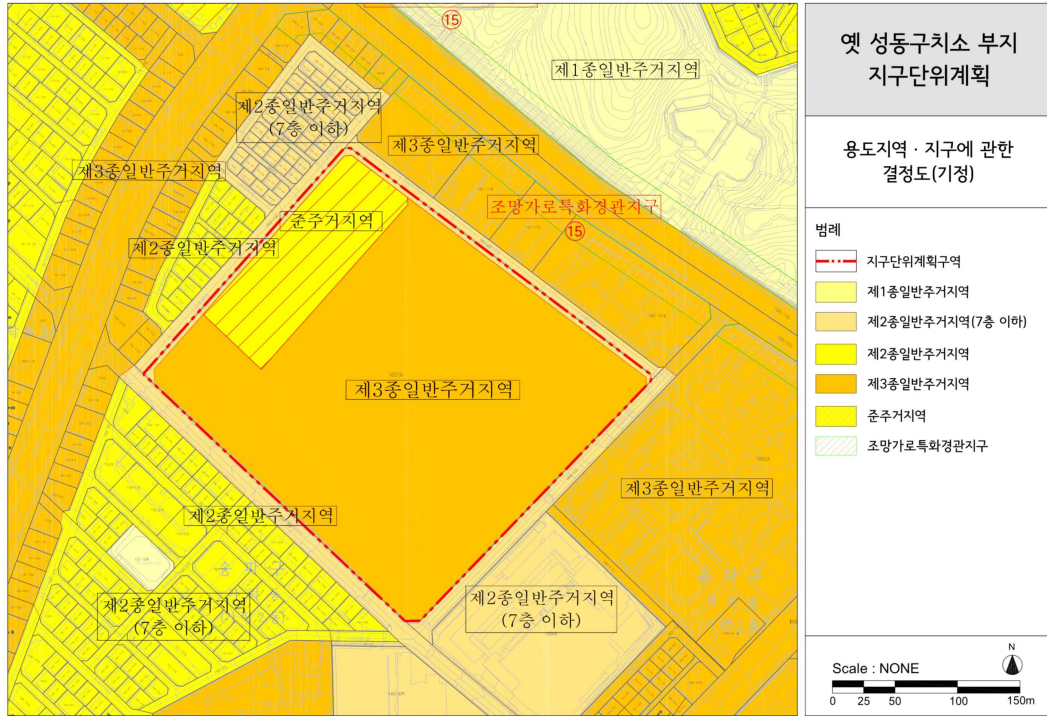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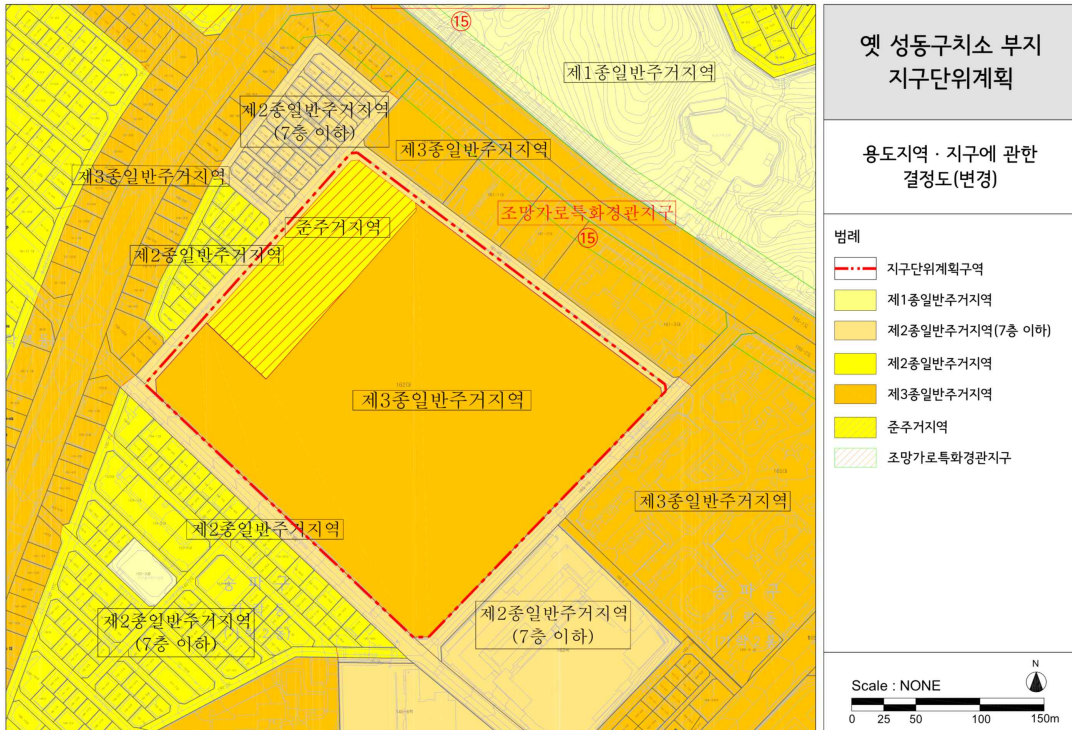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Scale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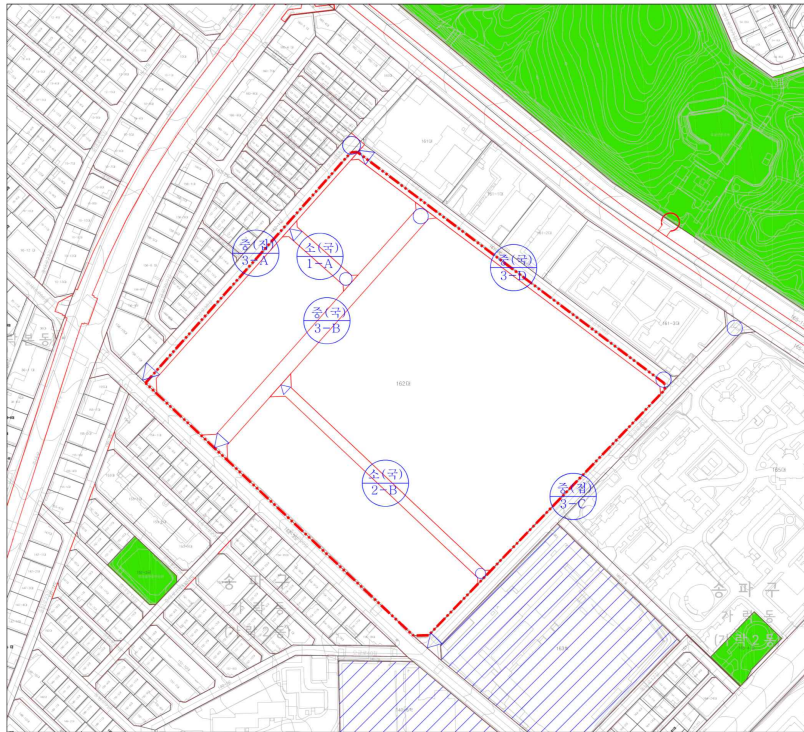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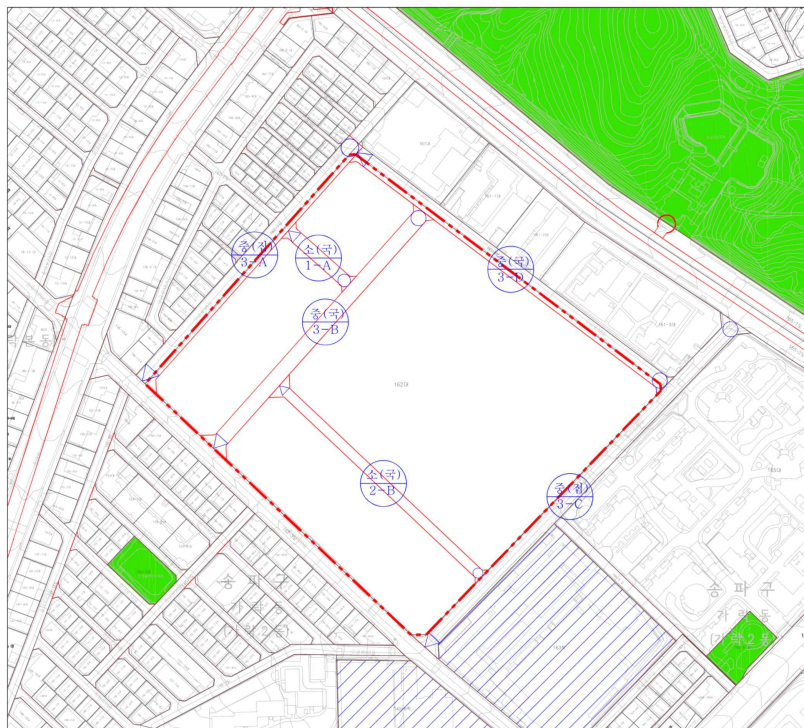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중로이하)
- 철도
- 공원
- 학교

Scale : NONE

0 25 50 100 150m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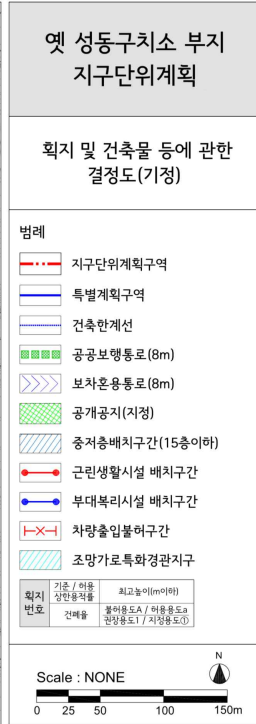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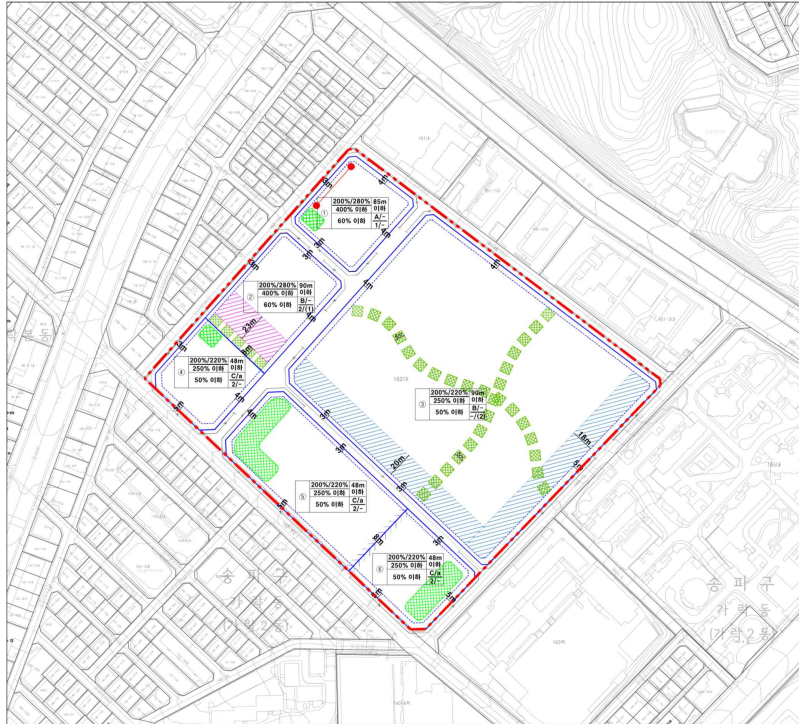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중로이하)
- 철도
- 공원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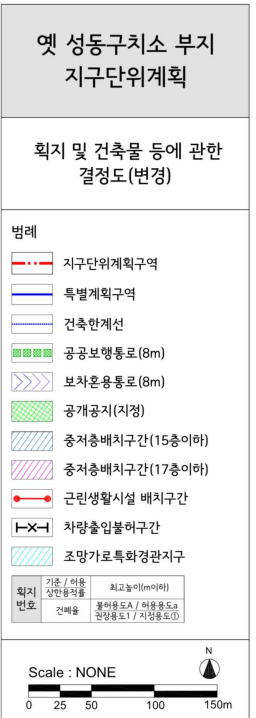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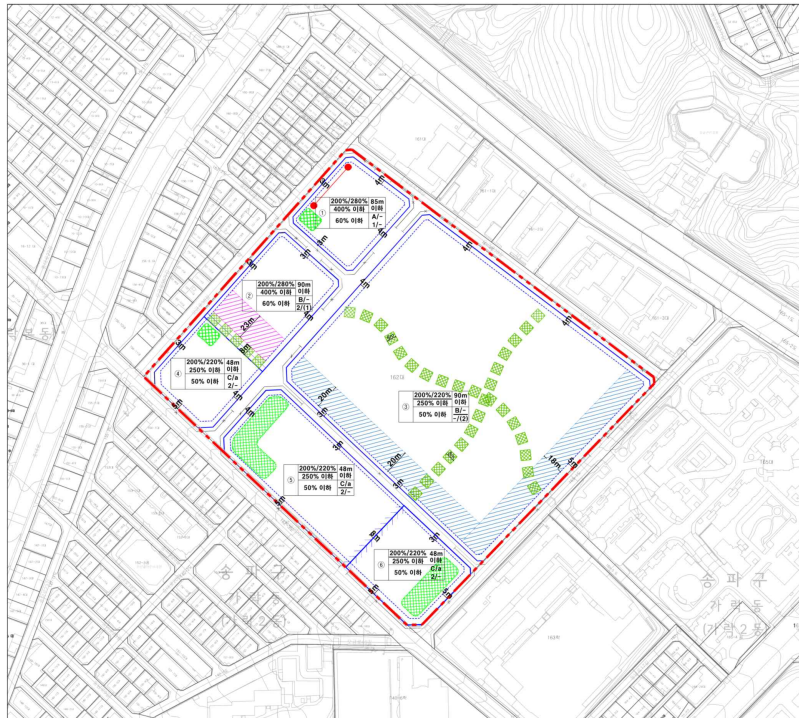
Scale : NONE

0 25 50 100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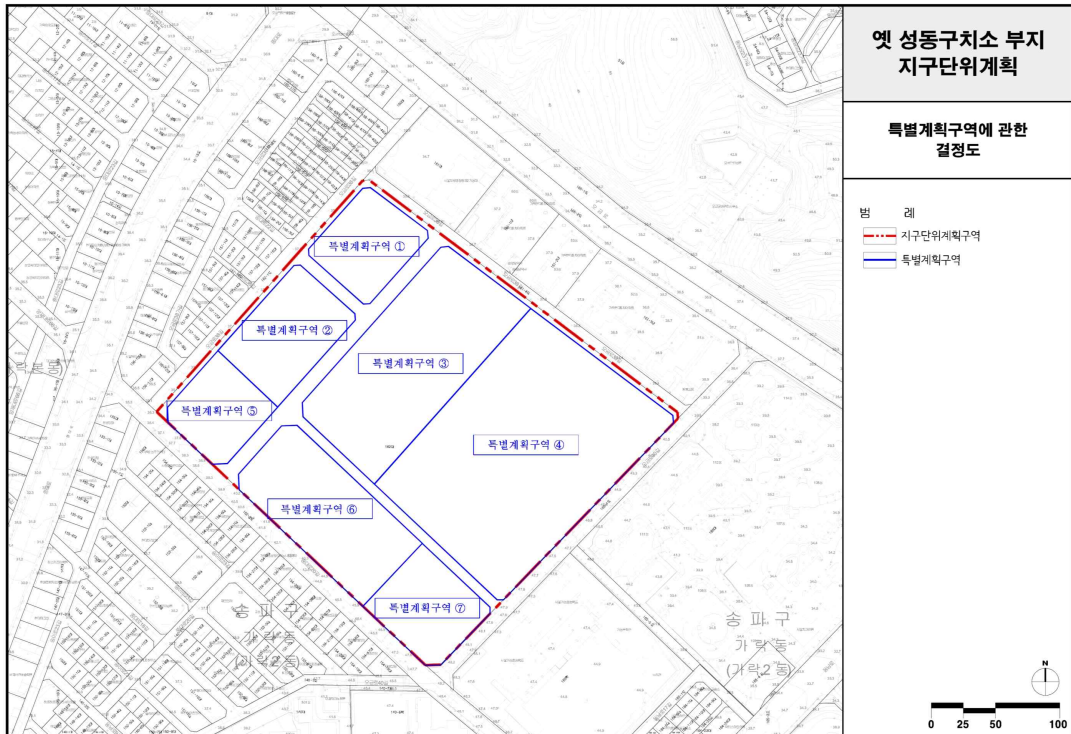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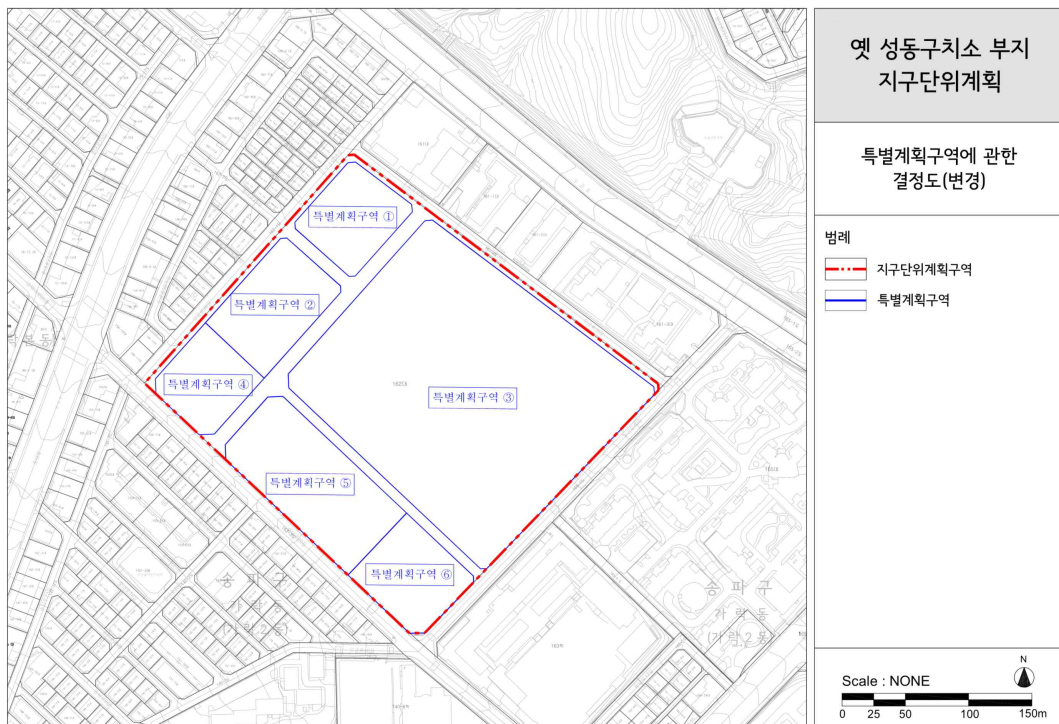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2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6-323호(2026.6.1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상도동363-117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노량진근린공원 경계조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하기 위함
2.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294-190일대
3. 면적: 413,203㎡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5)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1400)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동작구청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대방동 375-7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368,959.00	87,860.60 (15,125.00)	11	2,711.65	8,670.84	679	368,959.00	87,381.52 (15,125.00)	11	2,711.65	8,670.84	679	공영면적 변경없음 시설면적 감)479.08㎡
	기반시 설	소 계	44,090.57 (15,125.00)				11	43,901.57 (15,125.00)	43,901.57 (15,125.00)				11	감)189.00㎡
		도 로	35,287.10 (15,125.00)						35,071.10 (15,125.00)	35,071.10 (15,125.00)				
광 장		8,803.47	8,803.47					8,830.47	8,830.47					증)27.00㎡
조 경 시 설		496.50	496.50				92	496.50	496.50				92	
휴 양 시 설		8,953.95	8,862.95	1	54.00	107.00	213	8,953.95	8,862.95	1	54.00	107.00	21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유 회 시 설	1,607.39	1,407.39				4	1,607.39	1,407.39			4		
운 동 시 설	26,381.97	26,381.97	(1)			30	26,091.89	26,091.89	(1)		30	감)290.08㎡	
교 양 시 설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3,897.00	3,127.64	3	2,243.98	8,150.17	1	
편 의 시 설	3,237.00	3,208.41	5	153.60	153.60		3,237.00	3,208.41	5	153.60	153.60		
관 리 시 설	285.17	285.17	2	260.07	260.07	328	285.17	285.17	2	260.07	260.07	328	
녹지 및 기타	280,009.45						281,577.48						증)1,568.03㎡
시 설 률 (법정40%)	(87,860.60/ 368,959.00) × 100 = 23.81%					(87,381.52/ 368,959.00) × 100 = 23.68%					감)0.13%		
건 폐 율 (법정10%)	(2,711.65 / 368,959.00) × 100 = 0.73%					(2,711.65 / 368,959.00) × 100 = 0.73%					변경없음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합계			368,959.00	87,860.60 (15,125.00)		2,711.6 5	8,670.84	679			368,959.00	87,381.52 (15,125.00)		2,711.6 5	8,670.84	679	시설면적 감) 479.08㎡
				44,090.57	44,090.57 (15,125.00)				11			43,901.57 (15,125.00)	43,901.57 (15,125.00)			11	감) 189.00㎡ (도시계획 도로)	
기타 시설	도로		전지역	35,287.10	35,287.10 (15,125.00)						전지역	35,071.10	35,071.10 (15,125.00)					감) 216.00㎡
	광장	가	소계	8,803.47	8,803.47					가	소계	8,830.47	8,830.47					증) 27.00㎡
		가-1	대방동350-2	(1,350.00)	(1,350.00)					가-1	대방동350-2	(1,350.00)	(1,350.0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가-2	대방동23-1 76	(853.00)	(853.00)					가-2	대방동23-1 76	(853.00)	(853.00)					
		가-3	대방동23-1 76	(250.00)	(250.00)					가-3	대방동23-1 76	(250.00)	(250.00)					
		가-4	대방동23-1 76	(680.00)	(680.00)					가-4	대방동23-1 76	(680.00)	(680.00)					
		가-5	대방동350- 2	(1,400.00)	(1,400.00)					가-5	대방동350- 2	(1,400.00)	(1,400.00)					
		가-6	대방동335- 218	(27.00)	(27.00)					가-6	대방동335- 218	(27.00)	(27.00)					
		가-7	상도동 신4-4	(360.00)	(360.00)					가-7	상도동 신4-4	(360.00)	(360.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7	상도동 363	121	121					가-17	상도동 363	148	148				증 27.00㎡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기타 시설	광장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4	대방동 350-2	(443.30)	(443.30)					가-24	대방동 350-2	(443.30)	(443.30)						
		가-26	상도동 453	(86.00)	(86.00)					가-26	상도동 453	(86.00)	(86.00)						
		가-27	노량진동 294-32	(14.00)	(14.00)					가-27	노량진동 294-32	(14.00)	(14.00)						
		가-28	본동 489	(123.11)	(123.11)					가-28	본동 489	(123.11)	(123.11)						
		가-29	본동 489	(374.39)	(374.39)					가-29	본동 489	(374.39)	(374.39)						
		가-30	본동 489	(258.73)	(258.73)					가-30	본동 489	(258.73)	(258.73)						
		가-31	본동 489	(120.32)	(120.32)					가-31	본동 489	(120.32)	(120.3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계단	①	상도동 453						3	①	상도동 453							3	
		②							8	②								8	
	소계			496.50	496.50				92			496.50	496.50				92		
	그늘시령	②							28	②							28		
	쉼터	③							36	③							36		
조경 시설	벽천	④	대방동23-1 76	330.00	330.00					④	대방동23-1 76	330.00	330.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음악분수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일반 시설		클랜터	㉑																1										1					
		인양벽	㉑	상도동 453	11.50	11.50													1	㉑	상도동 453	11.50	11.50									1		
		디딤석돌기	㉒	상도동 453															22	㉒	상도동 453											22		
		조형블린드	㉓	상도동 453	24.00	24.00													1	㉓	상도동 453	24.00	24.00									1		
		조경인양벽	㉔			12.00	12.00													3	㉔			12.00	12.00								3	
환경 시설		소계			8,953.95	8,862.95				1동	54.00	107.00	213									8,953.95	8,862.95				1동	54.00	107.00	213				
		경로당	1	본동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1	본동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휴게소	나		8,789.95	8,789.95														나		8,789.95	8,789.95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나-1	대방동350-1	(790.00)	(790.00)					나-1	대방동350-1	(790.00)	(790.00)					
		나-2	대방동23-213	(91.00)	(91.00)					나-2	대방동23-213	(91.00)	(91.00)					
		나-3	상도동335-207	(73.00)	(73.00)					나-3	상도동335-207	(73.00)	(73.00)					
		나-4	상도동4-4	(60.00)	(60.00)					나-4	상도동4-4	(60.00)	(60.00)					
		나-5	대방동23-176	(1,350.00)	(1,350.00)					나-5	대방동23-176	(1,350.00)	(1,350.00)					
		나-6	노량진동225-161	(113.00)	(113.00)					나-6	노량진동225-161	(113.00)	(113.00)					
		나-7	노량진동공325-2	(314.00)	(314.00)					나-7	노량진동공325-2	(314.00)	(314.00)					
		나-8	노량진동공325-2	(437.00)	(437.00)					나-8	노량진동공325-2	(437.00)	(437.00)					
		나-9	본동 489	(72.10)	(72.10)					나-9	본동 489	(72.10)	(72.1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나-20	상도동 453	(76.00)	(76.00)					나-20	상도동 453	(76.00)	(76.00)						
			나-21	노량진동 294-32	(48.00)	(48.00)					나-21	노량진동 294-32	(48.00)	(48.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나-22	노량진동 294-185	(22.00)	(22.00)				나-22	노량진동 294-185	(22.00)	(22.00)						
		나-23	노량진동 294-517	(31.00)	(31.00)				나-23	노량진동 294-517	(31.00)	(31.00)						
		나-24	노량진동 294-329	(81.00)	(81.00)				나-24	노량진동 294-329	(81.00)	(81.00)						
	벤치														169			
	피크닉테이블	㉞							㉞							6		
	평상	㉞	상도동 453	19	19				㉞	상도동 453	19	19				6		
	등의자	㉞							㉞							22		
	수목보호벤치	㉞	본동 489						㉞	본동 489						6		
	파고라벤치	㉞	본동 489						㉞	본동 489						4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체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체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유형 시설	소계	어린이놀이터	㉔	소계	1,607.39	1,407.39					4								4	
			㉔-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㉔-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㉔-2	본동 489	(257.29)	(257.29)					㉔-2	본동 489	(257.29)	(257.29)								
유형 시설	어린이놀이터	㉔-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㉔-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㉔-4	대방동 13-655대	(266.10)	(266.10)					㉔-4	대방동 13-655대	(266.10)	(266.10)							
	㉔-5	노량진동 294-192	(122.00)	(122.00)					㉔-5	노량진동 294-192	(122.00)	(122.00)								
	조형놀이대	㉔								1	㉔								1	
	흔들놀이대	㉔								2	㉔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시설명																			
본문인사실	모노레일	⑤															1		
	소계			26,381.97	26,381.97							26,091.89	26,091.89				30	감) 290.08㎡	
	베드민턴장	다	소계	6,012.00	6,012.00					다	소계	6,012.00	6,012.00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베드미턴장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5	본동 126-249일 대	(900.00)	(900.00)	(1면)				다-5	본동 126-249일 대	(900.00)	(900.00)	(1면)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테니스장	라	라	소계	5,283.93	5,283.93					라	소계	5,283.93	5,283.93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2	본동 126-249일 대	(2,394.00)	(2,394.00)		(4면)			라-2	본동 126-249일 대	(2,394.00)	(2,394.00)	(4면)					
	마	대방동 350-2일대	9,000.00	9,000.00				마	대방동 350-2일대	9,000.00	9,000.00							
다목적구장	바	바	소계	4,078.28	4,078.28					바	소계	3,788.20	3,788.20					감) 290.08㎡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3	상도동 363	290.08	290.08													폐지, 감) 290.08 ㎡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체력단련장		사	소계	2,007.76	2,007.76				30	사	소계	2,007.76	2,007.76				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공공 시설	체육단편장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사-9	상도동 453	(73.00)	(73.00)					사-9	상도동 453	(73.00)	(73.00)					
		사-10	본동 489	(163.00)	(163.00)					사-10	본동 489	(163.00)	(163.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력 단련시설	㉑																			29
	복합 운동시설																				1
	소계																				1
	도서관	3	대방동 23-189	1,850.00	1,084.00		3,127.64	3층	2,243.98	8,150.17	1										1
	어린이 도서관	3-1	노량진동 225-161	781.00	781.00		781.00	2층	192.00	488.22											
교양 시설		4	상도동 신4-4	500.00	500.00		500.00		1,057.98	2,702.95											
	청소년 수련시설	4-1	상도동 신4-4	(500.00)	(500.00)		(500.00)	지하층	(330.00)	(1,320.00)											
		4-2	대방동 350-2	-	-		-	지하층	(727.98)	(1,382.9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다목적 공연장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탑	㉑	-	119.00	115.64					㉑	-	119.00	115.64					
	공군탑	㉑-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㉑-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자매결연탑	㉑-2	대방동 23-176	(4.00)	(0.64)					㉑-2	대방동 23-176	(4.00)	(0.64)					
	이외무대	㉒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㉒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이외서고	㉓	노량진동 294-329						1	㉓	노량진동 294-329							1
	소계			3,237.00	3,208.41			5동	153.60	153.60		3,237.00	3,208.41		5동	153.60	153.60	
	편의 시설	아	소계	1,813.81	1,813.81					아	소계	1,813.81	1,813.81			32대		
주차장		아-1	대방동 15-45일대	(1,294.21)	(1,294.21)			15대		아-1	대방동 15-45일대	(1,294.21)	(1,294.21)			15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 적	연면적							바닥면 적	연면적		
		아-2	대방동 350-2	(265.60)	(265.60)	8대				아-2	대방동 350-2	(265.60)	(265.60)	8대				
		아-3	상도동 신4-4	(254.00)	(254.00)	9대				아-3	상도동 신4-4	(254.00)	(254.00)	9대				
		자	소계	1,020.00	1,020.00				자	소계	1,020.00	1,020.00						
	약수터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6	소계	122.19	93.60	3동	93.60	93.60		6	소계	122.19	93.60	3동	93.60	93.60		
편의 시설	화장실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6-2	대방동 350-2	(20.20)	(7.00)	1동	(7.00)	(7.00)		6-2	대방동 350-2	(20.20)	(7.00)	1동	(7.00)	(7.00)		
		6-3	본동 489	(27.20)	(27.20)	1동	(27.20)	(27.20)		6-3	본동 489	(27.20)	(27.20)	1동	(27.20)	(27.2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적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적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전망대	7	소계	281.00	281.00	2동	60.00	60.00		7	소계	281.00	281.00	2동	60.00	60.00			
		7-1	대방동 23-213	(136.00)	(136.00)					7-1	대방동 23-213	(136.00)	(136.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소계				285.17	285.17	2동	260.07	260.07	328			285.17	285.17	2동	260.07	260.07	328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8	소계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	소계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 콘크리트 1동	(150.00)	(150.00)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 콘크리트 1동	(150.00)	(150.00)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관 철물 1동	(110.07)	(110.07)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관 철물 1동	(110.07)	(110.0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								조					
	조영시설	㉔							267	㉔								267	
	휴지통								35									35	
	안내판	㉕							3	㉕								3	
	볼라드								15									15	
	안전헬스								1									1 (129경간)	
	문주								1									1	
	경계헬스	㉖							1	㉖								1 (144경간)	
	무재헬스	㉗							1	㉗								1 (16경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CCTV	㉑							2	㉑							2	
	놀이시설 안내판	㉒							1	㉒							1	
	창고	㉓	본동 489	15	15				1	㉓	본동 489	15	15				1	
복지 및 기타				280,009.45								281,577.48						증) 1,568.03 ㎡

3. 도로조서

－ 도로총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9,069.20	35,287.10 (15,125.00)				
변경					9,014.00	35,071.10 (15,125.00)				감)216.0㎡
당초	중로	소 계			578	(7,744.00)				
당초	소로	소 계			8,491.20	27,543.10 (7,381.00)	공원내도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8,436.00	27,327.10 (7,381)	공원내도로 (도시계획도로)			감)216.0㎡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없음		합 계			1,242.60	15,125				
변경없음	중로	소 계			578	7,744				
	중로	3	1	6-15	154	1,700	도시계획도로	대방동23-186	소 3-6	
	"	3	2	18	158	2,844	"	대방동23-188	대방동23-188	
	"	3	3	4-15	266	3,200	"	대방동466-57	대방동15-40	
변경없음	소로	소계			665	7,381				
	"	1	3	2-12	200	1,880	"	본동 산11-1	본동 산1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1	4	12	169.6	2,035	"	본동 10-5	본동 산127-78	
	"	1	5	2-12	27	250	"	본동 30-25	본동 30-66	
	"	1	6	12	204	2,448	"	상도동 7-87	흑석동 241-36	
	"	1	7	12	64	768	"	상도2 재개발	소3-21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소 계			7,826.60	20,162.10				
변경	소로	소 계			7,771.40	19,946.10				감) 216.0㎡
	소로	3	1	10	72	720	진입로	중 3-3	주차장 (자-1)	
	"	"	2	3	10	30	산책로	중 3-1	배드민턴장 (다-1)	
	"	"	6	3-5	340	1,584	"	중 3-1 종점	대방동 360-2	
	"	"	8	3	54	162	"	소 3-9	광장(가-1)	
	"	"	9	4	60	240	"	다목적운동장	소 3-8	
	"	"	10	2	52	104	"	광장(가-1)	광장(가-3)	
	"	"	11	3	54	162	"	도서관(3)	소 3-13	
	"	"	12	4	74	296	"	대방동 350-2	소 3-13	
	"	"	13	2	426	852	"	주차장(자-1)	대방동 15-45	
	"	"	14	3	28	84	"	소 1-1	배드민턴장 (다-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	15	1.5	268	402	"	소 3-133	상도동 335-194	
	"	"	16	1.5	435	652	"	소 3-15	상도동 446	
	"	"	17	1.5	315	445	"	소 3-15	소 3-16	
	"	"	18	4	42	168	"	소 3-16	휴게소 (나-4)	
	"	"	22	6	45	270	"	노량진동 225-294	노량진동 225-294	
	"	"	23	3	12	35.4	"	본동 산 11-1	가-31	
	"	"	24	2	409	1235.19	"	광장 가-30	과장 가-31	
	"	"	25	2	35	70	"	소 3-26	소 1-4	
	"	"	26	2	192	384	"	소 1-4	소 3-32	
	소로	3	27	2	40	80	산책로	소 3-32	소 3-26	
	"	"	28	2	15	30	"	소 3-26	배드민턴장 (다-6)	
	"	"	29	2	54	108	"	약수터(차-1)	본동 127-52북측	
	"	"	31	2	16	32	"	소3-29	배드민턴장 (다-6)	
	"	3	32	2	240	480	"	본동 129-249 서측	소 3-33 기점	
	"	"	33	4	38	152	"	소 3-34 종점	본동 126-15북측	
	"	"	34	2	50	100	"	소 3-32	소 3-33 기점	
	"	"	35	2	7	14	"	소 3-36	본동30-17북동측	
	"	"	36	2	76	152	"	소 3-33	소 3-3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	37	4	14	56	"	소 3-36	본동30-17동측	
	"	"	38	2	52	104	"	소 3-26	소 3-32	
	"	"	39	2	180	360	"	소 3-42	소 3-34	
	"	"	40	2	34	68	"	소 3-39	흑석동 200-52	
	"	"	41	2	30	60	"	소 3-39	배드민턴장 (다-7)	
	"	"	42	2	88	176	"	소 3-45	"	
	"	"	43	2	30	60	"	소 3-44	소 3-42	
	"	"	44	2	108	216	"	흑석동 211-33	흑석동 200-63	
	"	"	45	2	72	144	"	소 3-44	휴게소 (나-8)	
	"	"	46	2	12	24	"	소 3-45	배드민턴장 (다-7)	
	"	"	47	2	23	46	"	소 3-45	"	
	"	"	48	2	48	96	"	소 3-4	흑석동 211-33서측	
	소로	3	49	2	50	100	산책로	소 3-51 종점	소 3-44	
	"	"	50	2	32	64	"	흑석동 211-33	소 3-51	
	"	"	51	2	80	160	"	흑석동 211-33	흑석동 211-33	
	"	"	52	2~3	274	822	"	다목적운동장	광장(가-5)	
	"	"	53	4	75	300	"	진입광장 (가-3)	광장(가-4)	
	"	"	54	3	40	120	"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아-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	55	4	156	624	"	주차장(자-1)	중 3-2	
	소로	3	56	1.2	178	213.6	"	소 3-12	소 3-58	
	소로	3	57	2	3	6	"	배드민턴장 (다-3)	소 3-13	
	"	"	58	4	45	180	"	광장(가-3)	소 3-11	
	"	"	59	2	273	546	"	중 3-3	소 3-15	
	"	"	60	4	13	52	"	대방동 2-2	대방동 2-2	
	"	"	61	20	35	700	"	중 3-3	축구장(바)	
	"	"	62	6	80	480	연결로	상도동 산4-80임	소 3-63	
	"	"	63	6	26	156	"	소 3-62	소 3-18	
	"	"	64	4	25	100	"	소 3-63	상도동 산 4-69임	
	"	"	65	4	10.2	41	"	소 3-64	상도동 356-220	
	"	"	66	3	10	30	"	기존도로	어린이도서관(3-1)	
	"	"	67	2	24	48	"	어린이도서관(3-1)	소 3-68	
	"	"	68	2	22	44	"	휴게소 (나-6)	전망대 (7)	
	"	"	69	2	17	34	"	음악분수 ⑦	휴게소 (나-8)	
	소로	3	70	4	16.5	66	"	광장(가-9)	휴게소 (가-10)	
	"	"	71	5	3	15	"	기존도로	광장(가-8)	
	"	"	72	4	3	12	"	기존도로	어린이놀이터(⑧)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	73	3	11	33	"	기존도로	휴게소 (나-7)	
	"	"	74	4	39	156	연결로	광장(가-13)	광장(가-15)	
	"	"	75	4	60	240	"	광장(가-15)	광장(가-16)	
	"	"	76	5	31	155	"	광장(가-16)	광장(가-11)	
	"	"	77	2	14.5	29	"	광장(가-19)	휴게소 (나-12)	
	"	"	78	2	7.6	15	"	광장(가-18)	광장(가-16)	
	"	"	79	3.4	23.1	79	"	광장(가-15)	광장(가-12)	
	"	"	80	1.5	155.6	233	"	광장(가-15)	광장(가-12)	
	"	"	81	1.2	37.3	45	산책로	광장(가-16)	휴게소 (나-16)	
	"	"	82	1.2	16.5	20	"	휴게소 (나-13)	광장 (가-11)	
	"	"	83	1.2	28	34	"	광장(가-11)	소 3-77	
	"	"	84	1.2	47	56	"	소 3-77	소 3-78	
	"	"	85	1.2	21.3	26	"	소 3-78	소 3-75	
	"	"	86	1.2	17.9	21	"	광장(가-14)	소 3-74	
당초	"	"	87	1.2	49.8	60	"	광장(가-17)	소 3-75	
변경	"	"		3	42.5	132	"	광장(가-17)	소 3-75	증) 72.0㎡
당초	"	"	88	6.2	45.1	280	"	광장(가-15)	기존도로	
변경	"	"		4.0	6.8	27	"	광장(가-15)	기존도로	감) 253.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	89	3.9	5.1	20	진입로	기존도로	소 3-75	
당초	소로	3	90	4.5	11.2	50	"	기존도로	광장(가-17)	
변경	"	"								폐지, 감) 50.0㎡
당초	소로	3	91	4.5	20.2	91	"	기존도로	광장(가-17)	
변경	"	"		4	20	93	"	기존도로	광장(가-17)	증)2.0㎡
당초	"	"	92	4	7.6	30	"	기존도로	소 3-91	
변경	"	"		3	19	80	"	인접대지	소 3-94	증) 50.0㎡
당초	소로	3	93	4	14	56	"	기존도로	광장(가-17)	
변경	"	"								폐지, 감) 56.0㎡
당초	"	"	94	1.2	5.3	6	"	기존도로	소 3-87	
변경	"	"		2.6	9.7	25	진입로	인접대지	광장(가-17)	증) 19.0㎡
	"	"	101	2.5	115.8	289.5	산책로	광장(가-22)	소 3-103	
	"	"	102	2.5	71.4	178.6	"	소 3-103	소 3-103	
	"	"	103	3	53.7	161.1	진입로	대방동 13-133대	대방동 13-22대	
	"	"	104	2.5	145.6	364	산책로	소 3-103	상도동 451도	
	"	"	105	2	11.3	22.6	진입로	소 3-104	상도동 451도	
	"	"	106	1.5	30.5	45.7	연결로	소 3-104	소 3-101	
	소로	3	107	2	5	10	진입로	기존도로	화장실(6-2)	
	소로	3	108	1.5	28	42	연결로	광장(가-24)	소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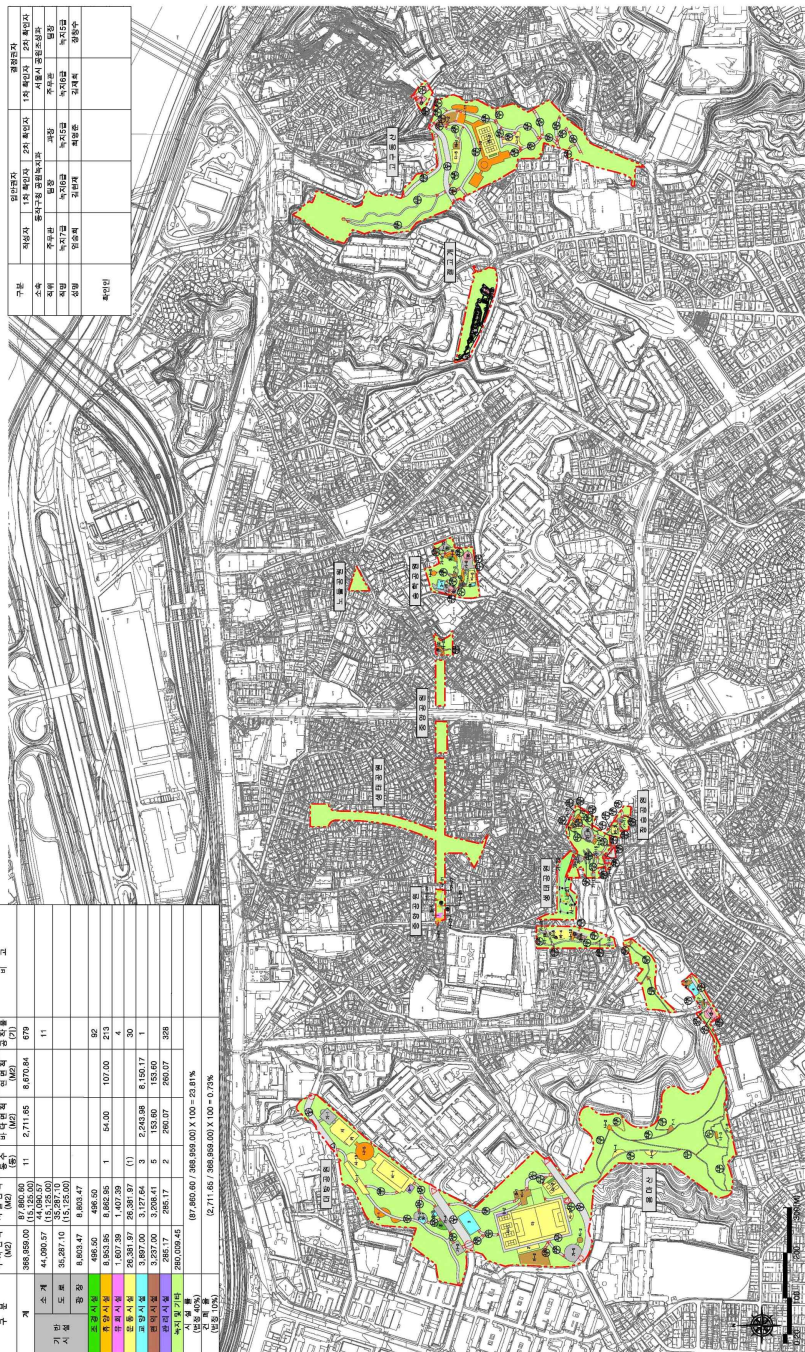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책로	3	109	3	11	33	진입로	진출임로	소3-114	
	"	"	110	3	4.5	13.5	"	"	소3-110	
	"	"	111	4	17	68	"	"	소3-111	
	"	"	112	3	18	54	연결로	소3-114	소3-114	
	"	"	113	2	39.5	49	"	"	"	
	"	"	114	2.5	210	525	"	진출임로	가-26	
	소로	3	115	2	68.5	137	연결로	광장(가-27)	진입부	
	"	"	116	2	4	8	진입로	진입부	소 3-115	
	"	-	131	1.5	105	158	산책로	소 3-59	휴게소 (나-2)	
	"	-	132	1.5	69	104	"	휴게소 (나-2)	대방동 23-213	
	"	-	133	1.5	316	474	"	휴게소 (나-2)	소 3-16	
	"	-	134	1.5	52	78	"	전망대 (1-7)	대방동 23-213	
	산책로		135	5	5	14.53	"	동측입구	광장 가-28	
			136	2	5	14.37	"	동측입구	광장 가-28	
			137	1.5	67	102.37	"	광장 가-28	산책로 3-140	
			138	1.2	13	15.71	"	산책로 3-137	산책로 3-139	
			139	1.8	29	52.03	"	광장 가-28	광장 가-29	
			140	2.5	12	30.55	"	남측입구	광장 가-28	
			141	1.35	11	15.35	"	광장 가-30	산책로-142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노량진그린리더

구분	부채지급액 (M2)	부채상환액 (M2)	잔액		비고
			잔액 (M2)	잔액 (%)	
기타	계	386,659.00	17,650.00	679	
	주거	14,000.00	14,000.00		
	자동차	35,387.10	35,387.10		
	항공	8,023.47	8,023.47		
증권투자	계	498.55	498.55	213	
	채권투자	8,924.95	8,924.95	1	
	채권상환	26,381.37	26,381.37	(1)	
	채권상환	3,887.50	3,172.64	3	
금융투자	계	2,243.38	8,150.17	30	
	채권투자	150.00	150.00		
	채권상환	2,093.38	1,515.50		
	채권상환	267.17	267.17		
특수자산/부채	계	280,029.45	280,029.45	228	
	계	78,650.07	386,659.00	100 = 28.81%	
합계	78,650.07	386,659.00	100 = 0.73%		

구분	일반교역자		경장교역자	
	직상시	1차 특임사	1차 특임사	2차 특임사
소속	종교개혁운동연구소	종교개혁운동연구소	기독교서회	기독교서회
직책	사무장	사무장	사무장	사무장
성별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신앙	장로교	장로교	장로교	장로교
학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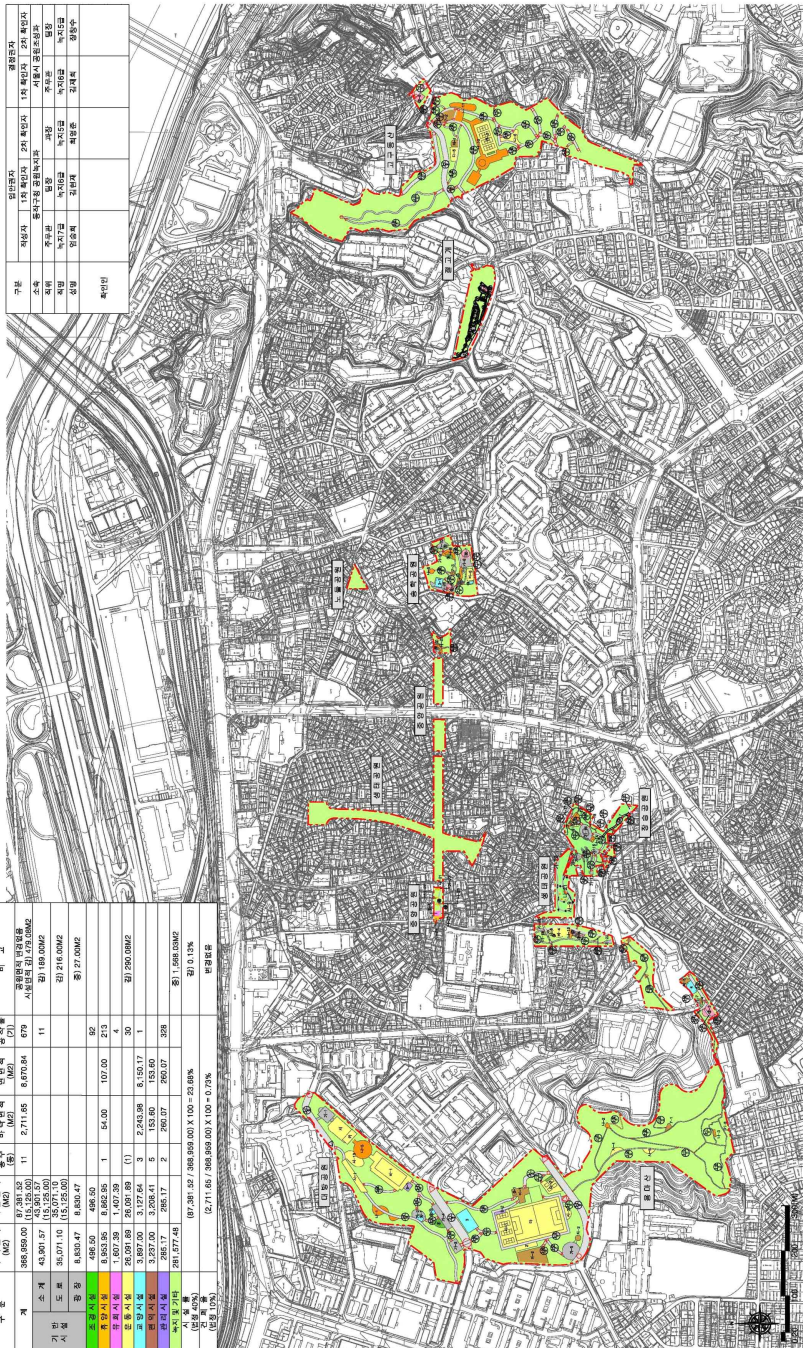


(아
로
프)
나
다
서
하
는
것

노량진그리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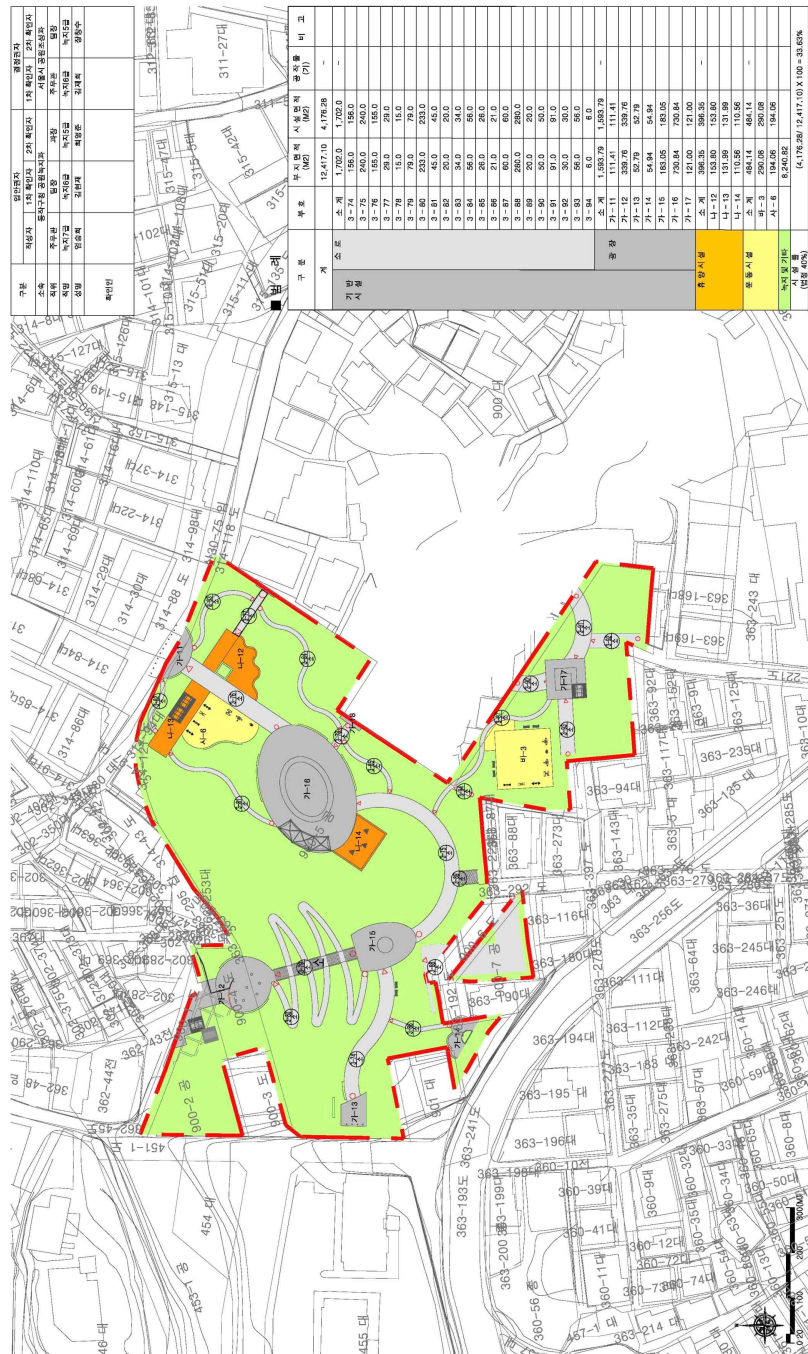
구분	주요지명	주요지명 (km ²)		면적비 (%)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기타	계	388,659.00	11	2,711.65	0.670	479
	지리산	43,301.57	11	43,301.57	100	100
	고령산	35,071.17	9	35,071.17	100	100
	팔공산	35,071.17	9	35,071.17	100	100
유지 관리	계	469.50	0	8,359.27	2.260	27
	유지 관리	469.50	0	469.50	100	100
	유지 관리	8,932.95	2	8,932.95	100	100
	유지 관리	25,091.99	7	25,091.99	100	100
유지 관리	계	3,697.00	1	3,177.64	3	30
	유지 관리	3,697.00	1	3,177.64	3	30
	유지 관리	285.17	0	285.17	100	100
	유지 관리	285.17	0	285.17	100	100
유지 관리	계	281,277.45	73	281,277.45	100	100
	유지 관리	281,277.45	73	281,277.45	100	100
합계		838,956.00	100	22,899.94	5.593	30
비율 (%)						면적비율
						면적비율

구분	인사관리과		경리관리과		경리지원과	
	직상장	1차 직위인사	2차 직위인사	1차 직위인사	2차 직위인사	3차 직위인사
소속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위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직급	능7급	능7급	능7급	능7급	능7급	능7급
성별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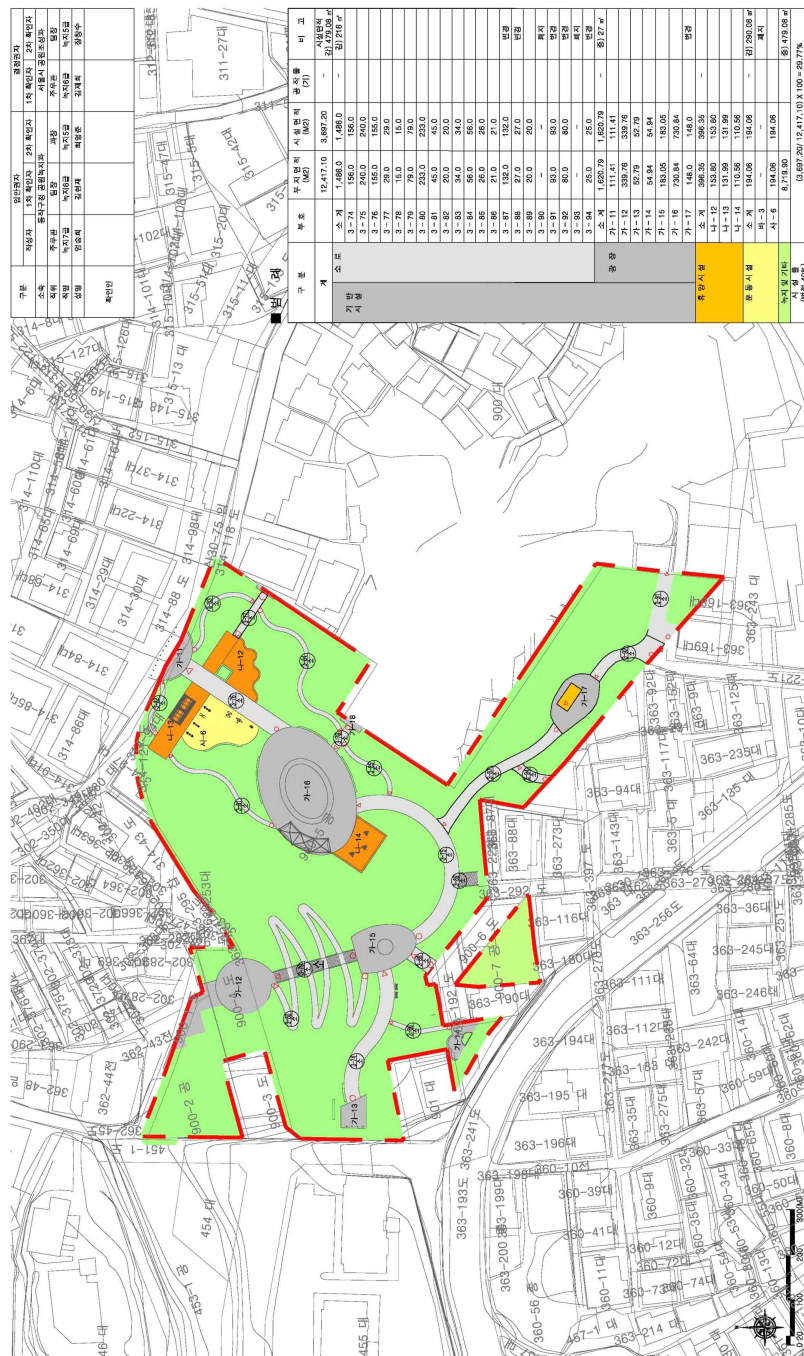
소성계회도(변경전)

노량진근린공원
(장승공원)



수업계획서

노량진근린공원 (장승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3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상계5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2020.10.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1호(2022.07.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9호(2023.06.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5호(2023.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5호(2024.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34호(2026.03.1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599,167.6	감) 78.0	599,089.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지구 면적 변경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30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99,167.6	감) 78.0	599,089.6	100.0	-
주택 용지	소 계	368,282.4	감) 9.6	368,272.8	61.4	-
	주 거	253,257.9	-	253,257.9	42.3	성림아파트, 건영아파트 존치
	주거복합	97,907.5	감) 9.6	97,897.9	16.3	-
	종교시설	9,851.3	-	9,851.3	1.6	SGI 문화회관 존치
	버스차고지	7,265.7	-	7,265.7	1.2	상계5구역내 현황 버스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217,661.5	감) 42.1	217,619.4	36.4	-
	도 로	113,417.7	감) 17.9	113,399.8	18.8	하천구역 내 4,984.2㎡
	공 원	54,266.5	감) 24.2	54,242.3	9.1	-
	녹 지	5,719.5	-	5,719.5	1.0	-
	학 교	14,851.0	-	14,851.0	2.5	-
	공공청사	3,496.2	-	3,496.2	0.6	-
	문화복지	8,198.1	-	8,198.1	1.4	-
	공공공지	16,214.8	-	16,214.8	2.7	-
	수도공급설비	547.6	-	547.6	0.1	상계4구역
	체육시설	950.0	-	950.0	0.2	상계6구역
기타	하천구역	13,223.7	감) 26.3	13,197.4	2.2	하천구역 반영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26,919인 / 9,970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480	감) 183	10,297	28,296	감) 494	27,802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10,153	감) 183	9,970	27,413	감) 494	26,919	세대당 약 2.7인
	40㎡이하	1,244	감) 60	1,184	3,359	감) 162	3,197	
	40㎡~60㎡	5,680	감) 392	5,288	15,336	감) 1,059	14,277	
	60㎡~85㎡	3,121	증) 229	3,350	8,426	증) 619	9,045	
	85㎡초과	108	증) 40	148	292	증) 108	400	
준치 관리구역	소 계	327	-	327	883	-	883	-
	공동주택	327	-	327	883	-	883	세대당 약 2.7인

※ 상계5구역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2025.12.18.) 결과반영에 따른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3) 기반시설 설치계획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257.7	-	44,257.7	-
	학 교	14,851.0	-	14,851.0	-
	공 공 청 사	3,496.2	-	3,496.2	-
	문화 및 복지시설	8,198.1	-	8,198.1	-
	공공공지	16,214.8	-	16,214.8	-
	수도공급설비	547.6	-	547.6	-
	체육시설	950.0	-	950.0	-

4)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9,986.0	감) 24.2	59,961.8	-
공원	소 계		54,266.5	감) 24.2	54,242.3	-
	도시자연공원		16,738.6	-	16,738.6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18,137.0	-	18,137.0	상계1구역
		소공원	8,564.1	-	8,564.1	상계2·4구역
	주제공원	문화공원	4,326.8	-	4,326.8	상계6구역
		수변공원	6,500.0	감) 24.2	6,475.8	상계5구역
	소 계		5,719.5	-	5,719.5	-
녹지	완충녹지		5,187.8	-	5,187.8	상계2구역
	경관녹지		531.7	-	531.7	상계2구역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수변공원 변경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1	C	상계동	자력6-8-9	8.6	190	21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1구역
기정	2	C	상계동	자력2-17-1	10.1	210	2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2구역
기정	3	C	상계동	71-183	12.1	210	-	60	4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3구역
기정	4	C	상계동	85-33	4.0	230	23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4구역
기정	5	C	상계동	109-43	11.6	231.10	23	5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5구역
변경	5	C	상계동	109-43	11.6	228.97	24	5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5구역
기정	6	C	상계동	95-3	6.6	258.33	27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상계6구역

※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의미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5항에 의거 재산정

※ 상계5구역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자문(2025.12.18.) 결과반영에 따른 평균 층수 변경

○ 주택재건축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주거환경정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99,167.6	감) 78.0	599,089.6	-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531,644.1	감) 78.0	531,566.1	-	-
	상계1	상계동 5-16번지 일대	86,432.5	-	86,432.5	재개발사업	-
	상계2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100,819.4	-	100,819.4	재개발사업	-
	상계3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121,862.1	-	121,862.1	공공 재개발사업	-
	상계4	상계동 85-33 일대	40,881.1	-	40,881.1	재개발사업	-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계5	상계동 109-43 일대	115,964.1	감) 78.0	115,886.1	재개발사업	선형변경
	상계6	상계동 95-3 일대	65,684.9	-	65,684.9	재개발사업	-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개 구역)		67,523.5	-	67,523.5	-	성림아파트 선형변경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및 지구면적 변경, 존치관리구역(성림아파트) 선형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 : 변경

-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공공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

구역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계5 재정비 촉진구역	계	115,964.1	감) 78.0	115,886.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13.9	증) 200.4	2,414.3	2.1	-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37.2	감) 645.0	38,592.2	3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785.0	증) 365.6	73,150.6	63.1	-
	준주거지역	1,728.0	증) 1.0	1,729.0	1.5	-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에 관한 건축계획 : 변경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190.00	215.56	21/25	88m	-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0	251.60	20/28	98m	-
상계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0	239.15 (250.00)	-/27	82m	-
상계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0.00	255.00	23/28	98m	-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상계5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10	290.49	23/33	112m	준주거 일부포함
	변경			228.97	295.55 (299.49)	24/39	113.2m	
상계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층: 50%이하 준주거: 60%이하	258.33	305.00	27/35	130m	준주거 일부포함

※ ()는 법적상한용적률임

※ 상계5구역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자문(2025.12.18.) 결과반영에 따른 법적
상한용적률(2·3단지 299.49%) 적용

－ 상계5구역 1단지 290.49%(상한용적률) 적용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						비고
			계획기반 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면적(㎡)	구성비(%)	
상계1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86,432.5	32,728.3 (시설기부채납 3,241.3 포함)	12,524.5	14,645.8	-	5,558.0	6.4%	-
상계2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100,819.4	29,250.6 (시설기부채납 2,663 포함)	5,389.8	12,091.3	-	11,769.5	11.7%	-
상계3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121,862.1	38,464.7 (시설기부채납 11,030.9 포함)	13,895.8	12,298.8	-	12,270.1	10.1%	-
상계4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40,881.1	12,562.4	4,898.9	3,221.7	-	4,441.8	10.9%	-
상계5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115,964.1	38,554.48 (시설기부채납 4,014.58 포함)	15,406.40	7,812.80	-	15,335.28	13.22%	-
	변경	115,886.1	39,910.69 (시설기부채납 5,412.89 포함)	15,417.60	7,164.40	-	17,328.69	14.95%	-
상계6재정비촉 진구역	기정	65,684.9	34,292.0 (시설기부채납 3,998.3 포함)	23,879.0	5,244.0	-	5,169.0	7.9%	-
계	기정	531,644.10	185,924.10	85,640.10	45,677.60	-	54,615.30	10.3%	-
	변경	531,566.10	187,280.31	85,651.30	45,029.20	-	56,608.71	10.7%	-

※ 기정은 서고 제2026-134호(2026.03.19.)에 따름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최신화(2024) 및 현황 연속지적도 반영에 따른 기반
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

(현황 연속지적도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국공유지(미계약분, 3,435.1㎡) 제
외)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역명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합계	40㎡ 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10,153	1,968	844	644	435	45
	변경	9,970	1,905	839	504	544	18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1,388	294	168	121	5	-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2,200	426	175	231	20	-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2,550	549	237	-	297	15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810	152	67	68	17	-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042	349	104	140	75	30
	변경	1,859	286	99	-	184	3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163	198	93	84	21	-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서고 제2022-493호, 2022.12.) 15%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상계5구역 임대주택 건설계획 변경

1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위예방대책 :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대상지역
	조합설립인가시기	사업시행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 2023년				상계6구역
2단계	2009년 ~ 2028년				상계5구역
3단계	2010년 ~ 2027년				상계1구역, 상계2구역
4단계	2021년 ~ 2033년				상계3구역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촉진구역별 또는 이주세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기별로 시행

15) 기타계획 (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9-43 일원	115,964.1	감) 78.0	115,886.1	-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기정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2.99% → (12,399억원 - 7,587억원) / 4,672억원 x 100 = 102.99% - 총수입 추정 : 12,399억원 - 총지출 추정 : 7,58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672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1.39)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1.27) - 건물 = 개략단가(약 100만원/3.3㎡) x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40년 기준 평균 약 100만원/평 추정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tr><td>전용 39㎡ 형</td><td>3.61억</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2.99%)</td><td rowspan="5">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 환급)</td></tr><tr><td>전용 49㎡ 형</td><td>4.47억</td></tr><tr><td>전용 59㎡ 형</td><td>5.45억</td></tr><tr><td>전용 84㎡ 형</td><td>7.64억</td></tr><tr><td>전용 104㎡ 형</td><td>9.40억</td></tr></table>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39㎡ 형	3.61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2.99%)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 환급)	전용 49㎡ 형	4.47억	전용 59㎡ 형	5.45억	전용 84㎡ 형	7.64억	전용 104㎡ 형	9.40억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39㎡ 형	3.61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2.99%)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 환급)																
전용 49㎡ 형	4.47억																		
전용 59㎡ 형	5.45억																		
전용 84㎡ 형	7.64억																		
전용 104㎡ 형	9.40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9.45%
 - (17,118억원 - 10,901억원) / 5,680억원 x 100 = 109.45%
 - 총수입 추정 : 17,118억원
 - 총지출 추정 : 10,901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5,680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1.39)
 -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1.27)
 - 건물 = 개략단가(약 100만원/3.3㎡) x 연면적
-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40년 기준 평균 약 100만원/평 추정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39㎡ 형	5.05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9.45%)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52㎡ 형	6.80억		
전용 59㎡ 형	7.69억		
전용 74㎡ 형	9.64억		
전용 84㎡ 형	10.92억		
전용 104㎡ 형	13.47억		
전용 109㎡ 형	14.11억		
전용 129㎡ 형	16.66억		

변경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2026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5,964.1	감) 78.0	115,886.1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4,539.9	감) 42.1	34,497.8	29.8	-
	도 로	21,838.9	감) 17.9	21,821.0	18.8	하천구역 내 4,984.2㎡
	공 원	6,500.0	감) 24.2	6,475.8	5.6	-
	공공공지	2,326.0	-	2,326.0	2.0	-
	공공청사	525.0	-	525.0	0.5	-
	사회복지시설	3,350.0	-	3,350.0	2.9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획지	소계	68,200.5	감) 9.6	68,190.9	58.8	-
	5-1	62,592.5	감) 9.6	62,582.9	54.0	공동주택
	5-2	1,165.0	-	1,165.0	1.0	종교시설
	5-3	1,000.0	-	1,000.0	0.9	종교시설
	5-4	277.0	-	277.0	0.2	종교시설
	5-5	3,166.0	-	3,166.0	2.7	버스차고지
기타	하천구역	13,223.7	감) 26.3	13,197.4	11.4	-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용도지역계획 : 변경

구역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상계5 재정비 촉진구역	계	115,964.1	감) 78.0	115,886.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13.9	증) 200.4	2,414.3	2.1	-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37.2	감) 645.0	38,592.2	3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785.0	증) 365.6	73,150.6	63.1	-
	준주거지역	1,728.0	증) 1.0	1,729.0	1.5	-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구역 및 용도지역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5	25~43	보조간선 도로	2,408 (410)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일반도 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상계로
변경	대로	3	105	25~43	보조간선 도로	2,408 (410)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일반도 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64	자력 6-53-35일원	자력 6-35-39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
변경	중로	1	2	20	집산도로	159	상계동 101-150일원 중(보) 1-1	상계동 1405-2일원 대(보) 3-105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56	상계동 99-2 일원	상계동 140-34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47	상계동 109-38일원	자력 6-53-39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138	상계동 109-38일원 중(집) 1-2	상계동 1405-2일원 대(보) 3-105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5	자력 6-44-1일원	자력 6-44-1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92	상계동 1406-2 중(집) 1-2	상계동 1406-2 소(국) 2-3	일반 도로	서고 제2008-309호 (08.09.1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가	12	집산도로	101	상계동 1395-14일원	상계동 1409-10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18-266호 (18.07.19)	-

※ 연장항목의 ()내용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구간을 의미하며,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 공원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공원	수변공원	상계동 1398 일원	6,500.0	감) 24.2	6,475.8	서고 제2008-300호 (08.09.11)	-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공공지	상계동 1404 일원	2,326.0	-	2,326.0	서고 제2008-309호 (08.09.11)	-

○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청사	상계동 1409-8 일원	525.0	-	525.0	서고 제2018-226호 (18.07.19)	우체국 대체부지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365.32㎡

※ 상계5구역 공시지가 및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2024) 최신화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변경
- 공공청사 3 : 기정) 270.05㎡ → 변경) 365.32㎡ (증 95.27㎡)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액 적용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사회복지 시설	상계동 1394-4일원	2,125.0	-	2,125.0	-	건축물기부채납(종합사회복지관) 환산부지면적 : 3,216.36㎡
기정	나	사회복지 시설	상계동 1395-10일원	1,225.0	-	1,225.0	-	건축물기부채납(노인요양시설) 환산부지면적 : 1,831.21㎡

※ 상계5구역 공시지가 및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2024) 최신화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가 : 기정) 2,392.11㎡ → 변경) 3,216.36㎡ (증 824.25㎡)

- 사회복지시설 나 : 기정) 1,352.43㎡ → 변경) 1,831.21㎡ (증 478.78㎡)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액 적용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상계5 재정비 촉진구역	115,964.1	5-1	62,592.5	상계동 109-43일원	508	-	-	508	-	-
			5-2	1,165.0	상계동 1400-21일원						
			5-3	1,000.0	상계동 101-59일원						
			5-4	277.0	상계동 140-260일원						
			5-5	3,166.0	상계동 1409일원						
변경	상계5 재정비 촉진구역	115,886.1	5-1	62,582.9	상계동 109-43일원	508	-	-	508	-	-
			5-2	1,165.0	상계동 1400-21일원						
			5-3	1,000.0	상계동 101-59일원						
			5-4	277.0	상계동 140-260일원						
			5-5	3,166.0	상계동 1409일원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구역 및 5-1 획지 변경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촉진계획	법적상한	
기정	상계5 재정비 촉진 구역	115,964.1	5-1	62,592.5	상계동 109-43일원	공동주택	50% 이하	290.49% 이하	-	33층 이하
			5-2	1,165.0	상계동 1400-21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3	1,000.0	상계동 101-59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4	277.0	상계동 140-260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5	3,166.0	상계동 1409일원	버스차고지주)	건축법규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촉진계획	법적상한	
			공공 청사	525.0	상계동 1409-8일원	공공청사	건축법규에 따름			
			사회복지 시설	2,125.0	상계동 1394-4일원	사회복지시설(가)	건축법규에 따름			
				1,225.0	상계동 1395-10일원	사회복지시설(나)	건축법규에 따름			
변경	상계5 재정비 촉진 구역	115,886.1	5-1	62,582.9	상계동 109-43일원	공동주택	50% 이하	295.55% 이하	299.49% 이하	39층 이하
			5-2	1,165.0	상계동 1400-21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3	1,000.0	상계동 101-59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4	277.0	상계동 140-260일원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5	3,166.0	상계동 1409일원	버스차고지주)	건축법규에 따름			
			공공 청사	525.0	상계동 1409-8일원	공공청사	건축법규에 따름			
			사회복지 시설	2,125.0	상계동 1394-4일원	사회복지시설(가)	건축법규에 따름			
				1,225.0	상계동 1395-10일원	사회복지시설(나)	건축법규에 따름			

(표 계속)

(마) 재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재정비촉진사업시행으로 변경 예상 주택호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주택재개발조합	증 1,314호 (기정 728호)	-	-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주택재개발조합	증 1,131호 (기정 728호)	-	-

※ 상계5구역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자문(2025.12.18.) 결과반영에 따른 계획 세대수 변경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건립위치		세대수				계	비 고
		전용면적 30~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전용면적 60~85㎡이하		
기 정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104	140	75	30	349	-
변 경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99	-	184	3	286	-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서고 제2022-493호, 2022.12.) 15% 및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적용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변경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599,167.6	감) 78.0	599,089.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계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경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99,167.6	감) 78.0	599,089.6	100.0	-
주거지역	소계	562,832.5	감) 78.0	562,754.5	93.9	
	제1종일반주거지역	82,819.0	-	82,819.0	13.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3,888.0	증) 200.4	44,088.4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295,278.7	감) 645.0	294,633.7	49.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833.5	증) 365.6	112,199.1	18.7	
	준주거지역	29,013.3	증) 1.0	29,014.3	4.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335.1	-	36,335.1	6.1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및 용도지역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05	25~43	보조 간선	2,408 (1,568)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상계로
변경	대로	3	105	25~43	보조 간선	2,408 (1,568)	상계동 172-2일원	남양주시계 (상계동 산159-1)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	20~29	보조 간선	1,123	상계동 95-376일원	자력 2-11-4일원	일반도로	서고 1997-404 (97.12.13)	덕릉로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64	자력 6-53-35일원	자력 6-35-39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5구역 내부
변경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59	상계동 101-150일원 중(보) 1-1	상계동 1405-2일원 대(보) 3-105	일반 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83	상계동 140-257일원	상계동 82-1일원	일반도로	서고 1997-404 (97.12.13)	당고개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156	상계동 99-2일원	상계동 140-340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5구역 내부
기정	중로	2	97	21~30 (18)	집산 도로	18,805 (585)	상계동 95-376일원	-	일반도로	서고210호 (91.09.04)	수락산길
기정	중로	2	121	15	집산 도로	790	상계동 33	상계동 산 156-6	일반도로	건고197 (71.04.07)	-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 도로	699	자력 6-42-9일원	자력 2-7-12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2구역 순환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1	자력 6-7-51일원	자력 6-1-21일원	일반도로	"	1구역 순환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	상계동 91-3일원	상계동 1291일원	일반도로	서고 2012-226 (12.08.23)	-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76	상계동 107-863일원	상계동 107-856일원	일반도로	서고103 (79.03.02)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7	상계동 109-38일원	자력 6-53-39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건영 아파트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38	상계동 109-38일원 중(집) 1-2	상계동 1405-2일원 대(보) 3-105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5	자력 6-44-1일원	자력 6-44-1일원	일반도로	"	건영 아파트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92	상계동 1406-2 중(집) 1-2	상계동 1406-2 소(국) 2-3	일반 도로	서고 2008-309 (08.09.11)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0	자력 2-23-22일원	상계동 산152-24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93	상계동 산152-24일원	자력 2-23-5일원	일반도로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7	자력 2-4-3일원	상계동 111-660일원	일반도로	"	-

(표 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102	자력 2-4-12일원	상계동 111-66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81	자력 2-5-17일원	상계동 58-32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44	상계동 58-1일원	상계동 58-32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59	상계동 58-20일원	상계동 58-15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7	자력 6-7-53일원	상계동 6-49일원	일반도로	"	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	18	특수 도로	28	상계동 117-17일원	상계동 117-15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중로	2	6	7~15	집산 도로	160	자력 6-12-17일원	상계동 61일원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40	자력 6-14-1가일원	자력 6-15-14일원	일반도로	-	성림 아파트 출입도로
기정	중로	3	가	12	집산 도로	101	상계동 1395-14일원	상계동 1409-10일원	일반도로	서고 2018-266호 (08.09.11)	-
기정	소로	3	A	7	국지 도로	9	상계동 112-82	상계동 산152-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82	상계동 71-2일원	상계동 71-2일원	일반	-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222	상계동 71-251	상계동 71-2일원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99	상계동 44	상계동 71-1일원	일반 도로	-	3구역 출입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143	상계동 77-51	상계동 77-74일원	일반 도로	-	3구역 출입도로
기정	중로	3	3	14	집산 도로	216	상계동 72-77	상계동 71-251	일반 도로	-	3구역 출입도로

※ 폭원 및 연장항목의 괄호 내용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폭원 및 연장을 의미하며,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나)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 공원	상계동 산151-1일원	6,692,859.6 (16,738.6)	-	6,692,859.6 (16,738.6)	건고138 (77.07.09)	-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상계동 6-28번지 일원	18,137.0	-	18,137.0	서고 2008-309 (08.09.11)	-
변경	가	공원	수변공원	상계동 1398일원	6,500.0	감) 24.2	6,475.8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상계동 82-8번지 일원	4,326.8	-	4,326.8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7	공원	소공원	상계동 117-13번지일원 (상계동 1355-6번지)	574.2	-	574.2	서고 2008-309 (08.09.11)	-
기정	8	공원	소공원	상계동 138-176일원 (상계동 1355-8번지)	670.0	-	670.0	서고 2018-214 (18.07.12)	-
기정	9	공원	소공원	자력 2-4-7 일원	1,219.2	-	1,219.2	-	-
기정	5	공원	소공원	상계동 43-27일원	3,925.8	-	3,925.8	-	-
기정	6	공원	소공원	상계동 71-48일원	2,174.9	-	2,174.9	-	-

※ 도시자연공원 면적 ()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면적임

※ 소공원7,8 위치 ()는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상계5구역 현황지적도 반영에 따른 상계 수변공원-가 면적 변경

(나) 녹지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 :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주민자치 센터	자력 6-9-31일원	2,324	-	2,324	-	높이:31m 용적률:200% 건폐율:6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청사	보훈회관, 파출소	상계동 117-8일원 (상계동1355-4번지)	647.2	-	647.2	서고 2008-309 (08.09.11)	높이:25m 용적률:200% 건폐율:60%
기정	3	공공청사	우체국	상계동 1409-8 일원	525.0	-	525.0	서고 2018-226 (18.07.19)	우체국 대체부지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365.32㎡

※ 위치 ()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공공청사 설치 준공 후 신규편입 지번임

※ 상계5구역 공시지가 및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2024) 최신화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변경
- 공공청사 3 : 기정) 270.05㎡ → 변경) 365.32㎡ (증 95.27㎡)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액 적용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나) 학교 : 변경없음

(다) 문화시설 : 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사회복지 시설	상계동 1394-4일원	2,125.0	-	2,125.0	-	건축물기부채납(종합사회복지관) 환산부지면적 : 3,216.36㎡
기정	나	사회복지 시설	상계동 1395-10일원	1,225.0	-	1,225.0	-	건축물기부채납(노인요양시설) 환산부지면적 : 1,831.21㎡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107-975일원	1,232.8	-	1,232.8	-	-

※ 상계5구역 공시지가 및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2024) 최신화에 따른 환산부지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가 : 기정) 2,392.11㎡ → 변경) 3,216.36㎡ (증 824.25㎡)

- 사회복지시설 나 : 기정) 1,352.43㎡ → 변경) 1,831.21㎡ (증 478.78㎡)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액 적용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라) 체육시설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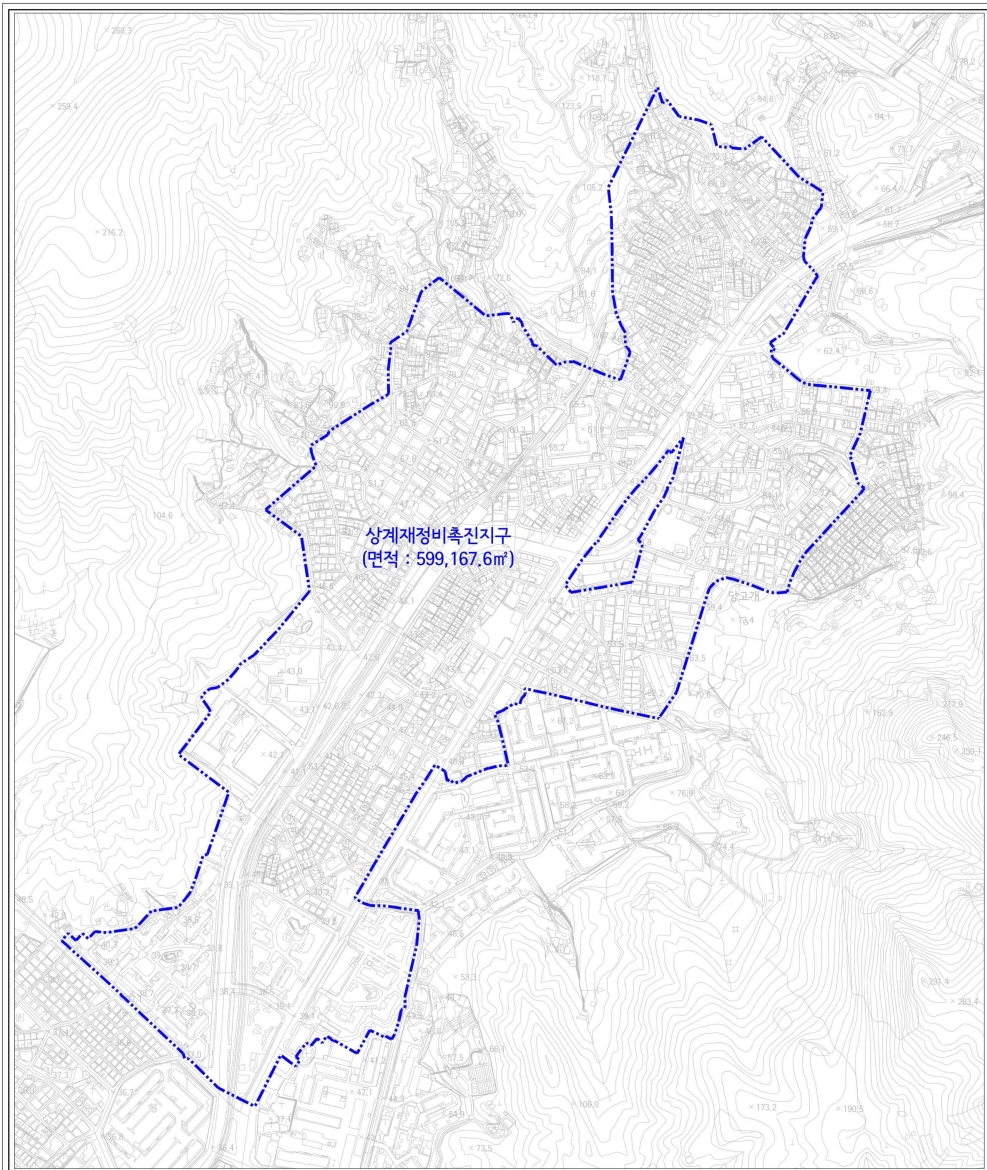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도서」 참조 :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8) 및 노원구 미래도시과(☎ 02-2116-3927)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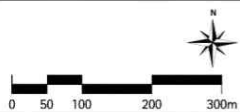


상계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도 -	범 례 ---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상계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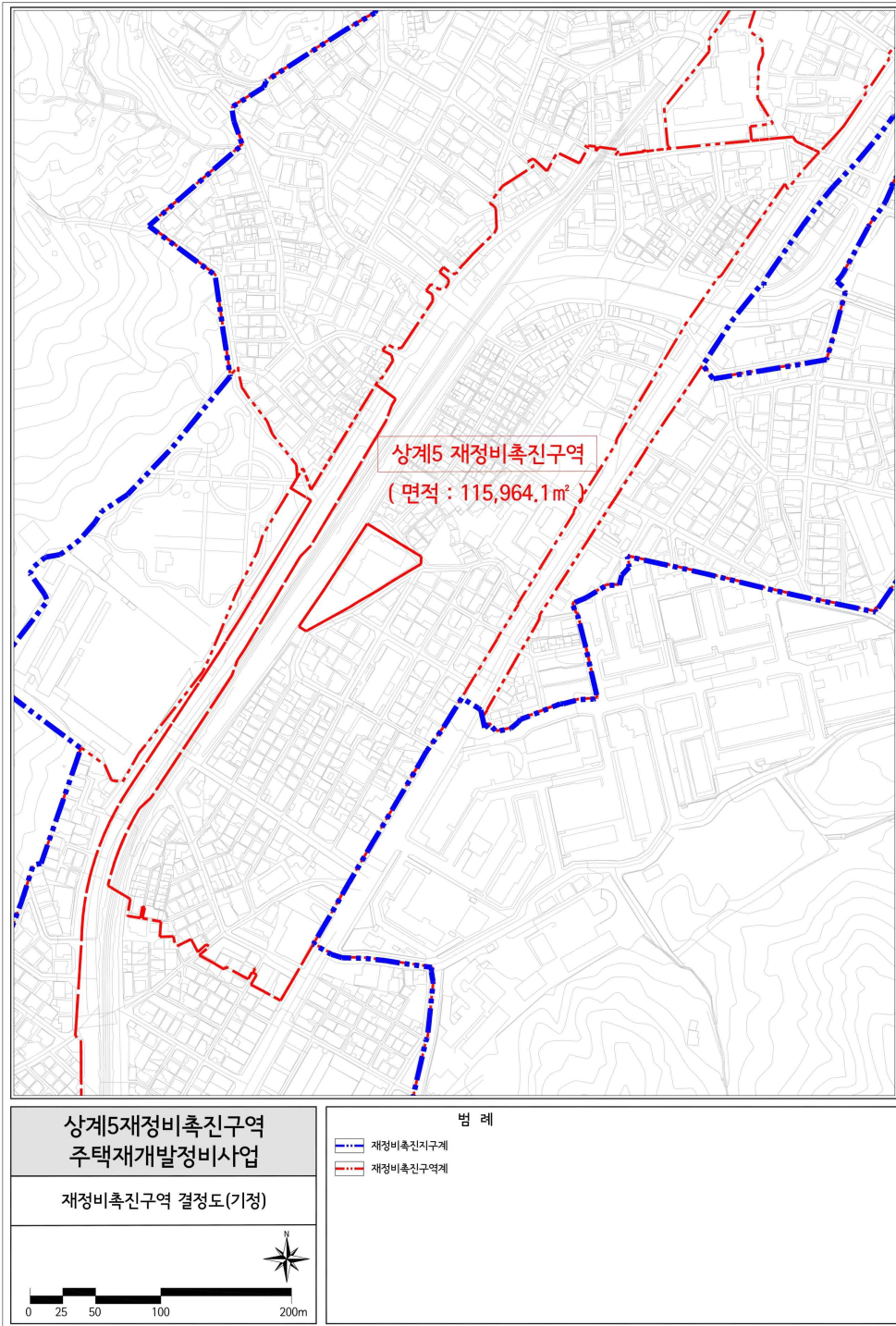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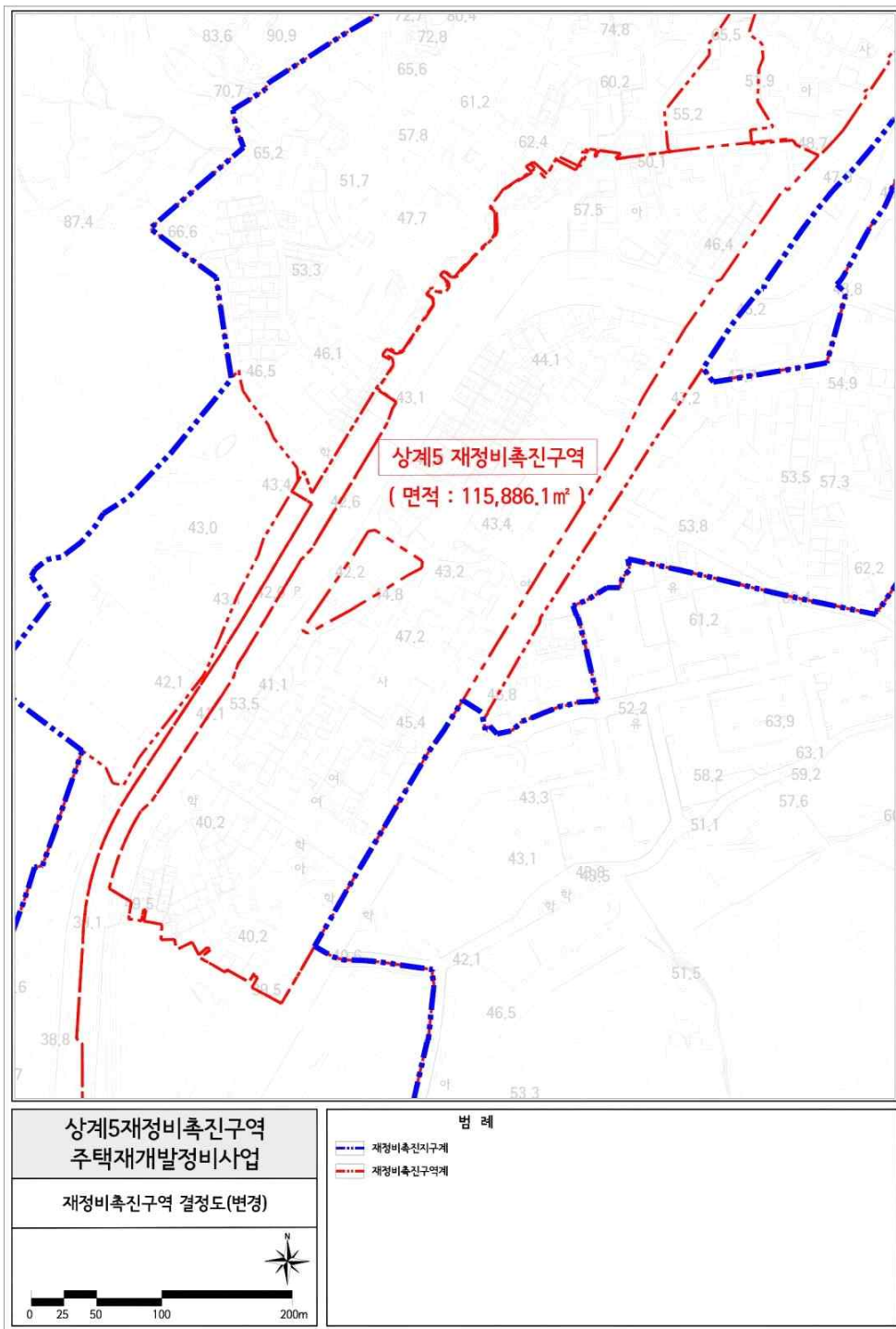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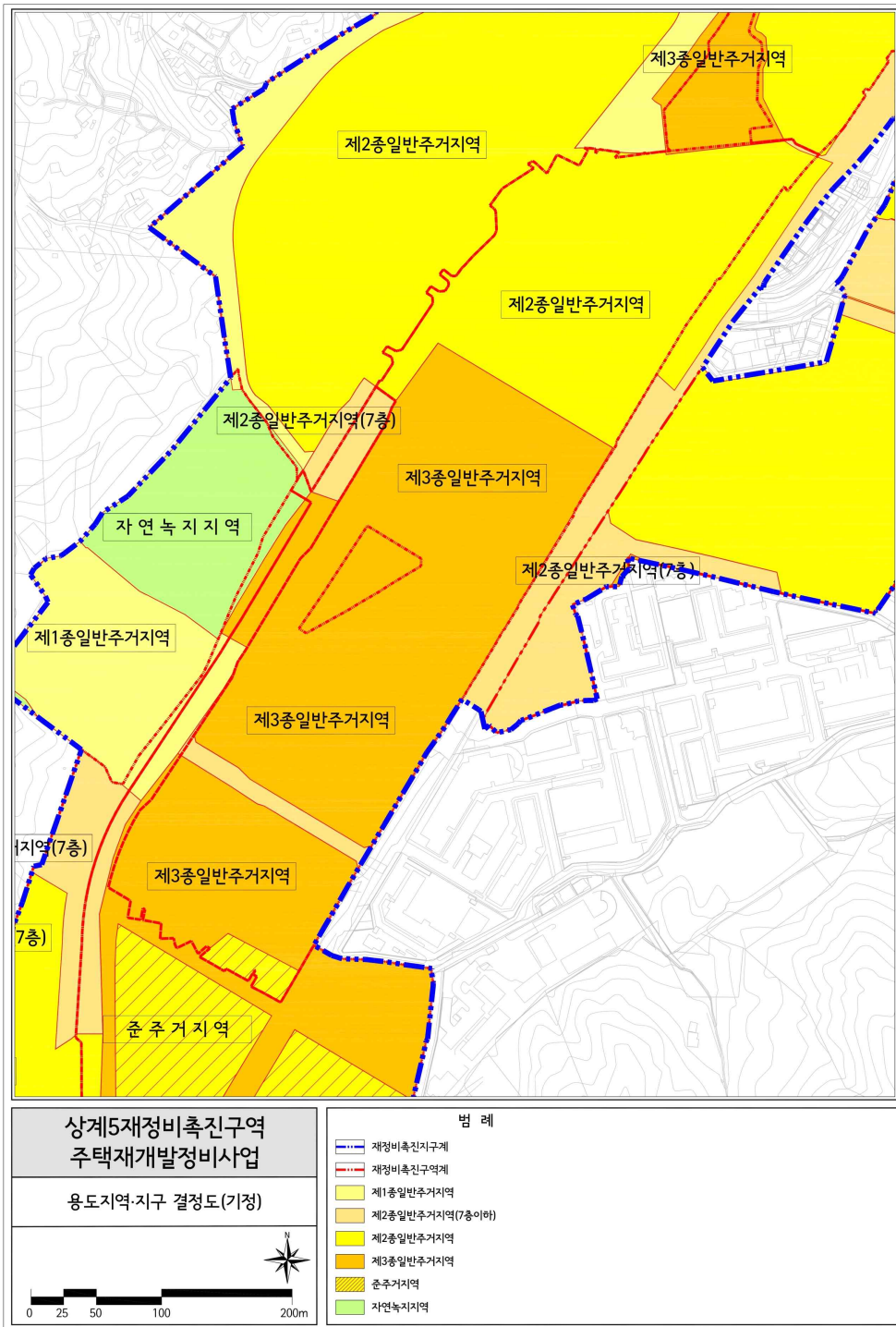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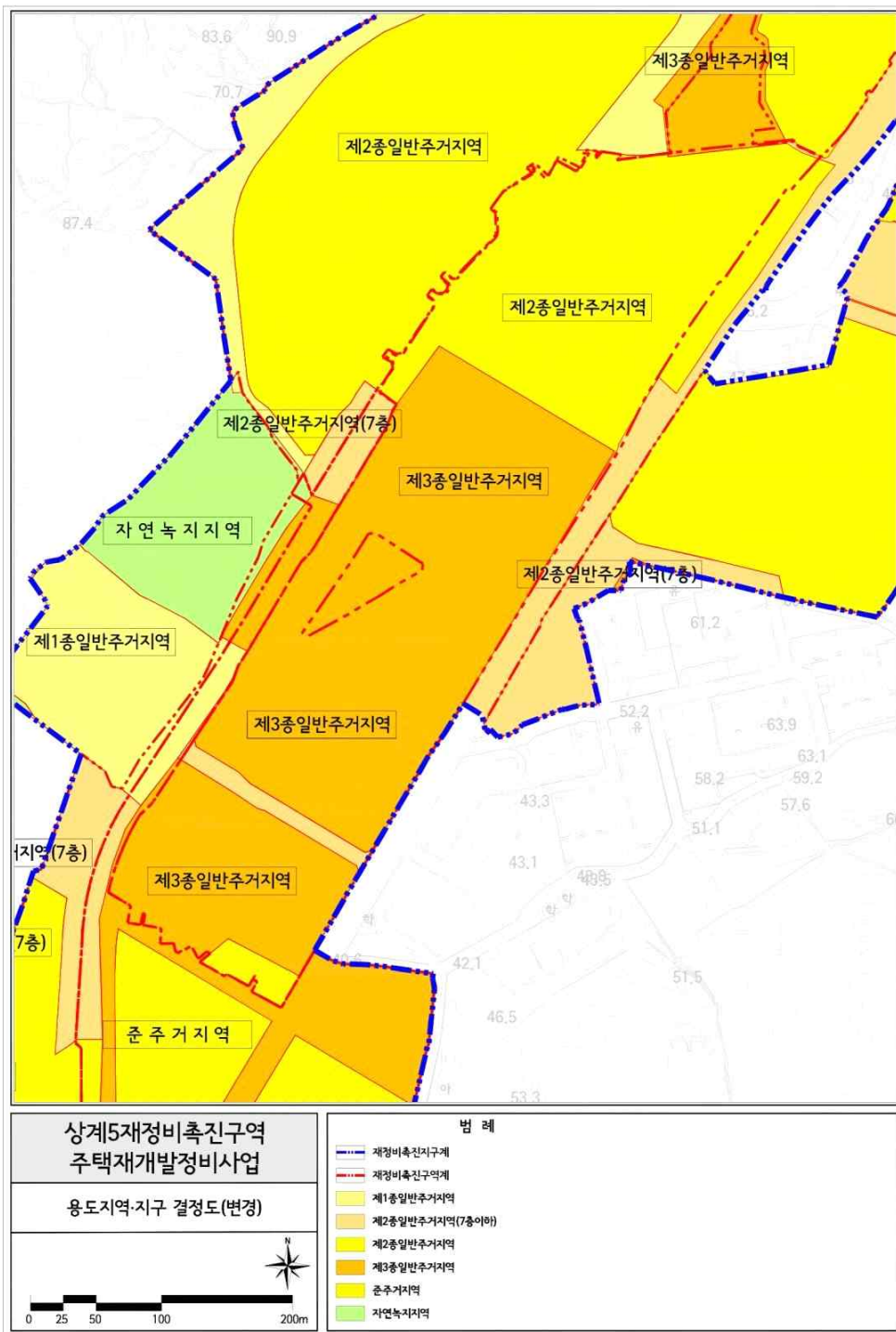
■ 상계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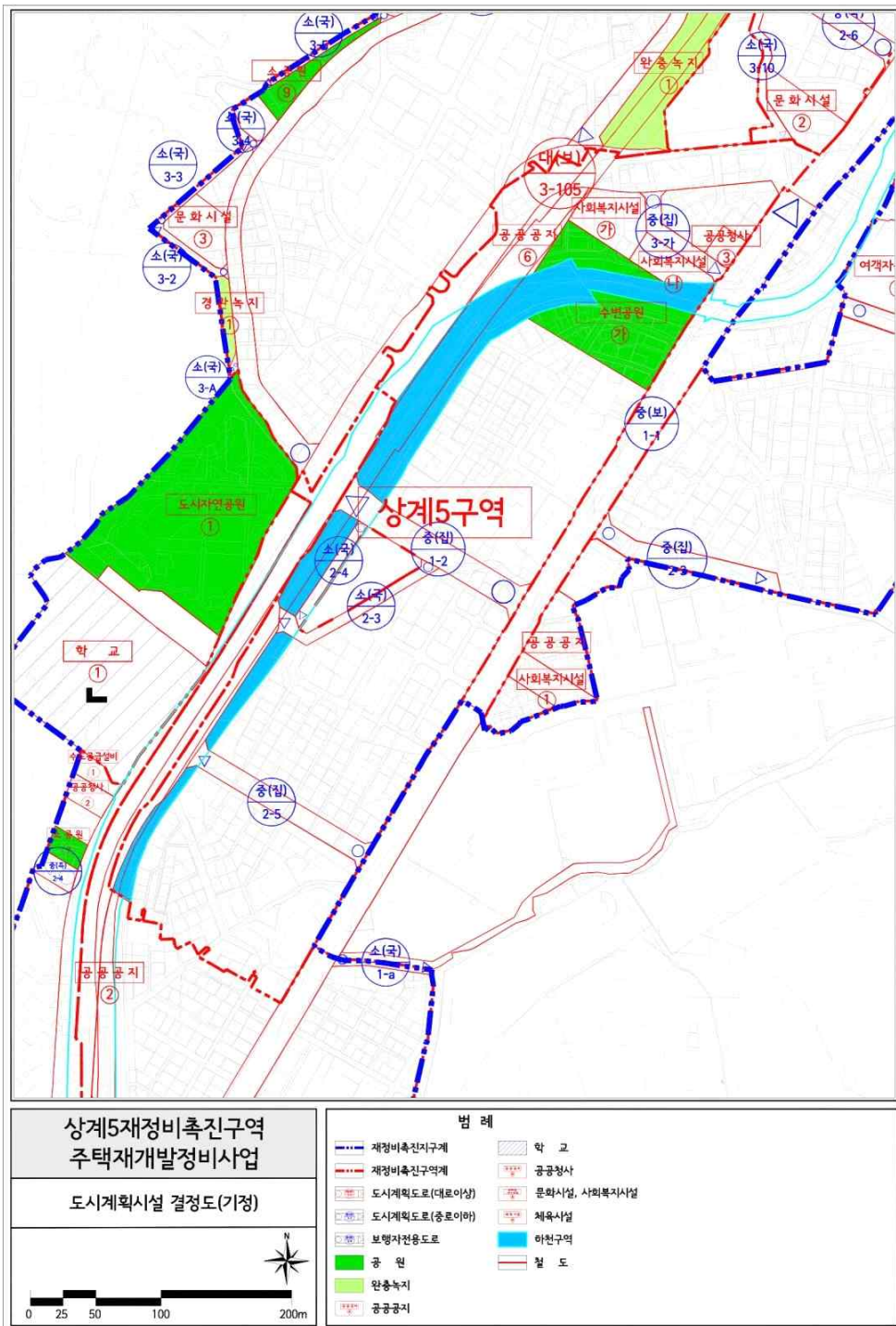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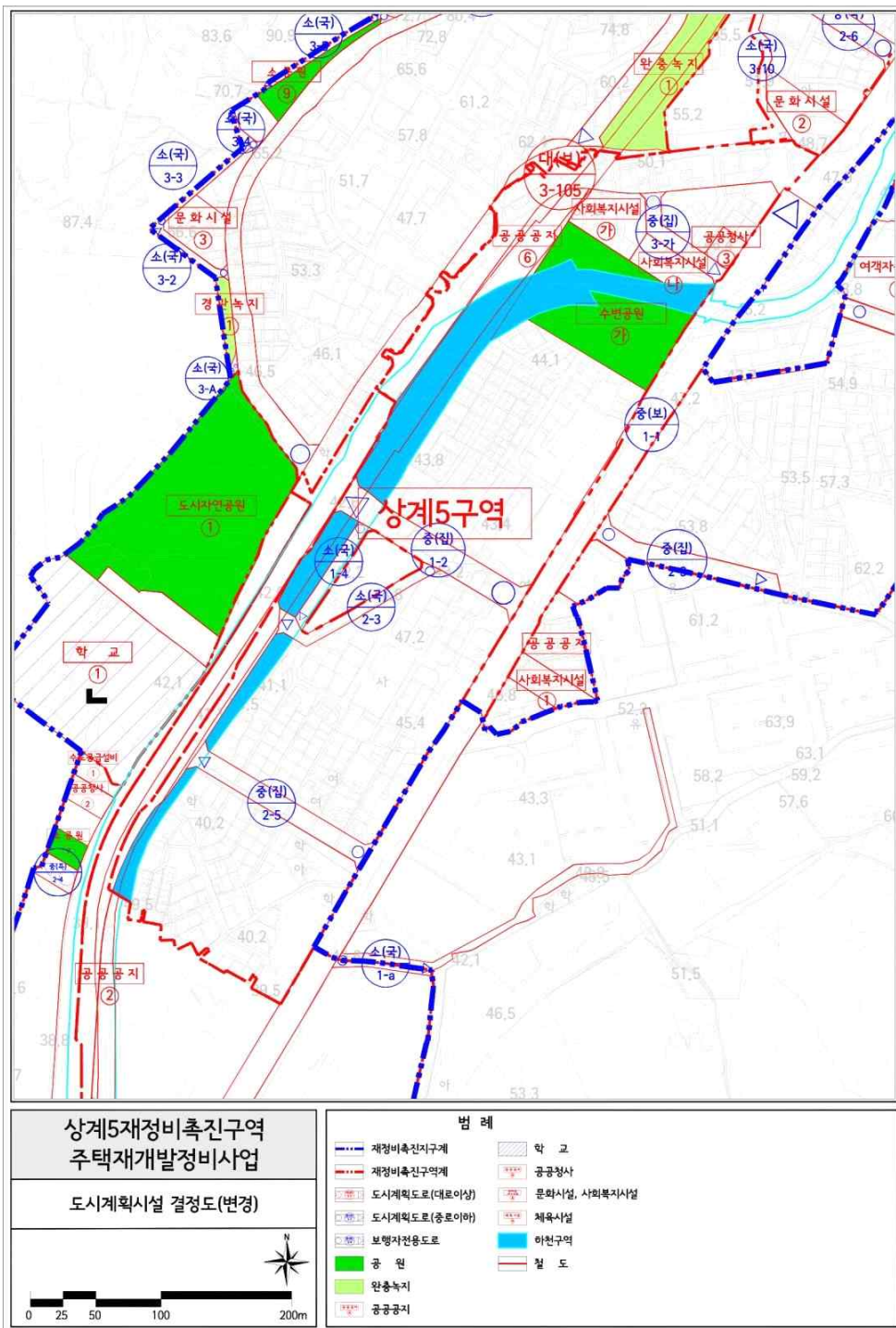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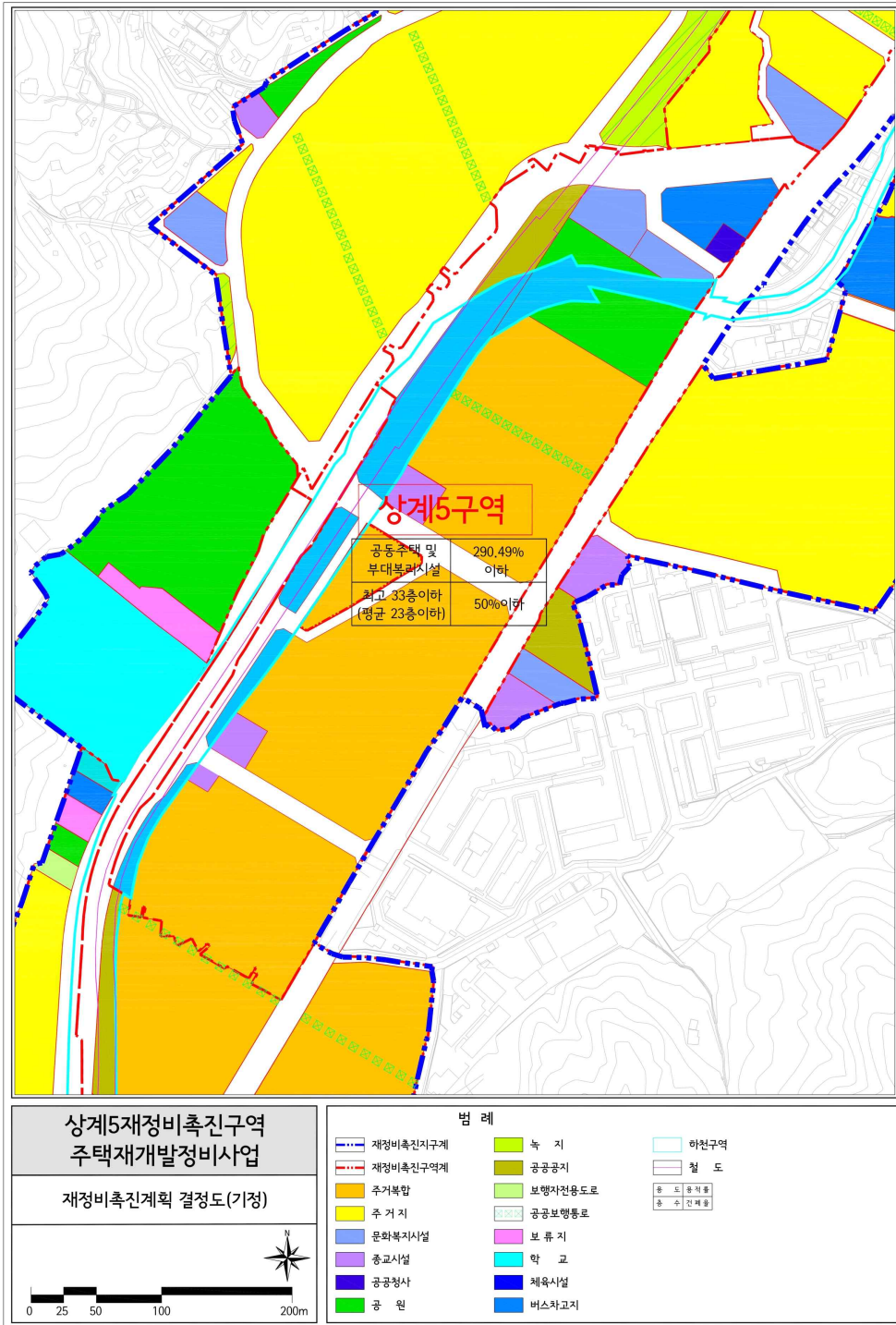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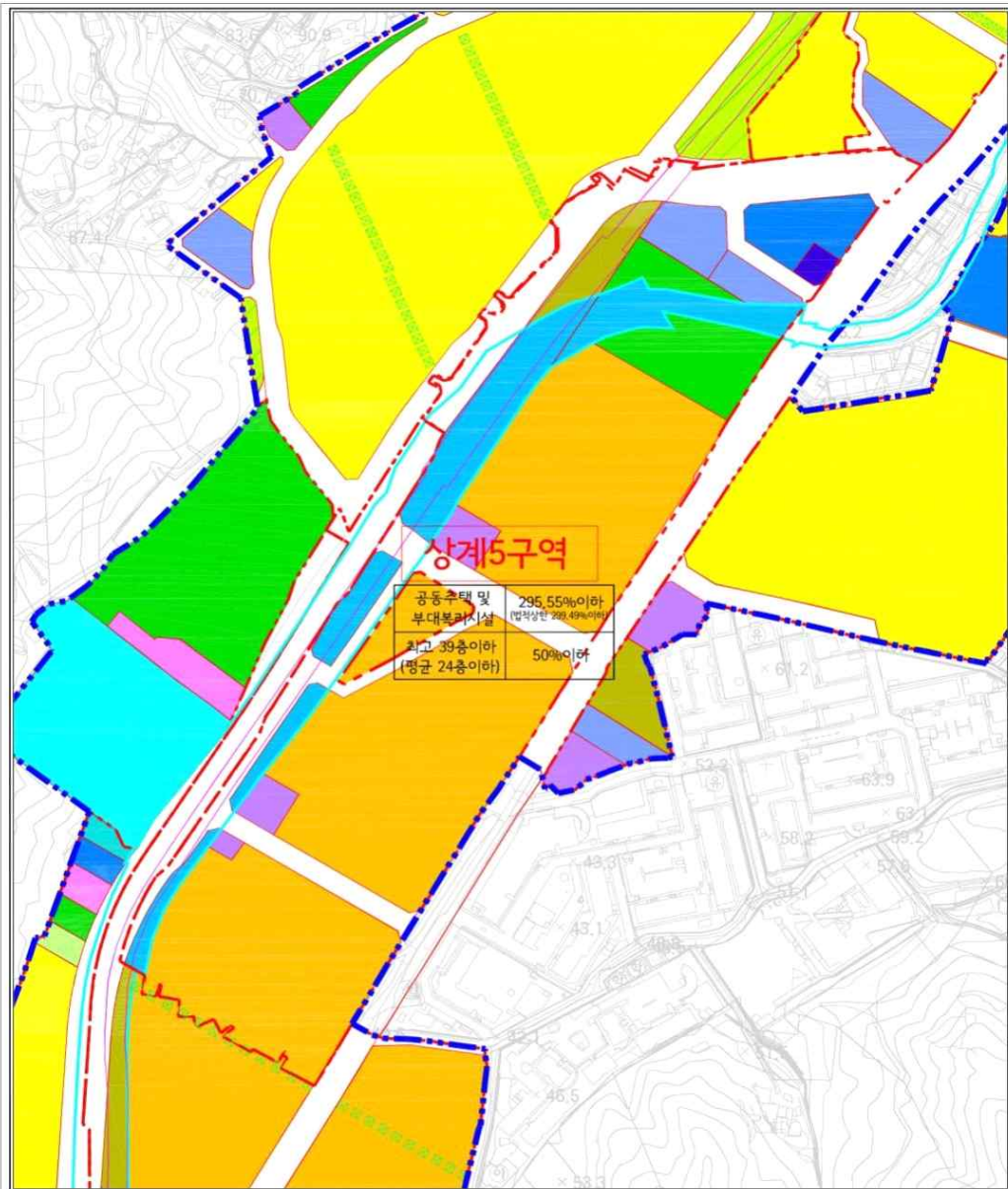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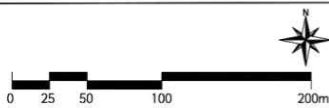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범 례

-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녹 지 | 하천구역 |
| 재정비촉진구역계 | 공공공지 | 철 도 |
| 주거복합 | 보행자전용도로 | 동 조 유익용 |
| 주 거 지 | 공공보행통로 | 동 조 근대용 |
| 문화복지시설 | 보 류 지 | |
| 종교시설 | 학 교 | |
| 공공청사 | 체육시설 | |
| 공 원 | 버스차고지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실효 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 고시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 가. 명 칭: 구로구 개봉동 315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구로구	개봉동 315 일대	33,787.2㎡	2024. 8. 1.	모아타운 주민제안(안)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8. 1.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5호('24. 8. 1.)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822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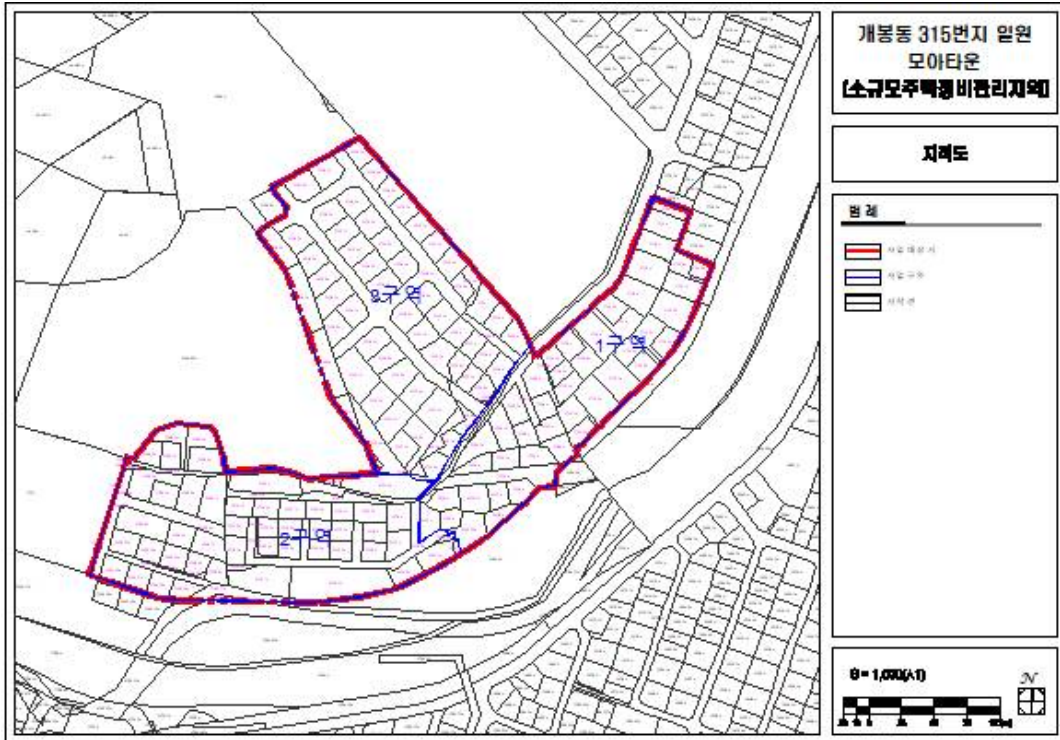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구로구 개봉동 315번지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5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가. 명 칭: 석관동 207-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성북구	석관동 207-1 번지 일대	16,863.5	2026. 4. 24.	2026년 제12차 전문가 자문회의 (2026.7.16.)

2. 권리산정기준일: 2026. 4. 24.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
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
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
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
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석관동 207-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민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4.12.28.)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5호(2025.6.26.)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일대 국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변경) 취지

- 성북구 정릉동 산1-214번지 일대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제5캠퍼스로 조성하고, 제5캠퍼스 내 교육연구동(체육대학 교사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 학 (국민대)	합 계	205,674	증 3,023	208,697	-	-
			제1 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861-1일대	167,743	-	167,743	서고시 제196호 (1974.12.28)
			제2 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855-2일대	5,991	-	5,991	
			제3 캠퍼스	종로구 평창동 147-2일대	30,548	-	30,548	서고시 제2015-367호 (2015.11.19)
			제4 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711-1일대	1,392	-	1,392	서고시 제2017-338호 (2017.09.21)
			제5 캠퍼스	성북구 정릉동 산1-214일대	-	증 3,023	3,023	-

2) 변경사유서

학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 학 (국민대)	• 학교시설 편입 : 제5캠퍼스 - 위치: 성북구 정릉동 산1-214일대 - 면적: 중) 3,023㎡	•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제5캠퍼스)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 분			구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 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51,484	-	51,484	경성대학 / 법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②	8,182	-	8,182	기숙사
			③	19,766	-	19,766	공과대학 / 도서관
			④	30,941	-	30,941	예술·체육·과학기술대학 / 복지시설
	유지	외부활동구역	⑤	18,606	-	18,606	대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38,764	-	38,764	배후녹지
	소 계			167,743	-	167,743	
제2 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⑦	2,226	-	2,226	역사관
	유지	상징경관구역	⑧	2,159	-	2,159	명원민속관
	보존	녹지보존구역	⑨	1,606	-	1,606	내부녹지
	소 계			5,991	-	5,991	
제3 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10,498	-	10,498	서고시 제2015-376호 (2015.11.29.) 세부시설조성계획 완료
	보존	녹지보존구역	②	20,050	-	20,050	
	소 계			30,548	-	30,548	
제4 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⑩	1,392	-	1,392	기숙사
	소 계			1,392	-	1,392	-
제5 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⑪	-	증) 3,023	3,023	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원
	소 계			-	증) 3,023	3,023	-
합 계				205,674	증) 3,023	208,697	-

※ 제1캠퍼스 ⑥녹지보존구역 면적(38,764㎡) : 비오톱 1등급지(3,025㎡)가 포함된 면적임.

※ 제3캠퍼스 ⑪녹지보존구역 면적(20,050㎡) : 비오톱 1등급지(3,610㎡)가 포함된 면적임.

2) 밀도계획

① 건폐율 계획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43,603	43,603	60.0	60.0	12.1	24.9	-	25.3	20.0	30.0	-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121,115	121,115	30.0		30.0		-		30.0		
	소 계	164,718	164,718	38.0	60.0	25.3	24.9	-	25.3	30.0	30.0	
제2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5,991	5,991	30.0	60.0	27.8	27.8	-	27.8	30.0	30.0	-
	소 계	5,991	5,991	30.0	60.0	27.8	27.8	-	27.8	30.0	30.0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계획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3 캠퍼스	제1종전용주거	22,692	22,692	50.0	50.0	14.96	-	-	15.0	15.58	15.6	-
	제2종일반주거	4,246	4,246	60.0	60.0							
	소 계	26,938	26,938	51.57	51.5							
제4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1,392	1,392	60.0	60.0	41.1	41.1	-	41.1	50.0	50.0	-
	소 계	1,392	1,392	60.0	60.0	41.1	41.1	-	41.1	50.0	50.0	
제5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	135	-	60.0	-	-	-	43.9	-	50.0	금회 변경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	2,846	-								
	자연녹지	-	42	-								
	소 계	-	3,023	-								
합 계		199,039	202,062	39.7	58.8	24.0	21.4	-	24.4	28.0	28.6	

※ 제1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164,718㎡) = 제1캠퍼스 총면적(167,743㎡) - 비오톱1등급지(3,025㎡)

※ 제3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26,938㎡) = 제3캠퍼스 총면적(30,548㎡) - 비오톱1등급지(3,610㎡)

※ 제5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135㎡), 자연녹지지역(42㎡)는 330㎡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

※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

② 용적률 계획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43,603	43,603	150.0	150.0	104.0	101.8	-	104.0	110.0	110.0	-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121,115	121,115									
	소 계	164,718	164,718									
제2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5,991	5,991	150.0	150.0	34.0	33.7	-	33.7	80.0	80.0	-
	소 계	5,991	5,991	150.0	150.0	34.0	33.7	-	33.7	80.0	80.0	
제3 캠퍼스	제1종전용주거	22,692	22,692	116.0	116.0	38.0	-	-	37.2	50.0	50.0	-
	제2종일반주거	4,246	4,246									
	소 계	26,938	26,938									
제4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1,392	1,392	150.0	150.0	150.0	149.9	-	149.9	150.0	150.0	-
	소 계	1,392	1,392	150.0	150.0	150.0	149.9	-	149.9	150.0	150.0	
제5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	-	135	-	150.0	-	-	-	148.0	-	148.6	금회 변경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	2,846									
	자연녹지	-	42									
	소 계	-	3,023									
합 계		199,039	202,062	146.0	145.4	94.0	85.0	-	94.0	100.0	102.0	

※ 제1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164,718㎡) = 제1캠퍼스 총면적(167,743㎡) - 비오톱1등급지(3,025㎡)

※ 제3캠퍼스 밀도산정기준면적(26,938㎡) = 제3캠퍼스 총면적(30,548㎡) - 비오톱1등급지(3,610㎡)

※ 제5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135㎡), 자연녹지지역(42㎡)는 330㎡이하로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기준 적용)

※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

③ 구역별 용적률 계획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①일반관리	51,484	51,484	150.0	150.0	149.65	149.7	-	149.7	-	-	150.0	150.0	-
	②일반관리	8,182	8,182	150.0	150.0	139.24	139.3	-	139.3	-	-	140.0	140.0	
	③일반관리	19,766	19,766	150.0	150.0	207.10	207.1	-	207.1	+60.0	+60.0	210.0	210.0	
	④일반관리	30,941	30,941	150.0	150.0	135.34	123.8	-	135.4	-	-	150.0	150.0	
	⑤외부활동	18,606	18,606	150.0	150.0	0.27	0.3	-	0.3	-	-	5.0	5.0	
	⑥녹지보존	35,739	35,739	150.0	150.0	-	-	-	-	-33.0	-33.0	-	-	
제2 캠퍼스	⑦일반관리	2,226	2,226	150.0	150.0	72.72	72.8	-	72.8	-	-	80.0	80.0	-
	⑧상징경관	2,159	2,159	150.0	150.0	18.65	18.7	-	18.7	-	-	20.0	20.0	
	⑨녹지보존	1,606	1,606	150.0	150.0	-	-	-	-	-	-	-	-	
제3 캠퍼스	①일반관리	10,498	10,498	126.0	126.0	95.39	-	-	95.4	-	-	100.0	100.0	-
	②녹지보존	16,440	16,440	109.0	109.0	-	-	-	-	-	-	-	-	
제4 캠퍼스	⑩일반관리	1,392	1,392	150.0	150.0	149.85	149.9	-	149.9	-	-	150.0	150.0	-
제5 캠퍼스	⑪일반관리	-	3,023	-	148.6	-	-	-	148.0	-	-	-	148.6	금회 변경

※ 제1캠퍼스 ⑥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35,739㎡) = 제1캠퍼스 총면적(38,764㎡) - 비오톱1등급지(3,025㎡)

※ 제3캠퍼스 ②녹지보존구역 밀도산정기준면적(16,440㎡) = 제3캠퍼스 총면적(20,050㎡) - 비오톱1등급지(3,610㎡)

※ 건축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용적률 운영 변경

④ 높이계획

구분		관 리 높 이(m)		비 고
		기 정	변 경	
제1캠퍼스	①일반관리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②일반관리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③일반관리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④일반관리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이하	-
	⑤외부활동	•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	-
	⑥녹지보존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제2캠퍼스	⑦일반관리	• 지표면으로부터 +12m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12m이하	-
	⑧상징경관	•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8m이하	-
	⑨녹지보존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제3캠퍼스	①일반관리	• 해발고도 128m이하	• 해발고도 128m이하	-
	②녹지보존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구분		관 리 높 이(m)		비 고
		기 정	변 경	
제4캠퍼스	㉑일반관리	•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	-
제5캠퍼스	㉑일반관리	-	• 해발고도 121m(4층)이하	금회변경

※ 구역별 높이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높이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 높이기준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에서부터 7.5m 높이 이후 27° 양각선 적용

- 해당구역 : ㉑~㉗, ㉙, ㉚구역

3)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5캠퍼스	㉑일반	교육연구동	-	1,326.94	-	10,985.24	-	4,474.04	-	4(4)	금회신축
합 계			-	1,326.94	-	10,985.24	-	4,474.04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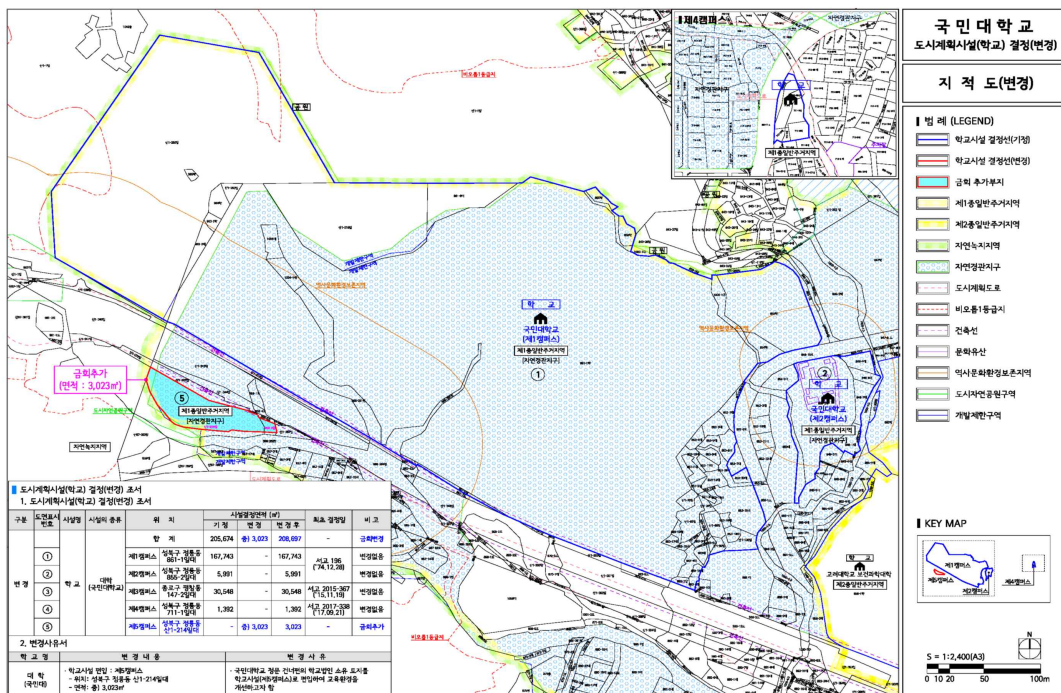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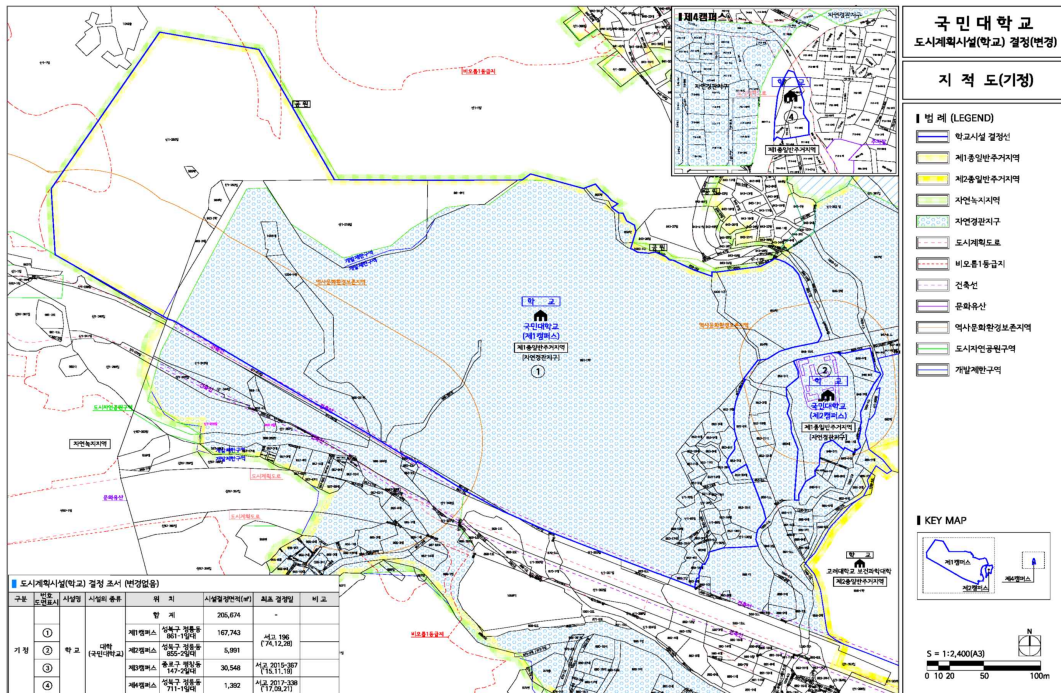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계도서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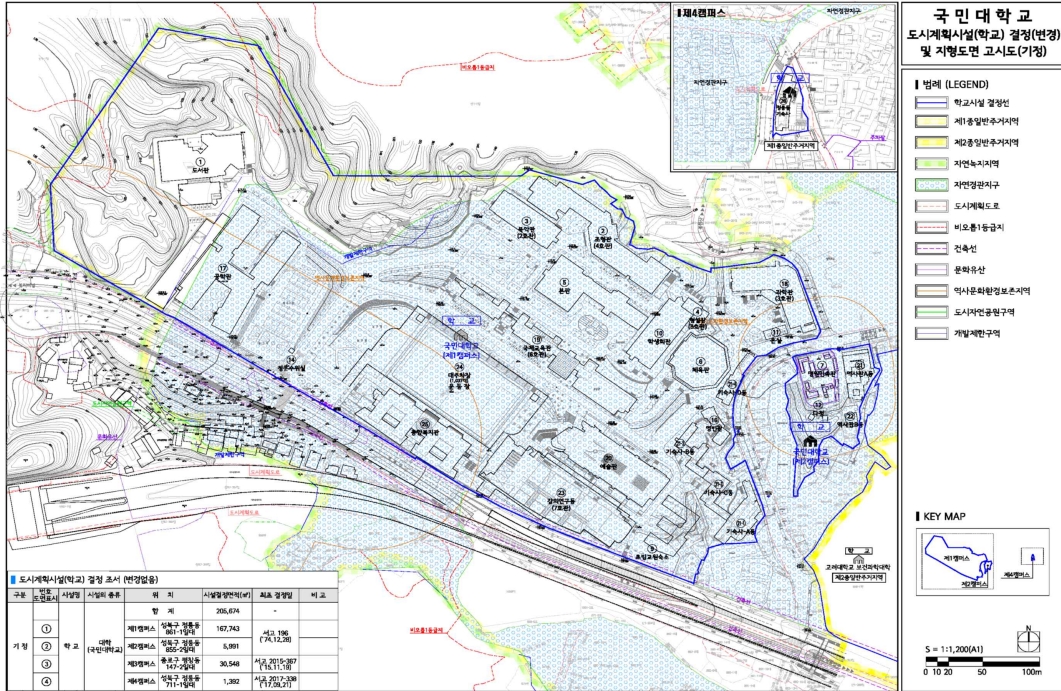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2133-8412)

- 성북구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11층 (☎2241-2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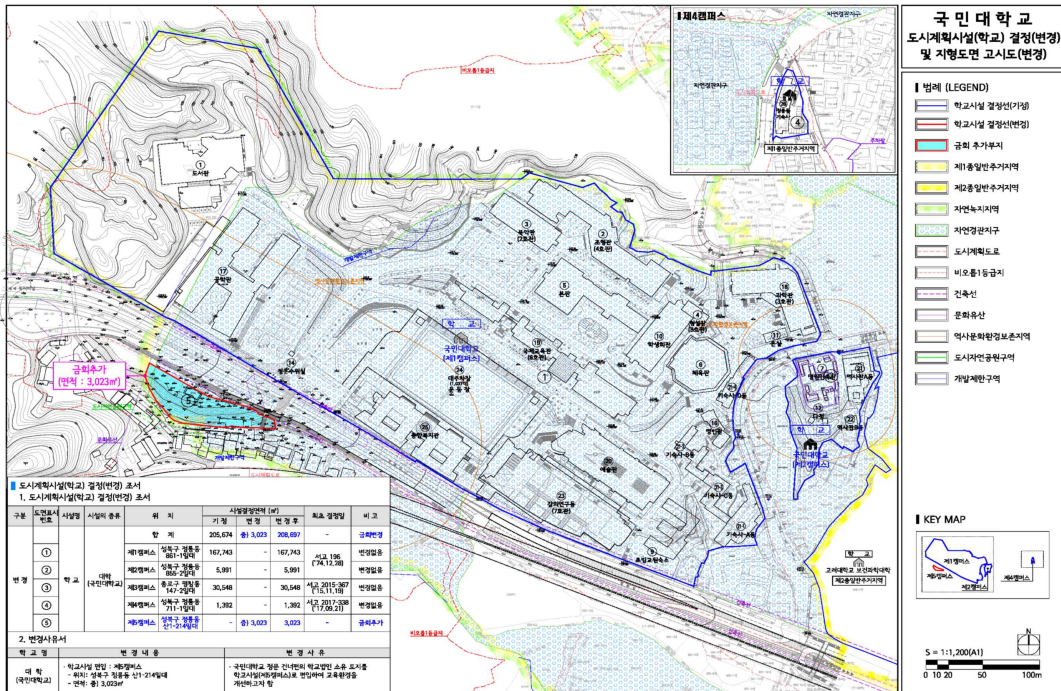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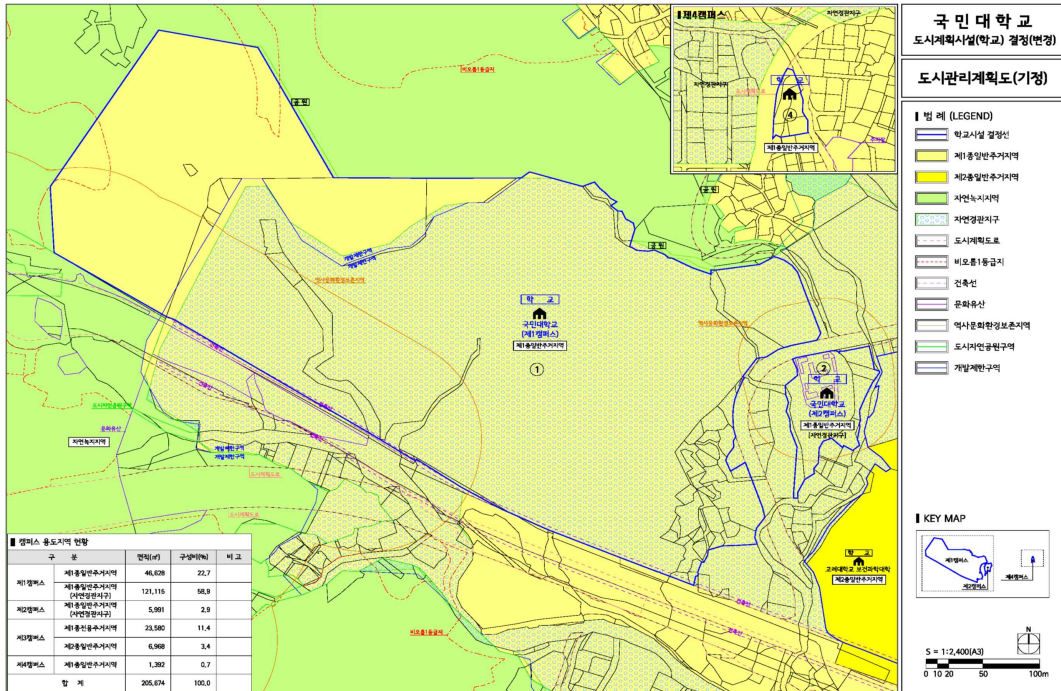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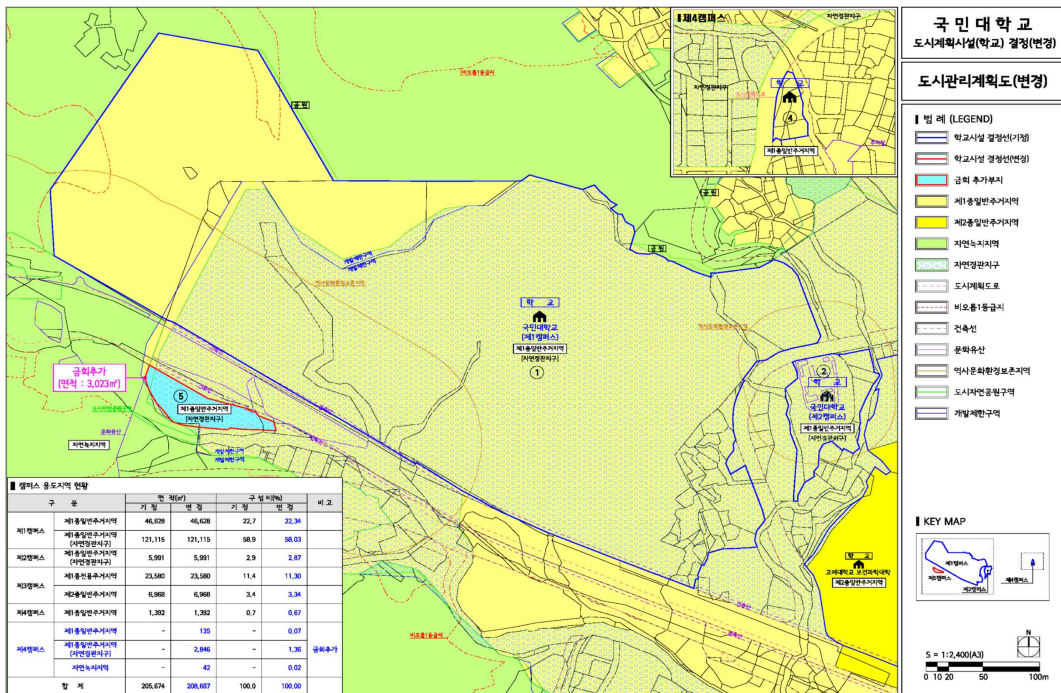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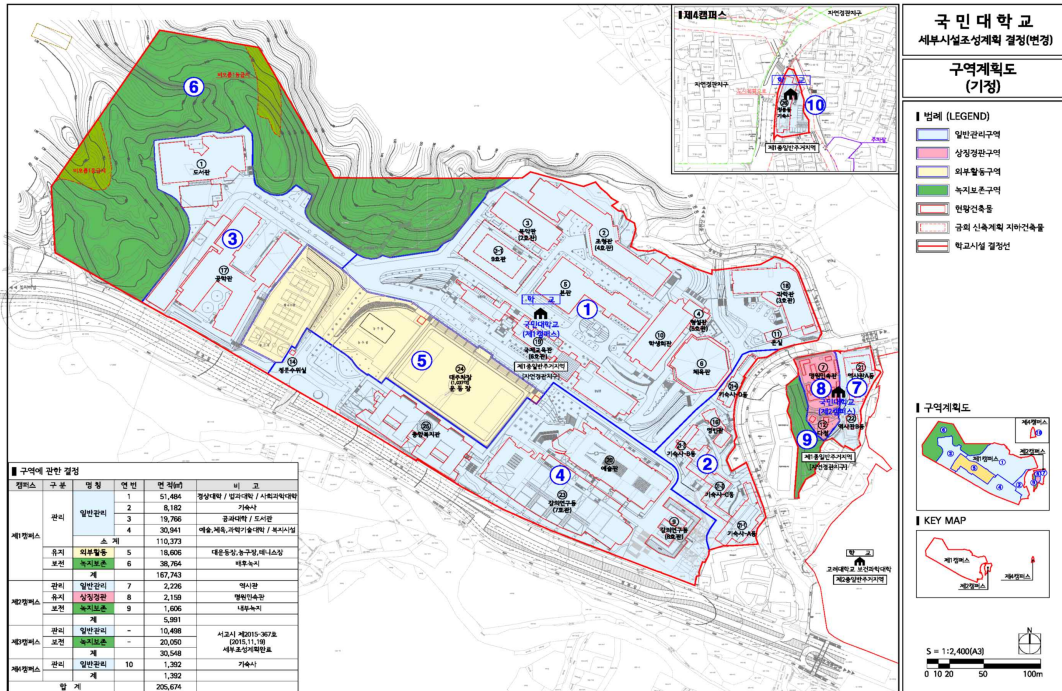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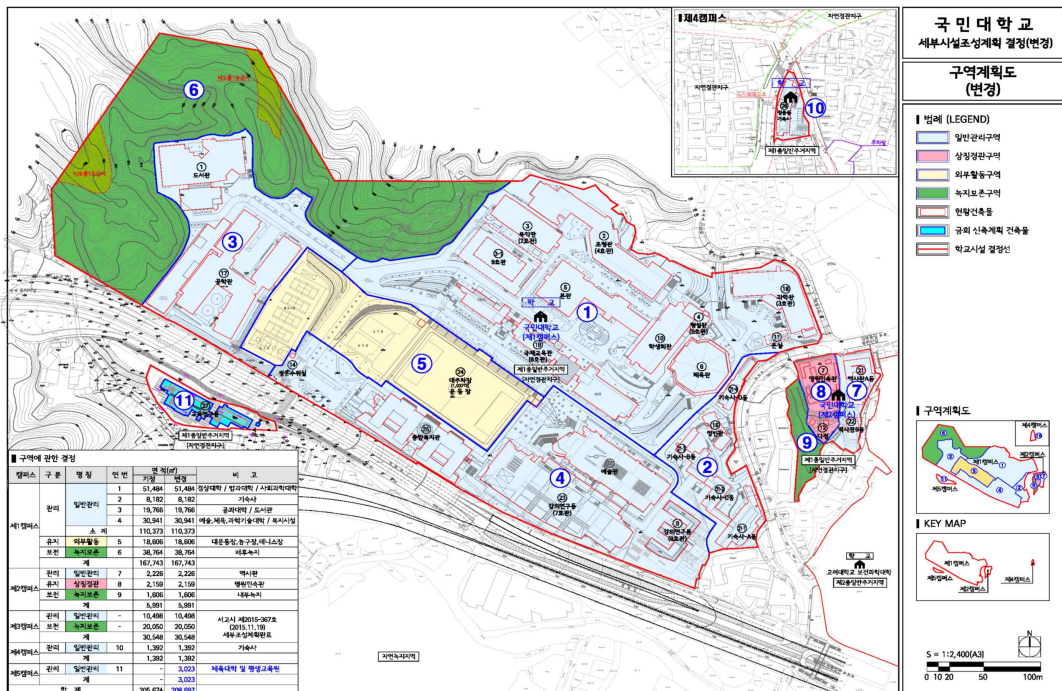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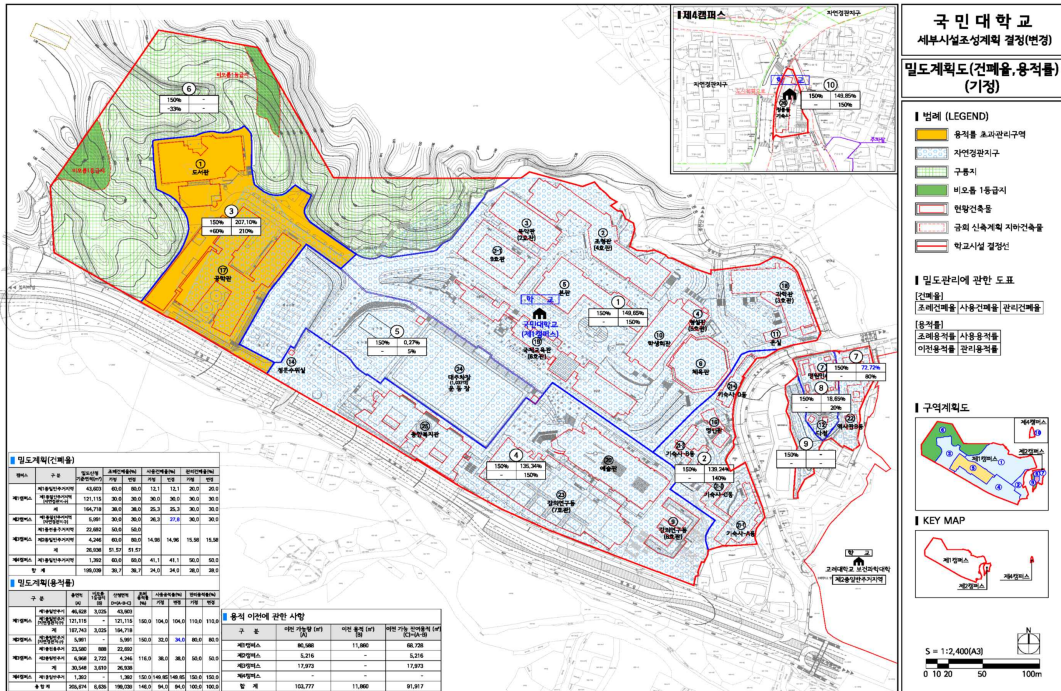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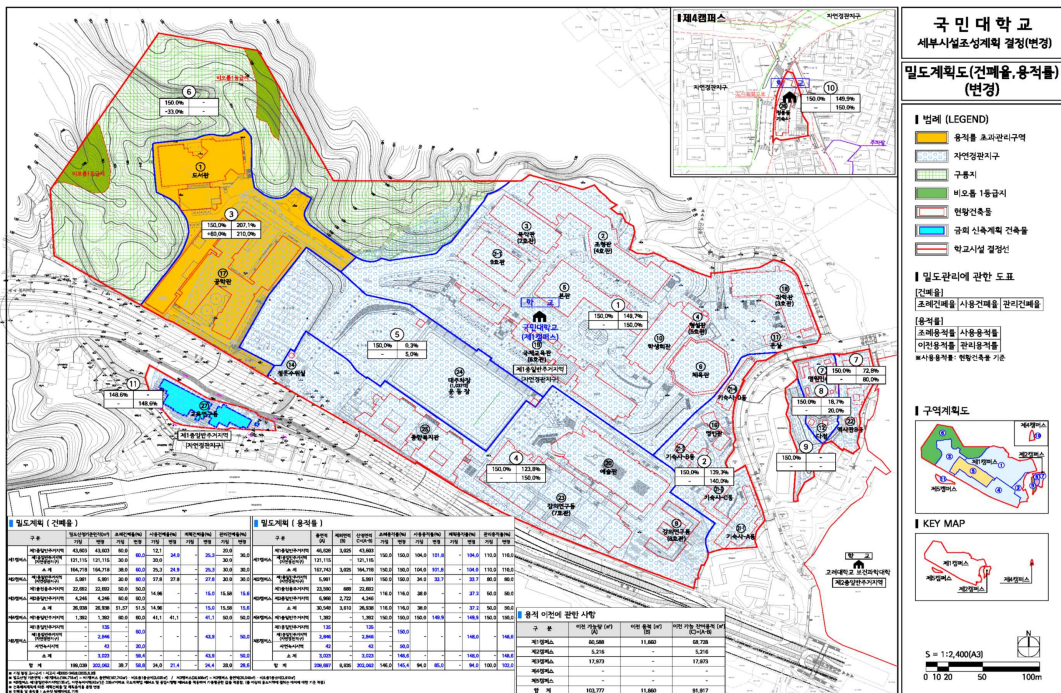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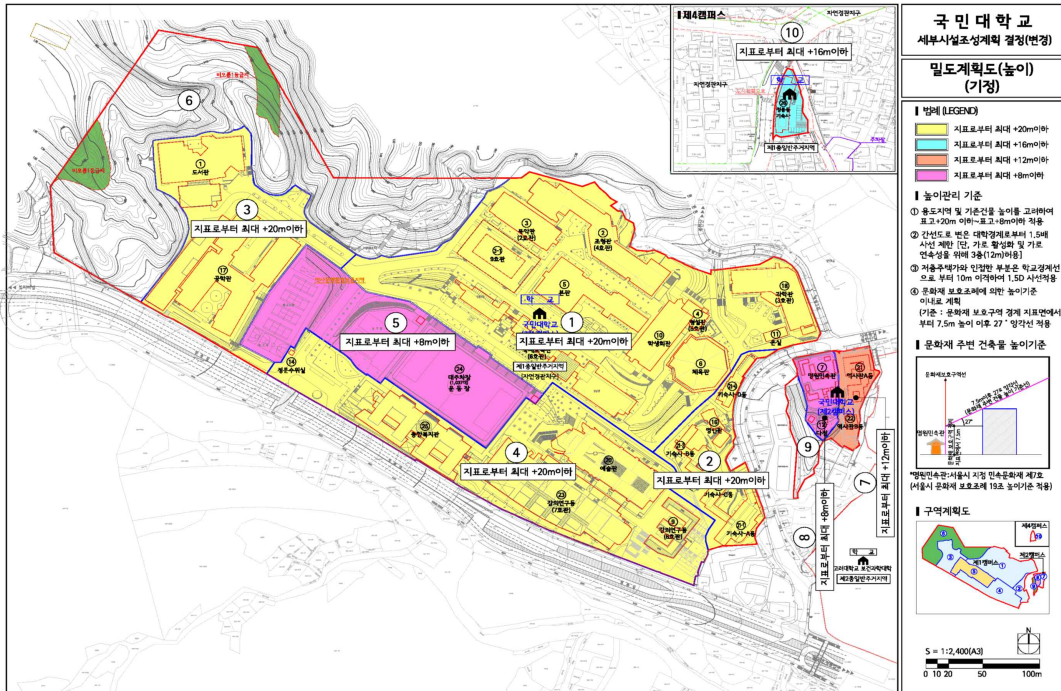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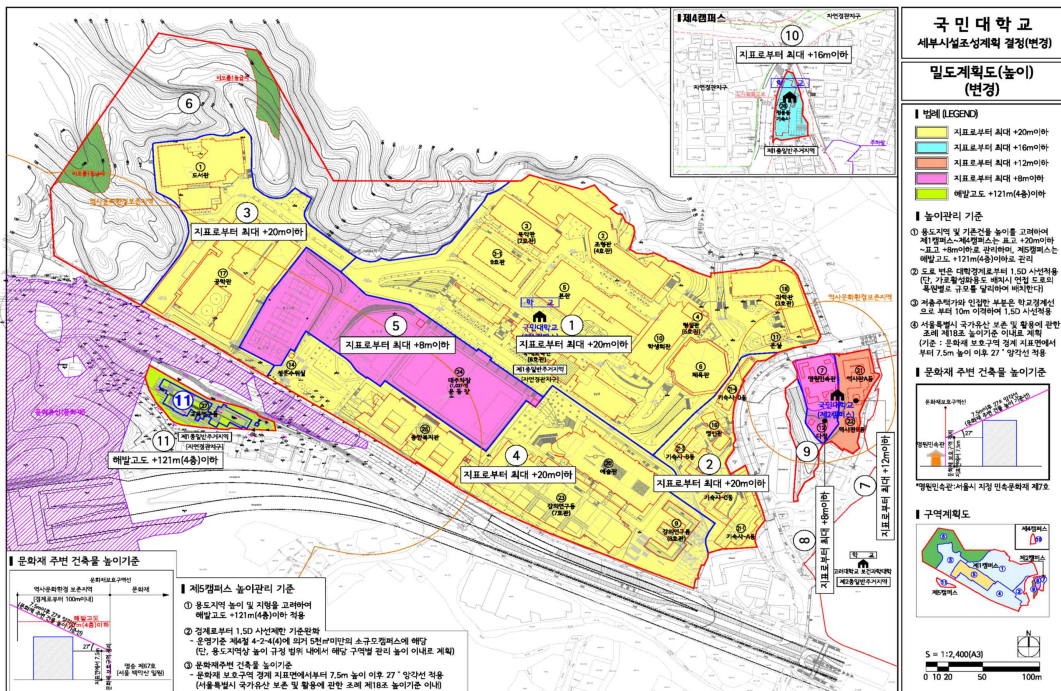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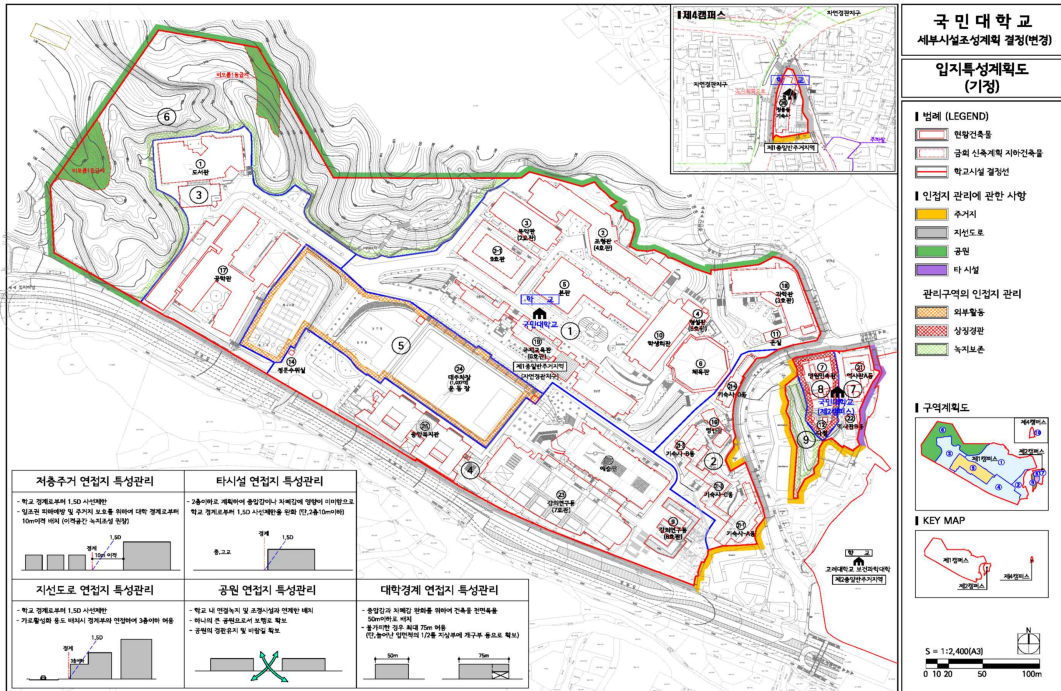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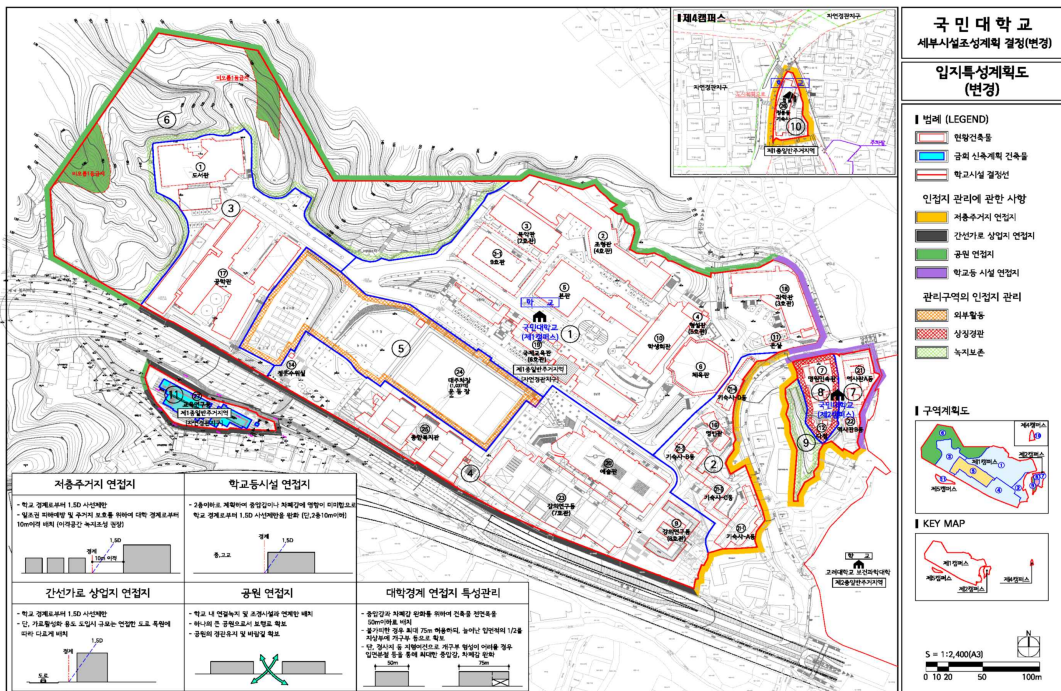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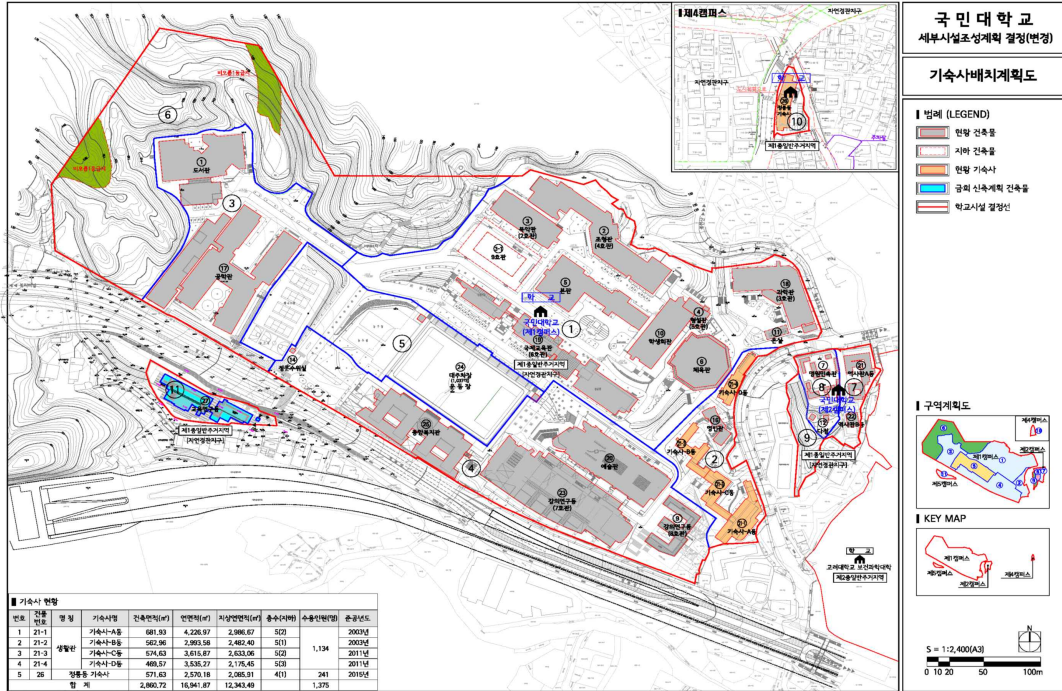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숙사배치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7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
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42,920.89㎡	전체 : 176동 노후·불량 : 134동(76.1%)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	증)42,920.89	42,920.89	모아타 운1

※ 모아타운 통합계획 : 772-1번지 일대(모아타운1), 226-1번지 일대(모아타운2:19,441.79㎡)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 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A-1 A-2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위치 :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42,920.89㎡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2,920.89	100.00	-
시행 구역	택지 (획지)	소 계		35,799.79	83.41	-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7,975.90	41.88	-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7,274.81	40.25	-
		B-4	자양동행센터	549.08	1.28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476.42	10.43	-
		B-1	주차장	873.77	2.04	-
		B-2	소공원-1	909.35	2.12	-
		-	도 로	2,693.30	6.27	-
자율 정비 구역	소 계			2,644.68	6.16	-
	대지	D1	주택 및 점포겸용주택용지	1,770.10	4.12	-
		E1	주택 및 점포겸용주택용지	440.30	1.03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F1	주택 및 점포겸용주택용지	213.60	0.50	-
	-		도 로	220.68	0.51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규	중로	3	건대1	12	국지 도로	202 [68]	자양동 226-38	자양동 224-12	일반 도로		• 아차산로41길 • 도로확장 및 신설 • [] 해당구간
신규	소로	3	건대2	8	국지 도로	28	자양동 773-10	자양동 773-11	일반 도로		• 아차산로41길 • 현황도로
신규	소로	3	건대3	4	국지 도로	39	자양동 224-9	자양동 224-11	일반 도로		• 아차산로41길 • 현황도로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 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일반 도로	'09.6.4.	• 자양로19길 • 도로선형 조정 및 확장
변경	소로	3	구의1	8	국지 도로	62	자양동 778-18	자양동 774-11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구의 1-1	8~12 [12]	국지 도로	312 [180]	자양동 774-16 [자양동 774-16]	자양동 777-1 [자양동 859-1]	일반 도로		

※ 건대1은 총연장 202m 도로로, 기점부 134m는 자양1동 226-1번지 일대(모아타운2)에, 종점부 68m는 자양1동 772-1번지 일대(모아타운1) 구간에 걸쳐 있음

※ 중로3-구의1-1 : [] 모아타운 내 도로 폭 12m, 연장 180m임(나머지 132m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도로 12m)로 모아주택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영,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성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건대1	• 도로 확장(6m→12m) 및 신설	• 모아주택 사업 시행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를 확장함 •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이를 도로로 결정함
-	소로3-건대2	• 도로 8m	• 현황도로를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로 결정함
-	소로3-건대3	• 도로 확장(3m→4m)	•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로 결정함
소로3-구의1	소로3-구의1	• 도로선형 분리·조정 (L=346m → 62m)	• 부정형인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개 노선으로 분리·조정함
소로3-구의1	중로3-구의1-1	• 도로를 직선화 선형 조정 및 도로 확장 (6~8m → 8~12m) • 도로 시·종점을 조정하고 2개 노선으로 분리조정함	• 모아주택 사업 시행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를 확장함 • 도로선형을 직선화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도로로 결정함

※ 중로3-구의1-1 : L=312m 중 폭 12m, 연장 180m임(나머지 132m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도로 12m)로 모아주택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영,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성함

2)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2	공원	소공원-1	자양1동 774-17번지 일대	-	증) 909.35	909.35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2	소공원-1	소공원 신설(909.35㎡)	• 자양동행센터와 연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

3) 주차장 계획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1동 769-15번지 일대	-	증) 873.77	873.77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1	주차장	주차장 신설(873.77㎡)	• 대상지 주변 주택가는 주차장 확보율 40% 미만인 지역으로 주차장 신설을 통해 주차난 완화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시설유형	설치기준	비고
권장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놀이터, 공동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돌봄센터, 독서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가로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확보	-

시설구분	구분	구역	위치	시설의종류	면적(㎡)	비고
공동이용 시설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경비사업)	자양동 770-15일대	경로당	330.0	구역내
				어린이집	410.0	
				작은도서관	300.0	
				개방형공동이용시설	380.0	
				그 외	2,070.0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경비사업)	자양동 772-1일대	경로당	330.0	구역내
				어린이집	420.0	
				작은도서관	300.0	
				개방형공동이용시설	380.0	
				그 외	2,080.0	

○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세대당 2.5㎡ x 1.25 이상)	비고
A-1(사업추진1구역)	601	1,878.13㎡ 이상	
A-2(사업추진2구역)	598	1,868.75㎡ 이상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기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계획(안)

○ 교통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도로확폭 및 신설)	중로 3-구의1-1, 중로 3-건대1	- 사업추진1구역(A-1) : 중로3-구의1-1에서 차량 진출입 - 사업추진2구역(A-2) : 중로3-건대1에서 차량 진출입	
	전 지역	- 차량진출입구는 회전반경 R=6.0m 확보 - 확폭 - 중로3-구의1-1 : B=6~8→8~12m, L=312m - 변경 - 소로3-구의1 : B=6~8→8m, L=346→62m - 신설 - 중로3-건대1 : B=12m, L=202m - 소로3-건대2 : B=8m, L=28m - 소로3-건대3 : B=4m, L=39m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	

※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필요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교통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계획(안)	자양로19길, 아차산로41길을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사업부지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도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 고자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지정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 분		위치	면 적(㎡)			사업 시행자 (예정)	추진 단계	토지등소유자
도면표시	구역명		계	획지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40,276.21	35,250.71	5,025.50	-	-	624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19,541.47	17,975.90	1,565.57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307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20,734.74	17,274.81	3,459.93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317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바. 모아타운 통합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구 분		위 치	면 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 13)		비고
도면표시	구역명		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 계			58,261.21	49,919.62	8,341.59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정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의 설치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정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모아 타운1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19,541.47	17,975.90	1,565.57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20,734.74	17,274.81	3,459.93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17,985.00	14,668.91	3,316.09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시행구역	A-1 A-2	건폐율	50% 이하	사업추진1구역 사업추진2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250% 이하,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B-4	건폐율	50% 이하	자양동행센터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구역 외	D1 E1 F1	건폐율	50% 이하	자율정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1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 (1,2)구역	• 아차산로, 자양로19길, 아차산로41길 변 3m 적용	
	사업추진 2구역	• 자양동행센터 북측 1m 적용	
	자율정비구역	• 아차산로 변 3m 적용(기존 건축선 지정 광진구 고시 제2019-34, 2019.03.12.)	
전면공지	사업추진 (1,2)구역	• 건축한계선을 통해 개방감 확보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 (1,2)구역	•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 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유형	용도		
A-1 A-2	사업추진 (1,2)구역	택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4	자양 동행센터	획지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1 E1 F1	자율 정비구역	시행 구역 외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 (1,2,3)구역	• 아차산로, 자양로19길, 아차산로41길 변 3m 적용	
	사업추진 2구역	• 자양동행센터 북측 1m 적용	
	자율정비구역	• 아차산로 변 3m 적용(기존 건축선 지정 광진구 고시 제2019-34, 2019.03.12.)	
전면공지	사업추진 (1,2,3)구역	- 건축한계선을 통해 개방감 확보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 (1,2,3)구역	-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 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유형	용도		
A-1 A-2 A-3	사업추진 (1,2,3)구역	택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4	자양 동행센터	획지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1 D1 E1 F1	자율 정비구역	시행 구역 외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1)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 (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항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 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2) 임대주택 공급계획 (안)

구분		위치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 고 (임대 주택비율)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1,199	233		19.4%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601	117	한국토지 공사, 서울주택 공사	19.5%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598	116		19.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 사업시행구역별 통합심의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으로 임대주택 수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1)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계		42,920.89		42,920.89	10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361.86	감) 19,021.01	340.85	0.79	
	제3종일반주거지역	23,559.03	증) 19,021.01	42,580.04	99.21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제2종(7층이하) : 19,361.86㎡ → 340.85㎡ - 제3종 : 23,559.03㎡ → 42,580.04㎡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구역 1~2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1 계획(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5,250.71	35,250.71	
신설	특별건축구역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	증) 17,975.90	17,975.90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	증) 17,274.81	17,274.81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9,919.62	49,919.62	
신설	특별건축구역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	증) 17,975.90	17,975.90	모아 타운1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	증) 17,274.81	17,274.81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	증) 14,668.91	14,668.91	모아 타운2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파.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 없음

3. 관련도면

가.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가.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 02-2133-8227) 및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02-450-972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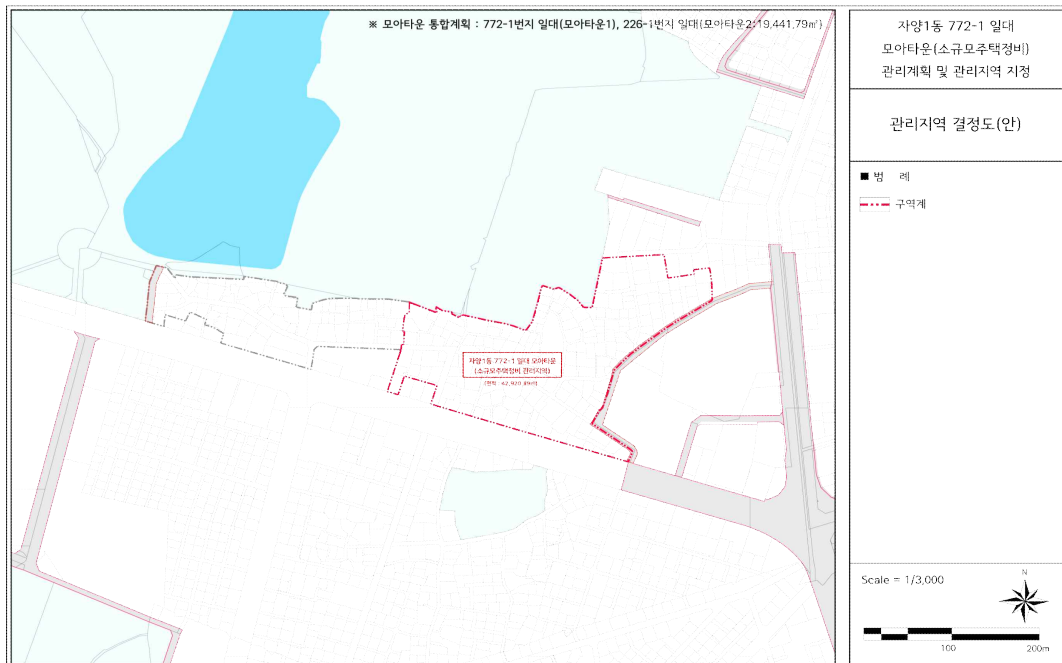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련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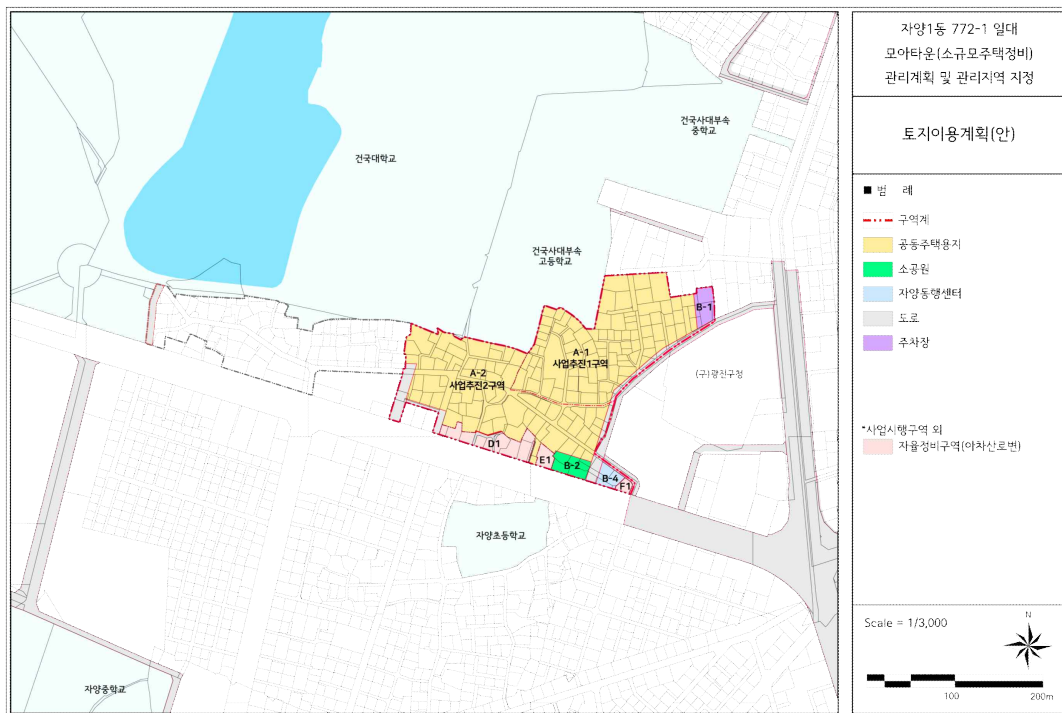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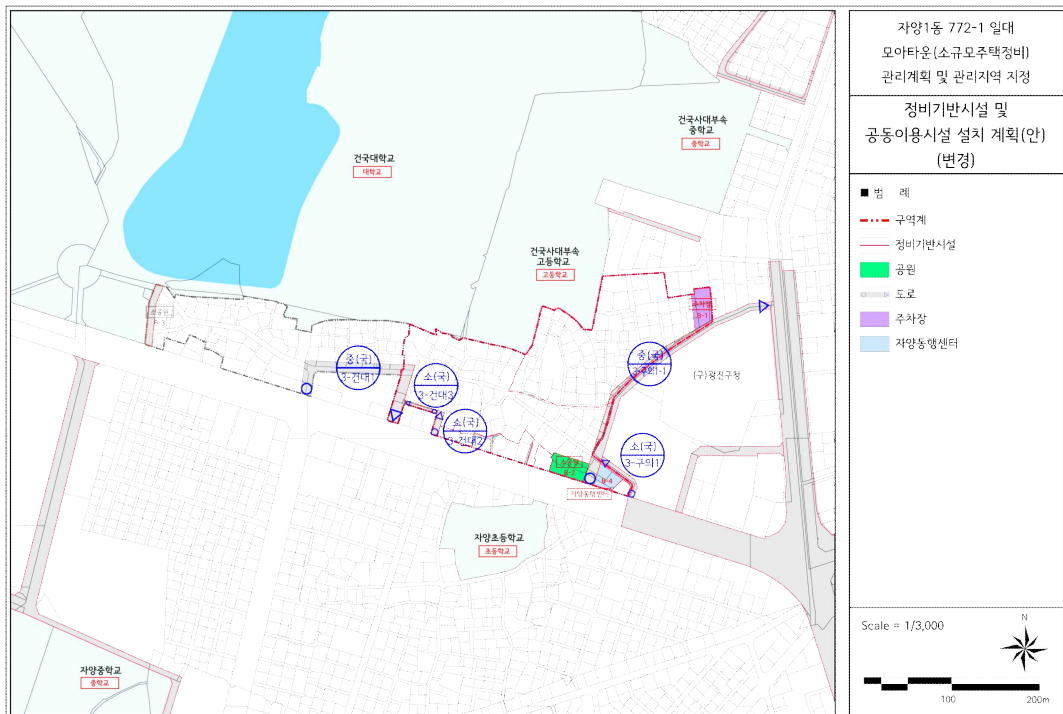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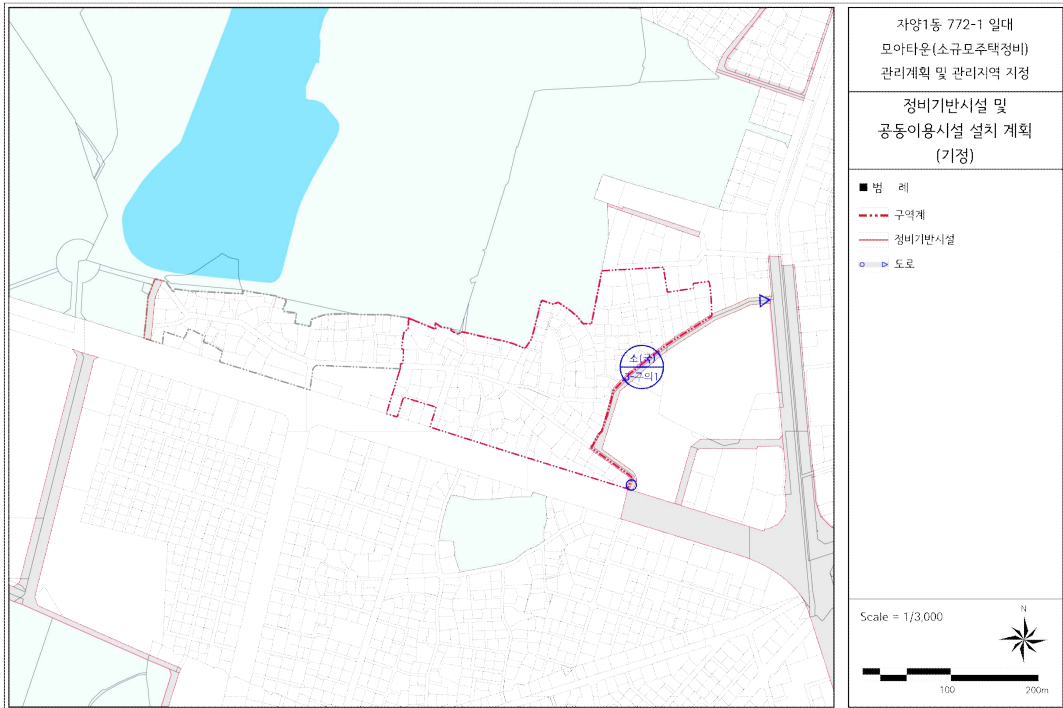
가. 관리지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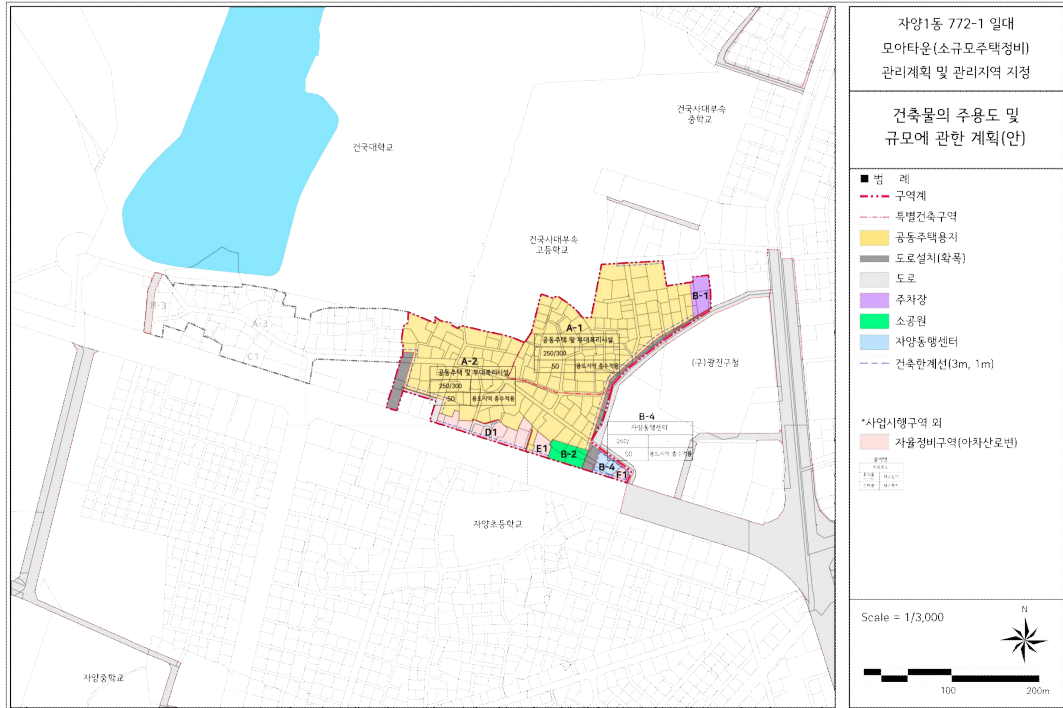
나. 토지이용계획(안)



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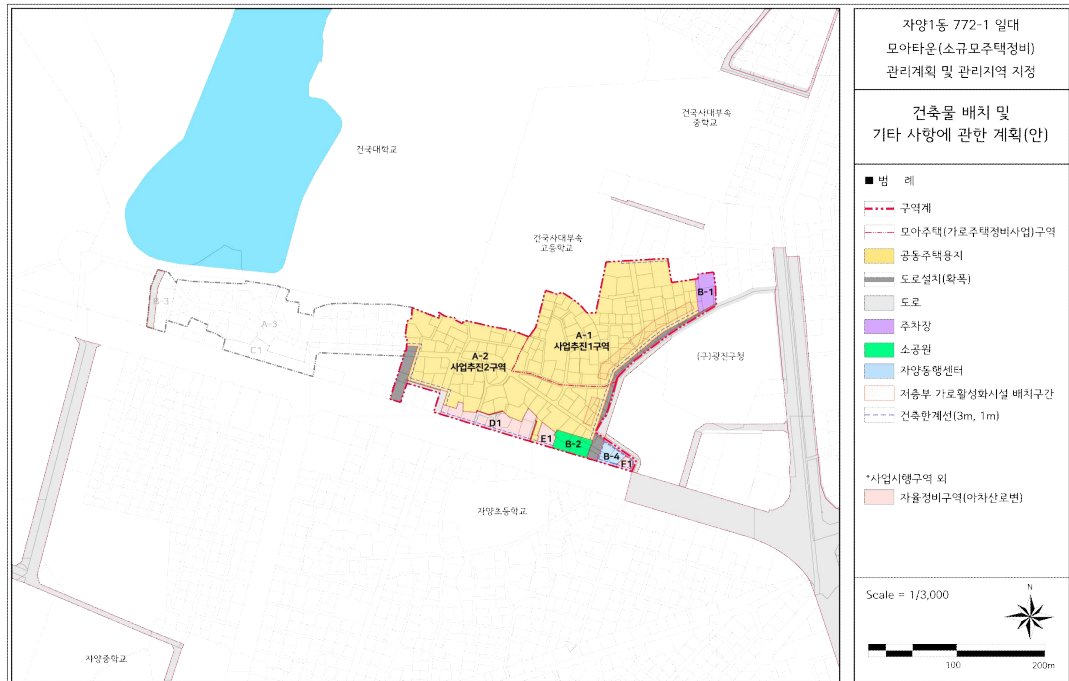


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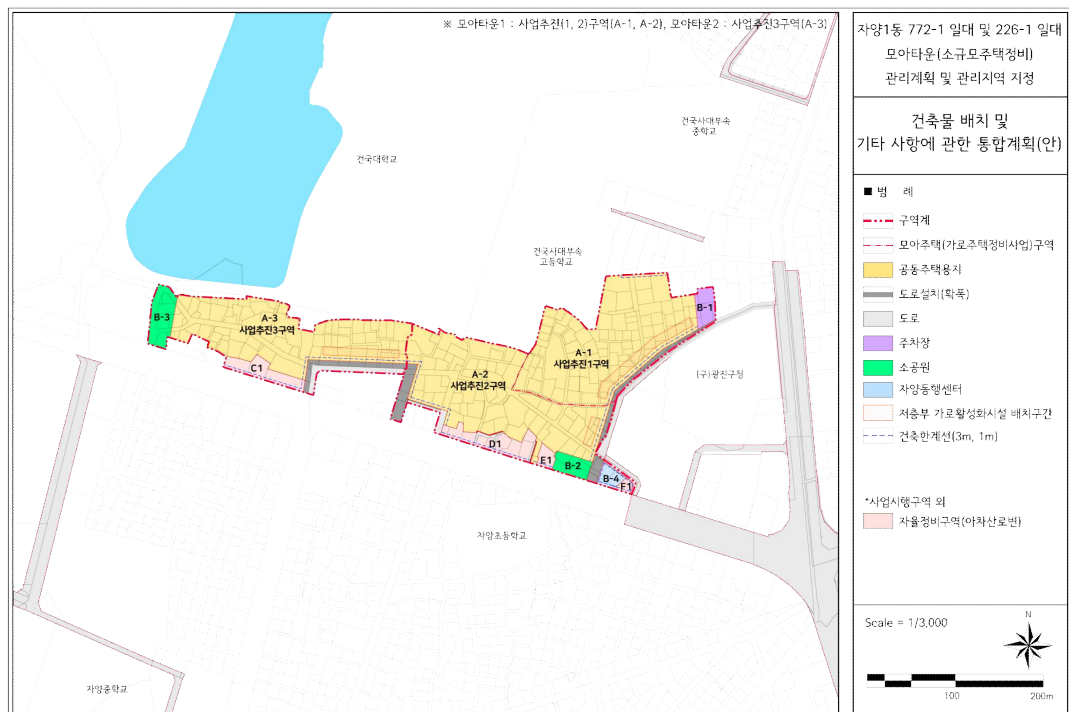


마. 건축물 배치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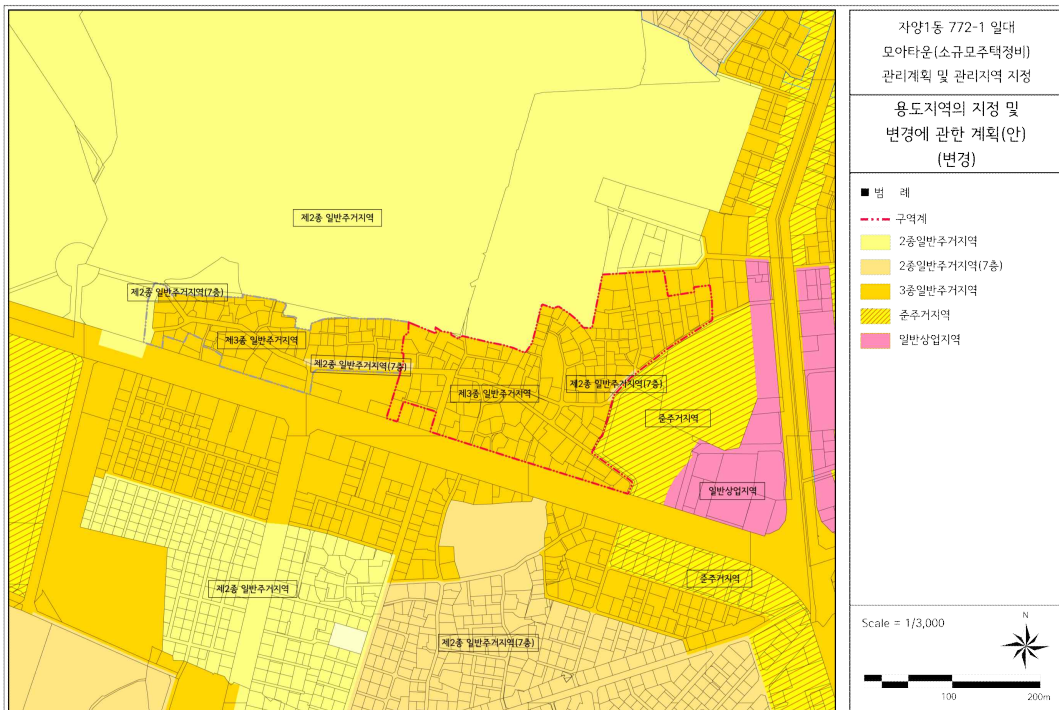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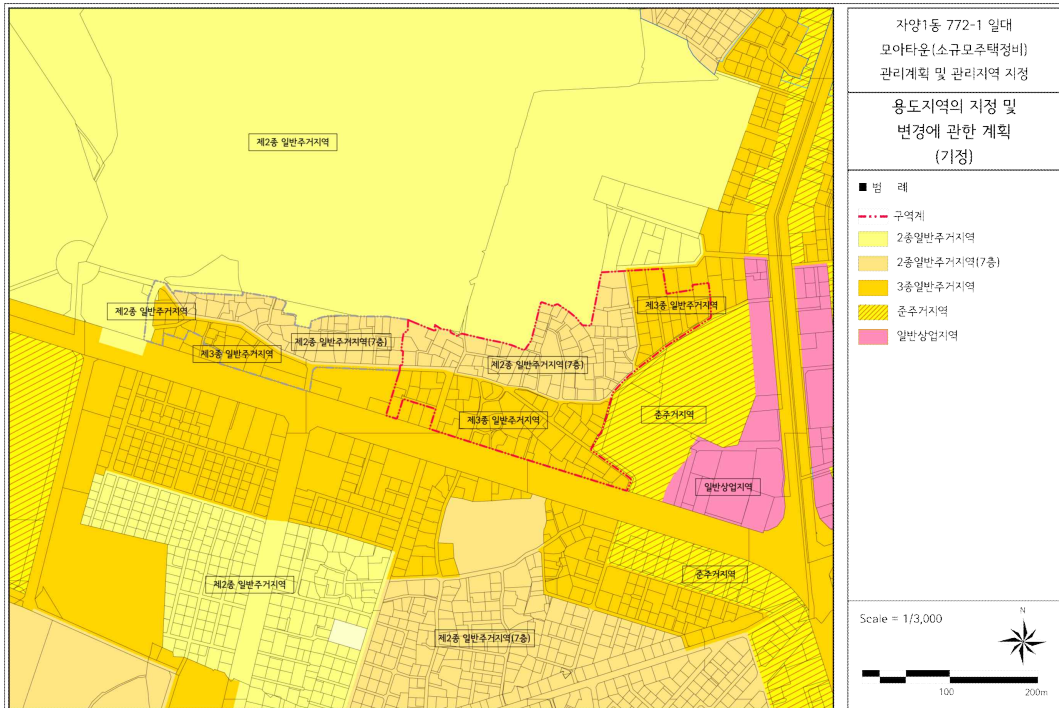
1) 모아타운1 계획(안)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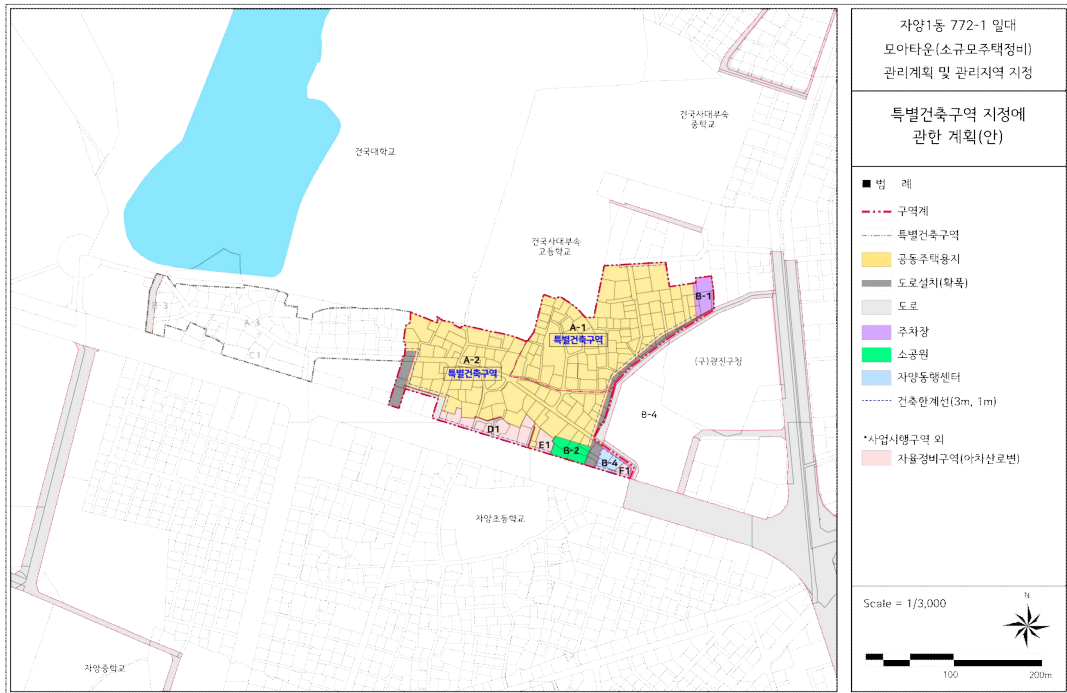


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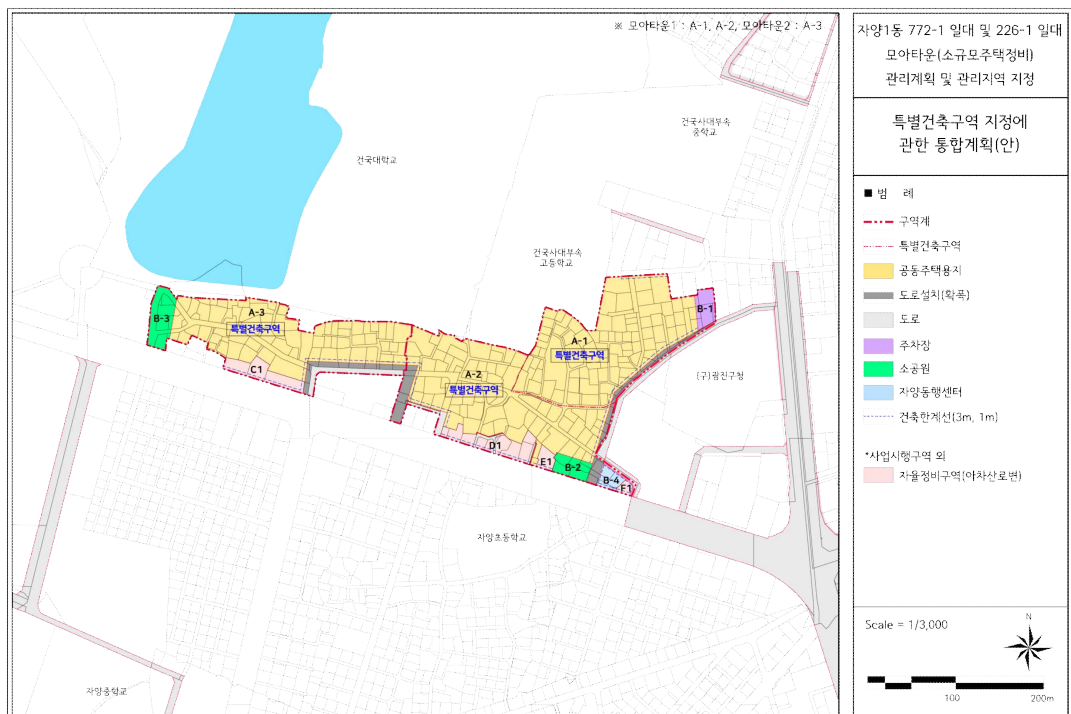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1 계획(안)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8호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19,441.79㎡	전체 : 75동 노후·불량 : 64동(85.3%)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	증)19,441.79	19,441.79	모아타운2

※ 모아타운 통합계획 : 772-1번지 일대(모아타운1:42,920.89㎡), 226-1번지 일대(모아타운2)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 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A-3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위치 :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19,441.79㎡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 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441.79	100.00	-
시행 구역	택지 (획지)	소 계		14,668.91	75.45	-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4,668.91	75.45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316.09	17.06	-
		B-3	소공원-2	1,675.76	8.62	-
		-	도 로	1,640.33	8.44	-
자율 정비 구역	대지	C1	주택 및 점포겸용주택용지	1,456.79	7.49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건대1	12	국지 도로	202 [134]	자양동 226-38	자양동 224-12	일반 도로		• 아차산로41길 • 도로확장 및 결정 • [] 해당구간
폐지	소로	2		8	국지 도로	26	자양동 226-28	자양동 226-32	일반 도로		• 아차산로39가길 • 소공원 신설

※ 건대1은 총연장 202m 도로로, 기점부 134m는 자양1동 226-1번지 일대(모아타운2)에, 종점부 68m는 자양1동 772-1번지 일대(모아타운1) 구간에 걸쳐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건대1	• 도로 확장(6m→12m) 및 신설	• 모아주택 사업 시행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를 확장함 •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이를 도로로 결정함
소로2-	-	• 도로 폐지 후 소공원 신설	• 일감호와 연계하여 소공원 조성

2)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3	공원	소공원-2	자양1동 225-76번지 일대	-	증) 1,675.76	1,675.7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3	소공원-2	소공원 신설 (1,675.76㎡)	관리지역(모아타운) 서측의 막다른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한 지역 명소인 건국대학교 일감호와 연결하여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산책로 및 쉼터로 제공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시설유형	설치기준	비고
권장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놀이터, 공동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돌봄센터, 독서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가로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확보	-

시설구분	구분	구역	위치	시설의종류	면적(㎡)	비고
공동이용 시설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경로당	330.0	구역내
				어린이집	360.0	
				작은도서관	300.0	
				개방형공동이용시설	380.0	
				그 외	1,820.0	

○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세대당 2.5㎡ x 1.25 이상)	비고
A-3(사업추진3구역)	496	1,550.00㎡ 이상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100 기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계획(안)

○ 교통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도로신설 및 폐지)	중로 3-건대1	사업추진3구역(A-3) : 중로3-건대1에서 차량 진출입	
	전 지역	차량진출입구는 회전반경 R=6.0m 확보 신설 - 중로3-건대1 : B=12m, L=202m 폐지 - 소로2 : B=8m, L=26m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	

※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필요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교통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계획(안)	아차산로41길을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사업부지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도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지정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 분		위치	면 적(㎡)			사업 시행자 (예정)	추진 단계	토지 등 소유자
도면표시	구역명		계	획지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17,985.00	14,668.91	3,316.09	-	-	216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17,985.00	14,668.91	3,316.09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216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바. 모아타운 통합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구 분		위 치	면 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사항 (「건축법」 제77조의 13)		비 고
도면표 시	구역명		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 계			58,261.21	49,919.62	8,341.59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모아 타운1
A-1	사업추진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19,541.47	17,975.90	1,565.57			
A-2	사업추진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20,734.74	17,274.81	3,459.93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17,985.00	14,668.91	3,316.09			모아 타운2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시행구역	A-3	건폐율	50% 이하	사업추진3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250% 이하,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구역 외	C1	건폐율	50% 이하	자율정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내 용		비 고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2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 3구역	• 아차산로, 아차산로41길 변 3m 적용	
	자율정비구역	• 아차산로 변 3m 적용(기존 건축선 지정 광진구 고시 제2019-34, 2019.03.12.)	
전면공지	사업추진 3구역	• 건축한계선을 통해 개방감 확보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 3구역	•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 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유형	용도		
A-3	사업추진 3구역	택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1	자율 정비구역	사업시행 구역 외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 (1,2,3)구역	• 아차산로, 자양로19길, 아차산로41길 변 3m 적용	
	사업추진 2구역	• 자양동행센터 북측 1m 적용	
	자율정비구역	• 아차산로 변 3m 적용(기존 건축선 지정 광진구 고시 제2019-34, 2019.03.12.)	
전면공지	사업추진 (1,2,3)구역	• 건축한계선을 통해 개방감 확보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 (1,2,3)구역	• 가로 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 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유형	용도		
A-1 A-2 A-3	사업추진 (1,2,3)구역	택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4	자양 동행센터	획지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1 D1 E1 F1	자율 정비구역	시행 구역 외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1)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 (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 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2) 임대주택 공급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 고 (임대 주택비율)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496	101		20.4%
A-3	사업추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496	101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공사	20.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 사업시행구역별 통합심의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으로 임대주택 수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1)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계		19,441.79		19,441.79	10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640.44	감)10,611.49	1,028.95	5.29	
	제2종일반주거지역	567.85	-	567.85	2.92	
	제3종일반주거지역	7,233.50	증)10,611.49	17,844.99	91.7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제2종(7층이하) : 11,640.44㎡ → 1,028.95㎡ - 제3종 : 7,233.50㎡ → 17,844.99㎡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3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2 계획(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4,668.91	14,668.91	
신설	특별건축구역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	증) 14,668.91	14,668.91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9,919.62	49,919.62	
신설	특별건축구역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	증) 17,975.90	17,975.90	모아 타운1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	증) 17,274.81	17,274.81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	증) 14,668.91	14,668.91	모아 타운2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과.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 없음

3. 관련도면

가.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가.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 02-2133-8227) 및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02-450-972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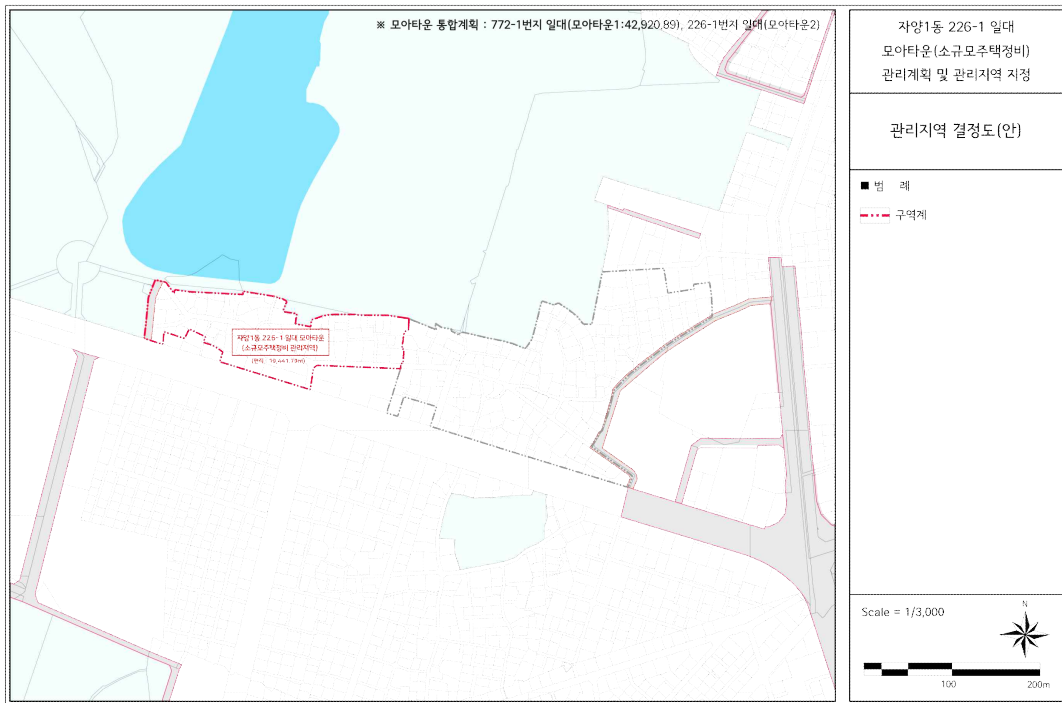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련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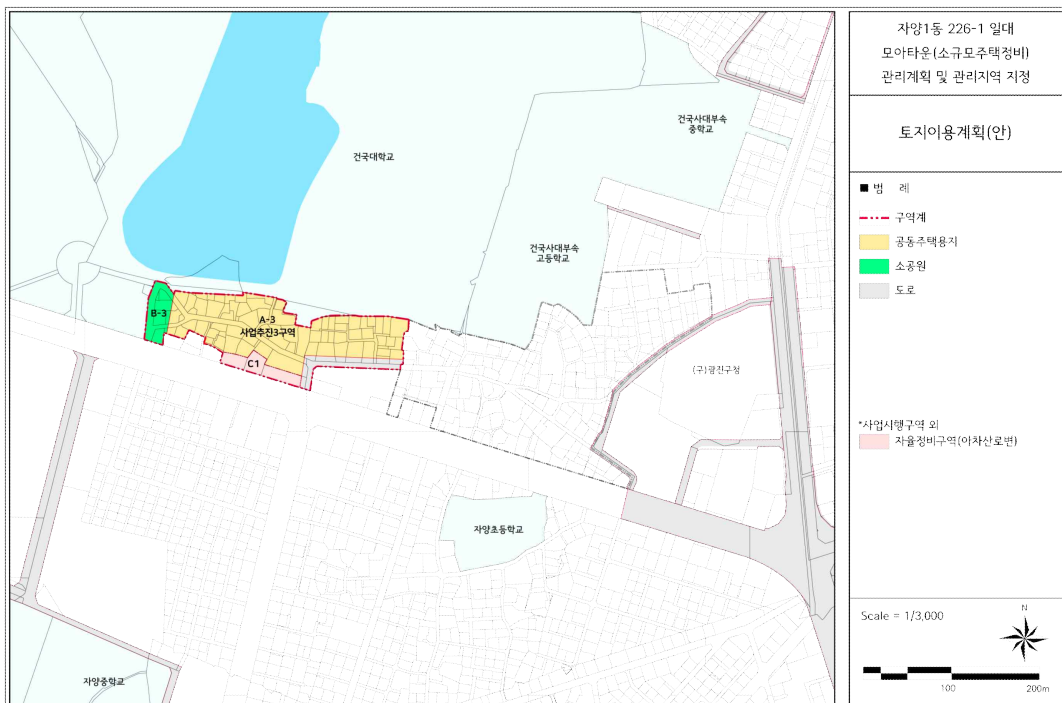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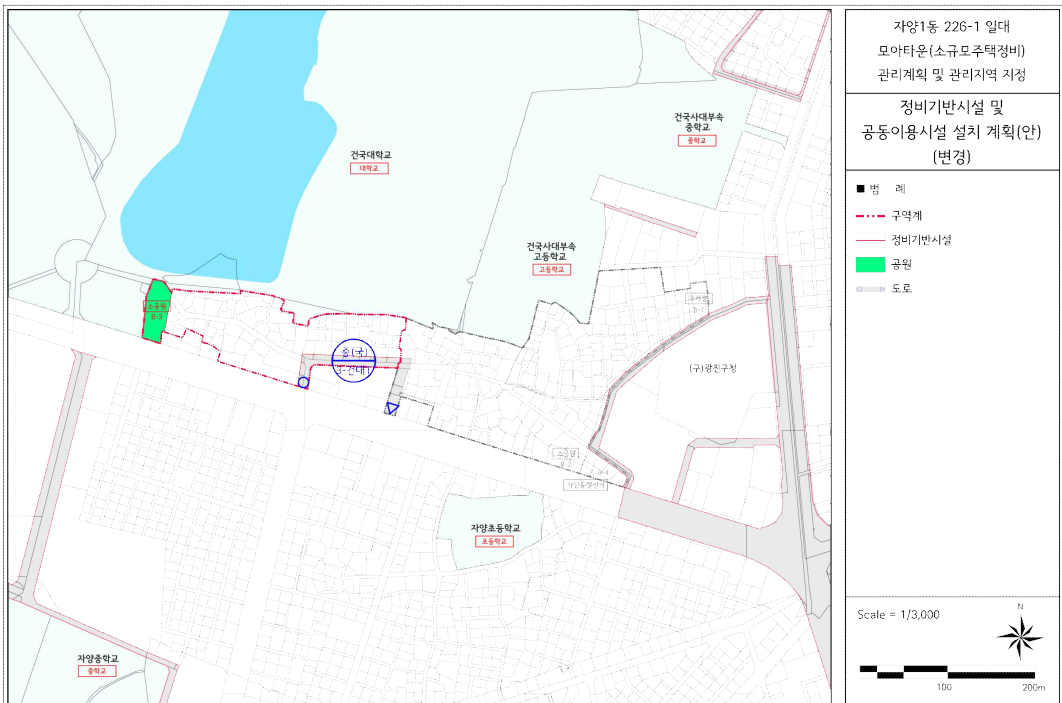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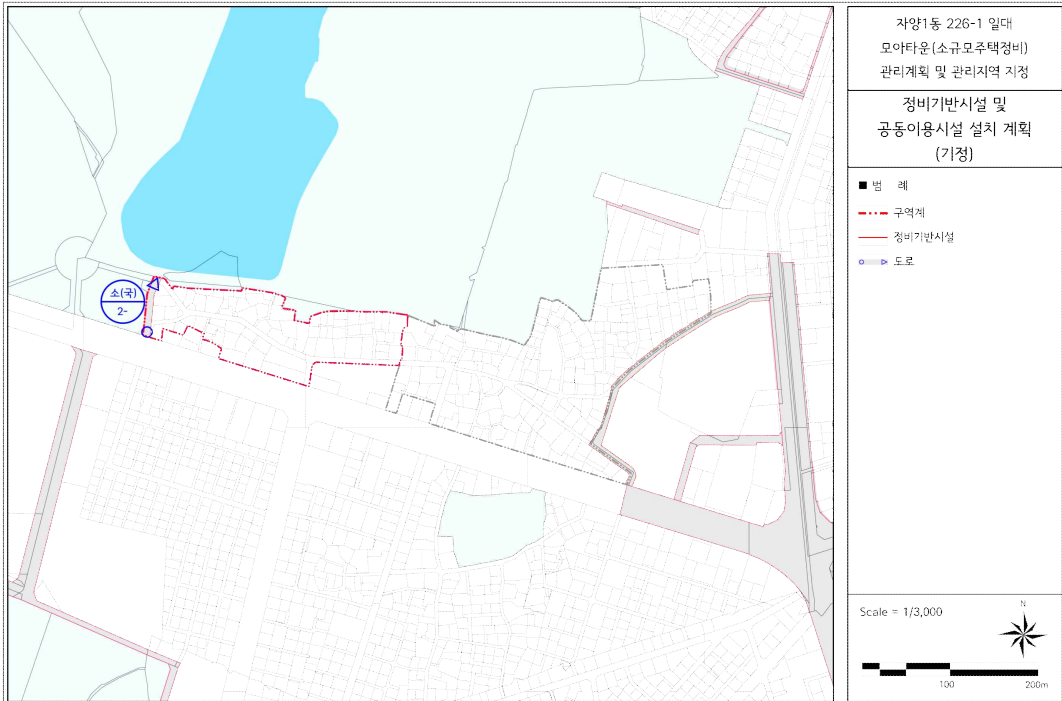
가. 관리지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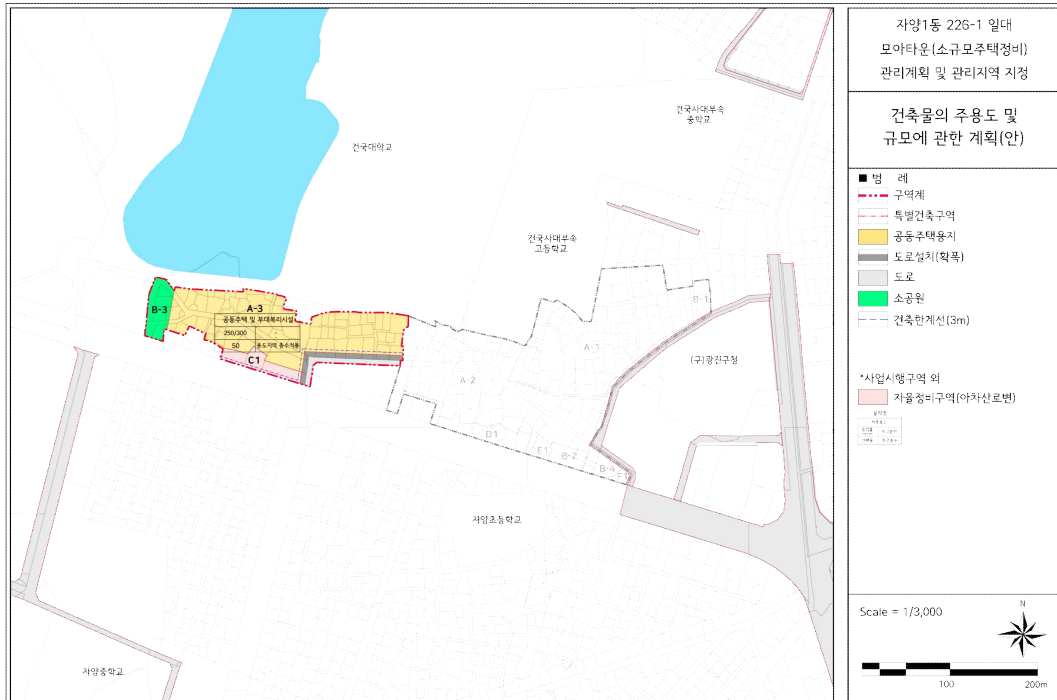
나. 토지이용계획(안)



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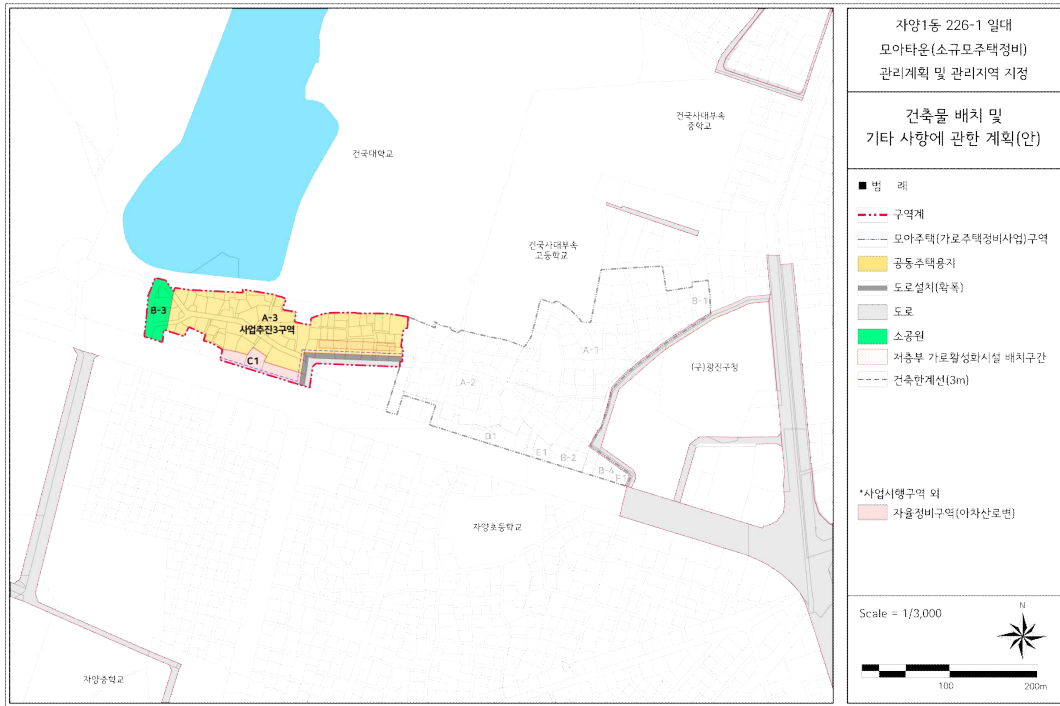


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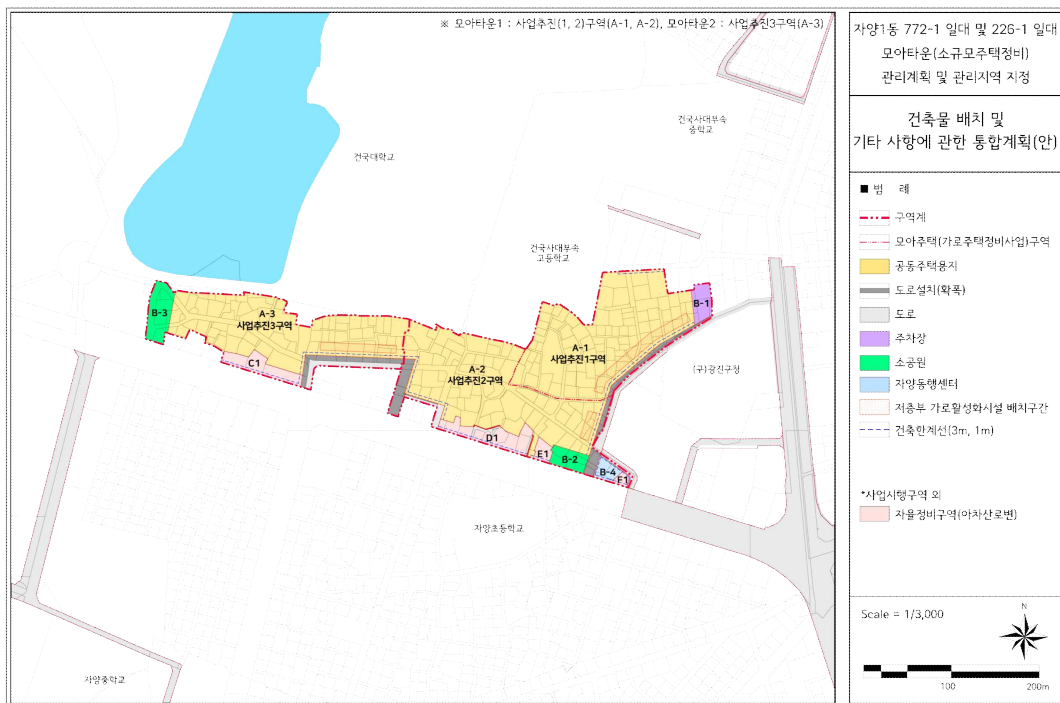


마. 건축물 배치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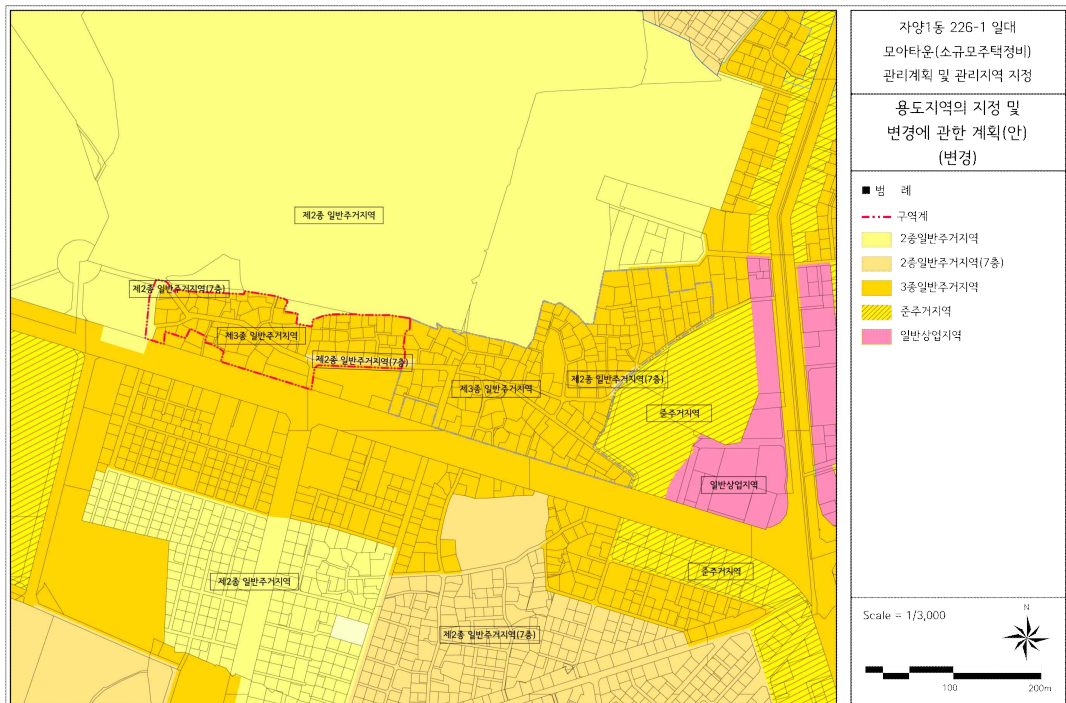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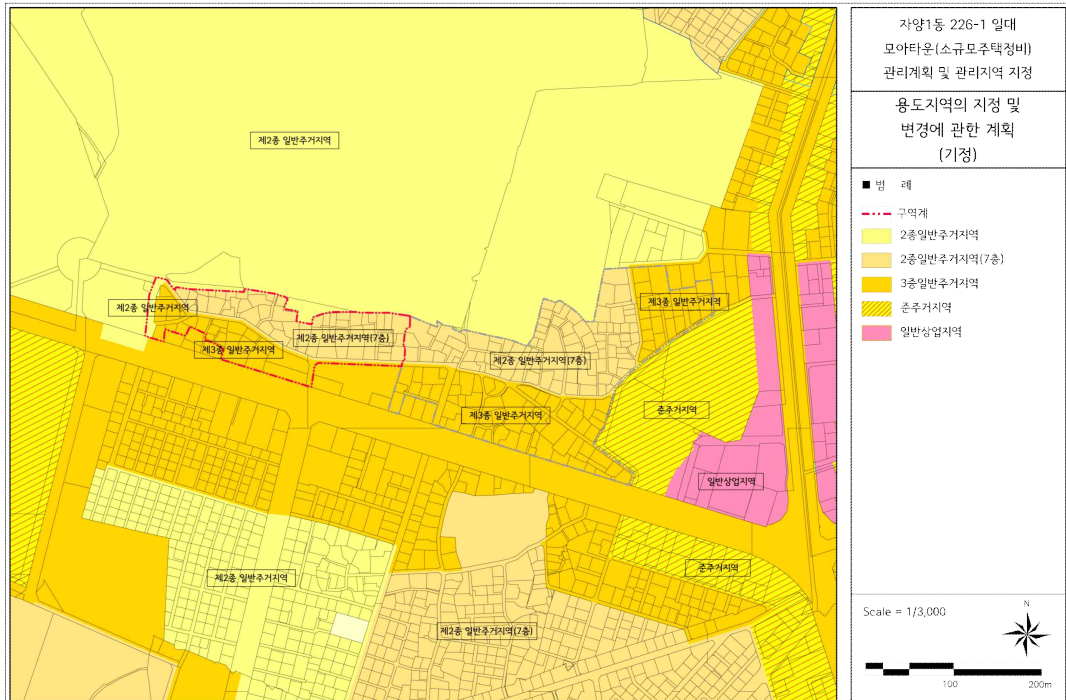
1) 모아타운2 계획(안)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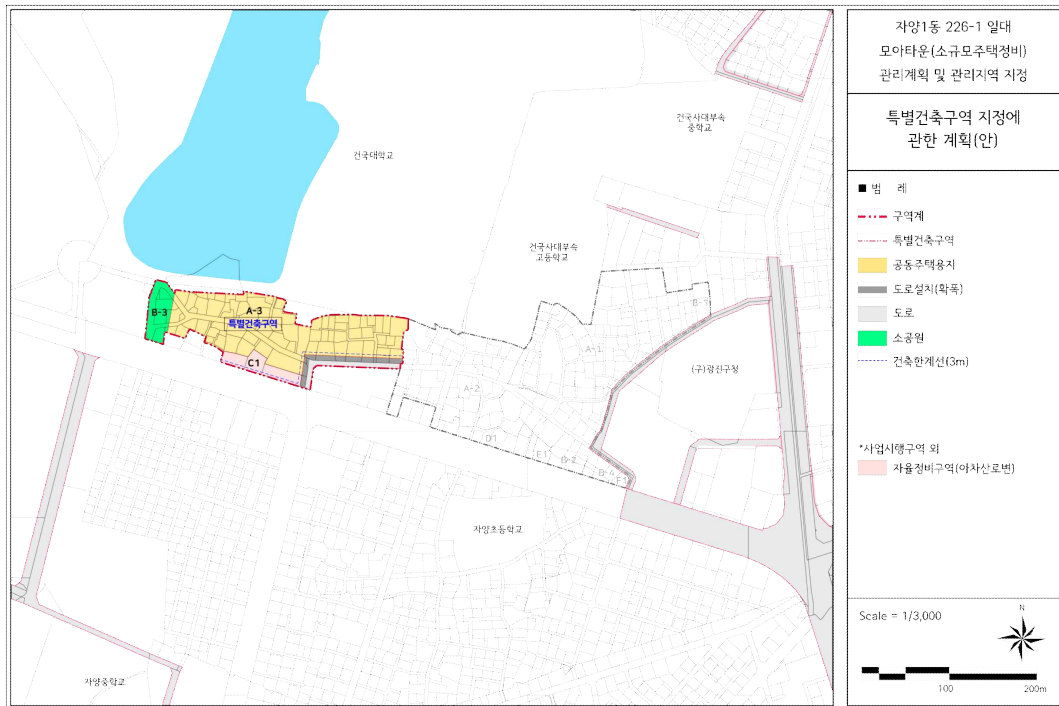


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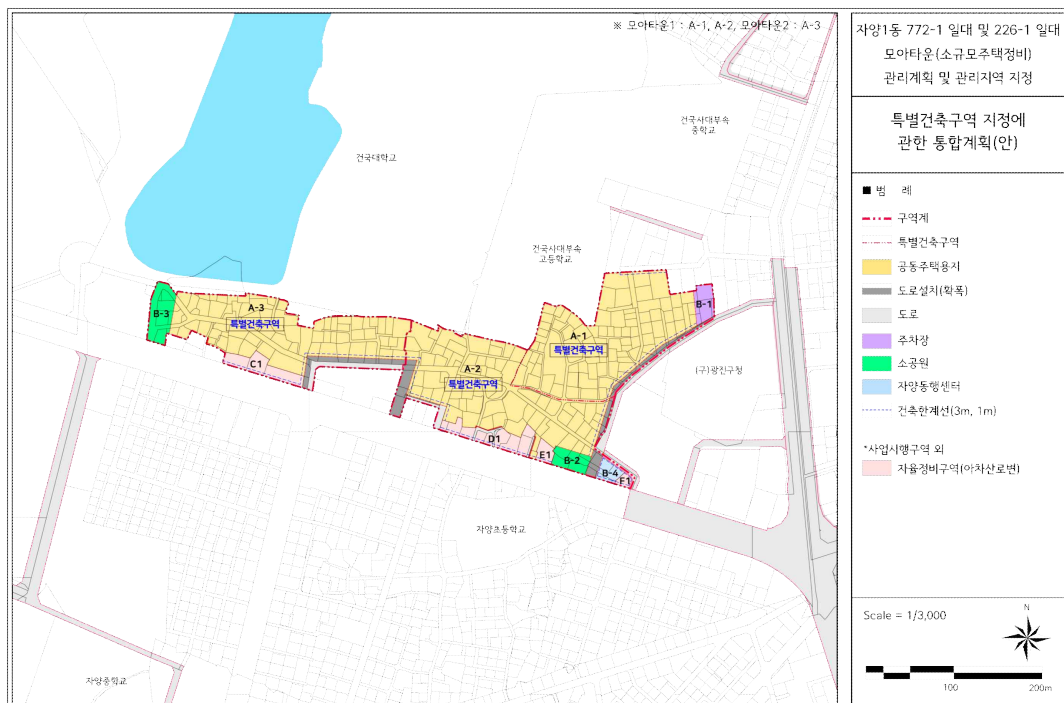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1) 모아타운2 계획(안)



2) 통합 계획 : 모아타운1(772-1일대) 및 모아타운2(226-1일대) 통합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0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 제2013-292호(2013.09.05.), 제2015-181호(2015.6.25.), 제2017-26호(2017.1.26.), 제2018-29호(2018.2.8.), 제2018-224호(2018.7.19.), 제2019-104호(2019.3.21.), 제2019-149호(2019.5.16.), 제2019-221호(2019.7.11.), 제2020-173호(2020.5.1.), 제2023-139호(2023.4.20.), 제2024-239호(2024.5.16.), 제2024-603호(2024.12.12.), 제2025-457호(2025.8.21.), 제2025-593호(2025.10.30.), 제2026-144호(2026.3.19.)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나. 단지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다. 구역면적: 1,123,790.3㎡

라. 조성목적(변경 없음)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마. 추진 경위(변경)

-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498호)

-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
-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
-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
-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183호)
-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4-247호)
-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
-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
- 2015.6.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
-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
-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
- 20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7-26호)
- 2017. 5. 4.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161호)
- 2017. 7. 27.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273호)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 20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9호)
- 2018. 7. 19.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24호)
- 2018. 12. 27.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8-417호)
- 2019. 3. 2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104호)
- 2019. 7.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221호)

- 2019. 8. 2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 2019-278호)
- 2019. 10. 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 2019-332호)
- 2019. 11. 2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9-377호)
- 2020. 1. 9.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제2020-12호)

- 2020. 4. 9.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141호)
- 2020. 5. 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0-173호)
- 2020. 5. 7.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I, II, III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0-187호)
- 2020. 9. 10.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377호)
- 2020. 12. 17.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549호)
- 2020. 12.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575호)
- 2021. 6.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1-290호)
- 2021. 10. 1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21-569호)
- 2022. 3. 2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123호)
- 2022. 3. 31. 마곡 도시개발사업(2공구)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 제2022-906호)
- 2022. 8. 18.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348호)
- 2022. 12.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2-462호)
- 2023. 2.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V, VI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47호)
- 2023. 4. 20.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3-139호)
- 2023. 5. 25.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201호)
- 2023. 9. 14.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3-409호)
- 2024. 5. 1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4-239호)
- 2024. 12. 1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4-603호)

- 2025. 8. 2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5-457호)
- 2025. 10. 30.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5-593호)
- 2026. 1. 2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26-43호)
- 2026. 3. 19.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26-144호)

바. 입지 여건(변경 없음)

1) 교통 여건

- 인천국제공항(35km) 과 김포공항(2km),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
-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9,363톤/일 공업용수 : 2,949톤/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1,276,196 MWh/년	한국전력
통 신	미 정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오수발생량 : 10,899톤/일 폐수발생량 : 2,323톤/일	서울특별시

※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

2. 관리 기본방향

가. 관리목표(변경 없음)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리 방향(변경 없음)

-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
 -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 기능, 지원 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 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 자족적 공동체 조성

다.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없음)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광장 : 서울특별시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변경없음)

(단위: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90.3	603,779.0	125,227.0	82,492.3	224,917.0	75,609.4	11,765.6

※ 관리제외면적 :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 ※ 연구시설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법」 제2조를 준용
- 단,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 내에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설립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비율은 공고문에 따로 정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 전체 건축연면적 중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용도면적 의무확보비율 적용대상의 예외로 함

나) 복합구역

- 산업시설: 가)의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에서 허용하는 건물의 범위를 적용
-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산업시설 외 시설: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마)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나. 입주업종 및 입주 자격(변경없음)

1) 입주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160	기타전문서비스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108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9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31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재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GT	그린생산	C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위 입주업종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2항에서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도 가능

※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9호의 ‘포장 및 충전업’, 같은 조 제4항의 ‘자원비축시설’의 입주는 불가하며, 다른 입주 허용업종 없이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12의 ‘신탁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한 업체는 입주 불가(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1)’은 위원회 심의 필요)

나) 복합구역

- 산업시설: 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입주업종
- 산업시설 외 시설: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복합용지의 산업시설 외 시설에 허용되는 업종

다)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업종별 배분 비율

- 산업 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입주 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 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실수요기업과 관련 분야 인증·검사 기관, 소속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 「산업집적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 ※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마곡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처분 제한 기한내 처분한 자는 처분신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각각 입주자격을 제한함

나) 복합구역

- 가)의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 및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복합용지의 산업시설 외 시설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업종별 배치계획(변경 없음)

- 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렌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 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 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 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다. 입주 절차(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 입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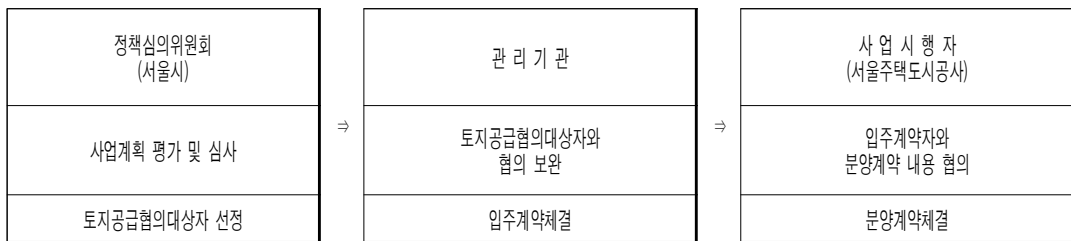
가) 입주계약 신청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심사

- 심사절차

① 일반분양 및 처분신청용지



② 지식산업센터

· 토지분양



※ 토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건립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분양임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필요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분양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 위원회 평가 및 심사 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첨부 가능

·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

다)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입주자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라) 공실 활용 입주 절차

－ 연구시설 공실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공실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시설 공실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된 공실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활용 제공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시설구역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가)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나) 심사기준

- 사업개시

(1) 연구시설 면적 비율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구 분	연구시설(A)	부대시설(B)	제조시설/ 사업화시설(C)	기타시설 (주차장, 기계실)
면 적(㎡)				
비 율(%)	$A/(A+B+C)$		$C/(A+B+C)$	

※ 연구시설 :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2) 연구개발 인력 수 : ‘마곡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 분양(입주)공고문’에 따라 협의·보완을 거친 사업계획서상 연구인력 확대 계획의 첫해연도 연구개발 인력 수

구 분	Y	Y+1	Y+2	Y+3	Y+4	Y+5
연구개발 인력 수(명)						

※ 연구개발 인력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인력
- KOITA 미등록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연구개발 실적자료,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리기관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

(3) 부대시설 인정 범위 : 3. 가. 2). 가). 1.에 따름

(4) 기타 시설물(장비 등) 설치 사항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개시 신고서 기준

(5) 사업개시 후 입주기업체는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개시 요건 충족 및 공장등록사항, 변경사항 확인 등을 위해 입주기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음

- 공장설립 등의 완료

(1) 사업개시 기준 및 공장신설 승인조건 모두 충족

(가) 사업개시 기준 : 상동

(나) 공장신설 승인조건 : 제조시설 비율 20% 이하(단, 기업별 연구시설면적 비율 유지)이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생산간 연계성 확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계획(변경없음)

1)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분할 제한(「산업집적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최초분양시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권소사업)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 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가능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제한

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4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의 신고(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임대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 입주기업 중 임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단, 임대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임대를 할 수 없음

- 사업개시의 신고(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본 관리기본계획 3. 나. 1). 가)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복합구역 내 임대 제한은 산업시설에만 적용함

다) 임대 가능 면적은 연구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사업화 시설의 50% 이내의 범위에 한함

- 부대시설 및 사업화시설 인정 범위 : 3. 가. 2). 가). 1에 따름

※ 단, 관리기관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등은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함

4) 입주계약의 해지(「산업집적법」 제42조)(변경 없음)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다만, 시정기한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내에서 착공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에 준하는 요인(전염병 등)으로 착준공이 지연될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관리기관은 공실 입주자가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 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연구개발환경의 보전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6)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 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 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 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1호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0 (한강로2가 15-13번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2026.03.10.)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지정 목적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창의롭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한 감성디자인 수도로서 시민의 생활과 도시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비고
신설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용산구 한강로2가 15-13	6,335.2㎡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배치)	-

구분		내용	비고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대지면적		• 6,335.2㎡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 62% 이하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	-
용적률	기준	• 250% 이하	-
	허용	• 610% 이하	-
	상한	• 1,000% 이하	-
최고높이		• 150m 이하	-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특례적용사유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1) 건축법 제 55조(건폐율) : 60% → 62% 2) 건축법 제 56조(용적률) : 899.9% → 최대 1,000% 이하 · 창의혁신 : 106.2%p 2) 건축법 제 60조(건축물의 높이) : 120m +a → 150m 이하	- 분절된 매스에 선형공원 등 자연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2차원적 도심의 형상을 탈피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 구현 -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개방공간(공유공간) 조성 및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협약 체결 · 저층부 개방공간, 문화향유공간, 선형공원 및 공중공원 도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5.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12호)에 따름

※ 추후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6. 통합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 운영 관리계획서 : 해당없음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운영기준」 준수

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약사항 이행 철저

－ 디자인혁신 및 공유공간 운영·관리 협약서 (2026.07.23.)

8. 기타 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02-2133-7614), 용산구 건축과 (☎02-2199-7505)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2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를 정비하고 변경 결정 내용과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도면번호	지 번	지목	비고
1	2026-2-01	성동구 옥수동 산2-1	종교용지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2	2026-2-02	종로구 평창동 281-2	전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3	2026-2-03	관악구 봉천동 산2-1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4	2026-2-04	종로구 부암동 127-4	전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전체 제외
5	2026-2-05	강북구 수유동 산164-5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감소(경계 변경)

2. 관계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20)

첨부 #1

비오름1등급 토지 경계 변경에 따른 도면

도면 2026-2-01. 성동구 옥수동 산2-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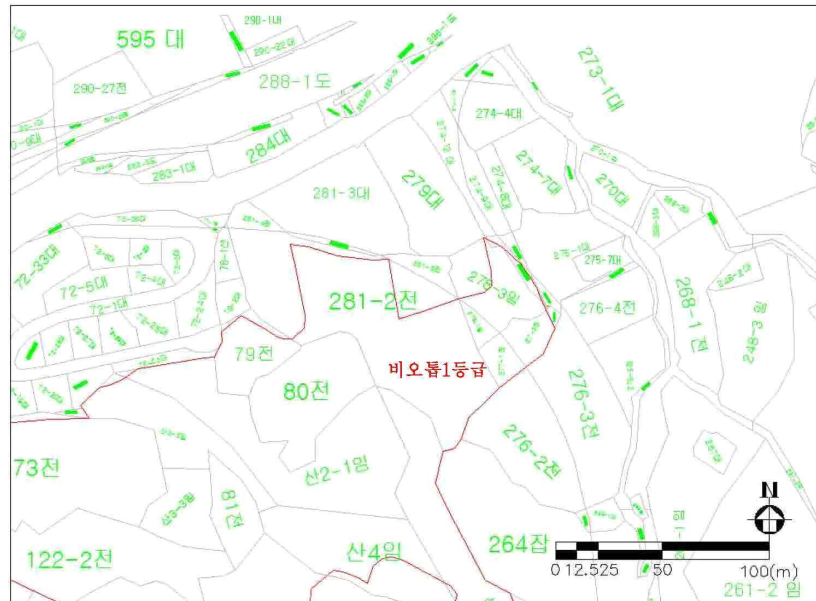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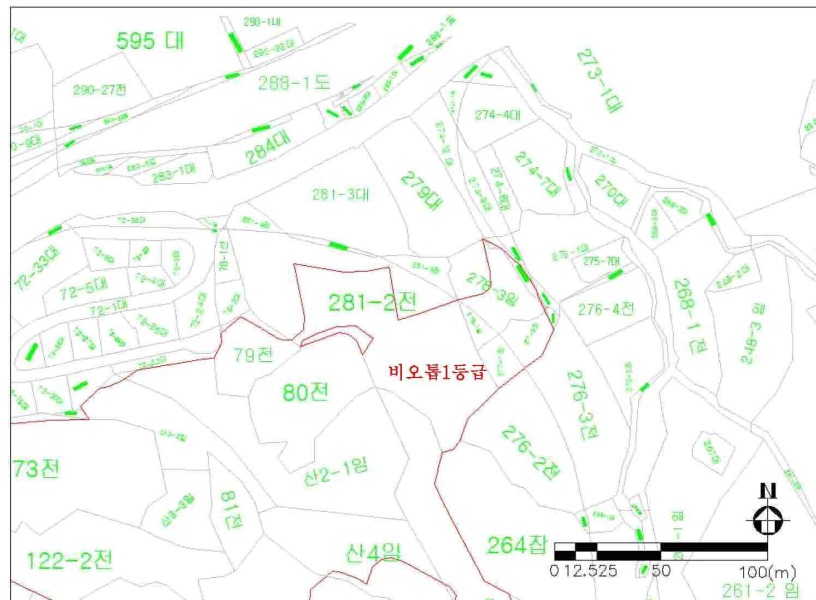


도면 2026-2-02. 종로구 평창동 281-2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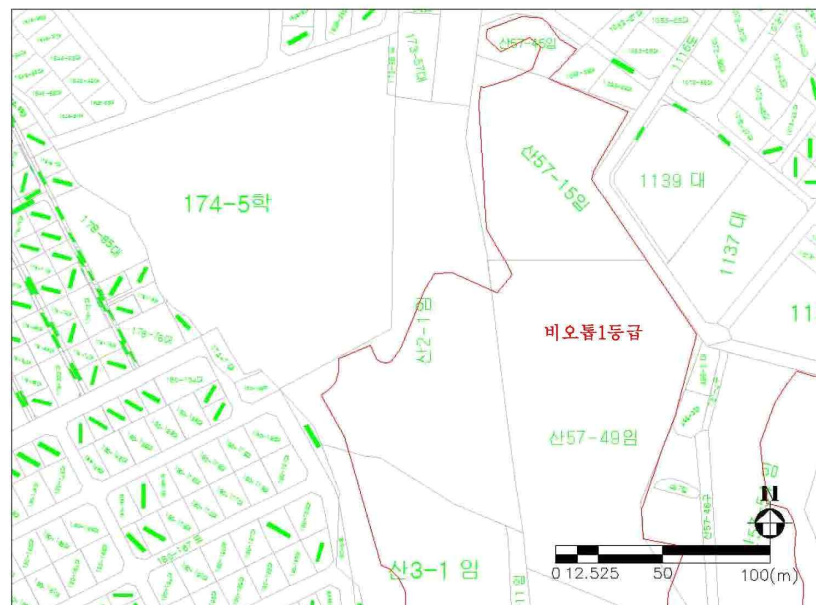


도면 2026-2-03. 관악구 봉천동 산2-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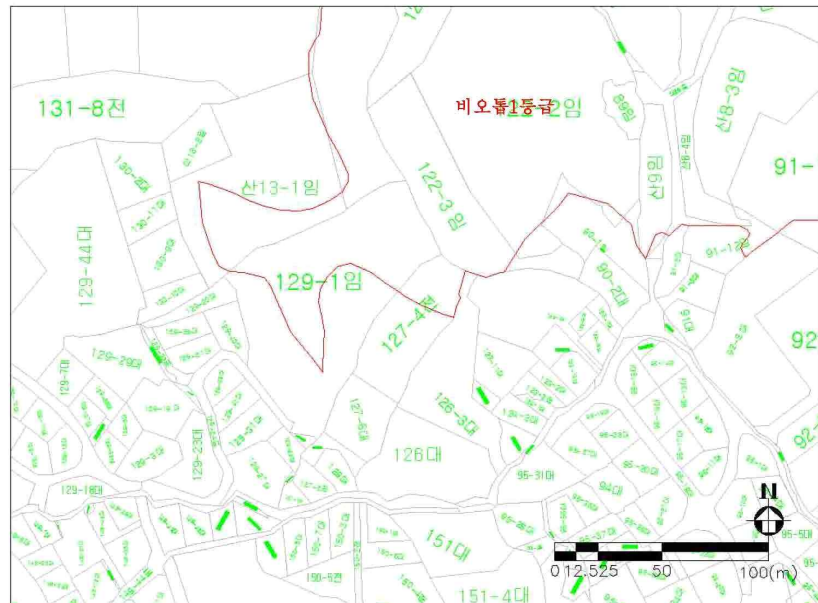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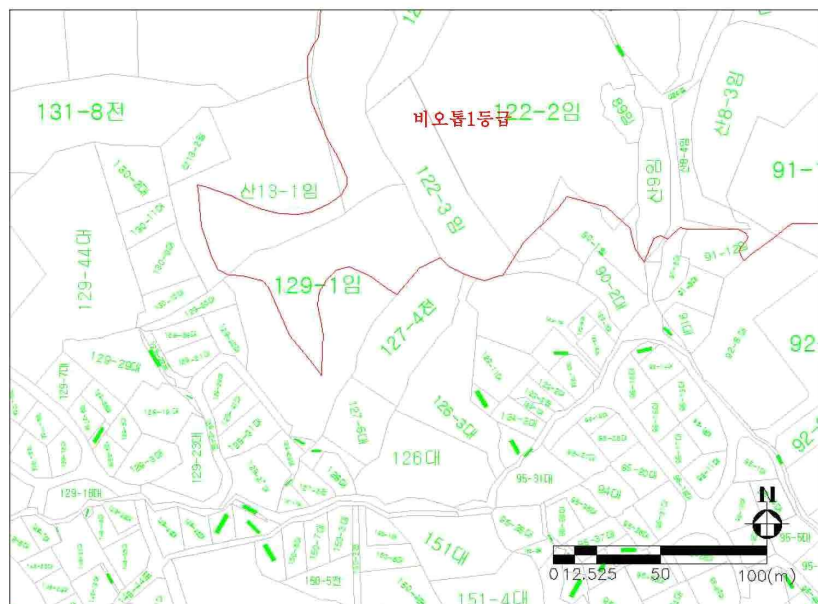


도면 2026-2-04. 종로구 부암동 127-4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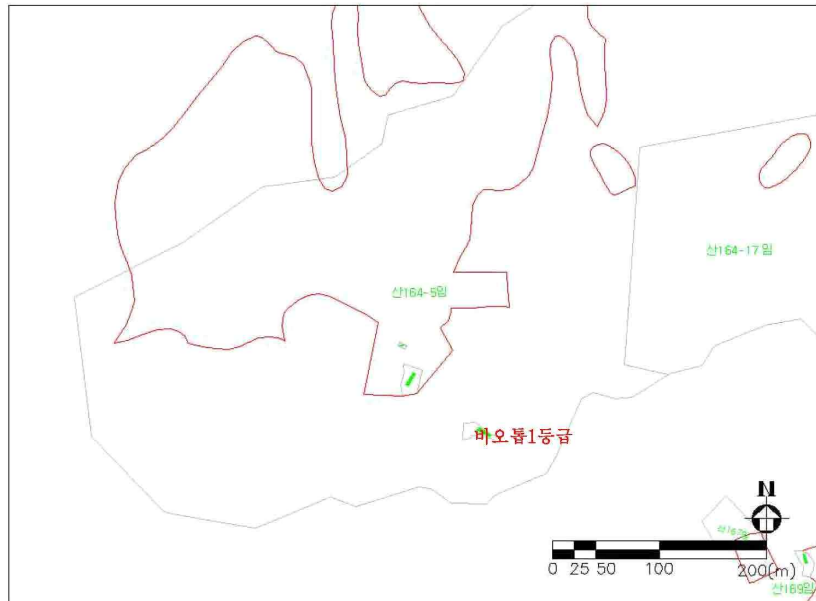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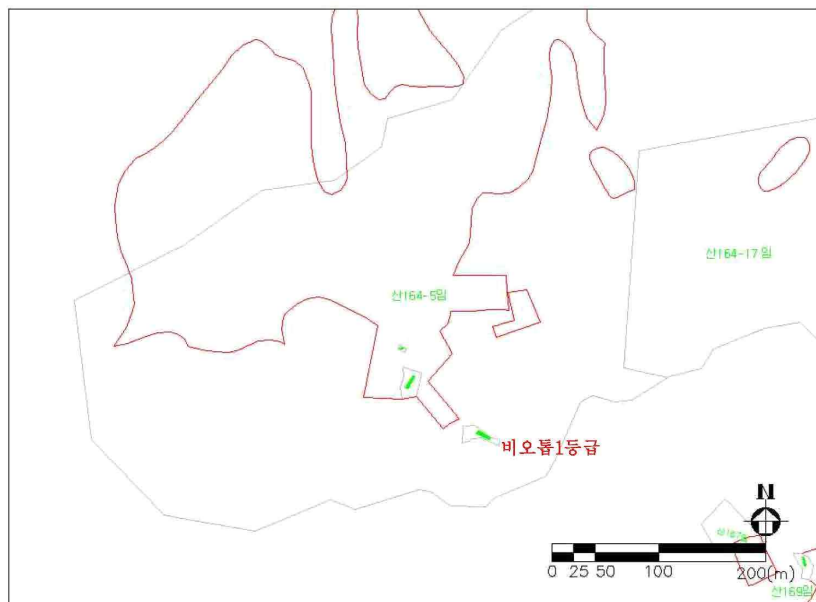


도면 2026-2-05. 강북구 수유동 산164-5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6호(2010.04.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4호(2010.11.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35호(2011.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4호(2011.12.22.) 및 제2013-18호(2013.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4호(2017.03.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4호(2017.04.27)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5호(2018.06.1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7호(2018.10.1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87호(2021.06.2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6호(2021.12.0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7호(2023.06.0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5호(2023.08.24.)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신림~봉천터널 시점부 주변 주택가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터널 시점부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공기정화시설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25	12 ~ 34	보조 간선 도로	4,801	신림동 566 (광로3-19)	봉천동 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 116호 (10.4.1)	• 도로 중복결정: 지상 - 광로2-19(남부순환로)(14,115㎡) - 대로3-218(난곡로)(141㎡) - 기타도로시설(난곡로64길)(516㎡) - 중로2-372(신림로) (10,590㎡, 도림천우안) - 중로2-373(신림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0,964㎡, 도림천좌안) - 중로1-104(호암로)(1,191㎡) • 철도 중복결정: 지하 - 도시철도(신림선)(7,446㎡) • 공원 중복결정: 지상 - 근린공원(신림근린공원) (10,859㎡) - 근린공원[관악산근린공원(법원단지지구)] (1,410㎡) • 하천 중복결정: 지상 - 하천(도림천)(8,486㎡) • 일부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변경	대로	3	225	12 ~ 34	보조 간선 도로	4,741	신림동 564 (광로3-19)	봉천동 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0-116호 (10.4.1)	• 도로 중복결정: 지상 - 광로2-19(남부순환로)(13,175㎡) - 대로3-218(난곡로)(141㎡) - 기타도로시설(난곡로64길)(516㎡) - 중로2-372(신림로) (10,590㎡, 도림천우안) - 중로2-373(신림로) (10,964㎡, 도림천좌안) - 중로1-104(호암로)(1,191㎡) • 철도 중복결정: 지하 - 도시철도 (신림선)(7,446㎡) • 공원 중복결정: 지상 - 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10,859㎡) - 근린공원[관악산근린공원(법원단지지구)] (1,410㎡) • 하천 중복결정: 지상 - 하천(도림천)(8,486㎡) • 일부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구 분	내 용		
기정	대로 3-225	대로 3-225 (신림봉천 터널)	관악구 신림동 1642-3	관악구 봉천동 256	길이	3,960m	서울시 고시 제2010-116호 (10.4.1)	
					폭	28m		
					높이 (평균해수면기준)	-1.94 ~ 47.78m(주1)		
변경	대로 3-225	대로 3-225 (신림봉천	관악구 신림동 1569-40	관악구 봉천동 256	길이	구로방향 4,076m	서울시 고시 제2010-116호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구 분	내 용		
		터널)				사당방향	4,102m	(10.4.1)
					폭	구로방향	14m	
						사당방향	14m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	구로방향	-7.48 ~ 59.05주1) (최저심도 / 최고심도)	
						사당방향	-7.49 ~ 59.14주1) (최저심도 / 최고심도)	
					수평투영 면적	구로방향	60,312㎡	
						사당방향	74,061㎡	

주1) 입체적 결정 높이(해발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이며, 세부사항은 종단면도 참조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225 (신림봉천터널)	대로 3-225 (신림봉천터널)	· 도로 시점부 〈기정〉 신림동 566 〈변경〉 신림동 564 · 도로 연장 〈기정〉 4,801m 〈변경〉 4,741m (감 60m) · 중복결정 도로 면적 : 〈기정〉 14,115㎡ 〈변경〉 13,175㎡ (감 940㎡)	· 남부순환로 접속 시종점 이전 및 지하차도 연장 변경 · 중복결정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 및 세부사항 기재

나.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54), 도로계획과(☎ 2133-8077),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71), 금천구 도로과(☎ 2627-1805)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형도면)
○ 기 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0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2018.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4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2020.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1호(2020.03.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3호(2020.0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3호(2020.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4호(2023.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2024.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6호(2025.07.3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5-114호(2025.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9호(2025.08.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9호(2025.11.27.),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6-37호(2026.02.26.)로 변경 결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I.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나.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2,562 (13,640)	12,583 (13,577)	30,077 (31,155)	30,128 (31,122)	
촉진구역	소 계	10,198	10,219	24,475	24,526	
	40㎡ 이하	761	761	1,826	1,826	
	40 ~ 60㎡	3,232	3,242	7,757	7,781	
	60 ~ 85㎡	5,040	5,051	12,096	12,123	
	85㎡ 초과	1,165	1,165	2,796	2,796	
존치지역		2,364	2,364	5,602	5,602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는 부분임대 포함시 세대수 및 인구수이며, 부분임대는 인구수 산정시 세대당 1명을 적용

-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평균			
		기준	계획	기준	상한	기준	완화	계획	
흑석1		-	-	-	-	-	-	-	
흑석2		60	52.45	388.61	600	-	-	-	해발고도 185m 이하/특별건축구역
흑석3		60	23.4	200	251	16.0	-	15.5	
흑석4		60	25	170	228	16.0	-	14.1	
흑석5		60	23	190	235	16.0	18.2	18.2	
흑석6		60	23	190	224	16.0	-	16.0	
흑석7		50	32.0	178.8	207.7	14.5	-	13.6	28/ 1,2층 혼재
흑석8		60	22.5	210	240.9	16.0	18.0	18.0	
흑석9	기정	60	20.0	205	254.8	16.0	21.4	21.1	25
	변경	60	20.0	205	258.5	16.0	21.6	21.6	25
흑석10		40	40.0	150	-	4.0	-	4.0	
흑석11		60	23.61	190	205.85	16.0	-	13.5	16 특별건축구역

※ 흑석1구역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 흑석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적용

※ 흑석2구역 계획높이는 「건축법」 제84조에 의한 건축물 높이 산정방식을 따름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파.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총계	임대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1	-	-	-	-	-	-	-	-	-	-	-
흑석2	1,045	369	39	-	184	146	676	81	223	372	-
흑석3	1,772	338	156	136	46	-	1,434	542	856	36	320
흑석4	863	147	62	62	23	-	716	28	518	170	-
흑석5	655	114	46	51	17	-	541	24	391	126	-
흑석6	963	165	70	68	27	-	798	48	559	191	34
흑석7	1,073	162	65	75	22	-	911	151	716	44	322

구 분		총계	임대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8		545	94	40	44	10	—	451	184	237	30	77
흑석9	기정	1,540	262	90	107	65	—	1,278	542	647	89	283
	변경	1,561	262	90	107	65	—	1,299	552	658	89	199
흑석10		227	—	—	—	—	—	227	92	88	47	—
흑석11		1,515	266	141	92	33	—	1,249	530	659	60	42
총계	기정	10,198	1,917	709	635	427	146	8,281	2,222	4,894	1,165	1,078
	변경	10,219	1,917	709	635	427	146	8,302	2,232	4,905	1,165	994

※ 흑석1구역 구체적인 일부 건축계획은 향후 조항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 변경사유 : 흑석9구역 상한용적률 증가 및 재개발임대주택 변경기준 적용, 부분임대세대수 축소에 따른 변경

거.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너.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더. 특성화계획(변경없음)

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머.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버.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흑석2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흑석3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4) 흑석4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5) 흑석5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6) 흑석6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7) 흑석7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8) 흑석8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9) 흑석9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내	2,239.0	증) 282.6	2,521.6	
	관리사무소		156.6	-	156.6	
	주민공동시설		11,173.0	-	11,173.0	
	경로당		846.5	-	846.5	
	경비실		54.9	-	54.9	
	보육시설		790.3	-	790.3	어린이집
	문고		410.6	-	410.6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370.0	-	370.0	
	어린이놀이터		1,578.8	-	1,578.8	

※ 향후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변경사유 : 상한용적률 증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 지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94,947.8	택지9-1	58,857.8	흑석동9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 이하	254.8% 이하	25층 이하		
			택지9-2	1,860.6	흑석동86-50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3	407.1	흑석동86-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4	860.0	흑석동95-3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5	740.1	흑석동228-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540 세대 (임대 262세대) - 임대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8㎡이상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이하		110		20		90		7.1%	
		40~50㎡이하		110		3		107		7.1%	
		50~60㎡이하		584		519		65		37.9%	
		60~85㎡이하		647(241)		647(241)		-		42.0%	
		85㎡초과		89(42)		89(42)		-		5.8%	
합 계		1,540(283)		1,278(283)		262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94,947.8	택지9-1	58,857.8	흑석동9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 이하	258.5% 이하	25층 이하		
			택지9-2	1,860.6	흑석동86-50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3	407.1	흑석동86-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4	860.0	흑석동95-3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5	740.1	흑석동228-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61세대 (임대 262세대) - 임대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8㎡이상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이하		110		20		90		7.0%	
		40~50㎡이하		110		3		107		7.0%	
		50~60㎡이하		594		529		65		38.1%	
		60~85㎡이하		658(157)		658(157)		-		42.2%	
		85㎡초과		89(42)		89(42)		-		5.7%	
		합 계		1,561(199)		1,299(199)		262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 변경사유 : 공공시설 등 제공시 산정 용적률 범위 내 상한용적률 증가, 임대주택건립 변경기준 반영 및 부분임대세대수 축소에 따른 변경

(다) 용적률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기반시설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국공유지 면적	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	중대부중 대토면적
	94,947.8㎡	62,725.6㎡	32,222.2㎡	690.6㎡	5,028.0㎡	9,774.8㎡	1,964.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국공유지 면적 - 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 - 중대부중 대토면적 = 32,222.2㎡ + 690.6㎡ - 5,028.0㎡ - 9,774.8㎡ - 1,964.0㎡ = 16,146.0㎡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6,952,804천원 ÷ 10,068,282원/㎡ = 690.6㎡ ※ 건축물 설치비용 = 공사비 × 연면적 = 2,548,000원/㎡ × 2,728.73㎡ = 6,952,804천원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 = 5,034,141원 × 2 = 10,068,282원 ※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 2,728.73㎡						
기준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5%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5% × (1 + 1.3 × 0.19613 + 0.7 × 0.00876) = 258.5% > 254.8% 이하 적용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05% · α토지 = (32,222.2㎡ - 5,028.0㎡ - 9,774.8㎡ - 1,964.0㎡) ÷ 78,801.8㎡ = 0.19613 · α현금·건축물 = 690.6㎡ ÷ 78,801.8㎡ = 0.00876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구역면적 - 순부담면적 = 94,947.8㎡ - 16,146.0㎡ = 78,801.8㎡ ※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690.6㎡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사회복지시설 협의 완료 연면적(2,728.73㎡) 기준임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택지 : 공동주택, 근생시설, 종교시설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기반시설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국공유지 면적	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	중대부중 대토면적
	94,947.8㎡	62,725.6㎡	32,222.2㎡	690.6㎡	5,028.0㎡	9,774.8㎡	1,964.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국공유지 면적 - 신설학교 타구역 부담면적 - 중대부중 대토면적 = 32,222.2㎡ + 690.6㎡ - 5,028.0㎡ - 9,774.8㎡ - 1,964.0㎡ = 16,146.0㎡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6,952,804천원 ÷ 10,068,282원/㎡ = 690.6㎡ * 건축물 설치비용 = 공사비 × 연면적 = 2,548,000원/㎡ × 2,728.73㎡ = 6,952,804천원 * 부지가액 = 공시지가 2배 적용 = 5,034,141원 × 2 = 10,068,282원 *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 2,728.73㎡						
기준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5%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5% × (1 + 1.3 × 0.19613 + 0.7 × 0.00876) = 258.5% ≥ 258.5% 이하 적용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05% · α토지 = (32,222.2㎡ - 5,028.0㎡ - 9,774.8㎡ - 1,964.0㎡) ÷ 78,801.8㎡ = 0.19613 · α현금·건축물 = 690.6㎡ ÷ 78,801.8㎡ = 0.00876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구역면적 - 순부담면적 = 94,947.8㎡ - 16,146.0㎡ = 78,801.8㎡ *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690.6㎡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사회복지시설 협의 완료 연면적(2,728.73㎡) 기준임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변경사유 : 공공시설 등 제공시 산정 용적률 범위 내 상한용적률을 증가

※ 택지 : 공동주택, 근생시설, 종교시설

(6)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처분)

□ 기정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540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62세대 : 1,540세대 × 17% = 261.80세대 ∴ 262세대 > 261.80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262세대	17.0%	100.0%
40㎡이하	90세대	5.8%	34.4%
40~50㎡이하	107세대	7.0%	40.8%
50~60㎡이하	65세대	4.2%	24.8%

※ 추후 등·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 변경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561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62세대 : 1,561세대 × 15% = 234.15세대 ∴ 262세대 > 234.15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262세대	16.8%	100.0%
40㎡이하	90세대	5.8%	34.4%
40~50㎡이하	107세대	6.8%	40.8%
50~60㎡이하	65세대	4.2%	24.8%

※ 변경사유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 2022-493호) 규정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변경

※ 추후 등·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 임대주택 세대수 및 연면적(기정)

구분	주택형	임대세대 (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연면적(㎡)	비고
임대주택	39형	90	39.0968	58.4029	5,256.2610	
	49형	107	49.3207	73.2012	7,832.5284	
	59A형	65	59.6844	79.8900	5,192.8500	
합계		262	-	-	18,281.6394	총세대수의 17.01%
연면적(㎡) : 공급면적합계					146,551.2235	총세대수 : 1,540세대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임대주택 연면적 / 총연면적)					12.47%	법정 : 10% 이상

※ 총연면적 : 공급면적 합계

□ 임대주택 세대수 및 연면적(변경)

구분	주택형	임대세대 (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연면적(㎡)	비고
임대주택	39형	90	39.2212	58.5009	5,265.0810	
	49형	107	49.3383	73.2558	7,838.3706	
	59A형	65	59.9384	80.0423	5,202.7495	
합계		262	-	-	18,306.2011 (증 24.5617)	총세대수의 16.78%
연면적(㎡) : 공급면적합계					148,955.9509	총세대수 : 1,561세대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임대주택 연면적 / 총연면적)					12.29%	법정 : 10% 이상

※ 총연면적 : 공급면적 합계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2-493호) 규정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변경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1,540	-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1,561	-

(9)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2) 생태 면적률(변경없음)

(13)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후	
구역면적(㎡)		94,947.8	94,947.8	
대지면적(㎡)		58,857.8	58,857.8	
용적률산정용면적(㎡)		149,432.2	152,119.6	
건축면적(㎡)		11,510.0	11,509.9	
용적률(%)		253.90	258.453	촉진계획용적률 258.5% 이하
건폐율(%)		19.56	19.56	촉진계획건폐율 20% 이하
주차대수	지상	-	-	근생 법정: 15대 공동 법정: 1,502대
	지하	2,578대 (근린생활시설 20대 포함)	2,578대 (근린생활시설 17대 포함)	
	계	2,578대(근생 20대 포함)	2,578대(근생 17대 포함)	

다) 도시·건축 혁신계획(변경없음)

10) 흑석10구역 ~ 11) 흑석11구역(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II. 흑석9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공동주택 (9-1)	기정	205%	-	254.8% 이하	상한용적률 258.5%이나, 적용용적률은 254.8%
	변경	205%	-	258.5% 이하	상한용적률 258.5%, 적용용적률 258.5%
근생,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4)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 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 (9-1)	기정	49.8%	-	완화용적률 53.5%이나, 적용하는 완화용적률 49.8%
	변경	53.5%	-	완화용적률 53.5%, 적용하는 완화용적률 53.5%

5) 높이계획(변경)

구 분		높이기준	비고
공동주택 (9-1)	기정	평균 21.1층 이하/최고 25층 이하	완화평균층수 21.4층
	변경	평균 21.6층 이하/최고 25층 이하	완화평균층수 21.6층
근생,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4. 경관계획(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덧

나. 공공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건립규모	전체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국민주택 규모주택
합 계	1,561	100.0	262	262	-	16.78	100.00	-
40㎡이하	110	7.0	90	90	-	5.77	34.35	-
40~50㎡이하	110	7.0	107	107	-	6.85	40.84	-
50~60㎡이하	594	38.1	65	65	-	4.16	24.81	-
60~85㎡이하	658	42.2		-	-	-		-
85㎡초과	89	5.7		-	-	-		-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

다.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없음)

III. 2026년 제6차('26.06.30.)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연 번	심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 -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축소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연면적을 유지함으로써 주거복지 관점에서 재개발사업의 취지 유지 필요	○ 기존 임대주택의 세대수는 동일하나, 연면적은 주택공급계획상 공급면적 증가로 24.0㎡ 증가함 - 임대세대수 : 262세대(변경없음) - 임대연면적 : 18,282㎡→18,306㎡(증 24.0㎡)	반영

IV. 기타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 게재 생략

V.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2) 및 동작구 도시정비과(☎02-820-1981)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 이 하 여 백 -

< 흑석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 흑석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64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2.(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kim6521954@seoul.go.kr
 - 팩스: 02-2133-1076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6. 8. 12. ~ 2026. 8. 26.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5월 위반자 사전통지 반송 건

순번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장소	위반 일시
1	2026-07-07 09:00	6210**-----	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 23	역사	2026-05-01 10:01
2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열차	2026-05-01 15:53
3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02 11:28
4	2026-07-07 18:00	6911**-----	박*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97번길 31	역사	2026-05-08 13:30
5	2026-07-07 07:02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6-05-09 07:55
6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09 10:52
7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09 10:54
8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09 11:50
9	2026-07-07 08:39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12	열차	2026-05-09 13:17
10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09 13:23
11	2026-07-07 18:00	6911**-----	박*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97번길 31	역사	2026-05-09 14:18
12	2026-07-07 09:00	6511**-----	유*화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31-4	열차	2026-05-09 16:02
13	2026-07-07 10:00	5505**-----	임*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25다길 7	열차	2026-05-11 10:46
14	2026-06-30 09:55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2	역사	2026-05-11 12:20
15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11 12:39
16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12 13:13
17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열차	2026-05-12 13:14
18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13 14:17
19	2026-07-07 10:00	5405**-----	한*엽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9안길 7	열차	2026-05-15 14:39
20	2026-07-07 07:02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6-05-16 07:59
21	2026-07-07 08:38	5902**-----	이*식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50-6	열차	2026-05-16 08:51
22	2026-07-01 09:28	5211**-----	박*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44	열차	2026-05-16 13:34
23	2026-07-07 18:00	6507**-----	홍*용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역사	2026-05-16 13:35
24	2026-07-07 07:02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6-05-19 11:31
25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열차	2026-05-16 11:04
26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9길 23-2	역사	2026-05-18 14:15

순번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장소	위반 일시
27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19 10:47
28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6-05-19 13:14
29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19 14:13
3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6-05-19 14:35
31	2026-07-06 11: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12-11	열차	2026-05-20 08:25
32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6-05-20 10:27
33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20 12:06
34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열차	2026-05-20 13:02
35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1 10:43
36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1 12:13
37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1 12:50
38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6-05-21 14:07
39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열차	2026-05-21 14:09
4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6-05-22 10:33
41	2026-07-08 09:30	8404**-*****	장*호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33	역사	2026-05-22 14:55
42	2026-07-07 08:38	5902**-*****	이*식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50-6	열차	2026-05-23 08:53
43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3 11:05
44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3 13:21
45	2026-07-06 11:00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7	역사	2026-05-23 13:39
46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4 10:36
47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5 12:16
48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7 13:01
49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27 13:27
50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7 13:43
51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6-05-27 14:28
52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27 14:42
53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28 11:11

순번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장소	위반 일시
54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28 11:35
55	2026-07-07 18:00	6507**-*****	홍*용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역사	2026-05-28 13:30
56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열차	2026-05-28 14:02
57	2026-06-30 10:14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6-05-29 11:12
58	2026-07-08 09:16	6211**-*****	김*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29	역사	2026-05-30 14:30
59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6-05-31 10:3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6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2.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6. 8. 12. ~ 2026. 8. 25.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6. 8. 12. ~ 2026. 10. 10.(60일간)
 -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일자: 2026.7.1. / 납기일자: 2026.8.31.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태료액	위반 일시
1	1078835337362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02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0:53
2	1078835337363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1:18
3	1078835337364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1:28
4	1078835337365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1:38
5	1078835337366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3:32
6	1078835337367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3:45
7	1078835337368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3 13:50
8	1078835337369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8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03 14:11
9	107883533737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5 13:21
10	1078835337371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2-05 13:30
11	1078835337372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05 13:38
12	1078835337373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5 13:47
13	1078835337374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6 11:04
14	1078835337375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2-06 11:17
15	1078835337376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6 13:10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16	107883533737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06 14:03
17	1078835337378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2-06 14:11
18	1078835337379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10 10:47
19	1078835337380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2-10 13:51
20	1078835337381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2-11 10:52
21	1078835337382	2026-07-08 09:31	5603*-*****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92-3	연설권유	150,000	2026-02-11 10:58
22	1078835337383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2-11 11:30
23	1078835337384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9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11 18:10
24	1078835337385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물품판매	150,000	2026-02-12 13:04
25	1078835337386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12 13:41
26	107883533738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12 13:55
27	1078835337388	2026-07-07 07:02	4503*-*****	구*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6-7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12 16:40
28	1078835337389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9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12 20:33
29	1078835337391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13 15:13
30	1078835337392	2026-07-07 08:39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7-2	물품판매	150,000	2026-02-16 09:58
31	1078835337393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19 10:51
32	1078835337396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2-20 11:07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33	1078835337399	2026-07-07 18:00	6507***-*****	홍*웅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원대로 24길 101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23 13:15
34	1078835337400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2-24 12:15
35	1078835337401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4 12:27
36	1078835337402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24 13:46
37	1078835337403	2026-07-01 12:58	6102***-*****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51번길 20-7	기부부탁	150,000	2026-02-25 08:00
38	1078835337390	2026-07-06 11: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12-11	기부부탁	150,000	2026-02-13 08:02
39	1078835337404	2026-07-07 09:0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물품판매	150,000	2026-02-25 13:22
40	1078835337405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5 13:42
41	1078835337406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2-25 13:57
42	107883533741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6 13:53
43	107883533740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6 12:10
44	1078835337408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2-26 12:21
45	1078835337409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6 13:04
46	1078835337411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2-26 15:00
47	1078835337412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2-27 10:52
48	1078835337413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2-27 13:50
49	1078835337414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신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2-28 11:04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50	1078835337415	2026-07-08 09:33	6802**-*****	관*선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58번인길 96-13	연설권유	150,000	2026-03-02 14:19
51	1078835337416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03 11:22
52	107883533741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03 11:46
53	1078835337418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03 12:41
54	1078835337423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05 13:20
55	1078835337419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03 13:44
56	107883533742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04 11:11
57	1078835337422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05 12:52
58	1078835337424	2026-07-07 18:00	6911**-*****	박*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97번길 31	철도중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05 13:22
59	1078835337425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06 12:59
60	1078835337426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06 13:15
61	107883533742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06 14:15
62	1078835337428	2026-07-01 12:08	7108**-*****	이*철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46	연설권유	150,000	2026-03-10 09:22
63	1078835337429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10 11:15
64	1078835337430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10 11:16
65	1078835337431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10 13:15
66	1078835337434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11 12:36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67	1078835337435	2026-07-07 09:00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12길 27	물품판매	150,000	2026-03-11 13:39
68	1078835337436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11 13:48
69	1078835337437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12 10:53
70	1078835337438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3-12 13:04
71	1078835337440	2026-07-07 08:39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20-7	물품판매	150,000	2026-03-12 14:02
72	1078835337441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13 13:36
73	1078835337442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8길 23-2	철도중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13 20:33
74	1078835337443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15 13:22
75	1078835337444	2026-07-06 11:00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 37	철도중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16 10:10
76	1078835337445	2026-07-07 18:00	6905**-*****	신*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59	물품판매	150,000	2026-03-16 11:10
77	1078835337446	2026-07-07 18:00	6905**-*****	신*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59	물품판매	150,000	2026-03-17 10:58
78	1078835337448	2026-07-07 18:00	6507**-*****	홍*용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철도중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17 13:42
79	1078835337449	2026-07-08 10:0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합송로 29번길 37	물품판매	150,000	2026-03-18 10:42
80	1078835337450	2026-07-0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물품판매	150,000	2026-03-18 11:02
81	1078835337454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18 13:51
82	1078835337456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19 10:54
83	1078835337457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3-19 13:06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84	1078835337458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20 10:34
85	1078835337459	2026-07-07 18:00	6905**-*****	산*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59	물품판매	150,000	2026-03-20 12:24
86	1078835337460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9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0 18:00
87	1078835337461	2026-07-07 12:14	6104**-*****	산*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56번길 5-29	연설권유	150,000	2026-03-21 19:38
88	1078835337462	2026-07-07 18:00	6911**-*****	박*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97번길 31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3 11:25
89	1078835337463	2026-07-07 09:0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물품판매	150,000	2026-03-23 13:26
90	1078835337467	2026-07-01 12:58	6102**-*****	김*희	대전시 동구 계족로 451번길 20-7	기부부탁	150,000	2026-03-25 08:13
91	1078835337468	2026-07-06 11:00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길 37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5 09:46
92	1078835337469	2026-07-07 18:00	6507**-*****	홍*응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길 101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5 13:17
93	1078835337472	2026-07-07 18:00	6507**-*****	홍*응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길 101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7 10:10
94	1078835337473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27 14:36
95	1078835337464	2026-07-07 10:35	4111**-*****	김*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5길 42-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24 12:20
96	1078835337466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3-24 14:50
97	1078835337470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26 13:38
98	1078835337474	2026-07-07 08:38	5902**-*****	이*식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50-6	물품판매	150,000	2026-03-28 08:21
99	1078835337475	2026-07-08 10:0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29번길 37	물품판매	150,000	2026-03-29 11:50
100	1078835337476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3-31 12:31

순번	등기번호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 행위	과세금액	위반 일시
101	1078835337477	2026-07-07 09:4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물품판매	150,000	2026-03-31 13:40
102	1078835337478	2026-07-07 06:52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50	물품판매	150,000	2026-03-31 13:52
103	1078835337479	2026-07-07 08:17	8607**-*****	박*영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7길 15-9	기부부탁	150,000	2026-03-31 14:37
104	1078835337480	2026-07-07 10:17	4302**-*****	조*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암로23길 23-2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6-03-31 14:40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50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7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7.30. ~ 2026.8.13.(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누림종합건설주 (박종훈)	건축 공사업 01-55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7동 316호 (시흥동,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보증가능금액 실효(2025.5.29.)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 (2026.5.18.)까지 보증가능금 액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6.8.21.)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7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6846765	강남구 대치동 1005-4, B01층	수도 요금	25.06 외 5건	6회	1,860,30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강남구 대치동 1005-4	소*열	8*0120- 1*2*8*6 (폐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1동 1*0*호(응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860,300원	2026. 06.08.
		소*익	8*1122- 1*2*8*5 (폐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봉로 377, 1*2동 8*2호(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 더퍼스트)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은 (☎02-3146-47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8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을 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6. 7. 2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돌봄복지과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 26.7.19.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돌봄복지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돌봄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돌봄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통합돌봄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통합돌봄과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 26.7.20.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통합돌봄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통합돌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통합돌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8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2026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직인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 고
주택실 청년주거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청년주거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6.7.20.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청년주거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 - 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사유 : 2026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 직인 폐기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폐기일자	비 고
주택실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임대주택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6.7.20.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임대주택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임대주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임대주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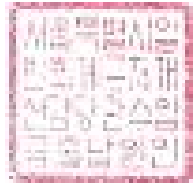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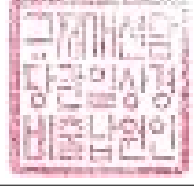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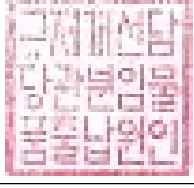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사유 : ' 26. 7.20.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 직인 폐기 일자 : ' 26. 7.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폐기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규제개선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6. 7.20.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규제개선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규제개선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규제개선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85호

비영리법인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조서 등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 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조서 등을 해당법인에 우편 송달 불가능(법인사무실 부존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시송달 대상

상 호 (대표자)	등록 번호	소재지	청문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예정된 처분
(사)대한교통 안전협회	2014-37	강남구 테헤란로 310, 1404호	' 26. 7. 15. (화) 14:00	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	민법 제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한국교통안전 문화협회	2012-206	마포구 삼계로 17	' 26. 7. 15. (화) 14:00	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	민법 제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녹색교통 장애인협회	2010-44	금천구 금하로 611, 2층	' 26. 7. 15. (화) 14:00	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	민법 제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6. 7. 30. ~ 8. 13.(14일간)

3. 공고장소 : 서울시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가. 청문일시 : 2026. 7. 15.(수) 14: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6층 주차계획과 회의실

다. 청문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위반 및 목적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처분 타당

라. 청문주재자 : 허소현 변호사

마. 송달서류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5.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공고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02-2133-2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9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6. 7. 2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보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6.7.2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폐지
	문화유산보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문화유산보존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2cm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문화유산활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6.7.2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폐지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문화유산활용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문화유산활용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2cm			
	문화유산활용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6.7.2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문화유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문화유산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2cm			
	문화유산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95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2026. 7. 22.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육군 제1596부대 (국방부장관)	서울 관악구 남현등 산 100-14 일대	120,205.34	120,205.34	-	102,528.99	103,773.43	증) 1,244.44	

※ 기존 미반영시설 면적은 전체 합산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15)
관악구 여가도시과(02-879-6541)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 광고개요

1. 공고제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대상 및 내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부과금액	반송사유
1	동*리스 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송일벤처타워 403호	4*****-1***** (119-**-***738)	사업개시 또는 공장등록 완료 전 임대행위	과태료 2,800,000원, (자진납부시 2,240,000원)	주소불명
2	이촌*넷 곽*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708호(구로동)	5*****-1***** (113-**-***886)	사업개시 또는 공장등록 완료 전 임대행위	과태료 2,800,000원, (자진납부시 2,240,000원)	수취인불명

4.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동법 제5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고내용

1. 위 근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실 산업입지과(☎02-2133-8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을 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6. 7. 2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26.7.19.	조직개편
	보행자전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통실 자전거PM과	자전거PM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26.7.20.	조직개편
	자전거PM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05번안길 18-* (삼송동)	위반일시: 2026-03-04 10:38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3가 16-20(청파로 통과)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40.4t, 초과값: 8.4t, 서울06하637*)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6-04-27 납기일: 2026-06-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63 102동 2층 20*호 (주안동)	위반일시: 2026-03-05 05:00 위반장소: 용산구 한남동 410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9m, 초과값: 0.29m,007가649*)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6-04-27 납기일: 2026-06-30
홍*광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33 109동 30*호(용현동)	위반일시: 2026-03-10 13:50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만초천 통과)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15t, 초과값: 4.15t,006가994*)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6-04-27 납기일: 2026-06-30
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답방로 105 801동 80*호 (만수동)	위반일시: 2026-03-13 13:50 위반장소: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서울07나695*)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6-04-27 납기일: 2026-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을 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6. 7. 20.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과 신설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디딤돌소득과	디딤돌소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26.7.19.	조직개편
	디딤돌소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지원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어르신지원과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 26.7.20.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어르신지원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어르신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어르신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원*업*발 등 333명
4.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9.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7. 30. ~ 2026. 8. 19.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장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승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006가86**	(*)원*엽*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2 09: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60,000
2	014가86**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3 09: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60,000
3	014나80**	이*웅	경기도 포천시	2026-06-17 08:29	온수골사거리~용화여고	60,000
4	01두39**	Z*E*G*U*	대구광역시 중구	2026-06-22 13:08	중화동 중량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5	01두39**	Z*E*G*U*	대구광역시 중구	2026-06-28 17:56	중화동 중량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6	01라05**	우*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8 08:53	영등포로터리~영등포시장 교차로	50,000
7	01무53**	박*향	경기도 성남시	2026-05-29 14:06	석수역~기아대교앞교차로	50,000
8	02노34**	X*C*U*F*N*	경상남도 창원시	2026-06-24 16: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	02노34**	X*C*U*F*N*	경상남도 창원시	2026-06-25 16: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	04거04**	정*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2 09: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	04모47**	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2 08:2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2	04저55**	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22 16:32	뱅뱅사거리~양재역	50,000
13	05보69**	이*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19 17:49	종로5가역	50,000
14	06서50**	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6 16:0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	07노11**	이*호	경기도 시흥시	2026-06-17 17:44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16	07다27**	최*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6 17: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	101하75**	오*컴*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11 0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	103오54**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15 21: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9	103하40**	남*래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09 17:5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0	105수24**	미*미*주*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5 20:01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1	106고88**	이*경	충청북도 괴산군	2026-06-25 18:00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2	106호18**	변*영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026-06-13 17:3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	109여61**	황*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08 15: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4	109여61**	황*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08 15:3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	10서54**	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6 09:50	강남소방서앞	50,000
26	110나69**	주*희*소*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2 1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111서91**	황*현	경기도 고양시	2026-06-26 17:1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	111어81**	김*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6-26 15:15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23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50,000
29	111어81**	김*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6-24 15:5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4	50,000
30	114수97**	(*)*루*인*내*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13 15: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	11가96**	박*석	경기도 광주시	2026-06-26 18: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	11고22**	조*순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2 17: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33	11로52**	김*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6-22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34	11수55**	박*연	경기도 용인시	2026-06-26 19:1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35	11어92**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5 11: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	11조39**	(*)*맥*디*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6-23 0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133	50,000
37	120버47**	(*)*원*크	경기도 시흥시	2026-06-26 19:0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38	124수66**	주*회*보*엔*테*먼*	경기도 고양시	2026-06-25 14:5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39	125호10**	노*일	경기도 용인시	2026-05-23 17:41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0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12 19:3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41	128다99**	한*희	경기도 하남시	2026-06-23 18:44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42	128마50**	권*에*로*주*	울산광역시 남구	2026-06-10 14:5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43	129도24**	(*)*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6 13: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4	129오95**	김*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6-23 15:1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	129오95**	김*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6-23 15:1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	129오95**	김*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6-23 15:1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7	12무39**	대*화*캠*식*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15 08:22	용화역고~노원역	50,000
48	130소42**	(*)*안*터*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13 18:57	서울 은평구 연서로 167 (갈현동)	50,000
49	130호10**	위*교*아	경기도 하남시	2026-06-09 07:43	대치역~도곡역	50,000
50	131가83**	이*희	경기도 시흥시	2026-06-23 14:4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	133하52**	레*페*스*이*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5-27 09:15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52	133호66**	전*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6-07 08:3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	137조35**	박*현	경기도 고양시	2026-06-22 13: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4	137하10**	주*화*대*렌*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6-16 20:02	연희IC~연세대학교앞	50,000
55	137가96**	Y*N*Q*A*Q*	서울특별시 중구	2026-06-25 19: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6	140로85**	채*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23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57	142라71**	김*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4 09:41	삼육에코팜센터~담터교차로	50,000
58	144로76**	(*)*화*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7 13:0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9	144로76**	(*)*화*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7 13: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0	144로76**	(*)*화*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7 13:0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1	144부12**	임*권	경기도 광주시	2026-06-24 17: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2	145우78**	함*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25 10: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3	145저13**	신*래	경기도 과천시	2026-06-23 13:08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64	148부79**	정*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6-22 07:42	강남소방서앞	50,000
65	149버14**	심*영	경기도 시흥시	2026-06-26 16: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6	14마09**	백*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23 09:4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4	50,000
67	14마46**	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2 0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8	150고65**	한*인*은*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08 13:50	방배동 남태령고개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69	152버79**	주*화*상*	경기도 용인시	2026-06-19 19: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0	152버79**	주*화*상*	경기도 용인시	2026-06-19 1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1	152버79**	주*화*상*	경기도 용인시	2026-06-19 19:4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2	152소99**	홍*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4 17: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3	153호56**	주*화*스*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6-18 09: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4	154고47**	C*U*G*H*L*O*G	경기도 성남시	2026-06-25 08: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5	154더25**	김*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22 08:5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76	157가65**	유*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6-25 17:3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7	157가49**	서*명	경기도 용인시	2026-06-24 16: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8	157가49**	서*명	경기도 용인시	2026-06-24 16: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9	15누52**	김*수	경기도 양평군	2026-06-24 19:2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0	15머22**	윤*희	경기도 고양시	2026-06-22 07: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81	15보88**	H*R*A*D*Z*L*X*S *S*A*L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26 07:30	연희IC~연세대학교차로	50,000
82	161하64**	신*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12 11:00	미아사거리역~미아사거리	50,000
83	169머81**	권*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15: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4	50,000
84	16라99**	김*민	경기도 안양시	2026-06-25 18:51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85	172다33**	(*)*든*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16 18:13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86	173가34**	주*화*플*스*파	경기도 하남시	2026-06-24 15: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7	173가34**	주*화*플*스*파	경기도 하남시	2026-06-24 10:04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88	175오30**	임*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7 18:2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89	175호35**	(*)*블*이*렌*카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4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0	177허21**	주*회*디*소*트*크	경기도 고양시	2026-06-18 0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91	178가17**	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6-26 20: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2	184라36**	안*현	경기도 화성시	2026-06-25 17:3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3	187수33**	채*식	경기도 이천시	2026-06-22 19: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4	188노27**	임*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26 18:2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95	18도02**	김*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19 09:12	몽촌토성역~잠실역	50,000
96	18무11**	최*찬	경기도 용인시	2026-06-17 19:12	정동사거리~서대문역	50,000
97	190마66**	방*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3 0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8	192호23**	(*)*한*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6-17 09: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9	193허34**	송*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6-17 13: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6 SEMA 병커	50,000
100	194허47**	백*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15 18:38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01	195하39**	주*화*하*랜*알*이* 리*	경기도 용인시	2026-06-14 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102	195하72**	전*아*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04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03	196호98**	(*)*이*이*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5-18 08:54	북정역~장지역	50,000
104	206주42**	최*한	충청북도 충주시	2026-06-22 17:5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05	207러61**	이*덕	경기도 이천시	2026-06-26 17: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6	20나85**	케*팝*포*즈*등*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22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07	20누97**	C*A*T*i*T	경기도 여주시	2026-06-23 12: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8	20누97**	C*A*T*i*T	경기도 여주시	2026-06-22 10: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9	20누97**	C*A*T*i*T	경기도 여주시	2026-06-23 12: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0	20누97**	C*A*T*i*T	경기도 여주시	2026-06-22 10: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1	20루75**	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22 07:59	아현중학교앞	50,000
112	20조93**	고*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3 18:2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13	210주11**	김*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21 09:49	통일로(독립공원교차로방향)	50,000
114	211다82**	디*스*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26 08:36	서울 서초구 잠원로 117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50,000
115	211모97**	K*M*U*Y*N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6-27 20:44	영등포구 갯강역 1번출구 앞	50,000
116	21소24**	고*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3 08: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17	221호92**	조*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19 08: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18	222누58**	Y*N*A*G*A*G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6-23 17:4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9	222누98**	함*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4 09: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20	223호62**	김*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4 11: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21	223호62**	김*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4 17:2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2	223호62**	김*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4 17: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3	223호62**	김*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4 11: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4	224누67**	이*용	경기도 화성시	2026-06-25 10: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5	224호79**	지*훈	경기도 광주시	2026-06-16 14:57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26	226호42**	김*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5-23 09: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27	226호65**	전*진	경기도 용인시	2026-06-21 17:0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8	228무22**	원*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2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29	228소97**	김*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06-27 11: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30	229하96**	(*)*이*엠*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11 07:34	대치역~도곡역	50,000
131	229호47**	조*리	경기도 용인시	2026-06-18 1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	50,000
132	22조90**	김*복	경기도 안양시	2026-06-24 08: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3	235거62**	윤*혁	경상북도 문경시	2026-06-22 09: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34	236무86**	영*조*법*대*	경상북도 문경시	2026-06-26 18:1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35	238조76**	이*중	경상북도 성주군	2026-06-26 1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6	239머66**	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16 09:54	신용산역~용산역앞교차로	50,000
137	240조77**	파*너*스*식*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6-26 10:1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38	241거72**	김*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5-21 07:57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39	243서74**	주*희*희*	경기도 용인시	2026-06-18 08:15	대치역~도곡역	50,000
140	245오62**	박*순	전라남도 원도군	2026-06-22 19: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41	249두96**	이*표	경기도 이천시	2026-06-23 15:2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42	24두30**	방*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13 15:50	잠원ic~반포ic	50,000
143	24라60**	H*N*i*O*H*J*N*O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6 17:1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44	253소73**	한*원불교조계종북지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6-26 1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45	255고14**	(*)*음*베*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5-19 07:52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46	258다23**	주*희*금*	충청남도 청양군	2026-06-28 09:0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7	25서62**	지*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6-22 08: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7-2	50,000
148	262라68**	엄*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01 10: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9	262무80**	정*경	전라남도 나주시	2026-06-26 1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0	265모14**	주*희*현*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6-27 10: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1	265모14**	주*희*현*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6-26 16: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2	26나91**	최*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24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3	26서01**	이*재	경기도 김포시	2026-06-19 09:34	개화동로(김포공항교차로방향)	50,000
154	276나87**	P*A*S*i*A*	전라남도 장흥군	2026-06-26 08: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5	276나87**	P*A*S*i*A*	전라남도 장흥군	2026-06-26 08:2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6	276나87**	P*A*S*i*A*	전라남도 장흥군	2026-06-26 08: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7	279소49**	주*희*엠*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17 16:01	강남소방서앞	50,000
158	27구81**	구*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7 19:37	동작역~흑석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9	27마15**	이*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2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60	27소06**	박*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25 11:2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61	284너52**	로*스*베*트*트*한* 사	경기도 파주시	2026-06-26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162	284무46**	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24 13:4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63	284서90**	Z*T*U*지*U*S*M*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22 19:4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64	287보26**	박*은	경기도 파주시	2026-06-22 17: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65	289더72**	박*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18 07:44	도곡역~매봉역	50,000
166	28라49**	공*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5 08:01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167	292저43**	주*회*리*솔*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10 1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168	29라18**	이*형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6 12:27	천호대교남단~천호역	50,000
169	300주50**	장*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28 20: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0	305누82**	안*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3 09:0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71	306서66**	주*회*성*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18 1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172	30수81**	김*숙	경기도 성남시	2026-06-26 20: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73	310나28**	조*대	전라남도 목포시	2026-06-22 18:5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4	315노59**	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5 17: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5	31더04**	윤*식	경기도 성남시	2026-06-24 19: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76	31더04**	윤*식	경기도 성남시	2026-06-26 19:0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77	31마66**	서*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4 08: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178	322마64**	전*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6-25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9	32다63**	주*회*서*파*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25 09:53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80	32모84**	고*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09:5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4	50,000
181	333나36**	유*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6-24 09: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82	333루58**	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19 17:30	대릉~화랑대사거리	50,000
183	334두54**	이*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6-24 17: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4	33부05**	유*철	경기도 구리시	2026-06-26 13: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5	34무89**	이*영	경기도 김포시	2026-06-25 20: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6	34하44**	주*희*아*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6-08 19: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87	352버77**	김*관	경기도 파주시	2026-06-25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8	352부99**	C*O*O*G*A*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6-22 20:4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89	353우93**	김*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6-24 18: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0	354저76**	유*선	세종특별자치시	2026-06-23 09: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1	354저76**	유*선	세종특별자치시	2026-06-23 09: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2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6-06-22 08: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3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6-06-22 08: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4	357가49**	엄*식	충청남도 아산시	2026-06-25 09: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5	35가87**	이*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6-22 08:47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96	35소28**	박*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6-27 13:4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비 앞	50,000
197	369아63**	O*G*N*A*A*N*A*B *Y*R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2 17: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198	372고55**	정*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6-23 16:11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199	374구13**	홍*희	경기도 광주시	2026-06-25 19: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00	376오29**	이*섭	경기도 안양시	2026-06-18 08:42	오목교~양남사거리	50,000
201	378거72**	박*현	경기도 화성시	2026-06-26 10: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2	378누41**	황*연	경기도 고양시	2026-06-25 07:26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03	37거51**	이*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3 14: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04	380마65**	(*)*오*치*	경기도 성남시	2026-06-24 19: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5	382너90**	신*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23 19:0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06	382너90**	신*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25 20:0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07	382너90**	Q*A*M*N*H*A*	인천광역시 중구	2026-06-22 10:37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08	384보76**	(*)*립*스	경기도 시흥시	2026-06-23 22:1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시외방향)	50,000
209	38보26**	방*복	경기도 안양시	2026-06-28 13:3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0	392서50**	윤*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5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25,000
211	395주90**	이*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6-24 09:2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12	39다88**	신*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15 18:28	극제금융로7길(동측)/수정아파트~장미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앞	
213	40767**	김*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20: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14	42도67**	김*달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6-22 07:08	한강대교북단~신용산역	50,000
215	43도78**	박*만	경기도 부천시	2026-06-23 20: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6	45부34**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4 07: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7	46버72**	(*)*림	대전광역시 서구	2026-06-26 16: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8	46버72**	(*)*림	대전광역시 서구	2026-06-26 16: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9	47누20**	목*선	경기도 수원시	2026-06-22 19:1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20	47모23**	황*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2 17:16	중계역	50,000
221	49여60**	최*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6-25 14: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2	50노65**	성*현	경기도 파주시	2026-06-24 11:0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3	50마21**	주*회*의*명*학*학	경기도 김포시	2026-06-22 1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224	50모99**	이*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6-28 10:5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25	52버26**	박*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6-28 14: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6	52저72**	박*준	경기도 양주시	2026-06-23 17: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7	53너04**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09: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8	53라33**	박*현	경기도 안양시	2026-06-27 19: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9	53루38**	김*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3 19: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30	54우74**	김*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6-23 08:2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31	54주73**	소*갈*리*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6-25 19:3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2	57가96**	G*N*U*H*U*B*R* E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18:3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3	57더22**	손*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17 16:01	강남소방서앞	50,000
234	58주16**	최*빈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25 17: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5	59너54**	S*W*H*R*	경상북도 칠곡군	2026-06-23 07: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6	59너54**	S*W*H*R*	경상북도 칠곡군	2026-06-23 07: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7	59누40**	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18 16:12	성산대교~마포구청역사거리	50,000
238	59더57**	K*M*T*N*S*A*R*D *O*O*I*H	경기도 안산시	2026-06-28 11:59	방배동 남태령고개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39	60우85**	지*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7 11:5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사외방향)	50,000
240	62로44**	강*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6-26 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1	50,000
241	64마65**	(*)*우*크	경기도 포천시	2026-06-17 17: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42	64저50**	정*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6-22 11: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3	65여75**	최*희	경상남도 사천시	2026-06-22 14: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4	65여75**	최*희	경상남도 사천시	2026-06-22 14: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45	66여98**	B*T*A*G*L*A*K*U *A*	광주광역시 서구	2026-06-28 07:2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46	67가12**	김*복	경기도 안성시	2026-06-24 20: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47	67마55**	임*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6 08: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48	69가83**	박*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3 07: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49	69노90**	Q*A*Q*W*N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6-26 1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50	69다95**	주*희*앤*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3 20: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51	69마87**	김*욱	경기도 의왕시	2026-06-26 18:06	남현동 남태령고개(사외방향)	50,000
252	69오46**	이*영	경기도 광주시	2026-06-22 20: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53	708우26**	문*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6-22 07:49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7 (봉천동)	60,000
254	70마65**	(*)*르*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6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55	71다12**	(*)*스*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6-26 08: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60,000
256	72마71**	이*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2 08:11	온수골사거리~노원역	60,000
257	73여55**	이*호	경기도 김포시	2026-06-23 07:28	개화교	60,000
258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2 17:56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59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2 11:08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60	801나34**	비*스*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6-04 10: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1	802다96**	주*희*상*이*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7 07:40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262	804수85**	주*희*로*스*	경기도 이천시	2026-06-25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63	810너13**	임*욱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23 19:5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64	810로81**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6-26 18: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265	813소58**	박*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5 18: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6	816머31**	이*하	경기도 고양시	2026-06-24 12:40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267	81보66**	주*회*세*틀	서울특별시 중구	2026-06-26 07:41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268	820다48**	이*성	경기도 시흥시	2026-06-22 20:0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69	82러38**	(*)*리*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6-23 09:3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70	838두60**	J*N*U*	경기도 부천시	2026-06-26 17:2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1	838두85**	T*S*A*O*V*K*L*D *N*U*S*N*O*U*L*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06-26 20: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272	83저27**	조*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6-21 15:30	정의여중교교입구교차로~도봉보건소교차로	50,000
273	83나93**	김*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6-25 09:3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4	84로22**	이*범	경기도 구리시	2026-06-27 11:24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275	84주12**	주*회*말*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6-22 13: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6	85우27**	(*)*바*료*프*비	경기도 광주시	2026-06-22 08:47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77	85조90**	황*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6-19 17:27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278	864부15**	주*회*애*치*스	경기도 김포시	2026-06-15 17: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9	882나83**	주*회*민*래*퍼*	경기도 고양시	2026-06-22 17:0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0	88더69**	주*회*다*수*	경기도 하남시	2026-06-22 08:24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81	88머04**	나*선	경기도 부천시	2026-06-22 07:5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2	88보15**	김*숙	경기도 화성시	2026-06-26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83	89루71**	김*집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4 09:56	공릉역~태릉입구역	50,000
284	89무06**	과*시*	경기도 과천시	2026-06-25 13: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0,000
285	91러10**	조*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26 14:1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86	91무42**	박*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4 0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287	91오41**	전*자	경기도 포천시	2026-06-23 09:45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288	93버08**	김*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6-23 10: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9	93오28**	S*K*L*L*K*H*	경기도 안산시	2026-06-25 07: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0	94다37**	김*형	경기도 광주시	2026-06-22 08: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9	50,000
291	95도69**	을*산*개*주*회*	충청북도 청주시	2026-06-23 17: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2	96보06**	강*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6-26 17: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3	96우01**	주*희*니*바*오	경기도 하남시	2026-06-24 13: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4	98저54**	(*)*드*테*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6-23 08: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60,000
295	경기83사42**	최*철	경기도 부천시	2026-06-26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96	경기87사24**	노*동	경기도 고양시	2026-06-25 19:05	방배동 남태령고개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97	경기87사25**	박*천	경기도 양주시	2026-06-26 07: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8	경기90배26**	유*우	경기도 양주시	2026-06-26 11:3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99	경기96자70**	이*천	경기도 이천시	2026-06-23 15:45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300	경기고양더13**	고*안	경기도 고양시	2026-06-24 08: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40,000
301	서울31바29**	권*형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24 08:1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1 (잠실동)	50,000
302	서울31바35**	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6-26 13: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3	서울31바52**	김*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6-26 1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4	서울31바54**	한*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17 08:55	연희IC~연세대학교	50,000
305	서울31바64**	배*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6 0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06	서울31바67**	곽*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3 13: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42	50,000
307	서울31바88**	문*오	경기도 시흥시	2026-06-22 10:0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08	서울31바95**	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6-22 08: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50,000
309	서울31사24**	최*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6-17 10:48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310	서울31사24**	정*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6-23 08: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50,000
311	서울31사41**	안*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6-25 09:0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2	서울31사92**	장*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6-28 20:4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13	서울31사98**	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3 17:3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14	서울31아36**	조*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18 08:24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315	서울31아69**	고*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2 08:11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316	서울31아81**	조*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4 08:02	YBM빌딩	50,000
317	서울31아84**	설*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3 14: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8	서울31아84**	설*기	인천광역시 서구	2026-06-23 14:0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319	서울31자26**	황*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23 20:0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0	서울31자64**	진*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2 16: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1	서울32바77**	김*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6-22 20: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322	서울32사59**	윤*섭	경기도 안성시	2026-06-24 09:52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323	서울32아30**	손*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6-25 19:04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324	서울32자46**	김*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6-26 17:19	중계역	50,000
325	서울38아35**	김*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3 07:42	강남소방서앞	50,000
326	서울83사90**	박*진	경기도 광주시	2026-06-24 07:33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동	50,000
327	서울84사73**	이*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6-22 09: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69-1	50,000
328	서울85자38**	갈*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6-25 19: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9	서울85자44**	유*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6-22 10:35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330	서울85자75**	김*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6-23 07:26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31	서울87자11**	유*희*아*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6-23 18: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2	서울90바71**	주*희*아*당*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6-23 08: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50,000
333	서울91자78**	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6-24 08:51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로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견제출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시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지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지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종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전문운송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24.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7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2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53부2869	한*욱(서*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6-26 17:01	강동04_암사C(양재대로)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95서5088	유*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6-20 16:13	은평01_북한산로(입곡삼거리) 2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4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80무5991	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4-21 00:46	천호대교(군자로)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서울51누1171	광*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4-23 18:23	송파대로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3	53부2869	한*욱(서*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4-29 08:12	수서IC 3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01모1993	㈜티*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4-30 09:41	인천광역시 전제올사거리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 (Tel 02-2133-3659)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차량번호)	()	생년월일	
	주소	()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부과일자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0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2026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행정국 국제행사지원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국제행사지원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6.7.20.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국제행사지원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국제행사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국제행사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10호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 공람
공고**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및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 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청량리역) ~ 중랑구 신내동(신내역)
- 다. 규모 : 9.36km,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 라. 사업기간 : 2024 ~ 2034년
- 마. 계획수립기관 : 서울특별시

2.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중랑구) 2026. 8. 13.(목) 14:30, 중랑구청 지하1층 대강당
(중랑구 봉화산로 179)
- (동대문구) 2026. 8. 14.(금) 15:00,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동시 진행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요사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견수렴

다. 발표자 : 주재자 및 토론자 4명(개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진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기본계획(안) 공청회 순으로 진행

마. 시민 의견 등 제출방법

- 1)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첨부한 “기본계획(안) 의견제출서” (양식1)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 공람 공고란에 첨부) 게시
- 2) “의견제출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공청회 개최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면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교통정책과
 - 전자우편(12345k@seoul.go.kr), 팩스(02-2133-1048)

3) 제출기간 : 2026. 7. 30.(목) ~ 2026. 8. 18.(화)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람기간 : 공람기간 : 2026. 8. 3.(월) ~ 2026. 9. 1.(화)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52)

중랑구청 맑은환경과(☎02-2094-2453)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37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1) 평가서초안 요약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
공고 >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공
람 공고란에 첨부) 게시

2) 평가서초안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시

라. 주민의견 제출방법

1)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출방법 : 서면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 양식2(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제출서)

3) 제출장소 : 공람장소, 전자우편(sjg0420@seoul.go.kr), 팩스(02-2133-1048), 환경영
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기본계획: ☎02-2133-2245, 전략환경영향평가:
☎02-2133-2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1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2026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직인 등록일자 : 2026. 7. 24.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주택실 주거복지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주거복지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6.7.24.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주거복지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주거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주거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12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나진상가 10·11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07.22.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 ☐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㉔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119,703.10	감) 8,807.2	110,895.9	서고 제1995-53호 ('95.03.10.)	-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9,703.1	감) 8,807.2	110,895.9	10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2.9	52.9	0.0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5.9	증) 520.2	716.1	0.64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9,507.2	감) 9,380.3	110,126.9	99.31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14	20~40	보조간선	230 (37)	용산시장(입구)	마포구 대흥동	-
변경	중로	1	14	20~40	보조간선	230 (0)	용산시장(입구)	마포구 대흥동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기정	소로	2	13	8	국지	40	신계동 42-12	신계동(대2-42)	-
변경	소로	2	13	8	국지	40 (0)	신계동 42-12	신계동(대2-42)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기정	소로	3	37	4	국지	100	신계동(중1-14)	신계동 33-3	-
변경	소로	3	37	4	국지	100 (0)	신계동(중1-14)	신계동 33-3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도로연장에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한강로2가 12-12 일원	-	증) 2,216.3	2,216.3	-	-

나. 유통·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통업무 설비	한강로2가 15 일대	80,015.8 (80,015.8)	- (감) 1,646.2	80,015.8 (78,369.6)	건고 제332호 (1985.7.31.)	-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전자상가 주변지구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기정	전3	2,433.4 (1,487.2)	한강로3가	1천	363.8	-	-
				1-8천	531.1	-	-
				2-1천	160.1	-	-
			신계동	28-33천	432.2	-	-
변경	전3	946.2 (0)	-	-	-	-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면적에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가구 면적임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소계	
합 계			80,797.2	감) 6,246.8	74,550.4	-
변경	㉔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3,085.9	감) 3,085.9	0	구역제척
변경	㉕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3,160.9	감) 3,160.9	0	구역제척
기정	㉖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1,992.9	-	1,992.9	계획결정
기정	㉗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12,894.9	-	12,894.9	계획결정
기정	㉘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	17,414.3	-	17,414.3	계획수립중
기정	㉙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2	7,797.3	-	7,797.3	계획수립중
기정	㉚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3	8,950.6	-	8,950.6	미시행
기정	㉛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5	5,792.4	-	5,792.4	계획결정
기정	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9	3,443.2	-	3,443.2	미시행
기정	㉝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6,335.2	-	6,335.2	계획결정
기정	㉞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1	9,929.6	-	9,929.6	미시행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㉒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9,380.2	9,380.2	-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380.2	-	9,380.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7	-	195.7	2.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184.5	-	9,184.5	97.9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1 외 3필지	-	증) 1,487.2	1,487.2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1 외 3필지	지하3층~지하1층 일부 (비도시계획시설 지하3~지상11층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구간)	-	• 비도시계획시설 부분을 제외한 전체 공간 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 적 결정도 참조
				비도시 계획시설 층 : 지하3층~지하1층 일부, 지상1층~지상11층 수평투영면적 : 875.50㎡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80,015.8 (1,646.2)	-	80,015.8 (1,646.2)	건고-제332호 (85.07.31.)	-

※ () 면적은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면적임

0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 기준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율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응답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응답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공공기여사항 ① 토지 ② 공공지원시설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

0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신설(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특별계획구역4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특별계획구역 4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3,085.9	3,085.9	-	-
신설	②	특별계획구역 6	한강로3가 1-1 일대	-	증) 3,160.9	3,160.9	-	-

■ 특별계획구역4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대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구분		계획지침	비고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결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 토지 - 공공자원시설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
기타	- 주거비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준공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1 일원	-
면적		• 3,160.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160.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공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 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구분		계획지침	비고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구분			계획지침	비고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기여부지 ② 공공지원시설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타	- 주거비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준공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8호(2025.11.27.) 결정을 따름

0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기재생략)

③ 나진10·11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01.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대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95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20m 이하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결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구분			계획지침	비고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대상지 서측 원효로49길, 동측 새창로, 남측 청파로는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조성 - 대상지 북측 새창로50길은 차량부속형 전면공지 3m 조성	-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table><tr><td>새창로 1개소</td><td> -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td></tr><tr><td>청파로 1개소</td><td>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td></tr><tr><td>이문부 1개소</td><td>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td></tr></table>	새창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청파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문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새창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청파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문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33.7% (환산부지 : 1,038.6㎡)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도로) : 3.76억원 - 도로 : 8㎡ (신계동 28-36) -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나진산업(주) 보유토지 기부채납 ② 공공시설 : 335.4억원(환산부지 : 713.52㎡) - 제공위치 : 한강로3가 1 와 3필지 - 제공내용 : 공영주차장, 공공지원시설 - 제공연면적 : 9,668.41㎡ ③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51.2억원(환산부지 : 317.13㎡) -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투입 : 149억원(10.28%) 중 토지가치상승분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1)	-						

구분	계획지침			비고																			
	<table> <tr> <th colspan="2">구분</th> <th>비율</th> <th>금액</th> </tr> <tr> <td colspan="2">자치구</td> <td>30.0%</td> <td>15.4억</td> </tr> <tr> <td rowspan="2">서울시</td> <td>장기미집행</td> <td>10.0%</td> <td>5.1억</td> </tr> <tr> <td>균형발전재원</td> <td>60.0%</td> <td>30.7억</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100.0%</td> <td>51.2억</td> </tr> </table>			구분		비율	금액	자치구		30.0%	15.4억	서울시	장기미집행	10.0%	5.1억	균형발전재원	60.0%	30.7억	합계		100.0%	51.2억	
구분		비율	금액																				
자치구		30.0%	15.4억																				
서울시	장기미집행	10.0%	5.1억																				
	균형발전재원	60.0%	30.7억																				
합계		100.0%	51.2억																				
	1) 감정평가(2026.07) 시행결과 토지가치상승분(39,036,635,000원) 범위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기타	- 주거비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준공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1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해야하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01747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동 100*호	수도요금	2023.6납기 등 17납기	18회	449,170원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불가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외 2필지 제10동 제100*호	황정아	700505-2***** (등기번호115211302757 6 폐문부재) (등기번호115211200732 8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100*	449,170원	2026. 8. 14.이후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아름(☎02-3146-2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21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도봉구 일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 일원
- 내용

사업명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비고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강북구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역(1호선) -연장: 3.940km	-101정거장: 1km605.0 -102정거장: 2km679.0 -103정거장: 3km860.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철도사업
- 명칭 :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명 : 서울특별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 사업기간

- 착공일 : 2025. 9.
- 준공예정일 : 2032. 4.

5. 열람도서

-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조서, 철도부지를 표시한 도면 등

6.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02-6438-252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6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연번	청문 대상 비영리민간단체명 및 주소
1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서울시회 (대표자 이상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도원빌딩 5층 (청파동1가)
2	(사)법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동대문지부(대표자 김형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4층(장안동,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구민회관 4
3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서울지부 (대표자 하갑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89 세종로지하주차장 지하1층 근린시설13호 (세종로)
4	(사)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자 김상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27 탑스벤처타워 607호 (서초동)
5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대표자 객재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76 남영빌딩 502호 (대림동)
6	(사)한국행정관리협회 (대표자 원용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1길 13 대성빌딩 5층 (도봉동)
7	(사)희망교육 (대표자 이정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158 영광메디컬센터
8	4.19혁명희망연대 (대표자 송효익)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912호 (한남동)

연번	청문 대상 비영리민단체명 및 주소
9	CSR포럼 (대표자 김도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조선일보사 구관 1층 (태평로1가)
10	교육개혁실천시민연대 (대표자 이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9 용마빌딩 3층 304호 (신문로1가)
11	구로민중의집 (대표자 박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12 은하수빌딩 3층 (오류동)
12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지구협의회 (대표자 정홍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 대한적십자사 송파지구협의회 (마천동)
13	드림메이커(DREAM MAKER) (대표자 주상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59 2층 421호 (창천동)
14	민중의집 (대표자 정경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1층 (망원동)
15	살기좋은중랑만들기협의회 (대표자 김태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53 308호 (신내동)
16	서울시민연대 (대표자 전상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4 402호 (대흥동)
17	선진화시민행동 (대표자 서경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1길 22 원인통상(주) (마천동)
18	송파시민연대 (대표자 김정수, 김흥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84 서원빌딩 303호 (석촌동)
19	실향민중구협의회 (대표자 이문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을지로6가)
20	울타리봉사단 (대표자 배동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3 2층 (신월동)
21	위례시민연대 (대표자 임근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23 1층 (문정동)

연번	청문 대상 비영리민단체명 및 주소
22	작은사랑 (대표자 박승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31 (목동)
23	전국케어복지연합회 (대표자 김광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0 4층 (대림동)
24	전시사관학교 전우회 (대표자 김우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재향군인회관 5층 (서초동)
25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이끌림 (대표자 부진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4 (사근동)
26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자 주동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1 301호 (영등포동1가, 창방아파트)
27	총효예 실천운동본부 영등포구지회 (대표자 최화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804호 (당산동1가)
28	콩반짜나누기운동 (대표자 서유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10 경희대 밝은사회 연구소 (권농동)
29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서울지부 (대표자 이영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5-1 5층 (당주동)
30	통일동지회 (대표자 박만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402동 503호 (세곡동, 세곡리엔파크4단지)
31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강북구지부 (대표자 차승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 (수유동)
32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여성협의회 (대표자 유경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201 호(신대방동)
33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도협의회 (대표자 엄기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204호 (신대방동)

연번	청문 대상 비영리민단체명 및 주소
34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청년협의회 (대표자 남궁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206호 (신대방동)
3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희생자 서울유족회 (대표자 이상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6길 15 202호, (방배동)
36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정세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삼전동)
37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대표자 윤승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67 305호 (외룡동)
38	한빛만나회 (대표자 이명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15 3 (정동)
39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서울연합회 (대표자 김찬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8-2 2층 (한강로1가)
40	흰돌회 (대표자 조규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 (응암동)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 미충족 및 소재지 불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시민협력과	담당자	비영리민간단체 담당 주무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전화번호	02-2133-6329
	일시	2026년 9월 1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소	서울시청 본관 7층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성명	이 ○ 속			

※ 위 지정된 시간 내 청문 장소에 출석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문을 실시합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청문장 참석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① 당사자 신분증, ② 소명 관련 증거자료 (예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최근 총회 회의록, 총회 사진,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2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멜라루카 인터내셔널 코리아(주)	서울 제469호	주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6 (대치동)	소재지 (‘26.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26 (논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6 (대치동)
2	광진지사	서울 후 제514호	차증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프라임프라자 상가동 2층 217호 (구의동)	상호 (‘26.06.17.)	케이지씨 판매 광진지사	광진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2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26. 7. 20.字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신설
2. 직인 등록일자 : 2026. 7. 30.
3.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교통실 생활교통안전과	생활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생활안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3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7.30. ~ 2026.8.13.(14일간)

2. 송달대상 및 처분 개요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청안주택 (주) (조성제)	건축 공사업 01-55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2층 9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종료일 (2026. 4. 13.)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6.8.20.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35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법인명: 이*림*선 주식회사 (※채납자명: 이*옥)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 ***호(마두동)
- 서류의 명칭: 채권압류통지서(제3채무자용)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위의 서류를 귀 법인에게 우편 및 교부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02-2133-3488)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4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을 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6. 7. 2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6. 7. 2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 26.7.19.	조직개편
	어르신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복지실 고령사회대응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고령사회대응과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 26.7.20.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고령사회대응과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고령사회대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고령사회대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6-8호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 (2026.4.24.)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이상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 (소계)								
본인	단독주택 (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대지 63.00㎡ 건물 23.14㎡	572,925	0	0	572,925		
			130,000	0	0	130,000		
배우자	복합건물 (주택 + 상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대지 16.18㎡ 건물 51.24㎡	442,925	0	0	442,925		

(단위 : 천원)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10,580	0	560	10,020	
본인	자동차 2017년식 올뉴말리부 1.5터보 배기량(1,500cc)	8,060	0	240	7,82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드카니발(디젤, 11인승) 배기량(2,902cc)	2,520	0	320	2,200	
▶ 예금(소계)		332,067	5,348	4,693	332,722	
본인	DB손해보험(주) 17,211, KB라이프생명보험 2,498, 교보생명보험 127, 국민은행 35,158(3,739 증가), 농협중앙회 289(282 감소), 대신증권 90, 새마을금고중앙회 3,4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 신한은행 533(36 감소), 씨티은행 13, 우리은행 2,609(1,233 감소), 중소기업은행 45, 한화손해보험 9,668, 현대해상화재보험 2,129	71,583	3,739	1,551	73,771	가액변동
배우자	(주)KB손해보험 6,497, DB손해보험(주) 1,816, KB라이프생명보험 1,659, 국민은행 21,426(2,342 감소), 농협은행 441(8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9,315, 삼성생명보험 67,294, 새마을금고중앙회 27,666, 신한은행 6, 에이비엘생명보험 9,446, 토스뱅크(주) 9,560(80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4,0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3,414	204,073	1,609	3,142	202,540	가액변동
모	국민은행 4,725, 새마을금고중앙회 10,473	15,198	0	0	15,198	
장남	DB손해보험(주) 24, NH투자증권 19,003, 국민은행 116, 새마을금고중앙회 3,493, 에이비엘생명보험 759,	41,213	0	0	41,213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030, 중소기업은행 11,120, 한화손해보험 1,835, 현대해상화재보험 2,833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본인		새마을금고중앙회 18(1,240 감소)	1,258	0	1,240	18		가액변동
▶ 증권(소계)			1,917	0	68	1,849		
본인	상장주식	씨젠 10주, 와이오엠 1주	239	0	0	239		가액변동
장남	상장주식	SNDL 709주	1,678	0	68	1,610		
▶ 채무(소계)			487,167	0	0	487,167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30,000	130,000	0	0	130,000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은행 293,000, 삼성생명보험 59,167, 흥국화재해상보험(주) 5,000	357,167	0	0	357,167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431,580	5,348	6,561	430,367	중간액: -1,213천원 가액변동: -628천원)

○ 퇴직 (2026.4.30.)

소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박진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120,000	0	0	120,000		
본인	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번지 40.00㎡	51,000	0	0	51,000		
본인	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80-50번지 50.00㎡	69,000	0	0	69,000		
▶ 건물(소계)								
			1,965,962	0	0	1,965,962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건물 84.97㎡	1,095,000	0	0	1,095,000		
본인	상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건물 43.12㎡	870,962	0	0	870,962		
▶ 예금(소계)								
			330,557	65,129	60,156	335,530		
본인		(주)KEB하나은행 35,682(41,259 감소), 삼성생명보험 60,52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22, 우리은행 2,638(6,308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편크 10	147,540	9,860	57,427	99,973	26.4.30. 기준 계좌별 조회 내역 반영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98,515(23,705 증가), KB증권 936, 국민은행 887, 농협생명보험 58,658, 농협은행 43,164,	183,017	26,434	2,729	206,722		

		신영증권 16, 중소기업은행 10, 키움증권 5, 한국투자증권 2,529, 현대해상화재보험 2,002							
장녀		(주)KEB하나은행 28,796(28,796 증가), NH투자증권 39(39 증가)	0	28,835	0	28,835			
▶ 증권(소계)			2,617,000	4,470,725	0	7,087,725			
본인	비상장주식	(주)진성그룹 13,700주, 주식회사 풍익개발 15,700주	2,256,768	3,383,756	0	5,640,524	26.4.30. 기준 계좌별 조회 내역 반영		
배우자	상장주식	코리안리 795주, 휴니드테크놀로지스보통주 21주	9,334	644	0	9,978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풍익개발 2,000주	245,800	282	0	246,082	26.4.30. 기준 계좌별 조회 내역 반영		
장녀	비상장주식	(주)진성그룹 4,400주	105,098	1,086,043	0	1,191,141			
▶ 채무(소계)			311,976	0	879	311,097			
본인	금융채무	우리은행 241,097(879 감소)	241,976	0	879	241,097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건물 임대보증금	70,000	0	0	7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4,721,543	4,535,854	59,277	9,198,120	증감액: 4,476,577천원 (가액변동: 4,470,725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김연옥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본인	도로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598-3번지 20.00㎡	87	0	0	36,526			
본인	도로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598-8번지 26.00㎡	307	0	0	307			
배우자	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2-378번지 11.00㎡	10,773	0	0	10,773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108번지 1,149.00㎡	17,810	0	0	17,810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산 6-1번지 2,521.30㎡	4,638	0	0	4,638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산 99번지 830.00㎡	1,279	0	0	1,279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산 141-1번지 233.80㎡	283	0	0	283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산 144-17번지 62.00㎡	162	0	0	162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 45-1번지 277.00㎡	55	0	0	55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 45번지 1,310.00㎡	1,132	0	0	1,132	
▶ 건물(소계)			673,143	0	0	673,143	
배우자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대지 164.00㎡ 건물 265.40㎡	410,000	0	0	410,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지 67.30㎡ 건물 67.30㎡	263,143	0	0	263,143	
▶ 예금(소계)			1,262,975	50,095	17,603	1,295,467	
본인		국민은행 1,359(498 증가), 농협중앙회 33,781(878 증가), 삼성생명보험 28,468(46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170,582(7,93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9(5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1,320, 우리은행 756(1 감소), 중소기업은행 23, 한양증권 3,597(211 증가), 한화손해보험 5,265	265,281	10,231	232	275,280	지속
		(주)KEB하나은행 94, DB손해보험(주) 7,000(1,080 증가), IBK연금보험주식회사 30,000, 교보생명보험 15,000(2,000 증가), 농협손해보험 15,200(400 증가), 농협은행 6,998(5,941 증가), 동양생명보험 21,000(4,000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156,000(6,000 증가), 삼성생명보험 461,798(1,069 증가),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8,367(127 증가), 신한은행 277,283(1,891 증가), 우리은행 332(4 감소),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6,180, 한화투자증권 1,697(11 감소), 흥국생명보험 3,238	997,694	39,864	17,371	1,020,187	
배우자							

▶ 증권(소계)		5,670	1,712	0	7,382	
본인	상장주식	5,670	1,712	0	7,382	저축
▶ 채무(소계)		213,000	0	20,000	193,000	
배우자	금융채무	105,000	0	20,000	8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78,000	0	0	78,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30,000	0	0	30,000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500,000	0	0	500,000	
배우자	출자	500,000	0	0	50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265,314	51,807	-2,397	2,319,518	증감액: 54,204천원 (가액변동: 1,712천원)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6-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지하공공보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0호(2020.09.17.)로 도시관리계획(소공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600호(2025.07.09.)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지하공공보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13-1번지 외 2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지하공공보도) 설치 사업
- 2) 명 칭 :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지하공공보도) 보행환경개선 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4,392.5㎡
- 규 모 : 일반도로 1,203.5㎡, 광장(일반도로) 1,541.0㎡,
보행자전용도로(특수도로) 1,672.3㎡, 지하공공보도 278.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화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이경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성 명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이사 최석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9.10.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1	중구 태평로 2가	113-1	도	18,122.5	1,362.50	-	국토교통부	-	-	-	-
2		25-1	도	6.6	1.50	-	서울특별시	-	-	-	-
3		24-1	도	6.6	5.60	-	국토교통부	-	-	-	-
4		24-4	도	4.6	3.00	-	국토교통부	-	-	-	-
5		17	도	461.0	97.80	-	서울특별시	-	-	-	-
6		8	도	2,300.9	6.80	-	서울특별시	-	-	-	-
7		26	도	316.7	316.70	-	중구	-	-	-	-
8		43-1	도	98.4	98.40	-	중구	-	-	-	-
9		27-8	도	5.4	5.40	-	중구	-	-	-	-
10		43	대	3,218.4	84.20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화생명 태평로 사옥 (3지구)
근저당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 17 (합정동)	주식회사 뮤직카우		
근저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11		32-3	도	142.4	139.70	-	중구	-	-	-	-
12		43-2	도	591.0	471.40	-	중구	-	-	-	-
13	중구 소공동	105	도	252.0	3.60	-	서울특별시	-	-	-	-
14		106-25	대	5.6	0.40	-	기획재정부	-	-	-	-
15		106-2	도	25.4	0.30	-	국토교통부	-	-	-	-
16		17-1	도	797.5	520.20	-	중구	-	-	-	-
17		118	도	259.2	90.10	-	중구	-	-	-	-
18		111-24	도	112.1	110.00	-	서울특별시	-	-	-	-
19		111-23	도	389.8	211.50	-	서울특별시	-	-	-	-
20		110-2	도	221.1	207.70	-	중구	-	-	-	-
21		111-33	도	15.7	10.80	-	국토교통부	-	-	-	-
22		110-1	대	915.1	36.40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호텔앤드 리조트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공동 한화빌딩 (2지구)
23		110	대	3,115.0	482.90	서울시 영등포구	한화호텔앤드	근저당	서울시 중구 통일로	농협은행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63로 50(여의도동)	리조트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120 (충정로 1가)	주식회사	
24		110-3	도	1,116.2	120.10	-	서울특별시	-	-	-	-
25		87-15	도	4,094.9	5.50	-	서울특별시	-	-	-	-
계				36,594.1	4,392.5	-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											비고	
				용도	구조	층수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전체 연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상	지하					구분	주소	성명		
1	중구 태평로 2가	43	대	업무, 근린생활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	23	8	1,543.49 (47.94)	30,479.1 4 (946.73)	50,011.0 4	한화생명 보험 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화생명 태평로 사옥 (3지구)	
												근저당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 17 (합정동)	주식회사 뮤직카우		
												근저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중구 소공동	110-1	대	업무, 관람집회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	19	8	1,475.53 (47.37)	21,258.0 3 (682.44)	48,566.9 8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공동 한화빌딩 (2지구)	
3		110	대	근린생활 , 운동시설 , 주차							한화생명 보험 주식회사	-	-	-		

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02-3396-5753)에 비치

◆ 중구고시 제2026-3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2009.5.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중구고시 제2015-72호(2015.8.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중구고시 제14호(2024.2.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517호(2025.9.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명동문화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90-10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후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2,11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 주식회사 대표 김창휘
- 2)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15-4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31. 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사.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4층 공원녹지과(☎02-3396-5852)

아.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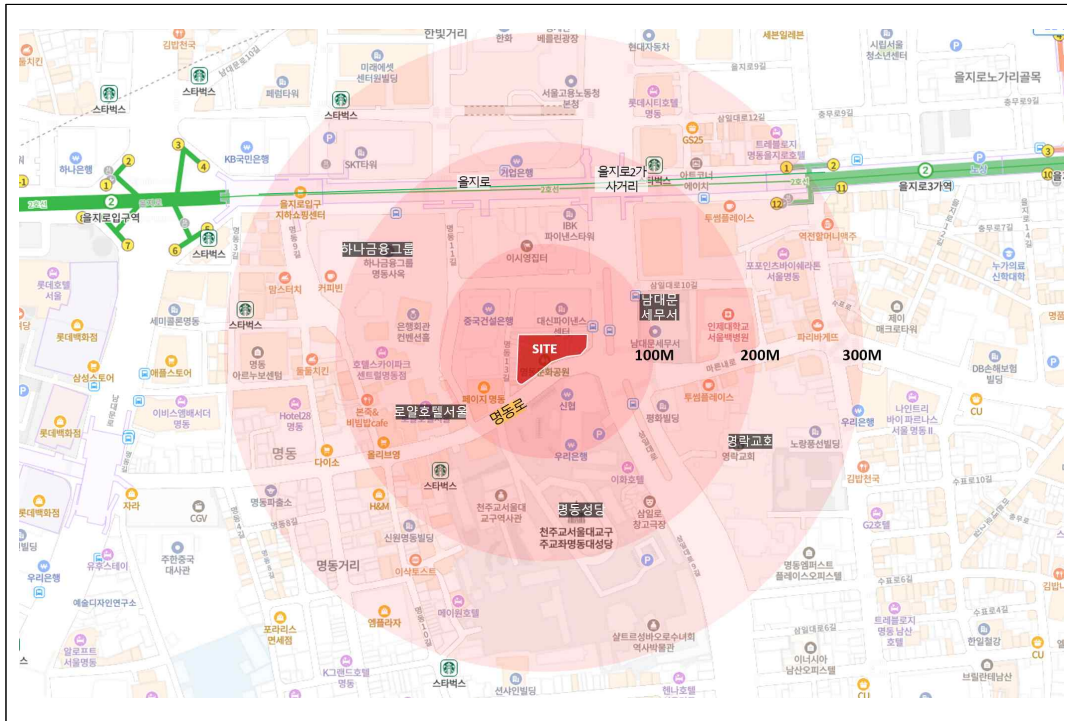
구분	연번	권리 소재지	토지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층수(지 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 용	1	저동1가 90-7	대	25.1	25.1	"	"	엄**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길**, ***동 ***호	점포연와 조도단점	1/0(4)	91.97	엄**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길**, ***동 ***호	근저당권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저동1가 103-7	대	38.3	38.3	"	"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임류	**세무서장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삼일로*길 **				
3	저동1가 103-8	대	23.8	23.8	"	"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영업목적 있음	1/1(1/2)	69.42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임류	서울시 중구					
														임류	서울시 중구					
														임류	도봉 세무서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을지로**				
4	저동1가 79-9	대	3.6	3.6	"	"	변**	서울시 중구 삼일로 *길 ***(저동1가)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삼일로 *길 ***(저동1가)			
														임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수 용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성명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관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 우	5	저동1가 90-11	대	15.9		"	"	기획재정부											
	6	저동1가 91-3	대	11.1		"	"	기획재정부											
	7	저동1가 103-4	대	4.6		"	"	기획재정부											
	8	저동1가 39-3	도로	1,541.6		대지	중심 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9	저동1가 43-5	대	42.9		대지	중심 상업 지역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79.33	1/1(0/4)	점포,사무 실/철근콘 크리트	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길*, ***호				
	10	저동1가 79-5	대	48.6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79.14	1/1(1/2)	근생/목조 외출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1	저동1가 79-8	대	3.7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2	저동1가 91-2	대	141.8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3	저동1가 101-2	대	0.3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19.01	1/1(1/2)	주방/목조 외출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01-2, 102 102-1지상 건물	
	14	저동1가 102	대	48.6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형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층수(지 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지목	공부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저동1가 102-1	대	7.9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6	저동1가 103-1	대	30.7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영업/연와 조	1/0(2)	56.2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7	저동1가 103-3	대	32.1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근생/무조 아연줄	1/0(3)	89.25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8	저동1가 103-6	대	39.0	대지	중심 상업 지역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근생/무조 외줄	1/0(2)	50.77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9	저동1가 90-2	대	79.0	"	"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사무실/연 외조도단점	1/0(3)	141.49		케이***** (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20	저동1가 103-12	도로	317.4	"	"	서울특별시 중구											
21	저동1가 89-1	도	2.3	공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22	저동1가 110	공	8.7	"	"	서울특별시 중구											
23	저동1가 111	공	32.6	"	"	서울특별시 중구											
24	저동1가 112	공	248.0	"	"	서울특별시 중구											
25	저동1가 113	공	75.3	"	"	서울특별시 중구											
26	저동1가 119	공	50.1	"	"	서울특별시 중구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토				지		건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명	성명	소유자	동수/ 층수(지 하지상)	연면적	성명	소유자	권리의 종류	성명	권리자	
				공부상 면적												
	27	저동1가 120	공	500.6	500.6	"	서울특별시 중구									
	28	저동1가 121	공	540.7	540.7	"	서울특별시 중구									

□ 사업 위치도



◆ 영등포구고시 제2026-120호

사도 허가 취소(폐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92-1 및 신길동 4797-1, 신길동 4787-1 번지 사도에 대하여 「사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폐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허가취소(폐지) 취지

- 영등포구 신길동 4792-1~4787-1번지간 사도개설자로부터 사도허가 취소요청에 따라 사도를 허가취소(폐지)하는 사항임

2. 허가취소(폐지) 조서

- 조서

구분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 허가일자
폐지	3 ~ 5	35	신길동 4792-1	신길동 4787-1	'59.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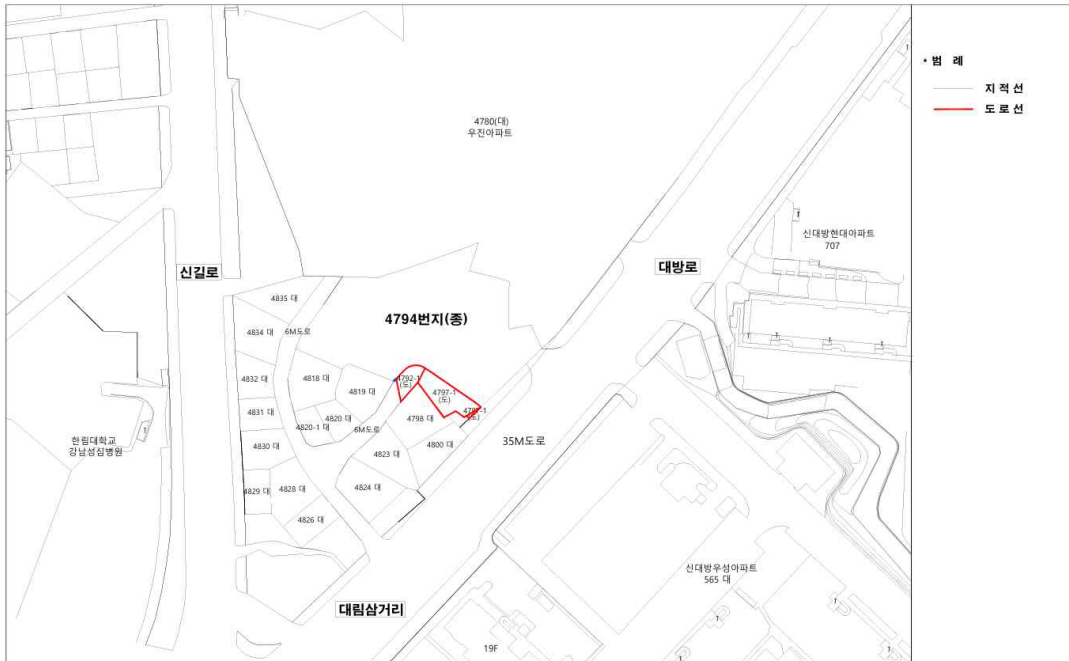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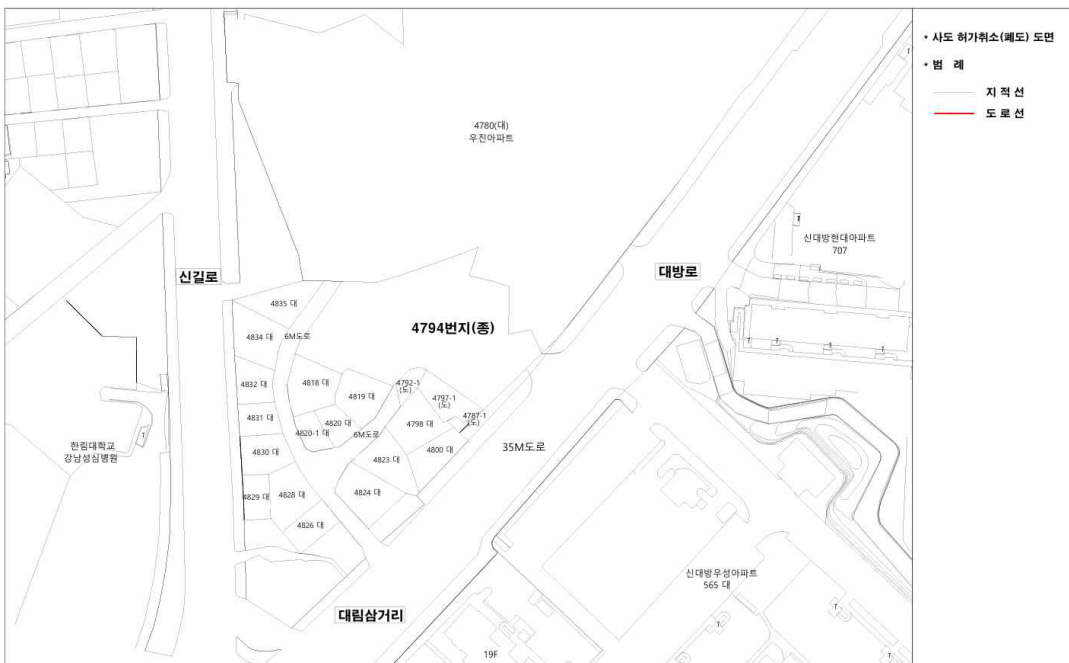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관계도면
○ 기정



○ 변경



◆ 서초구고시 제2026-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및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87호(1981.7.30.)로 최초 결정된 지하철2,4호선 사당역일원 도시계획시설(철도)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7호(2025.4.24.)로 최초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변경 조서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시 철도	지하철역사 (사당역)	동작구 사당동 581-1부근	4,700	증) 57	4,757	' 81.7.30 (서고 제2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 4,757㎡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철도 면적 변경 - 4,700㎡ → 4,757㎡ 증) 57㎡ ※당초 면적의 1.01% 증가	지하철 정거장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2,4호선 사당역 12번 출입구 에 스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면적 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A	26.6~5 0.3	주간선 도 로	5,165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사당동 산29-3	서울시고시 제2025-227호 (25.4.24.)	-
변경	대로	3	A	26.6~5 0.3	주간선 도 로	5,165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사당동 산29-3	서울시고시 제2025-227호 (25.4.24.)	도시계획시설 철도 중복결정 4,75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2, 4호선 사당역 도시계획시설(철도)와 중 복결정 7,224㎡	사당역12번 출입구에 대하여 관리청(서울교통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로와 철도시설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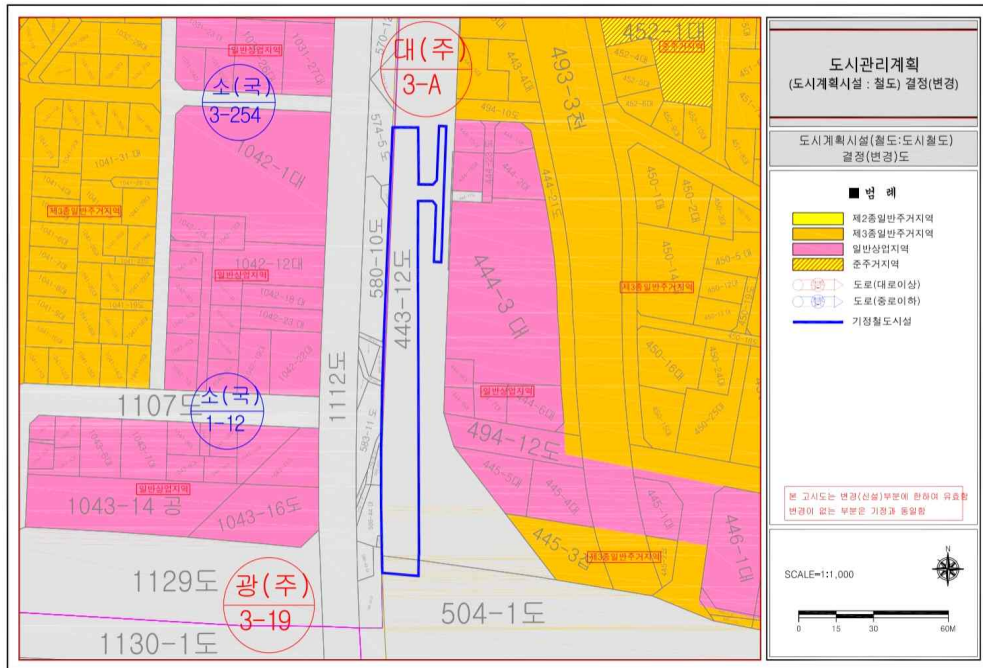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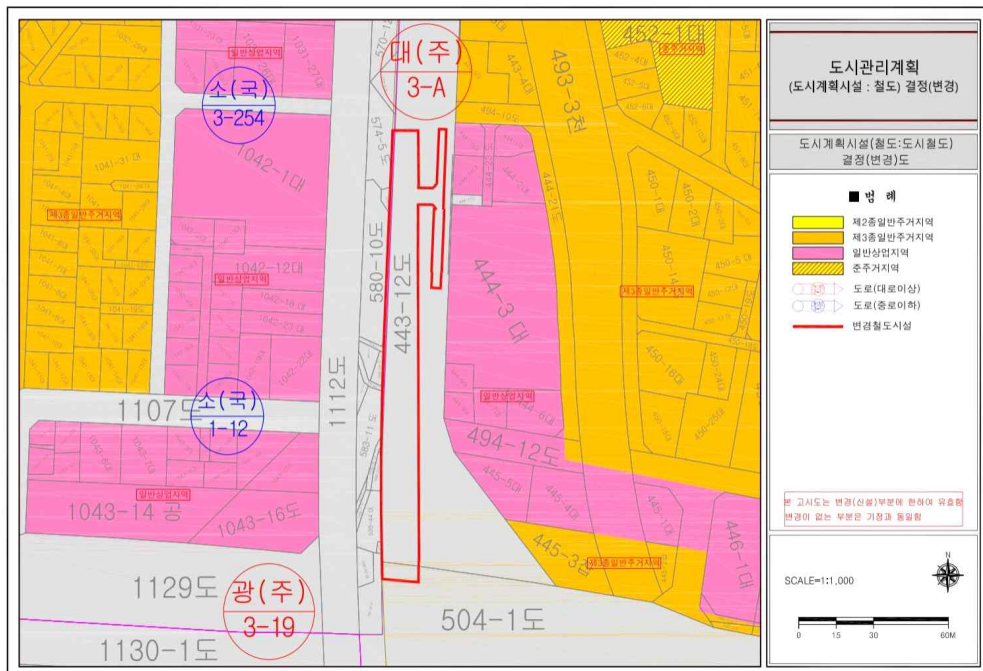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구 고

◆ 용산구공고 제2026-10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94호(2025.5.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및 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1(가칭) 등 공원 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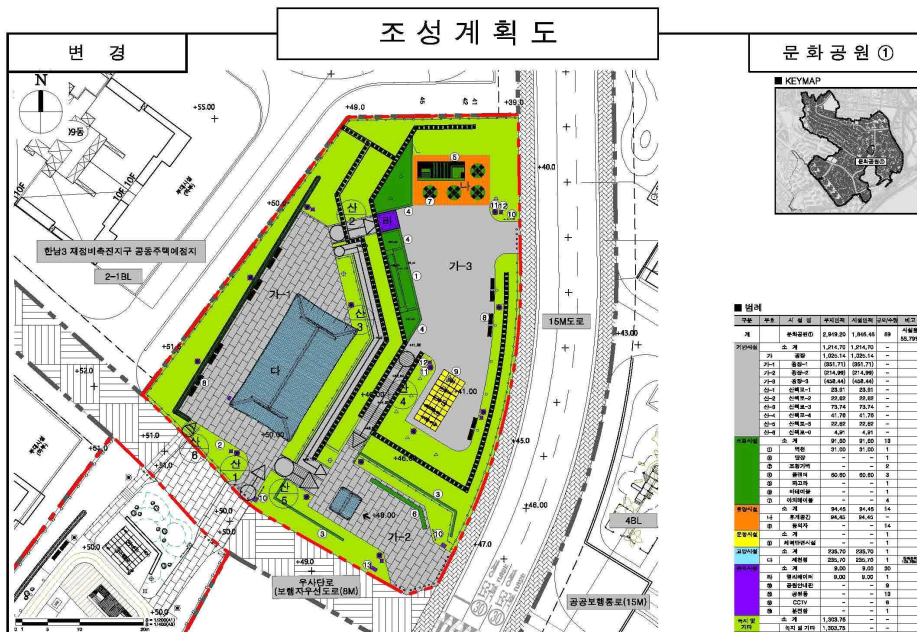
2026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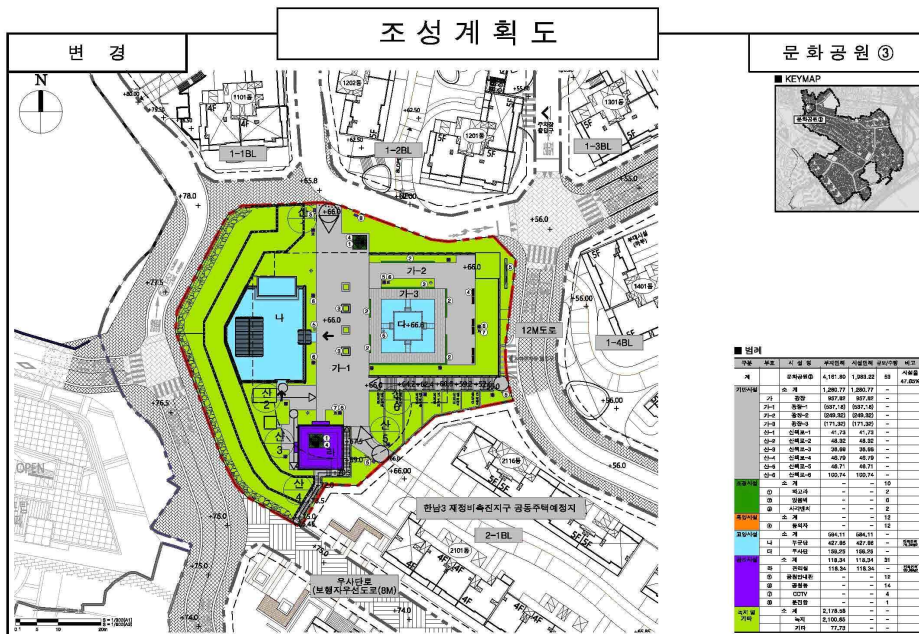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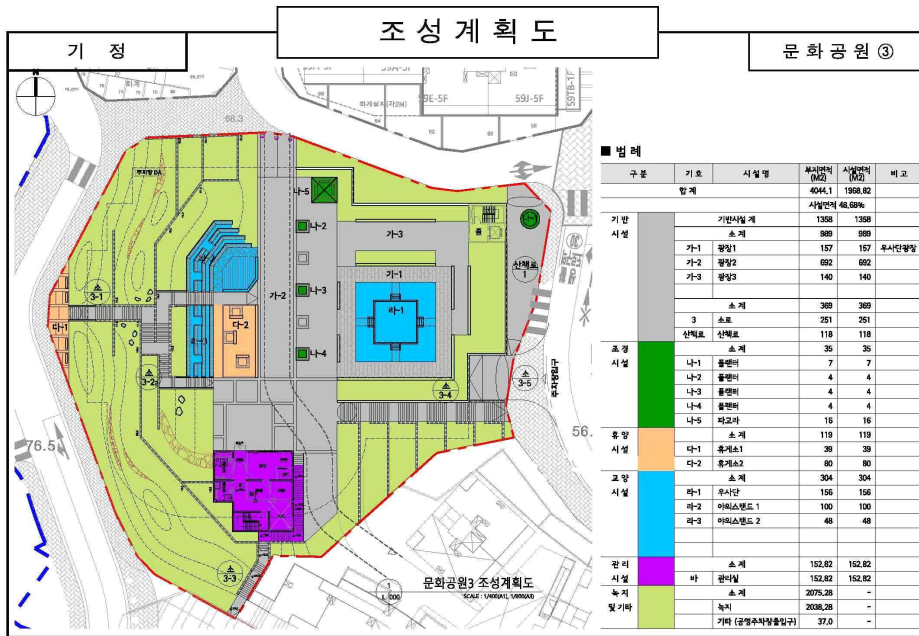
용 산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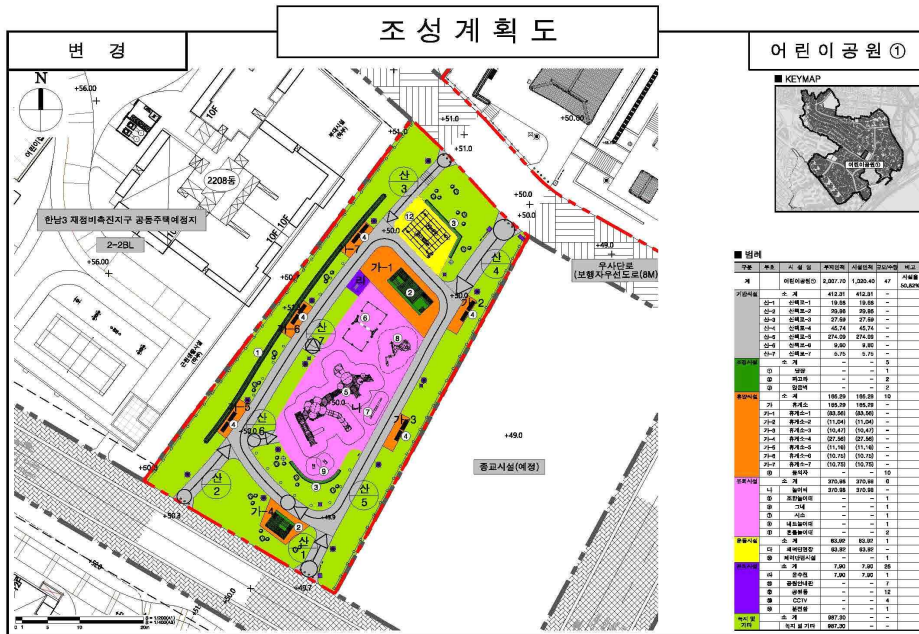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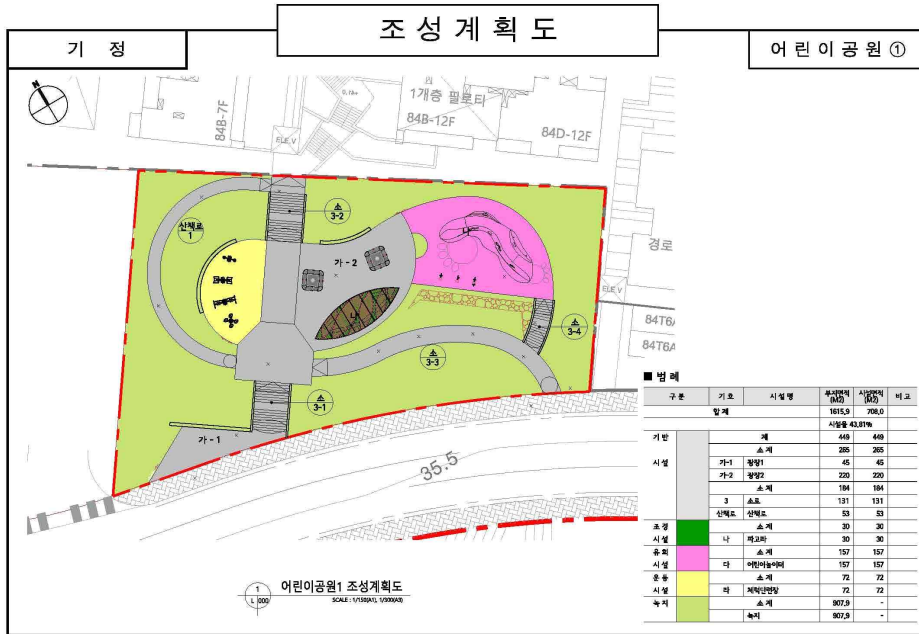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문화공원1(가칭) 등 6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20-171 등 6개소
3. 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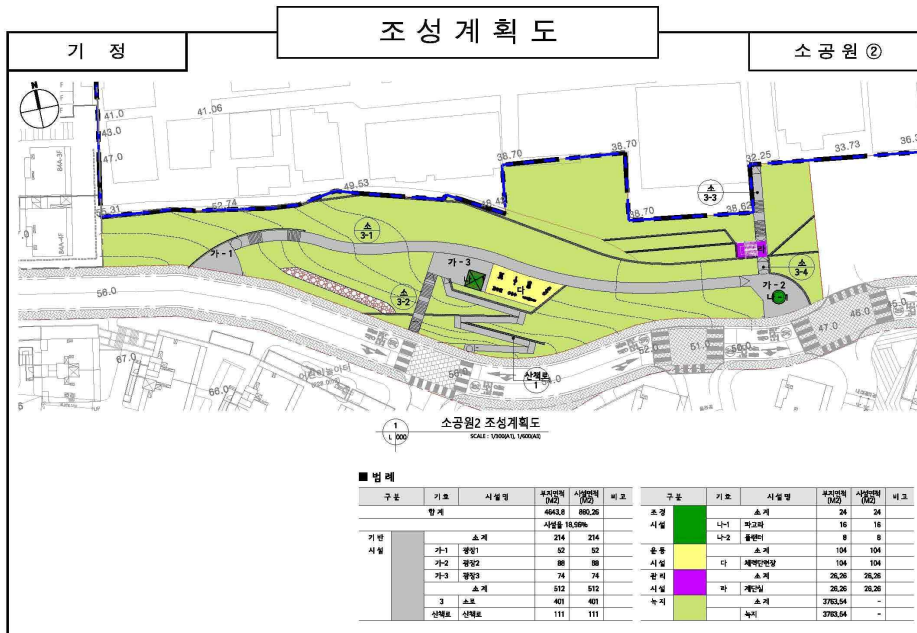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일(최초)	비 고
1	문화공원1(가칭)	한남동 620-171일대	2,949.2	서고223호(2017.6.29)	변경
2	문화공원3(가칭)	한남동 732-126일대	4,161.8	서고223호(2017.6.29)	변경
3	어린이공원1(가칭)	보광동 265-122일대	2,007.7	서고387호(2009.10.1)	변경
4	소공원1(가칭)	한남동 647-21일대	6,583.7	서고294호(2025.5.29)	신설
5	소공원2(가칭)	한남동 766-2일대	3,634.2	서고387호(2009.10.1)	변경
6	소공원3(가칭)	한남동 568-105일대	3,041.7	서고223호(2017.6.29)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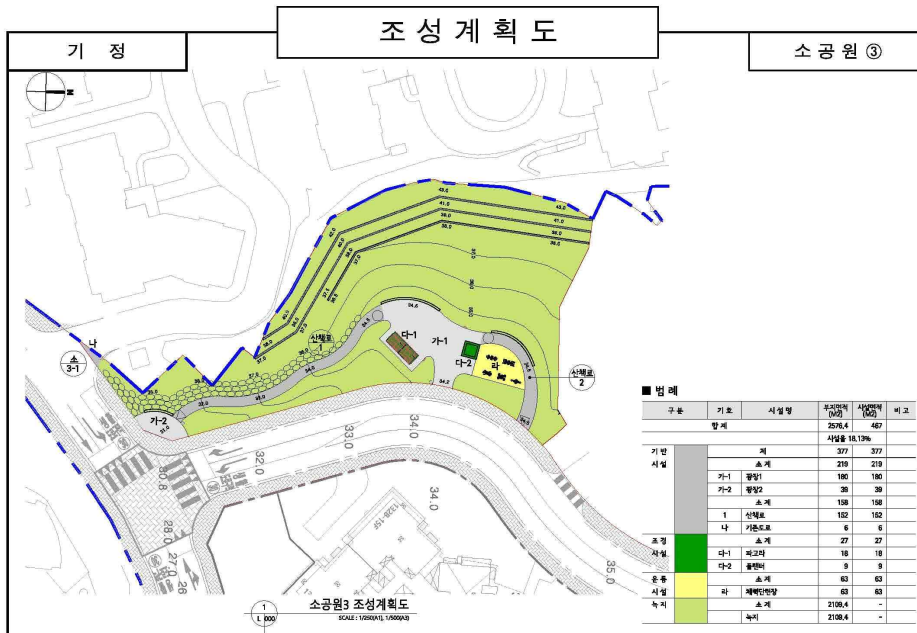
4. 공원조성계획(안):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5. 관계도서 :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 (☎ 02-2199-7593)
8.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①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620-171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6,133.80	2,685.27	1	413.27	1,328.12	22	2,949.20	1,645.45	1	109.75	109.75	59	갑)3,148.6㎡	
기반시설	소계	1,861.00	1,861.00				12	1,214.70	1,214.70				-	증)646.3㎡	
	광장	863.00	863.00				-	1,025.14	1,025.14				-	증)162.14㎡	
	도로	998.00	998.00				12	189.56	189.56				-	갑)808.44㎡	
조경시설		-	-				-	91.60	91.60				13	증)91.60㎡	
휴양시설		240.00	240.00				9	94.45	94.45				14	갑)145.55㎡	
유흥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1	-	
교양시설		547.27	547.27	1	413.27	1,328.12	1	235.70	235.70	1	109.75	109.75	1	갑)311.57㎡	
편익시설		-	-				-	-	-				-	-	
관리시설		37.00	37.00					9.00	9.00				30	갑)28.0㎡	
복지및기타		3,448.53	-				-	1,303.75	-					갑)2,144.78㎡	
시설율 (단위 -%)		(2,685.27 / 6,133.8) × 100 = 43.78%						(1,645.45 / 2,949.20) × 100 = 55.79%						증)12.01%	
건폐율 (단위 20%)		(413.27 / 6,133.8) × 100 = 6.74%						(109.75 / 2,949.20) × 100 = 3.72%						갑)3.02%	

2.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국유지 비율 (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국유지 비율 (가)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6,133.8	2,685.27		3층	413.27	1,328.12	13			2,949.20	1,645.45	1층	109.75	109.75	59	시설면적: 합계 1,039.82㎡	
	소계		1,861.00	1,861.00					12			1,209.79	1,214.70				-	감 651.21㎡	
광장	가		863.00	863.00					12	가	부지내	1,025.14	1,025.14				-		
	가-1		362.00	362.00					5	가-1	"	351.71	351.71				-		
	가-2		93.00	93.00					2	가-2	"	214.99	214.99				-		
	가-3		15.00	15.00					-	가-3	"	458.44	458.44				-		
	가-4		318.00	318.00					3										
기타시설	가-5		75.00	75.00					2										
	소로-1		196.00	196.00					-										
	소로-2		54.00	54.00					-										
	소로-3		17.00	17.00					-										
	소로-4		67.00	67.00					-										
	소로-5		150.00	150.00					-										
	소로-6		20.00	20.00					-										
	소로-7		290.00	290.00					-										
	산책로1		204.00	204.00					-	산-1	"	23.91	23.91				-		
										산-2	"	22.62	22.62				-		
									산-3	"	73.74	73.74				-			

구분	본 경 전						본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용도상 물품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용도상 물품 (기)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산-4	"	41.76	41.76					-	
										산-5	"	22.62	22.62					-	
										산-6	"	4.91	4.91					-	
	소계											91.60	91.60					13	증91.60㎡
	벽천								①	부지내		31.00	31.00					1	
	담장								②	"		-	-					1	
	조형 기벽								③	"		-	-					2	
	폴린더								④	"		60.60	60.60					3	
	파고라								⑤	"		-	-					1	
	바 테이블								⑥	"		-	-					1	
휴양시설	아외 테이블								⑦	"		-	-					4	
	소계			240.00	240.00							94.45	94.45					14	감)45.55㎡
	전망대	나-1		21.00	21.00														
	휴게소	나-2		13.00	13.00					나	부지내		94.45	94.45				-	

구	분	변경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규모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위치		부호	시설면적 (㎡)	부지면적 (㎡)	구조	후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공공시설	나-3			78.00	78.00							2									-	
		나-4			128.00	128.00						1									-	
	등의자												⑧			-					14	
	소계															-					1	
교양시설	다-1			413.27	413.27	철근콘크리트	3층	413.27	1,328.12													
		다-2			134.00	134.00						1			다	부지내	235.70	235.70	현식목구조	109.75	109.75	1
	소계			37.00	37.00							-				9.00	9.00				30	감28.00㎡
	계단실	마			37.00	37.00	철근콘크리트					-										
관리시설	엘리베이터													라	부지내	9.00	9.00					1
	공원안내판														"	-	-					9
	공원등														"	-	-					13

구	분	전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다용도물 (㎡)				
								건축 면적	연면적						
	CCTV												6		
													1		
	녹지 및 기타			3,448.53							1,303.75				감2,144.78㎡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74.3	998.00				
폐지					374.3	998.00				
신설					92.50	189.56				
당초		소계			238.30	794.00				
폐지					238.30	794.00				
당초	소로	3	소-1	4.0	49	196	도로	보행자전용도로종점	광장 가-1	
폐지		3	소-1	4.0	49	196	도로	보행자전용도로종점	광장 가-1	
당초		3	소-2	4.3	12.6	54	도로	계단실	소로 3-1	
폐지		3	소-2	4.3	12.6	54	도로	계단실	소로 3-1	
당초		3	소-3	3.5	4.8	17	공공 보행로	2-1BL	광장 가-2	
폐지		3	소-3	3.5	4.8	17	공공 보행로	2-1BL	광장 가-2	
당초		3	소-4	2.5	26.8	67	계단	광장 가-3	광장 가-2	
폐지		3	소-4	2.5	26.8	67	계단	광장 가-3	광장 가-2	
당초		3	소-5	4.0	37.5	150	공공 보행로	2-1BL	2-2BL	
폐지		3	소-5	4.0	37.5	150	공공 보행로	2-1BL	2-2BL	
당초		3	소-6	1.8	11	20	도로	광장 가-3	2-2BL 엘리베이터	
폐지		3	소-6	1.8	11	20	도로	광장 가-3	2-2BL 엘리베이터	
당초		3	소-7	3	96.6	290	시설 연결로	광장 가-5	제천정	
폐지		3	소-7	3	96.6	290	시설 연결로	광장 가-5	제천정	
당초	산책로	소계			136.00	204.00	-	-	-	
폐지					136.00	204.00	-	-	-	
신설					92.50	189.56	-	-	-	
당초		산책로	1	1.5	136.00	204.00	경사로	광장가-3	광장가-2	
폐지		산책로	1	1.5	136.00	204.00	경사로	광장가-3	광장가-2	
신설		산책로	1	2.5	6.3	23.91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광장 가-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2	2.9	7.8	22.62	산책로	광장 가-1	엘리베이터 라	
신설		산책로	3	2.2	44.9	73.74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4	2.5	22.9	41.76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5	3.0	7.8	22.62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6	1.8	2.8	4.91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광장 가-1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③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32-126 일대)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소 계	4,044.10	1,968.82	214.56	1	152.82	214.56	4,161.80	1,983.22	214.56	2	2.00	176.31	176.31
	광 장	0.00	0.00					4.00	4.00	0				-
	도 로	989.00	989.00	4				957.82	957.82	4				-
	조 경 시 설	369.00	369.00	-				322.95	322.95	-				-
기	방	35.00	35.00	5				-	-	5				10
	방	119.00	119.00	7				-	-	7				12
	방	-	-	-				-	-	-				-
	방	-	-	-				-	-	-				-
지	교 양 시 설	304.00	304.00	3	1	152.82	214.56	584.11	584.11	3	1	76.32	76.32	-
	편 의 시 설	-	-	-				-	-	-				-
	관 리 시 설	152.82	152.82	-				118.34	118.34	-	1	99.99	99.99	31
	소 계	2,075.28	-	-				2,178.58	-	-				증)103.30㎡
타	녹 지	2,038.28	-	-				2,100.85	-	-				증)82.57㎡
	기 타	37.00	-	-				77.73	-	-				증)40.73㎡
	시 설	(1,968.82 / 4,044.10) × 100 = 48.68%			(1,983.22 / 4,161.80) × 100 = 47.65%			증)1.03%						
	건 폐	(152.82 / 4,044.10) × 100 = 3.78%			(176.31 / 4,161.80) × 100 = 4.24%			증)0.46%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변경			변경			합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대용자산 물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4,044.10	1,968.82	-	-	152.82	214.56	19		4,161.80	1,983.22	-	176.31	176.31	53	시설면적: 감)14.40㎡	
	소계		1,358.00	1,358.00					-		1,280.77	1,280.77				-	감)77.23㎡	
	광장	계	989.00	989.00					-	가	부지내	957.82	957.82				-	
		가-1		157.00	157.00					-	가-1	537.18	537.18				-	
		가-2		692.00	692.00					-	가-2	249.32	249.32				-	
		가-3		140.00	140.00					-	가-3	171.32	171.32				-	
	도로	계		251.00	251.00					-								
		소로-1		86.00	86.00					-								
		소로-2		18.00	18.00					-								
		소로-3		20.00	20.00					-								
소로-4			80.00	80.00					-									
소로-5			47.00	47.00					-									
계			118.00	118.00					-	계	322.95	322.95				-		
신책로1			118.00	118.00					-									
										산-1	부지내	41.73	41.73				-	
										산-2	"	48.32	48.32				-	
									산-3	"	38.66	38.66				-		
									산-4	"	46.79	46.79				-		
									산-5	"	46.71	46.71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고유자산 물물(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고유자산 물물(가)		
																	건축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산-6	"	100.74	100.74						-		
조경시설	소계	나-1	신백로	7.00	7.00					5										10	감135.00㎡	
		나-2	광장가-2	4.00	4.00					1												
		나-3	광장가-2	4.00	4.00					1												
		나-4	광장가-2	4.00	4.00					1												
		나-5	신백로	16.00	16.00					1												
조경시설	소계										①	부지내	-	-						2		
											②	"	-	-					6			
											③	"	-	-					2			
휴양시설	소계			119.00	119.00					7			-	-						12	감119.00㎡	
		다-1		39.00	39.00					4									-			
		다-2		80.00	80.00					3												
											④	부지내	-	-								
교양시설	소계			304.00	304.00					3											증280.11㎡	

구분	본점						전점				합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이용장소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부동산											나	부지내	427.96	427.96	합식 복합 구조	1층	76.32	76.32	-
	우사단	광장 가-1	156.0	156.00					1	다	"	156.25	156.25					-	
	이외스탠 드 1	광장 가-2	100.00	100.00					1										
	이외스탠 드 2	휴게소 다-2	48.00	48.00					1										
관리시설	소계		152.82	152.82			152.82	214.56	-			118.34	118.34			99.99	99.99	31	감34.46㎡
	관리실	광장	152.82	152.82	철근 콘크리트	2층	152.82	214.56	-	라	부지내	118.34	118.34	철근 콘크리트	1층	99.99	99.99	-	
	공원 안내판									⑤	"	-	-					12	
	공원등									⑥	"	-	-					14	
	CCTV									⑦	"	-	-					4	
복지 및 기타	발전함										"	-	-					1	
	소계		2,075.28	-					-			2,178.58						-	증103.30㎡
	복지		2,038.28	-					-			2,100.85							증82.57㎡

구	분	경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더우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 면적	연면적										
	기타			37.00	-	철근 콘크리트				-									중)40.7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6.90	369.00				
폐지					126.90	369.00				
신설					106.5	322.95				
당초		소계			101.20	251.00				
폐지					101.20	251.00				
당초	소로	3	소-1	2.0	42.90	86.00	계단	휴게소 1	광장 2	
폐지		3	소-1	2.0	42.90	86.00	계단	휴게소 1	광장 2	
당초		3	소-2	1.5	12.27	18.00	계단	소로 3-1	광장 2	
폐지		3	소-2	1.5	12.27	18.00	계단	소로 3-1	광장 2	
당초		3	소-3	1.5	13.10	20.00	계단	관리사무소	부지경계	
폐지		3	소-3	1.5	13.10	20.00	계단	관리사무소	부지경계	
당초		3	소-4	3	26.60	80.00	계단	광장 2	15m도로	
폐지		3	소-4	3	26.60	80.00	계단	광장 2	15m도로	
당초		3	소-5	7.4	6.40	47.00	도로	도로	지하주차장	
폐지		3	소-5	7.4	6.40	47.00	도로	도로	지하주차장	
당초		소계			25.70	118.00	-	-	-	
폐지					25.70	118.00				
신설					106.5	322.95				
당초		산책로	1	4.6	25.70	118.00	산책로	도로	지하주차장	
폐지		산책로	1	4.6	25.70	118.00	산책로	도로	지하주차장	
신설		산책로	1	6.0	6.90	41.73	진입로	대상지 북측진입로	광장 가-1	
신설		산책로	2	3.5	11.2	48.32	산책로	우사단 나	광장 가-1	
신설		산책로	3	2.0	14.1	38.66	산책로	산책로 산-2	관리실 라	
신설		산책로	4	1.5	31.2	46.79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광장 가-1	
신설		산책로	5	4.0	10.4	46.71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광장 가-1	
신설		산책로	6	3.0	32.7	100.74	진입로	대상지 동측진입로	광장 가-1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①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보광동 265-122 일대)

구	분	변				변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토수 응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토수 응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계	1,615.90	708.00				18	2,007.70	1,020.40				47	증312.40㎡
	소 계	449.00	449.00				3	412.31	412.31				-	감36.69㎡
	광 장	265.00	265.00				-	-	-				-	감265.00㎡
	도 로	184.00	184.00				3	412.31	412.31				-	증228.31㎡
조 경 시 설		30.00	30.00				7	-	-				5	증30.00㎡
휴 양 시 설		-	-				-	165.29	165.29				10	증165.29㎡
유 희 시 설		157.00	157.00				4	370.98	370.98				6	증214.98㎡
운 동 시 설		72.00	72.00				4	63.92	63.92				1	감8.08㎡
교 양 시 설		-	-				-	-	-				-	-
편 익 시 설		-	-				-	-	-				-	-
관 리 시 설		-	-				-	7.90	7.90				25	증7.90㎡
녹 지 및 기타		907.90	-				-	987.30						증132.80㎡
시 설 율 (변경 60%)		(708.00 / 1,615.90) × 100 = 43.81%						(1,020.40 / 2,007.70) × 100 = 50.82%						증)4.35%
건 폐 율 (변경 5%)		-						-						-

2.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국유지 비율 (%)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국유지 비율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1,615.90	479.00				14			2,007.70	1,020.40					47	시설면적: 증)12.40㎡	
	소계		449.00	449.00				3			412.31	412.31					-	감)36.69㎡	
	광장	계		265.00	265.00			3										감)265.00㎡	
		가-1		45.00	45.00			-											
		가-2		220.00	220.00			3											
	도로	계		184.00	184.00			-			412.31	412.31						증)228.31㎡	
		소로계		131.00	131.00			-											
		소로-1		24.00	24.00			-											
		소로-2		31.00	31.00			-											
		소로-3		64.00	64.00			-											
소로-3			12.00	12.00			-												
신책로계			53.00	53.00			-				412.31	412.31				-			
신책로		53.00	53.00			-										-			
								산-1	부지내	19.68	19.68					-			
								산-2	"	29.86	29.86					-			
								산-3	"	27.59	27.59					-			
								산-4	"	45.74	45.74					-			

구 분		전						경						비 고						
		부			전			부			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고용자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고용자 물 (기)	
조경시 설											산-5	"	274.09	274.09					-	
											산-6	"	9.60	9.60					-	
											산-7	"	5.75	5.75					-	
	소계			30.00	30.00				7				-	-					5	감30.00㎡
	답장									①	부지내	-	-	-					1	
휴양시 설	파고라	나	광장2	30.00	30.00				7		②	"	-	-					2	
	있음벽										③	"	-	-					2	
	소계												165.29	165.29					10	증165.29㎡
휴양시 설											가	부지내	165.29	165.29						
											가-1	"	83.56	83.56					-	
											가-2	"	11.04	11.04					-	
											가-3	"	10.47	10.47					-	
											가-4	"	27.56	27.56					-	

구분	본			경			전			변			정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기능상 물품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기능상 물품 (기)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가-5	"	11.16	11.16					-	
										가-6	"	10.75	10.75					-	
										가-7	"	10.75	10.75					-	
	등의자									④	"	-	-					10	
유하시 설	소계		157.00	157.00					4			370.98	370.98					6	증214.98㎡
	어린이 놀이대	다	157.00	157.00					4	나	부지내	370.98	370.98					-	
	조합 놀이대									⑤	"	-	-					1	
	그네									⑥	"	-	-					1	
	시소									⑦	"	-	-					1	
	네트놀이 대									⑧	"	-	-					1	
	합놀이 대									⑨	"	-	-					2	
운동시 설	소계		72.00	72.00					4			63.92	63.92					1	감18.09㎡
	체력단련 장	라	72.00	72.00					4	다	부지내	63.92	63.92					-	
	종합 운동시설									⑩	"	-	-					1	

구분	전경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규모	구조	시설면적 (㎡)	부지면적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중) 7.90㎡
	음수전												
	공원												
	안내판												
	공원등												
	CCTV												
복지	문전함												
	소계		1,136.9	-								987.30	중) 132.80㎡
복지	기타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87.20	184.00				
폐지					87.20	184.00				
신설					167.2	412.31				
당초	소로	소계			51.70	131.00				
폐지					51.70	131.00				
당초		3	소-1	4	6.00	24.00	계단	광장 가-1	광장 가-2	
폐지		3	소-1	4	6.00	24.00	계단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3	소-2	4	7.70	31.00	계단	광장 가-2	6BL	
폐지		3	소-2	4	7.70	31.00	계단	광장 가-2	6BL	
당초		3	소-3	2	32.00	64.00	도로	15M 도로	광장 가-2	
폐지		3	소-3	2	32.00	64.00	도로	15M 도로	광장 가-2	
당초		3	소-4	2	6.00	12.00	계단	소3-3	어린이놀이터	
폐지		3	소-4	2	6.00	12.00	계단	소3-3	어린이놀이터	
당초	산책로	소계			35.50	53.00	-	-	-	
폐지					35.50	53.00				
신설					167.2	412.31				
당초		산책로	1	1.5	35.50	53.00	경사로	광장 가-2	소로3-2	
폐지		산책로	1	1.5	35.50	53.00	경사로	광장 가-2	소로3-2	
신설		산책로	1	2.3	7.4	19.68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산-5	
신설		산책로	2	2.3	12.1	29.86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산-5	
신설		산책로	3	1.8	14.2	27.59	진입로	대상지 북측진입로	산-5	
신설		산책로	4	3.0	14.3	45.74	진입로	대상지 북측진입로	산-5	
신설		산책로	5	2.3	112.1	274.09	산책로	휴게소 가-4	휴게소 가-4	
신설		산책로	6	2.0	4.6	9.60	산책로	산-5	놀이터 나	
신설		산책로	7	2.3	2.5	5.75	산책로	산-5	놀이터 나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①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위치: 용산구 한남동 647-21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583.70	1,314.4				85	
공 원 시 설	소 계		1,035.33	1,035.33			-	
	기 반 시 설	광장	173.68	173.68			-	
		도로	861.65	861.65			-	
	조경시설		-	-			11	
	휴양시설		195.81	195.81			20	
	운동시설		58.49	58.49			1	
	편익시설		-	-			-	
	관리시설		24.77	24.77			53	
녹 지 및 기 타	소계		5,269.30	-			-	
	녹지		5,158.51				-	
	기타		110.79				-	
시 설 율 (법정 20%)		(1,314.40㎡ ÷ 6,583.70㎡) × 100 = 19.96%						
건 폐 율 (법정 5%)		-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6,583.70	1,314.40					85	
기 반 시 설	계			1,035.33	1,035.33					-	
	광장	가	부지내	173.68	173.68					-	
	도로		"	861.65	861.65					-	
조 경 시 설	계			-	-					11	
	그늘시령	①	부지내	-	-					3	
	앉음벽	②	"	-	-					3	
	차양막	③	"	-	-					1	
	그네의자	④	"	-	-					4	
휴 양 시 설	계			195.81	195.81					20	
	휴게소	나	부지내	195.81	195.81					-	
	휴게소-1	나-1	"	(12.04)	(12.04)					-	
	휴게소-2	나-2	"	(21.88)	(21.88)					-	
	휴게소-3	나-3	"	(8.13)	(8.13)					-	
	휴게소-4	나-4	"	(6.92)	(6.92)					-	
	휴게소-5	나-5	"	(19.65)	(19.65)					-	
	휴게소-6	나-6	"	(7.98)	(7.98)					-	
	휴게소-7	나-7	"	(19.45)	(19.45)					-	
	휴게소-8	나-8	"	(18.55)	(18.55)					-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적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휴게소-9	나-9	"	(8.10)	(8.10)						
	휴게소-10	나-10	"	(39.09)	(39.09)						
	휴게소-11	나-11	"	(34.02)	(34.02)						
	등의자	㉑	"	-	-					20	
공 공 사 설	계			58.49	58.49					1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58.49	58.49					-	
	체력단련시설	㉒	"	-	-					1	
관 리 사 설	계			24.77	24.77					53	
	음수전	라	부지내	12.02	12.02					2	
	음수전-1	라-1	"	(6.00)	(6.00)					1	
	음수전-2	라-2	"	(6.02)	(6.02)					1	
	엘리베이터	마	"	12.75	12.75					1	
	공원안내판	㉓	"	-	-					12	
	공원등	㉔	"	-	-					27	
	CCTV	㉕	"	-	-					10	
	분전함	㉖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5,269.30	-					-	
	녹지			5,158.51	-					-	
	기타			110.79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861.65		-	-	
신설	산책로	-	1	2.0	27.4	55.39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휴게소 나-2	
신설	산책로	-	2	2.0	35.7	75.90	산책로	엘리베이터 마	광장 가-1	
신설	산책로	-	3	1.8	6.6	12.10	진입로	대상지 북측진입로	산-4	
신설	산책로	-	4	2.2	68.9	150.93	산책로	광장 가-1	산-5	
신설	산책로	-	5	1.5	27.0	41.00	산책로	광장 가-1	산-4	
신설	산책로	-	6	2.0	9.9	19.87	산책로	산-4	산-7	
신설	산책로	-	7	3.0	6.6	21.09	진입로	대상지 북측진입로	휴게소 나-7	
신설	산책로	-	8	2.2	21.7	47.99	산책로	산-7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9	2.2	36.3	79.53	산책로	산-4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10	2.2	43.6	95.55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11	1.5	27.2	40.81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설	산책로	-	12	2.5	5.0	11.94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광장 가-3	
신설	산책로	-	13	2.2	52.7	127.37	산책로	엘리베이터 계단실	광장 가-3	
신설	산책로	-	14	2.5	30.5	82.18	진입로	대상지 동측진입로	산-13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②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66-2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계	4,643.80	880.26	12	3,634.2	726.07			36	감)154.19㎡	
	소 계	726.00	726.00	-	399.80	399.80			-	감)326.20㎡	
	광 장	214.00	214.00	-	-	-			-	감)214.00㎡	
	도 로	512.00	512.00	-	399.80	399.80			-	감)112.20㎡	
조경시설	24.00	24.00		5	-	-			6	감)24.00㎡	
휴양시설	-	-		-	217.99	217.99			9	증)217.99㎡	
유흥시설	-	-		-	-	-			-	-	
운동시설	104.00	104.00		7	108.28	108.28			1	증)4.28㎡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		-	-	-			-	-	
관리시설	26.26	26.26		-	-	-			20	감)26.26㎡	
녹지 및 기타	3,763.54	-		-	2,908.13	-				감)855.41㎡	
시설을 (변경 20%)	(880.26 / 4,6438) × 100 = 18.96%			(726.07 / 3,634.20) × 100 = 19.98%						증)1.02%	
건폐율 (변경 5%)	-			-						-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연면적	면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연면적	
															연면적
합계			4,643.80	880.26					12					36	시설면적: 합)154.19㎡
	소계		726.00	726.00					-					-	합)326.20㎡
광장	계		214.00	214.00					-						합)214.0㎡
	가-1		52.00	52.00					-						
	가-2		88.00	88.00					-						
	가-3		74.00	74.00											
기타시설물	계		512.00	512.00					-					-	합)112.20㎡
	소로계		401.00	401.00					-						
	소로-1		310.00	310.00					-						
	소로-2		36.00	36.00					-						
	소로-3		45.00	45.00					-						
	소로-4		10.00	10.00					-						
	산책로계		111.00	111.00					-					-	
	산책로1		111.00	111.00					-						

구분	본			경			전			변			정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휴양시설	소계		24.00	24.00				5											6	감)24.00㎡		
	파고라	나-1		16.00	16.00			4														
	플랜터	나-2		8.00	8.00			1														
	그늘시렁																		1			
	바테이블																		1			
휴양시설	야외 테이블																		4			
	소계																217.99	217.99		9	증)217.99㎡	
	휴게소																	217.99	217.99		-	
																		(108.85)	(108.85)		-	
																		(70.85)	(70.85)		-	

구분	경전						경부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규모	구조	시설면적 (㎡)	부지면적 (㎡)	비고
							건축	연면적					
등의자													
소계			104.00	104.00							108.28	108.28	1 중)4.28㎡
운동시설	라		104.00	104.00							108.28	108.28	-
소계			26.26	26.26									20 감)26.26㎡
계단실	마		26.26	26.26	철근콘크리트	5층							
관리시설													
공원등													5
공원등													11
CCTV													3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 면적	연면적										
	발전합								다용도 건물 (기)		㉠	”	-					1	
특지 합 기타	소계			3,763.54	-				-				2,908.13	-				-	감)855.41㎡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34.30	512.00				
폐지					234.30	512.00				
신설					176.70	399.80				
당초	소로	소계			160.30	401.00	-	-	-	
폐지					160.30	401.00	-	-	-	
당초		3	소-1	2.5	124.00	310.00	도로	광장 가-2	광장 가-1	
폐지		3	소-1	2.5	124.00	310.00	도로	광장 가-2	광장 가-1	
당초		3	소-2	2.5	14.40	36.00	계단	15m 도로	광장 가-3	
폐지		3	소-2	2.5	14.40	36.00	계단	15m 도로	광장 가-3	
당초		3	소-3	2.5	17.90	45.00	계단	계단실	북측경계	
폐지		3	소-3	2.5	17.90	45.00	계단	계단실	북측경계	
당초		3	소-4	2.5	4.00	10.00	도로	광장 가-2	계단실	
폐지		3	소-4	2.5	4.00	10.00	도로	광장 가-2	계단실	
당초		소계			74.00	111.00	-	-	-	
폐지					74.00	111.00	-	-	-	
신설					176.70	399.80	-	-	-	
당초	산책로	산책로	1	1.5	74.00	111.00	산책로	15m 도로	광장 가-3	
폐지		산책로	1	1.5	74.00	111.00	산책로	15m 도로	광장 가-3	
신설		산책로	1	3.0	4.50	14.10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산-2	
신설		산책로	2	2.5	120.90	279.10	산책로	산-1	산-1	
신설		산책로	3	2.0	34.80	72.40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산-2	
신설		산책로	4	2.0	16.50	34.20	진입로	대상지 남측진입로	산-2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③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568-105 일대)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계	2,576.40	467.00			10	3,041.70	588.48				43	증)121.48㎡				
	소 계	377.00	377.00			3	411.68	411.68				-	증)34.68㎡				
	광 장	219.00	219.00			2	-	-				-	감)219.00㎡				
	도 로	158.00	158.00			1	411.68	411.68				-	증)253.68㎡				
조경시설	27.00	27.00				2	-	-				8	감)27.00㎡				
휴양시설	-	-				-	123.85	123.85				10	증)123.85㎡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63.00	63.00				5	52.95	52.95				1	감)10.05㎡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				-	-	-				-	-				
관리시설	-	-				-	-	-				24	-				
녹지 및 기타	2,109.40	-				-	2,453.22	2,453.22					증)343.82㎡				
시설율 (법정 20%)	(467.00 / 2,576.40) × 100 = 18.13%																
건폐율 (법정 5%)	-																
(588.48 / 3,041.70) × 100 = 19.35%																	
증)1.22%																	
-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금융자산 목록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금융자산 목록 (기)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2,576.40	467.00					10			3,041.70	588.48					43	시설면적: 증121.48㎡
	소계		377.00	377.00					3			411.68	411.68					-	증34.68㎡
광장	계		219.00	219.00					2										감219.00㎡
	가-1		180.00	180.00					1										
	가-2		39.00	39.00					1										
도로	계		158.00	158.00					1			411.68	411.68					-	증253.68㎡
	소로계		6.00	6.00					-										
	소로-1		6.00	6.00					-										
	산책로계		152.00	152.00					1			411.68	411.68					-	
	산책로1		98.00	98.00					-										
	산책로2		54.00	54.00					1										
										산-1	부지내	178.18	178.18					-	
									산-2	"	37.48	37.48					-		

구분	변경						변경						경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규모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위치	부호	연면적 (㎡)	연면적	규모	연면적 (㎡)	연면적	
조경시설																			
휴양시설																			

구분	본점				전점				병점				합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이용장소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 면적	연면적							
										기-3	"	(52.25)	(52.25)		
										기-4	"	(8.28)	(8.28)		
	등외자									⑤	"	-	-		10
운동시설	소계		63.00	63.00					5			52.92	52.95		1
	체력단련 장	라	63.00	63.00					5	나	부지내	52.92	52.95		-
	체력단련 시설										"	-	-		1
공원 인내관	소계											-	-		24
	공원 인내관									⑦	부지내	-	-		6
	공원등									⑧	"	-	-		12
관리시설	CCTV									⑨	"	-	-		5
	문진함									⑩	"	-	-		1
	소계		2,109.4	-					-			2,453.22	-		-

총합 371.8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71.00	158.00				
폐지					71.00	158.00				
신설					169.10	411.68				
당초	소로	소계			-	6.00	-	-	-	
폐지					-	6.00	-	-	-	
당초		3	소-1	-	-	6.00				기존도로
폐지		3	소-1	-	-	6.00				기존도로
당초	산책로	소계			71.00	158.00	-	-	-	
폐지					71.00	158.00	-	-	-	
신설					169.10	411.68	-	-	-	
당초		산책로	1	2	49.00	98.0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폐지		산책로	1	2	49.00	98.0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산책로	2	2.4	22.00	54.00	산책로	광장 가-2	15M도로	
폐지		산책로	2	2.4	22.00	54.00	산책로	광장 가-2	15M도로	
신설		산책로	1	1.8	46.3	178.18	진입로	대상지 동측진입로	대상지 서측진입로	
신설		산책로	2	2.3	15.5	37.48	진입로	대상지 동측진입로	산-3	
신설		산책로	3	1.8	56.2	102.11	산책로	산-1	산-1	
신설		산책로	4	1.8	51.1	93.91	산책로	산-1	산-1	

◆ 성동구공고 제2026-1056호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767호(2024.5.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26. 7. 31. ~ 8. 1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성수1가1동 주민센터,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성수2가3동 주민센터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 1가, 2가 일대	-	증) 1,583,881	1,583,881	-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라.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본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음

마. 의견제출기관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TEL : 02-2286-5561)

※ 방문 접수, FAX: 02-2286-5928, e-mail: uclas2@sd.go.kr

◆ 광진구공고 제2026-98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6호(2024. 2. 29.)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66호(2025. 6. 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22호(2025. 7. 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72-122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다. 사업의 명칭: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

다. 사업규모 및 내용

1) 규 모 : 주차장 건설(지상1층 2단, 연면적 1,317.55㎡)

2) 내 용 :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라.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6. 6. 30.일까지

바. 관계도서 : 생략(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비치 ☎02-450-7964)

◆ 중량구공고 제2026-109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3(2024.8.22.)호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량구 고시 제2024-88(2024.9.12.)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량구 고시 제2025-128(2025.11.6.)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된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중량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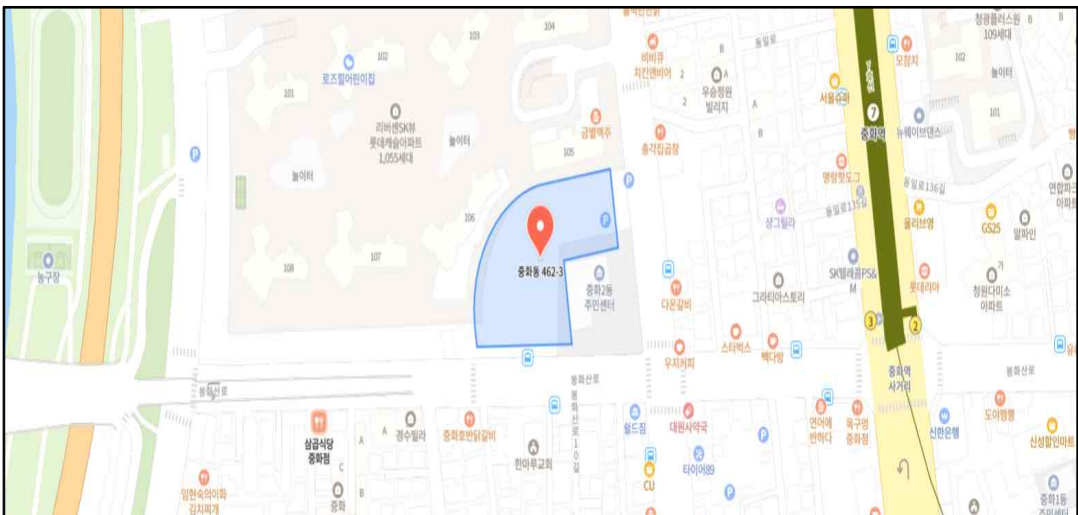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중량구청장(서울시 중량구 봉화산로 179)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서울특별시 중량구 중화동 462-3	대지면적 4,549.7㎡ 연면적 3,783.82㎡ 주차시설 100면	2024.9.12. ~ 2026.1.31.

라. 위치도



◆ 노원구공고 제2026-12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2026.7.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1-2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 조성 공사

라. 사업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중로	2	-	17~18	보조 간선	55	월계동 33-4	월계동 21-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 (2026.7.9.)	• 화랑로 45길
시행	중로	2	-	17~18	보조 간선	55	월계동 33-4	월계동 21-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 (2026.7.9.)	• 화랑로 45길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2028년 7월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면적 (m)	소유자			관계인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2,353.8	1,171						
1	월계동	20-3	도	415.8	4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월계동	21-20	대	142.0	53		허**	서울특별시 노원구 *** (월계동)			
3	월계동	21-21	대	96.0	96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반포동, ***)	창**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역삼동)	근저당권
									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 (월계동)	채무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역삼동)	근저당권
4	월계동	21-23	대	258.0	201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			
5	월계동	21-24	철	281.0	259		국(국토교통부)				
6	월계동	21-31	도	36.0	36		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			
7	월계동	21-34	대	201.0	106	1/3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성북동, ***)	심**	경기도 용인시 *** (성북동, ***)	채무자
						1/3	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일산동, ***)	심**	경기도 고양시 *** (일산동, ***)	채무자
						1/3	심**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장위동, ***)	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장위동, ***)	채무자
									국(**세무서)		근저당권
8	월계동	21-43	도	56.0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9	월계동	32-17	도	487.0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10	월계동	33-6	대	179.0	132	1/2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하월곡동, ***)			
						1/2	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하월곡동)			
11	월계동	34-2	철	43.0	43		국(국토교통부)				
12	월계동	34-4	철	159.0	159		국(국토교통부)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수량	소유자			관계인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월계동	21-20	대	건축물	연와조 (신고 63.09㎡)	34.50㎡		허**	서울특별시 노원구 *** (월계동)			
				담장	블럭조, H=1.5m	1.50m						
2	월계동	21-21	대	건축물	연와조 (신고 55.8㎡)	55.8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반포동, ***)	창**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자
				담장	블럭조, H=2.0m	7.50m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역삼동)	근저당권
										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 (월계동)	채무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역삼동)	근저당권
3	월계동	21-23	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신고 153.59㎡)	192.60㎡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			
				담장	블럭조, H=1.5m	4.50m						
4	월계동	21-34	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신고 143.14㎡)	105.40㎡	1/3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성북동, ***)	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성북동, ***)	채무자
							1/3	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일산동, ***)	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일산동, ***)	채무자
				담장	블럭조, H=1.5m	7.50m	1/3	심**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장위동, ***)	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장위동, ***)	채무자
										국 (**세무서)		근저당권
5	월계동	33-6	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신고 89.48㎡)	64.40㎡	1/2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하월곡동, ***)			
							1/2	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 (하월곡동)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차.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6-1201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 마포구고시 제2024-82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4-10지구 및 4-5,6,7지구에 대하여 2026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2026.06.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6. 7. 30. ~ 2026. 8. 31.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4)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4. 공람내용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I.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	52,583.6	—	52,583.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 (‘14.8.28.)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지구 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정비유형	시행지구면적 (㎡)	사업계획면적(㎡)		비 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4-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1,816.7	1,412.5	404.2	—
변경		1지구	107-2번지 일대	정비지구				
기정		4-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574.6	463.9	110.7	—
변경		2지구	106-85 일대	정비지구				
기정		4-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존치지구	1,108.2	1,019.3	88.9	—
변경		3지구	106-82 일대					
기정		4-4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존치지구	586.3	536.1	50.2	—
변경		4지구	106-105 일대					
기정		4-5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677.6	530.7	146.9	—
기정		4-6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존치지구	393.3	354.6	38.7	—
			109-154번지 일대					
기정		4-7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1,332.4	1,074.6	257.8	—
			109-86번지 일대	정비지구				
기정		4-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4,750.7	3,853.7	897.0	—
변경		5-6-7-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일반	7,813.2	6,854.8	958.4	—
			109-62번지 일대	정비지구				
기정		4-8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존치지구	1,801.1	1,631.1	170.0	—
변경		8지구	106-17번지 일대					

기정 변경	4-9지구 9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4,715.7	3,754.8	960.9	—
기정 변경	4-11지구 1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6번지 일대	존치지구	1,608.7	1,526.3	82.4	—
기정 변경	4-12지구 1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4,115.2	3,052.5	1,062.7	—
기정 변경	4-13-1지구 13-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24번지 일대	존치지구	837.7	837.7	—	—
기정 변경	4-13-2지구 13-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40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1,451.7	1,172.0	279.7	—
기정 변경	4-13-3지구 13-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5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2,845.2	2,297.1	548.1	—
기정 변경	4-14지구 14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7-99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2,245.9	1,813.2	432.7	—
기정 변경	4-15지구 15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8번지 일대	완료지구	3,255.1	2,510.0	745.1	—
기정 변경	4-16지구 16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54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3,765.6	2,723.6	1,042.0	—
기정 변경	4-17지구 17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01번지 일대	존치지구	860.0	860.0	—	—
기정 변경	4-18지구 18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36번지 일대	존치지구	1,540.0	1,540.0	—	—
기정 변경	4-19지구 19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4번지 일대	일반 정비지구	3,185.6	2,564.2	621.4	—
기정 변경	합계			43,467.3 44,126.5	35,527.9 36,569.1	7,939.4 7,557.4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외 지구는 지구 명칭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지구명칭 및 지구면적 변경 2. 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변경	1. 사업명칭 단순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5,6,7,10지구 통합시행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2. 도로 및 공원, 건축물 부담면적 변경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변경)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지구명	획지		비고
				위치	획지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52,583.6	4-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1,412.5	—
변경			1지구			
기정			4-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85 일대	463.9	—
변경			2지구			
기정			4-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82 일대	1,019.3	—
변경			3지구			
기정			4-4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105 일대	536.1	—
변경			4지구			
기정			4-5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74번지 일대	530.7	—
기정			4-6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154번지 일대	354.6	—
기정			4-7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86번지 일대	1,074.6	—
기정			4-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3,853.7	—
변경			5·6·7·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6,854.8	—
기정			4-8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17번지 일대	1,631.1	—
변경			8지구			
기정			4-9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3,754.8	—
변경			9지구			
기정			4-1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6번지 일대	1,526.3	—
변경			11지구			
기정			4-1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3,052.5	—
변경			12지구			
기정			4-13-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24번지 일대	837.7	—
변경			13-1지구			
기정			4-13-2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40번지 일대	1,172.0	—
변경			13-2지구			

기정		4-13-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5번지 일대	2,297.1	-
변경		13-3지구			
기정		4-14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7-99번지 일대	1,813.2	-
변경		14지구			
기정		4-15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38번지 일대	2,510.0	-
변경		15지구			
기정		4-16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6-54번지 일대	2,723.6	-
변경		16지구			
기정		4-17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01번지 일대	860.0	-
변경		17지구			
기정		4-18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36번지 일대	1,540.0	-
변경		18지구			
기정		4-19지구	마포구 신수동 81-14번지 일대	2,564.2	-
변경		19지구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외 지구는 지구명칭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획지면적 변경	5·6·7·10지구 통합시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28.8	증) 784.4	7,813.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5.5	-	45.5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0	증) 102.0	287.0	3.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9.1	29.1	0.4	-
	준주거지역	3,350.2	증) 363.0	3,713.2	47.4	-
일반상업지역		3,448.1	증) 290.3	3,738.4	47.9	-

※ 부분 편입되는 면적은 CAD 구적면적으로 추후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5, 7지구 내 포함되어 있던 분담면적(125.2㎡)의 구체적인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 합계면적과 지구 합계면적이 일부 상이한 사항이며, 금희 문화공원 부담 및 도로 편입 등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54.0	증) 659.2	7,813.2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1,340.4	증) 382.0	958.4	12.3%	—
	도 로	984.7	감) 460.8	523.9	6.7%	—
	소공원	230.5	—	230.5	3.0%	주차장 중복결정
	문화공원	—	증) 204.0	204.0	2.6%	—
	분담면적	125.2	감) 125.2	—	—	—
획 지	소 계	5,813.6	증) 1,041.2	6,854.8	87.7%	—
	기정	4-5지구	530.7	감) 530.7	—	—
		4-6지구	354.6	감) 354.6	—	존치
		4-7지구	1,074.6	감) 1,074.6	—	—
		4-10지구	3,853.7	감) 3,853.7	—	—
	변경	5·6·7·10지구	—	증) 6,854.8	87.7%	—

※ 상기 사항은 추후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도로면적 변경 2. 공원부담계획 변경 3. 획지면적 변경	1. 5·6·7·10지구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 변경 2. 5·6·7·10지구 내 정비기반시설(공원) 부담계획 변경 3. 5·6·7·10지구 통합시행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77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10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4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39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폐지	소로	3	4	6	특수 도로	22	노고산동 106-95	노고산동 106-88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7	6	국지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140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39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8	6	국지 도로	174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8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334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장기미집행 실효 (‘20.7) 후 재결정	-
변경	중로	3	9	12 (6)	국지 도로	334 (87)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통합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으로 그 외 지구는 변경사항 없음

※ () 는 5·6·7·10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계획 변경	5·6·7·10지구 통합시행에 따라 지구 간 도로를 폐도하고 이면부 도로계획 변경	-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서고 2014-304호 (2014.8.28.)	소공원 중복결정

②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230.5)	-	1,442.1 (230.5)	서고 2014-304호 (2014.8.28.)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신수동 81-21번지 일대	1,997.7 (-)	- (증) 204.0	1,997.7 (204.0)	서고 2014-304호 (2014.8.28.)	-

※ ()는 5·6·7·10지구의 부담면적임

※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구분	시행 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 면적(㎡)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면적(㎡)				순부담 (%)	비고
			소계	도로	공원	분담 면적			소 계	정비기반 시설(토지) 부담면적	건축물 부담 면적	현금		
기정	4-5 지구	677.6	530.7	146.9	44.9	-	102.0	-	-	-	-	-	21.7% 이상	순부담률 기준 20.6% 이상
	4-6 지구	393.3	354.6	38.7	38.7	-	-	-	-	-	-	-	9.8% 이상 ^{주1)}	
	4-7 지구	1,332.4	1,074.6	257.8	234.6	-	23.2	-	1.4	-	-	-	20.6% 이상	
	4-10 지구	4,750.7	3,853.7	897.0	666.5	230.5	-	-	1,373.7	897.0	476.7	-	28.9%	
변경	5-6-7-10 지구	7,813.2	6,854.8	958.4	523.9	434.5	-	57.8	524.0	1,532.1	-	991.0	541.1	21.19%

※ 기반시설 면적은 CAD 상 구역면적으로 추후 사업시행 시 측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 순부담률 산출: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주1) 존치지구에서 일반정비지구로 전환함에 따라 미시행지구 순부담률(20.6% 이상) 적용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순부담면적 및 순부담률 변경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내 조속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부담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내 필요한 공공기여시설 확보	-

②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계획

구분	계획지침	계획내용
공공기여 비율	- 순부담률: 20.6% 이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확보 - 현금 기부채납	-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면적: 1,532.1㎡ (21.19%) - 공공청사(주거안심종합센터): 299.0㎡ - 환산부지면적: 202.0㎡ - 토지지분면적: 97.0㎡ - 문화시설(서강대역스페이스): 692.0㎡ - 환산부지면적: 475.0㎡ - 토지지분면적: 217.0㎡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 현금(환산부지면적): 541.4㎡

③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시설명	위 치	층	면 적	비 고(관리청)
신규	공공청사 (주거안심종합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109-80	지하1, 3~5층 / 지상1~2층	연면적 : 1,284.8㎡ 토지면적 : 97.0㎡	서울특별시
신규	문화시설 (서강대역스페이스)	마포구 노고산동 109-69	지하1, 3~5층 / 지상1~2층	연면적 : 2,686.7㎡ 토지면적 : 217.0㎡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 1) 공공청사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및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관리하며, 문화시설은 마포구로 귀속 및 마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2)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3)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 4) 공공기여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가) 현금(기반시설 등) 부담

결정구분	구역명	지구명	납부금액(원)	환산부지면적(㎡)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비고
신설	마포4구역	5·6·7·10 지구	2,600,683,034	141.9	18,327,576원/㎡	준주거지역
			8,699,336,859	399.2	21,791,926원/㎡	일반상업지역
합 계(원단위 절사)			11,300,019,890	541.1	—	—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청분계획인가 전까지 현금납부 협약체결하여 결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주민 공동 시설	관리사무소/방재소/MDF	지하/지상	1층	212.7	5·6·7·10 지구
		골프연습장	지하	1층	470.4	
		피트니스		1층	292.0	
		어린이집	지상	1층	202.6	
		작은도서관/주민카페		3층	741.7	
		경로당		4층	202.3	
		키즈카페		4층	225.7	

※ 공동이용시설 설치면적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4구역	677.6	4-5지구	530.7	마포구 노고산동 109-74번지 일대	42	-	-	42	-	-
		393.3	4-6지구	354.6	마포구 노고산동 109-154번지 일대						
		1,332.4	4-7지구	1,074.6	마포구 노고산동 109-86번지 일대						
		4,750.7	4-10지구	3,853.7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변경		7,813.2	5·6·7·10 지구	6,854.8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정비개량계획 변경	5,6,7,10지구 통합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 42개동 전부 철거 후 신축 진행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 4구역	52,583.6	4-5 지구	530.7	마포구 노고산동 109-74 일대	업무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800 이하 상한 법적 2배 이하	80 이하	-
			4-6 지구	354.6	마포구 노고산동 109-154 일대	업무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800 이하 상한 법적 2배 이하	80 이하	-
			4-7 지구	1,074.6	마포구 노고산동 109-86 일대	업무	60 이하	<간선부 일반상업지역> 기준 600 이하 허용 800 이하 상한 법적 2배 이하 <준주거지역> 기준 300 이하 허용 360 이하 상한 법적 2배 이하	80 이하 준주거 60 이하	-

			4-10지구	3,853.7	마포구 노고산동 109-62 일대	주거	60 이하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기준 500 이하 허용 660 이하 상한 767.71 이하 <준주거지역> 기준 300 이하 허용 360 이하 상한 757.0 이하	89 이하 준주거 79 이하	-																													
변경			5·6·7·10지구	6,854.8	마포구 노고산동 109-62 일대	주거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준 600 이하 허용 660 이하 상한 939 이하 <준주거지역> 기준 300 이하 허용 402 이하 상한 659 이하	일반상업 161 이하 준주거 156 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500% ② 허용용적률 : 660% 적용 (기준용적률 500% + 인센티브량 160%) <table><tr><th>목적</th><th>인센티브 대상</th><th>요건</th><th colspan="2">인센티브</th><th>인센티브량</th></tr><tr><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그린1등급(최우수)</td><td colspan="2" rowspan="3">100%</td><td rowspan="6">160% 적용 (무장애도시 조성 제외)</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td><td>240(kWh/m²·y)미만</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td><td>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td></tr><tr><td rowspan="2">보행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시</td><td>30%</td><td rowspan="2">최대 50%</td></tr><tr><td>무장애도시 조성</td><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td><td>30%</td></tr><tr><td>안전·방재</td><td>방재 관련시설</td><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td><td colspan="2">30%</td></tr></table>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160% 적용 (무장애도시 조성 제외)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m ² ·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시	30%	최대 50%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30%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160% 적용 (무장애도시 조성 제외)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m ² ·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시	30%	최대 50%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00.29% - 허용용적률 660.0% + 인센티브량 100.29% = 760.29%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1.3×a건축물)] 이내 = 660.0%×[1+(1.3×가중치 1×a토지 0.0656)+(1.3×a건축물 0.0513)] = 760.29% (일반상업지역 도로 75.1㎡×700%)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 가중치 = $\frac{\text{기부채납면적}166.1\text{㎡}\times700\%}{241.2\text{㎡}(\text{기반시설 면적 합계})\times700\%}$ = 1.0000 135.3㎡(일반상업지역 도로 75.1㎡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a토지 = $\frac{60.20\text{㎡}}{2,063.7\text{㎡}(\text{일반상업지역 획지면적})}$ = 0.0656 ∴ a건축물 = $\frac{105.90\text{㎡}(\text{일반상업지역 건축물 환산부지면적})}{2,063.7\text{㎡}(\text{일반상업지역 획지면적})}$ = 0.0513																																							

④ 용적률 완화(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계획 변경)

■ 지상1층 가정어린이집 153.21㎡ 설치 완화량 : 7.42% 적용

∴ ① 기준용적률 500% + ② 허용용적률 160% + ③ 상한용적률 100.29%
+ ④ 지상1층 가정어린이집 설치 7.42% = 767.71%

<준주거지역>

■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 360% (기준용적률 300% + 인센티브량 60%)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30%	6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97.0% 적용

- 허용용적률 360.0% + 인센티브량 297.0% = 657.0%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a토지)+(1.3×a건축물)] 이내
= 360.0%×[1+(1.3×가중치 1.0038×a토지 0.5147)+(1.3×a건축물 0.1179)] = 657.0%

[(일반상업지역 도로 113.0㎡×700%) + (준주거지역 도로 478.4㎡×360%)
∴ 가중치 = + (제2종 소공원 230.5㎡×200%)+(준주거지역 건축물 기부채납면적 310.6㎡×360%)] = 1.0038
1,132.5㎡(기반시설 면적 합계)×360%

923.8㎡(일반상업지역 도로 113.0㎡ + 준주거지역 도로 478.40㎡
∴ a토지 = + 제2종 소공원 230.50㎡ + 준주거지역 건축물 토지비면적 99.50㎡) = 0.5147
1,790.0㎡(준주거지역 획지면적)

211.10㎡(준주거지역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a건축물 = 1,790.0㎡(준주거지역 획지면적) = 0.1179

④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공공주택 도입 시 완화량 : 100% 적용

∴ ① 기준용적률 300% + ② 허용용적률 60% + ③ 상한용적률 297.0%
+ ④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완화용적률 100% = 757.0%

변경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 ① + ② + ③ = 939%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60%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인센티브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6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공동소화전, 하수관거 (접한도로), 상수관거(접한도로) 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	정량부여 (최대 20%)	20%	
	상하수도 개량	구역 내 노후 상수, 하수관로 개량 ※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역 외 관로도 포함 ※ 개량범위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정비물량 (연장)에 따라 최대 20%	20%	

※ 접한도로의 노후 하수관거, 상수관거는 개량 의무화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79%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87%

- 허용용적률 $\times[(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text{토지})+(1.2\times\alpha\text{건축물})+(1.0\times\alpha\text{현금})]$ 이내
 $= 660\% \times [(1.3 \times 1 \times 0.0403) + (1.2 \times 0.1002) + (1.0 \times 0.1111)] = 187.3\%$
 - 가중치 : $800\%(\text{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 용적률}) \div 800\%(\text{사업부지 허용 용적률}) = 1$
 - $\alpha\text{토지}$: $145.0\text{m}^2(\text{건축물 토지지분면적}) \div 3,593.4\text{m}^2(\text{일반상업지역 획지면적 } 3,738.4\text{m}^2 - \text{일반상업 내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45.0\text{m}^2) = 0.0403$
 - $\alpha\text{건축물}$: $360.0\text{m}^2(\text{일반상업지역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div 3,593.4\text{m}^2(\text{일반상업지역 획지면적 } 3,738.4\text{m}^2 - \text{일반상업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45.0\text{m}^2) = 0.1002$
 - $\alpha\text{현금}$: $399.2\text{m}^2(\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div 3,593.4\text{m}^2(\text{일반상업지역 획지면적 } 3,738.4\text{m}^2 - \text{일반상업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45.0\text{m}^2) = 0.1111$

- 녹색건축 초과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 92%

구분	인센티브 대상	계획사항	산정식	인센티브량	비고
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5등급	허용용적률 x 1.0 x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660\% \times 1.0 \times \text{제로에너지 5등급 } 11\%$	72.6%	①+②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②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 등급	허용용적률 x 1.0 x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660\% \times 1.0 \times \text{녹색건축 우수 등급 } 3\%$	19.8%	
인센티브량		$660\% \times 0.15 = 99\%$	$99\% > 72.6\% + 19.8\% = 92.4\%$	92.4%	

<준주거지역>

■ 용적률 : ① + ② + ③ = 659%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02%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인센티브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102%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정량부여 (계수 3.0)	42%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공동소화전, 하수관거 (제한도로), 상수관거(제한도로) 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	정량부여 (최대 20%)	20%	
	상하수도 개량	구역 내 노후 상수, 하수관로 개량 ※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역 외 관로도 포함 ※ 개량범위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정비물량 (연장)에 따라 최대 20%	20%	

※ 제한도로의 노후 하수관거, 상수관거는 개량 의무화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57%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 101%

● 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2 \times \alpha \text{건축물}) + (1.0 \times \alpha \text{현금})]$ 이내
 $= 402\% \times [(1.3 \times 1 \times 0.0576) + (1.2 \times 0.1072) + (1.0 \times 0.0481)] = 101.2\%$
 - 가중치 : $400\% (\text{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 용적률}) \div 400\% (\text{사업부지 허용 용적률}) = 1$
 - α 토지 : $170.0\text{m}^2 (\text{건축물 토지지분면적}) \div 2,946.4\text{m}^2 (\text{준주거 획지면적 } 3,116.4\text{m}^2 - \text{준주거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70.0\text{m}^2) = 0.0576$
 - α 건축물 : $316.0\text{m}^2 (\text{준주거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div 2,946.4\text{m}^2 (\text{준주거 획지면적 } 3,116.4\text{m}^2 - \text{준주거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70.0\text{m}^2) = 0.1072$
 - α 현금 : $141.9\text{m}^2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div 2,946.4\text{m}^2 (\text{준주거 획지면적 } 3,116.4\text{m}^2 - \text{일반상업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170.0\text{m}^2) = 0.0481$

- 녹색건축 초과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 56%

구분	인센티브대상	계획사항	산정식	인센티브량	비고
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5등급	허용용적률 $\times 1.0 \times$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402\% \times 1.0 \times$ 제로에너지 5등급 11%	44.2%	①+②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②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 등급	허용용적률 $\times 1.0 \times$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402\% \times 1.0 \times$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12.1%	
인센티브량		$402\% \times 0.15 = 60.3\% > 44.2\% + 12.1\% = 56.3\%$		56.3%	

		-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완화용적률 : 100% • 증가되는 용적률(100%)의 1/2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 $50\% \times 3,116.4\text{㎡} = 1,558.2\text{㎡}$ 이상 계획 (계획량 : 1,568.8㎡) - 건립세대 수 : 14세대																							
기정		<일반상업지역> ■ 높이완화 : 최고높이 80m → 89m이하(9m 완화 적용) ① '신촌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계획 : 일반상업지역 80m ②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산정 준용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80\text{m} \times (241.2\text{㎡} \div 2,138.8\text{㎡}) = 9.02\text{m}$ ∴ 최고높이 80m + 최고높이 완화 9.02m = 89.02m <준주거지역> ■ 높이완화 : 최고높이 60m → 79m이하(19m 완화 적용) ① '신촌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계획 : 준주거지역 60m ②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산정 준용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60\text{m} \times (1,132.5\text{㎡} \div 2,611.9\text{㎡}) = 26.02\text{m}$ ∴ 최고높이 60m + 최고높이 완화 26.02m = 86.02m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일반상업지역> ■ 최고높이 161m 이하 (31m 완화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h>적용계획</th></tr> </thead> <tbody> <tr> <td>①</td><td>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td><td>130.0m</td></tr> <tr> <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505.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399.2\text{㎡}) \div 3,738.4\text{㎡} (\text{획지면적})$ = 31.4m</td><td>31.4m</td></tr> <tr> <td>합계</td><td>① + ② = 161.4m → 161m 이하 적용</td><td>161m</td></tr> </tbody> </table> <준주거지역> ■ 최고높이 156m 이하 (26m 완화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h>적용계획</th></tr> </thead> <tbody> <tr> <td>①</td><td>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td><td>130.0m</td></tr> <tr> <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486.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141.9\text{㎡}) \div 3,116.4\text{㎡} (\text{획지면적})$ = 26.2m</td><td>26.2m</td></tr> <tr> <td>합계</td><td>① + ② = 156.2m → 156m 이하 적용</td><td>156m</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	130.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505.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399.2\text{㎡}) \div 3,738.4\text{㎡} (\text{획지면적})$ = 31.4m	31.4m	합계	① + ② = 161.4m → 161m 이하 적용	161m	구분	내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	130.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486.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141.9\text{㎡}) \div 3,116.4\text{㎡} (\text{획지면적})$ = 26.2m	26.2m	합계	① + ② = 156.2m → 156m 이하 적용
구분	내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	130.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505.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399.2\text{㎡}) \div 3,738.4\text{㎡} (\text{획지면적})$ = 31.4m	31.4m																							
합계	① + ② = 161.4m → 161m 이하 적용	161m																							
구분	내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 신촌지역중심 : 130m	130.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a)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text{m} \times (\text{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486.0\text{㎡} + \text{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141.9\text{㎡}) \div 3,116.4\text{㎡} (\text{획지면적})$ = 26.2m	26.2m																							
합계	① + ② = 156.2m → 156m 이하 적용	156m																							

공공주택 및
주거비용
완화에 대한
계획

기정

<일반상업지역>

■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 분		일반상업지역	비 고
①정비사업 의무 임대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설 = 175세대 × 5% ⇒ 9세대	①, ② 중복 인정 가능
② 주거비용 완화 임대	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비주거비율)+400%]}÷2 = {660%-[{(660%×0.1324)+400%]}÷2 = 용적률 86.31% 이상 ⇒ 계획 86.60% ※ 비주거 비율 : 2,094.9 / 15,824.67 = 0.1324	
	연면적	• 확보 기준 용적률×확지면적=86.31%×2,063.7㎡ = 지상 연면적 1,781.18㎡ 이상 ⇒ 계획 1,787.09㎡	
	세대수	• 확보 계획 지상 연면적(공급면적 x 세대수) = 전용59A3형(84.08㎡ x2) + 전용59B4형(82.45㎡ x2) + 전용59B5형(82.78㎡ x2) + 전용59B6형(83.27㎡ x3) + 전용59B7형(84.00㎡ x3) + 전용50형(71.51㎡ x11) = 전용 59형(12세대)+전용 50형(11세대) = 23세대	
③총 공공주택 세대수		• ①정비사업 의무 임대 9세대 < ②주거비용 완화 임대 23세대 (둘 중 큰 값을 적용 ⇒ 총 23세대)	-

- 주거비용 : 86.81% 이하(전체 연면적 기준), 86.76% 이하(전체 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665.30%

<준주거지역>

■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 분		준주거지역	비 고
①정비사업 의무 임대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전체 건립세대 산정 시 추가용적률 99.93%분 22세대 제외) = 98세대 × 15% ⇒ 15세대 (※ 상업지역 내 설치)	-
② 주거비용 완화 임대	용적률	•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 99.93%의 1/2 = 49.97% 이상 ⇒ 계획 51.35%	
	연면적	• 확보 기준 용적률×확지면적=49.97%×1,790.0㎡ = 지상 연면적 894.46㎡ 이상 ⇒ 계획 919.14㎡	
	세대수	• 확보 계획 지상 연면적(공급면적 x 세대수) = 전용59A1형(82.20㎡ x2) + 전용59A2형(81.75㎡ x2) + 전용59B1형(80.73㎡ x2) + 전용59B2형(80.99㎡ x 2) + 전용59B3형(80.13㎡ x2) + 전용80형(107.54㎡ x 1) = 전용 59형(10세대)+전용 80형(1세대)=11세대(준주거지역 내 설치)	

- 주거비용 : 89.99% 이하(전체 연면적 기준), 89.91% 이하(전체 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680.55%

변경	<일반상업지역> ■ 공공주택 공급계획 : 17세대		
	구 분		내 용
	① 정비사업 의무임대	산정기준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설 = 330세대 × 5% = 16.5세대 ⇒ 17세대
		세대수	• 17세대 (전용 39형 : 14세대, 전용 59형 : 3세대)
	※ 주거비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별표16 라목1호에 따라 완화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용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이상 의무 단, 비주거비용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주거비용 : 전체 연면적 기준 89.7%, 전체 용적률 기준 89.9%		
	<준주거지역> ■ 공공주택 공급계획 : 35세대		
	구 분		내 용
	① 정비사업 의무임대	산정기준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전체 건립세대 산정 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에 따라 증가용적률 100% 분의 27세대 제외) = (167세대-27세대)× 15%= 21.0세대 ⇒ 21세대 (준주거지역 내 설치)
		세대수	• 21세대 (전용 39형 : 8세대, 전용 59형 : 13세대)
	②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용적률	•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이상 확보 = 용적률 100%의 1/2 = 50% 이상 ⇒ 계획 50%
연면적		• 확보 기준 용적률 × 획지면적 = 50% × 3,116.4㎡ = 지상 연면적 1,558.2㎡ 이상 필요 ⇒ 계획 1,568.8㎡	
세대수		• 14세대 (전용 59형 : 3세대, 전용 84형 : 11세대) ※ 확보 계획 : 지상 연면적(공급면적)÷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 59형, 84형) = 1세대 x 84.61㎡(59A형 공급면적) + 2세대 x 85.99㎡(59B형 공급면적) + 11세대 x 119.29㎡(84A형 공급면적) = 84.61㎡ + 171.98㎡ + 1,312.19㎡ = 14세대 (1,568.8㎡) (준주거지역 내 설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건축한계선	• 경의선변(서강로16길변) : 2m • 그 외 이면부 : 2m
	변경	건축한계선	• 서강로변 : 3m • 경의선변(서강로16길변) : 2m • 그 외 이면부 : 5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신설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 및 차도형 전면공지로 계획(도면참조) ※ 소로1-7, 소로1-8에 접한 차도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는 지역권설정
기타에 관한 사항	기정	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설치구간	• 경의선변(서강로16길변), 그 외 이면부
	변경	가로활성화용도	•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강로와 접한 구간에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보행통로	• 지역 내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서강로16길 및 서강로18길을 연결하는 폭원 6m 이상 보행통로 설치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	기정	차량출입불허구간	• 서강로16길변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서강로변을 따라 지정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 명칭 및 용적률, 높이계획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변경 - 신촌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계획 기준 변경사항 반영	-

8)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①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 (a)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116.96% = (686,498백만 - 487,078백만) / 170,496백만 × 100% = 116.96% - 총 수입 추정 : 686,498백만 - 총 지출 추정 : 487,078백만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170,496백만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종전자산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2024.09.12)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 업체가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5,6,7지구는 10지구 종전자산 산출 당시 공시지가 대비 보정률을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구역명	토지면적 (㎡)	평균 공시지가 단가(원)	공시지가 적용금액(원)	보정률	종전자산 추산액(원)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	4,750.70	약 9,425,000	44,778,155,700	약 212%	94,818,403,250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2,480.70	약 14,390,000	35,697,273,000	약 212%	75,678,219,000	
	합 계	7,231.40	-	-	-	170,496,622,250	
※ 종전자산 금액은 향후 선정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 의해 산출될 예정임. ※ 국공유지는 제외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③ 추정분담금 (단위 : 원)						
	소유지번	종전 자산추정	① 추정권리가액 (a)*(b)	③ 추정분담금			비고
				아파트 (전용 105.98㎡)	근생 (전용 10평)	전체분양 (아파트, 근생)	
	②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예상분양가격)			1,977,707	2,402,908	4,380,615	
	109-5 외	94,818,403	110,903,443	-108,925,736	-108,500,535	-106,522,828	
109-74 외	17,559,715	20,538,554	-18,560,847	-18,135,646	-16,157,939		

109-154	11,998,324	14,033,725	-12,056,018	-11,630,818	-9,653,111	
109-86	5,485,123	6,415,622	-4,437,915	-4,012,714	-2,035,007	
109-84	2,638,838	3,086,492	-1,108,785	-683,584	1,294,123	
109-63	4,298,408	5,027,592	-3,049,885	-2,624,685	-646,977	
109-184	4,713,301	5,512,868	-3,535,161	-3,109,960	-1,132,253	
109-65	1,607,708	1,880,440	97,267	522,467	2,500,174	
109-66	3,258,126	3,810,836	-1,833,129	-1,407,929	569,778	
109-2	2,562,571	2,997,287	-1,019,580	-594,379	1,383,328	
109-3	5,536,984	6,476,281	-4,498,574	-4,073,373	-2,095,666	
109-118	3,398,458	3,974,974	-1,997,267	-1,572,067	405,640	
109-4	6,397,276	7,482,513	-5,504,806	-5,079,605	-3,101,898	
※ 추정 권리가액 - 권리자분양가추정액(+ : 부담 / - : 환급)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3.3㎡ 당 49,000천원 추정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됨						
※ 상가는 모두 일반 물량으로 분양가는 3.3㎡ 당 1층 기준 4,000만원을 기준으로 전용 10평 기준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함						

② 산출근거

- 비례율 = (중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조합원 총재산) = (686,498,318,541원 - 487,078,566,901원) / 170,496,622,250원 = 116.96%
- 총수입 : 686,498,318,541원[공동주택 분양수입 +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 + 임대주택 매각수입]

■ 공동주택 분양수입 추정

전용 면적 (㎡)	공급 면적 (㎡)	전체 세대 수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분양수입계 (원)
			세대 수	평당 분양단가 (원)	세대별 분양금액 (원)	분양수입 (원)	세대수	평당 분양단가 (원)	세대별 분양금액 (원)	분양수입 (원)	
39.41	56.90	17	-	-	-	14,673, 135,404	17	49,000,000	843,386,464	613,674, 787,629	628,347, 923,033
39.64	56.62	11	-	-	-		11	49,000,000	839,263,389		
59.74	84.61	186	13	44,100,000	1,128,702,723		173	49,000,000	1,254,114,137		
59.93	85.99	113	-	-	-		113	49,000,000	1,274,559,455		
84.73	119.29	74	-	-	-		74	49,000,000	1,768,235,787		
105.98	148.25	42	-	-	-		41	49,000,000	2,197,452,261		
129.27	183.81	3	-	-	-		3	49,000,000	2,724,455,149		

■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 추정

층별	계약면적(㎡)	계약면적(평)	조합원 분양		
			평당분양단가(원)	분양총액(원)	분양수입계(원)
지상3층	830.94	251.36	15,000,000	3,770,390,250	45,059,916,000
지상2층	156.23	47.26	25,000,000	1,181,489,375	
지상1층	2,188.32	661.97	40,000,000	26,478,672,000	
지하1층	1,802.23	545.17	25,000,000	13,629,364,375	

■ 공공주택(임대) 매각수입 추정

(1) 의무비용 건립 임대주택(토지비+건축비)

구분	세대수	지상층 면적(㎡)	지하층 면적(㎡)	지상층 단가(원)	지하층 단가(원)	세대당 건축비(원)	토지면적 (㎡)	토지단가 (원)	세대당 매입가	예상매각수입(원)
39.41	11	56.90	37.78	1,162,600	732,438	93,823,360	7.55	18,050,000	136,269,493	10,539,938,172
39.64	11	56.62	38.00	1,162,600	732,438	93,661,467	7.51	18,050,000	135,603,311	
59.74	7	84.61	57.27	1,139,200	717,696	137,489,676	11.23	18,050,000	202,632,488	
59.93	9	85.99	57.45	1,139,200	717,696	139,191,751	11.41	18,050,000	205,935,924	

(2) 용적률 완화분 임대주택(건축비)

구분	세대수	지상층 면적(㎡)	지하층 면적(㎡)	지상층 단가(원)	지하층 단가(원)	세대당 건축비(원)	예상매각수입(원)
59.74	1	84.61	57.27	1,162,600	732,438	137,489,676	2,550,541,336
59.93	2	85.99	57.45	1,139,200	717,696	139,191,751	
84.73	11	119.29	81.23	1,138,400	717,192	194,060,742	

• 총사업비 : 487,078,566,901원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87,204.95㎡	지상 : 50,399.63㎡ / 지하 : 36,805.32㎡
공사비	231,992,270,000원	매입부가세,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관리비	5,792,000,000원	—
설계비등	6,021,000,000원	—
감리비	6,217,200,000원	—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139,994,636,600원	—
각종부(분)담금	5,874,699,151원	—
사업비 금융비용	81,179,761,150원	사업비 금융비용 및 이주비, 금융비용 포함
예비비	10,000,000,000원	—
총사업비	487,078,566,901원	—

• 조합원 종전자산가액 및 추정분담금

— 조합원 종전자산가액 : 마포4-10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2024.09.12)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4-5,6,7지구는 4-10지구 종전자산 산출당시 공시지가 대비 보정률을적용하여 추정 함.

= 170,496,622,250원

※ 종전자산추정액은 [가)추산액 항목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참조

■ 추정분담금

(단위 : 원원)

소유지번	종전자산추정	①추정권리가액 (a)*(b)	③ 추정분담금			비고
			아파트 (전용 105.50㎡)	근생 (전용 10평)	전체분양 (아파트, 근생)	
②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예상분양가격)			1,977,707	2,402,908	4,380,615	
109-5 외	94,818,403	110,903,443	-108,925,736	-108,500,535	-106,522,828	
109-74 외	17,559,715	20,538,554	-18,560,847	-18,135,646	-16,157,939	

109-154	11,998,324	14,033,725	-12,056,018	-11,630,818	-9,653,111	
109-86	5,485,123	6,415,622	-4,437,915	-4,012,714	-2,035,007	
109-84	2,638,838	3,086,492	-1,108,785	-683,584	1,294,123	
109-63	4,298,408	5,027,592	-3,049,885	-2,624,685	-646,977	
109-184	4,713,301	5,512,868	-3,535,161	-3,109,960	-1,132,253	
109-65	1,607,708	1,880,440	97,267	522,467	2,500,174	
109-66	3,258,126	3,810,836	-1,833,129	-1,407,929	569,778	
109-2	2,562,571	2,997,287	-1,019,580	-594,379	1,383,328	
109-3	5,536,984	6,476,281	-4,498,574	-4,073,373	-2,095,666	
109-118	3,398,458	3,974,974	-1,997,267	-1,572,067	405,640	
109-4	6,397,276	7,482,513	-5,504,806	-5,079,605	-3,101,898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토지등소유자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현황

①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비 고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무허가	계	유허가	무허가	
42	14	23	5	42	37	5	-

② 거주현황

구 분	구역 내 건축물 세대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 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거주인구	세입자	
계	15	4	11	17	6	11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497	-	445	52	-
85㎡ 이하	30㎡초과 ~ 40㎡이하	50	-	28	22	-
	40㎡초과 ~ 50㎡이하	-	-	-	-	-
	50㎡초과 ~ 60㎡이하	318	-	299	19	-
	60㎡초과 ~ 85㎡이하	85	-	74	11	-
85㎡초과		44	-	44	-	-

※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가)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① 주거 이전비 보상

(1) 관련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2)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②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1)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2) 임대주택 공급 대상 세입자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나)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

① 서울시 인구지표 및 서울시 인구·가구 현황

(1) 인구 및 가구지표(KOSIS)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목표연도 2031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서울시 가구 지표는 2.2인으로 설정
-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가구당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구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상주인구	천인	10,088	9,941	9,618	9,340	9,096	8,902	8,710
가구 수	천호	3,573	3,775	3,953	4,164	4,240	4,271	4,270
1인가구 비율	%	24.7%	29.2%	34.4%	40.2%	42.1%	42.8%	43.1%
가구당 인구	인/가구	2.8	2.6	2.4	2.2	2.2	2.1	2.0

※ 인구 추계는 인구성장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② 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

구분	수용세대수(호)	비고
공공임대주택	52	—
분양주택	445	—
합계	497	—

③ 주거 및 비주거용도 연면적

구역	대지면적 (㎡)	용도지역	계획 용적률	연면적(㎡)			비고
				소계	주거	비주거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6,854.8	일반상업지역	876.6%	50,399.63	45,222.39	5,177.24	주거 : 비주거 (89.7% : 10.3%)
		준주거지역	657.7%	36,805.32	33,033.36	3,771.96	주거 : 비주거 (89.8% : 10.2%)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52세대	10.5%	100.0%
40㎡이하	22세대	4.4%	42.3%
40㎡초과 60㎡이하	19세대	3.9%	36.5%
60㎡초과 85㎡이하	11세대	2.2%	21.2%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 의무면적	기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확보계획	<임대주택> • 준주거지역 : 8세대 (기준 : 21세대 x 30% = 6.3세대) • 일반상업지역 : 14세대 (기준 : 17세대 x 30% = 5.1세대) <분양주택> • 준주거지역 : 10세대 • 일반상업지역 : 18세대				
소형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9.41㎡	56.90㎡	28세대	2,651.0㎡	39A 형
		39.64㎡	56.62㎡	22세대	2,081.6㎡	39B 형
		합 계		50세대	4,732.6㎡	—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대상지 주변의 고층 빌딩군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면부 저층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물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조치계획)	반영 사항
1. 비오톱 및 동·식물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동·식물상 보호 - 자연환경 보전	- 서울시 도시생태현행도상 비오톱 유형평가 2,4등급으로 조사됨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마포구) - 야생생물 보호구역 2개소(마포구) - 습지보호지역 없음(마포구)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 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녹지 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며, 일부 녹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상지 주변으로 약 0.5km권에 와우산, 노고산 등, 약 1km 권에 경의선공원, 창천근린공원, 독막소공원, 홍익문화공원, 서강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함	대상지 지상부에 녹지 및 공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3.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대상지 내에는 토양 측정망이 없으며, 대상지가 속한 마포구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토양 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장비 및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장비등의 오일류 교환은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적정규모의 분리수거, 재활용 보관소 등 무단투기 금지 -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등 적절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
4. 지형·지질	- 지형·지질 영향 - 최소화	- 표고는 10~50m미만, 경사는 북서측 도로변으로 일부 경사지(15~25도)가 있으며, 남동측 방향으로 점차 완만(0~15도)해지는 지형임 - 부지정지에 따른 질성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 지형 및 주변 지역을 고려한 단지 조성계획 수립으로 절·성토규모를 최소화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5. 물순환	•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률 기준 29.3% 이상으로 계획(계획 30.25%)	•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투수포장 등 적용	-
6. 수질	• 수질 오염 최소화	• 대상지가 속한 서울시 전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임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마포구)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7. 바람열	• 기후변화 대응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이 열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정한 건물 배치 계획 수립 • 녹지 및 공원을 최대한 확보	-
8. 대기질, 악취	• 대기오염 최소화	• 서울시 전역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지정됨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없음(서울시)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 물질이 발생	•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9. 온실가스 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절약효율 극대화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 식재	-
10.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제 및 폐유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목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목 하겠음	-
11. 소음 및 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14)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 변 가 로 및 교 차 로	-	- 주변지역 개발계획 상 교통개선대책 반영 - 서울 신촌 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23.2 -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23.12 - 마포구 신촌 주상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2021.5 -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23.2(서강로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제시) - 사업지 서측 맞은편 소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 반영
	-	사업지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방안 제시(4개소)
	-	사업지 동측/남동측/남서측 교차로를 교원식 교차로로 설치

진출입선	-	• 사업지 서측 서강로16길 확폭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폭 6m→12m(6m 확폭)
	-	• 사업지 동측/남측 인접도로에 폭 2.0m의 차도형 전면공지 확보
	㉔	• 사업지 서측 서강로16길에 차량진출입 교차로 설치 - 진입 1차로/진출 1차로 - 정상신호운영이 가능한 신호등 설치(점멸신호운영 제시) - 차량진출입 각각부 회전반경 6.0m 확보 - 차량유도선 설치(2개소)
	㉕	• 비상차량동선계획 제시
대중교통	-	• 지하1층 주차장에 통학버스 정차공간 확보
보행	㉖	• 사업지서측 서강로16길에 폭 2.0m의 보도 설치
	㉗	• 사업지동측/남측 인접도로 맞은편에 폭 1.0m의 보도 설치
	-	• 사업지 내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공간 확보 - 북측/동측/남측 인접도로 : 폭 3.0m - 서측 인접도로 : 폭 2.0m
	-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8개소) - 일반 횡단보도 : 1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 7개소
자전거	㉘	• 현황 자전거도로로 단절구간 연결설치
	-	• 사업지 북측 서강로의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에 띠식수대 설치 - 폭 1.0m, 연장 53m
	㉙	• 서강로택시정류장 구간 자전거도로 선형 조정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반영)
	-	• 사업지 내부에 자전거보관소 105대 설치(법정주차의 20.8%) - 안내표지, 이용안내문, 공기주입기, CCTV, 차양비가림 시설 설치
주차	-	• 주차장 총 681대 확보(자주식100%) - 공동주택 644대(세대당 1.3대)(법정주차의 138.8%, 주차수요의 109.2%) - 비주거시설 37대(법정주차의 92.5%, 주차수요의 63.8%)
	-	• 차량진입부와 지하주차장 각층 진입부에 잔여주차대수 표시기 설치(8개소)
	-	• 차량진출입로에 주차차단기 설치(1개소)
교통안전 기타	-	• 주차램프 전면에 차량경고등 설치(13개소)
	-	• 주차램프 전면에 반사경 설치(14개소)
	-	• 차량진출입구 맞은편에 반사경 설치(2개소)
	-	• 사업지 인접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판(2개소) - 보행자 보행금지 규제표지판(2개소) - 30km/시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판(6개소) - 서행 규제표지판(2개소)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3개소) - 주차금지 규제표지판(4개소)

II.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548,255.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4호('13.9.26.)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48,255.2	100.0	—
주거지역	소 계	330,060.4	6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379.1	2.8	—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27.4	1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24.7	—
	준주거지역	114,276.4	20.9	—
상업지역	소 계	218,194.8	39.8	—
	일반상업지역	218,194.8	39.8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 폐지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일괄 폐지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77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10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4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39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176	노고산동 107-108	노고산동 107-1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38	노고산동 107-3	노고산동 107-1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146	노고산동 107-112	노고산동 109-61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폐지	소로	3	4	6	특수 도로	22	노고산동 106-95	노고산동 106-88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7	10	국지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61	노고산동 106-13	노고산동 106-43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140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39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8	6	국지 도로	174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8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66	신수동 81-65	신수동 81-92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2014-304호 (14.8.28.)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334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장기미집행 실효 (’20.7) 후 재결정	-
변경	중로	3	9	12	국지 도로	334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27	15~18	집산 도로	1,200	신수동	현석동	일반 도로	-	건고 177 (62.12.8.)	-
기정	대로	1	18	30	간선 도로	2,000	원효로 1가	노고산동 31-21	일반 도로	-	서고 501호 (86.7.23.)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외 기재 생략

※ ()는 5·6·7·10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변경사유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통합에 따라 기존에 사용도가 낮고 협소한 지구 간 도로를 폐도하고 구역 내 도로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통합지구의 이면부 도로 확폭 및 도로계획 변경

(2)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서고 2014-304호 (2014.8.28.)	소공원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서고 2014-304호 (2014.8.28.)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신수동 81-21번지 일대	1,997.7	서고 2014-304호 (2014.8.28.)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개발밀도

ㄱ) 건폐율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ㄴ) 용적률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ㄷ) 건축물의 높이 (변경)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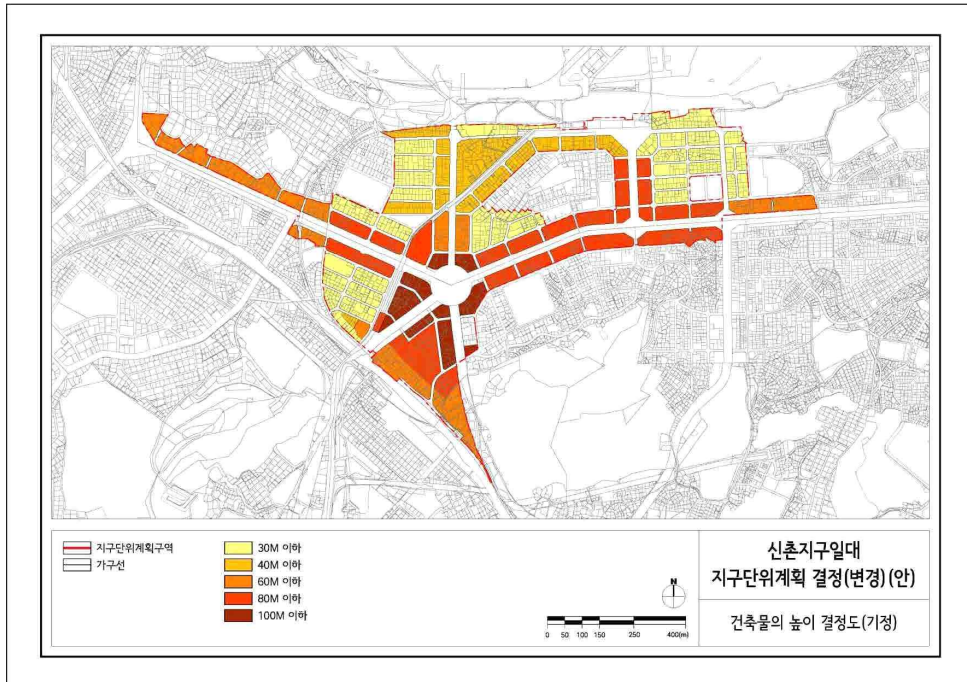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 높이	신촌로터리 일대	10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신촌로·양화로·신촌역로변 일반상업지역, 서강로변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로터리 일대를 제외한 일반상업지역	8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신촌로·양화로변 준주거지역, 연세로변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주거지역	6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명물거리 일대, 연세로 북측, 연대 앞 창천교회 서측, 신촌기차역 전면부, 창천어린이공원 북측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이화여대 주변, 연세로 서측 이면부 신촌로 이면 대현교회 일대,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	3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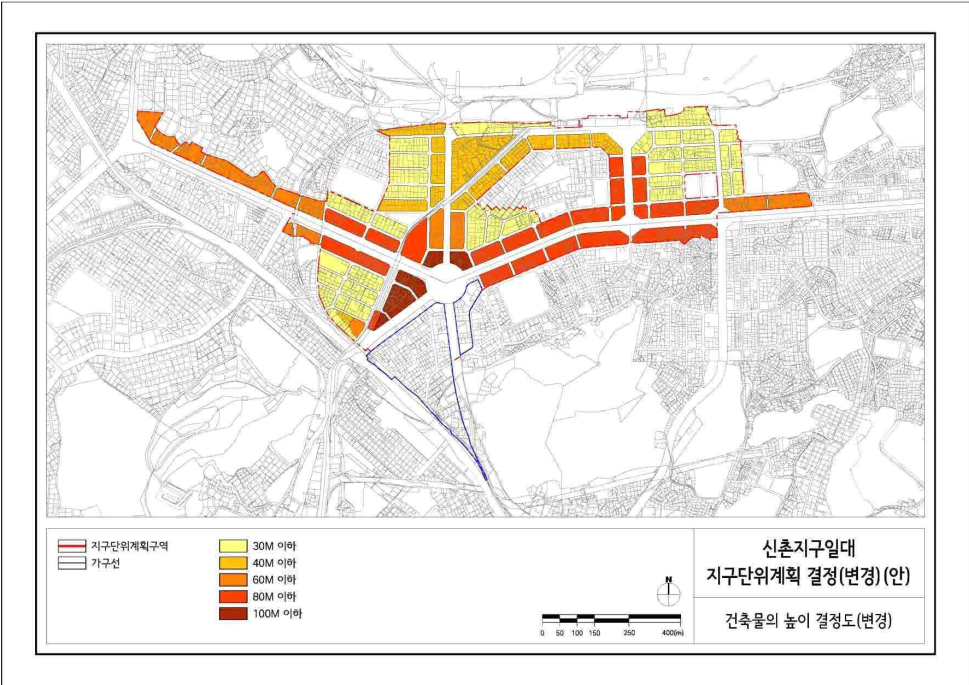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 높이	신촌로터리 일대	10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신촌로·양화로·신촌역로변 일반상업지역	8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신촌로·양화로변 준주거지역, 연세로변 일반상업지역	6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명물거리 일대, 연세로 북측, 연대 앞 창천교회 서측, 신촌기차역 전면부, 창천어린이공원 북측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이화여대 주변, 연세로 서측 이면부 신촌로 이면 대현교회 일대, 경의·공향선 지상부 공원주변	3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특별계획구역 5,6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 변경사유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통합에 따른 특별계획구역5 최고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기정)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변경)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ㄱ)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없음)
- 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변경없음)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5 (신촌마포4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52,583.6	-

※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6)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기능 강화 및 지역의 중심지 기능 설정, 상업·업무 및 주변지역 기능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기능 유지	좌 동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	좌 동	—
용도지구			방화지구	해당없음	폐지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세부개발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 용 도	로타리변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 동	전충
		로타리변 외 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 동	
건폐율			60% 이하 (경의공항선 지상부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 시 건폐율 10% 완화 (60%→70%))	좌 동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간전부) : 600% 이하 / 8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이면부) : 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600% 이하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

/상한용적률)	7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36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25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44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25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최고높이	• 로터리일대 : 100m 이하 • 로터리변 제외한 상업지역 : 80m 이하 • 주거지역 : 60m 이하	• 130m + α 이하	기준높이 130m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높이, 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변경사유 : 서울시 고시 제2024-504호에 따른 서울시 방화지구 제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고시 제2025-608호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개선 (중심지 위계 및 지역 별 주거비율 차등 적용사항 삭제)
 - 신촌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계획기준 변경사항 반영

III.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7,813.2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7,028.8	증) 784.4	7,813.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5.5	-	45.5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0	증) 102.0	287.0	3.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9.1	29.1	0.4	-
	준주거지역	3,350.2	증) 363.0	3,713.2	47.4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448.1	증) 290.3	3,738.4	47.9	-

※ 부분 편입되는 면적은 CAD 구적면적으로 추후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5, 7지구 내 포함되어 있던 분담면적(125.2㎡)은 구체적인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 합계면적과 지구 합계면적이 일부 상이한 사항이며, 금회 문화공원 부담 및 도로 편입 등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77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10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4	노고산동 106-8	노고산동 109-39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폐지	소로	3	4	6	특수 도로	22	노고산동 106-95	노고산동 106-88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7	6	국지 도로	64	노고산동 109-80	노고산동 109-17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140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39	보행자 우선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변경	소로	1	8	6	국지 도로	174	노고산동 106-77	노고산동 106-88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334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장기미집행 실효 (‘20.7) 후 재결정	-
변경	중로	3	9	12 (6)	국지 도로	334 (87)	노고산동 107-77	노고산동 109-4	일반 도로	-	-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외 기재 생략

※ ()는 5·6·7·10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변경사유 :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통합에 따라 기존에 사용도가 낮고 협소한 지구 간 도로를 폐도하고 구역 내 도로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통합지구의 이면부 도로 확폭 및 도로계획 변경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서고 2014-304호 (2014.8.28.)	소공원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230.5)	-	1,442.1 (230.5)	서고 2014-304호 (2014.8.28.)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신수동 81-21번지 일대	1,997.7 (-)	- (증 204.0)	1,997.7 (204.0)	서고 2014-304호 (2014.8.28.)	-

※ ()는 5·6·7·10지구의 부담면적임

※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5)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가)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계획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공공 기여 비율	- 순부담률 : 20.6% 이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확보 - 현금 기부채납	-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면적 : 1,532.1㎡ (21.19%) - 공공청사(주거안심종합센터) : 299.0㎡ · 환산부지면적 : 202.0㎡ · 토지지분면적 : 97.0㎡ - 문화시설(서강대역스페이스) : 692.0㎡ · 환산부지면적 : 475.0㎡ · 토지지분면적 : 217.0㎡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 현금(환산부지면적) : 541.4㎡

나)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시설명	위 치	층	면 적	비 고(관리청)
신규	공공청사 (주거안심종합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109-80	지하1, 3~5층 / 지상1~2층	연면적 : 1,284.8㎡ 토지면적 : 97.0㎡	서울특별시
신규	문화시설 (서강대역스페이스)	마포구 노고산동 109-69	지하1, 3~5층 / 지상1~2층	연면적 : 2,686.7㎡ 토지면적 : 217.0㎡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 1) 공공청사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및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관리하며, 문화시설은 마포구로 귀속 및 마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2)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3)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 4) 공공기여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산정내역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산정 내역(안)	
공공청사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부지 내 복합건축물)	- 연면적 : 1,284.8㎡ (지상 933.2㎡, 지하 351.6㎡) · 일반상업지역 : 1,035.6㎡ (지상 915.8㎡, 지하 119.8㎡) · 준주거지역 : 249.2㎡ (지상 17.3㎡, 지하 231.9㎡) - 토지지분면적 : 97.0㎡ (1.3%) - 환산부지면적 : 202.0㎡ (2.8%) = 유형별 표준건축비 x 연면적 ÷ 단위 부지가액 [지상] · 일반상업지역 : $4,020,909\text{원}/\text{㎡} \times 915.8\text{㎡} \div 21,791,926\text{원}/\text{㎡} = 169.0\text{㎡}$ · 준주거지역 : $4,020,909\text{원}/\text{㎡} \times 17.3\text{㎡} \div 18,327,576\text{원}/\text{㎡} = 3.8\text{㎡}$ [지하] · 일반상업지역 : $1,040,000\text{원}/\text{㎡} \times 119.8\text{㎡} \div 21,791,926\text{원}/\text{㎡} = 5.7\text{㎡}$ · 준주거지역 : $1,040,000\text{원}/\text{㎡} \times 231.9\text{㎡} \div 18,327,576\text{원}/\text{㎡} = 13.2\text{㎡}$ - 유형별 표준건축비 : 4,020,909원/㎡ (공공업무사무소 : 500~1,500㎡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 1,040,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건축비용) (부가가치세 면세) - 단위 부지가액 · 일반상업지역 : 21,791,926원/㎡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 준주거지역 : 18,327,576원/㎡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문화시설 (서강대역스페이스) (사업부지 내 복합건축물)	- 연면적 : 2,686.7㎡ (지상 1,690.5㎡, 지하 996.1㎡) · 일반상업지역 : 923.8㎡ (지상 752.6㎡, 지하 171.3㎡) · 준주거지역 : 1,762.9㎡ (지상 938.0㎡, 지하 824.9㎡) - 토지지분면적 : 202.0㎡ (2.8%) - 환산부지면적 : 475.0㎡ (6.6%) = 유형별 표준건축비 x 연면적 ÷ 단위 부지가액 [지상] · 일반상업지역 : $4,621,818\text{원}/\text{㎡} \times 752.6\text{㎡} \div 21,791,926\text{원}/\text{㎡} = 159.6\text{㎡}$ · 준주거지역 : $4,621,818\text{원}/\text{㎡} \times 938.0\text{㎡} \div 18,327,576\text{원}/\text{㎡} = 236.5\text{㎡}$ [지하] · 일반상업지역 : $1,040,000\text{원}/\text{㎡} \times 171.3\text{㎡} \div 21,791,926\text{원}/\text{㎡} = 8.2\text{㎡}$ · 준주거지역 : $1,040,000\text{원}/\text{㎡} \times 824.9\text{㎡} \div 18,327,576\text{원}/\text{㎡} = 46.8\text{㎡}$ - 유형별 표준건축비 : 4,020,909원/㎡ (공공업무사무소 : 500~1,500㎡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 1,040,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건축비용) (부가가치세 면세) - 단위 부지가액 · 일반상업지역 : 21,791,926원/㎡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 준주거지역 : 18,327,576원/㎡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6)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지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관리청
기정	도로	노고산동 109-3, -4, -17, -21, -23, -100, -105,	1,295.7	마포구청장 (도로개선평과)
변경		-108, -109, -110, -118, 117-31	523.9	
기정	공원	노고산동 112-6, 117-8, -16, -27, -30, 신수동	230.5	마포구청장 (공원녹지과)
변경		86-4, 81-63	434.5	

신설	문화시설 (서강대역스페이스)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지상 1~2층(지하층 포함) 일부	692.0	마포구청장 (교육청소년과)
신설	공공청사 (주거안심종합센터)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지상 1~2층(지하층 포함) 일부	299.0	서울특별시장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및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관리하며, 문화시설은 마포구로 귀속 및 마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은 변경될 수 있음

7)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가) 현금(기반시설 등) 부담

결정구분	구역명	지구명	납부금액(원)	환산부지면적(㎡)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원/㎡)	비고
신설	마포4구역	5·6·7·10 지구	2,600,683,034	141.9	18,327,576원/㎡	준주거지역
			8,699,336,859	399.2	21,791,926원/㎡	일반상업지역
합 계(원단위 절사)			11,300,019,890	541.1	—	—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격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현금납부 협약체결하여 결정

8)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7,813.2	—

9)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 5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좌 동	주용도: 주거시설
	로타리 변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 동	전층
	로타리 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외 지 역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60% 이하 (경의공향선 지상부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 시 건폐율 10% 완화 (60%→70%))	6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44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25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0% / 660% / 939% 이하 - 준주거지역 : 300% / 402% / 659% 이하	—
최고높이		130m + α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61m 이하 - 준주거지역 : 156m 이하	기준높이 130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한계선 : 서강로변 3m, 경의선변 (서강로16길변) 2m, 그 외 이면부 5m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 및 차도형 전면공지로 계획(도면참조) ※ 소로1-7, 소로1-8에 접한 차도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는 지역권설정	—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가로활성화 용도 : 가로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강로와 접한 구간에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보행통로 : 지역 내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서강로16길 및 서강로18길을 연결하는 폭원 6m 이상 보행통로 설치	—
			차량출입불허구간 : 서강로변을 따라 지정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높이, 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관계도면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 내용은 향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26-1530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92호(2026.6.18.)로 결정된 양평동1가 19-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교통시설(도로)
- 명칭: 삼화인쇄 양평동부지 개발사업 진입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	-	8	기타 도로	-	양평동1가	양평동1가	일반 도로	-	1937.11.12.	영등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중로	2	가	8~15	국지 도로	137	양평동1가 13-1	양평동1가 13-35	일반 도로	-	1937.11.12.	영등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유성근 (법인명: ㈜삼화인쇄)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3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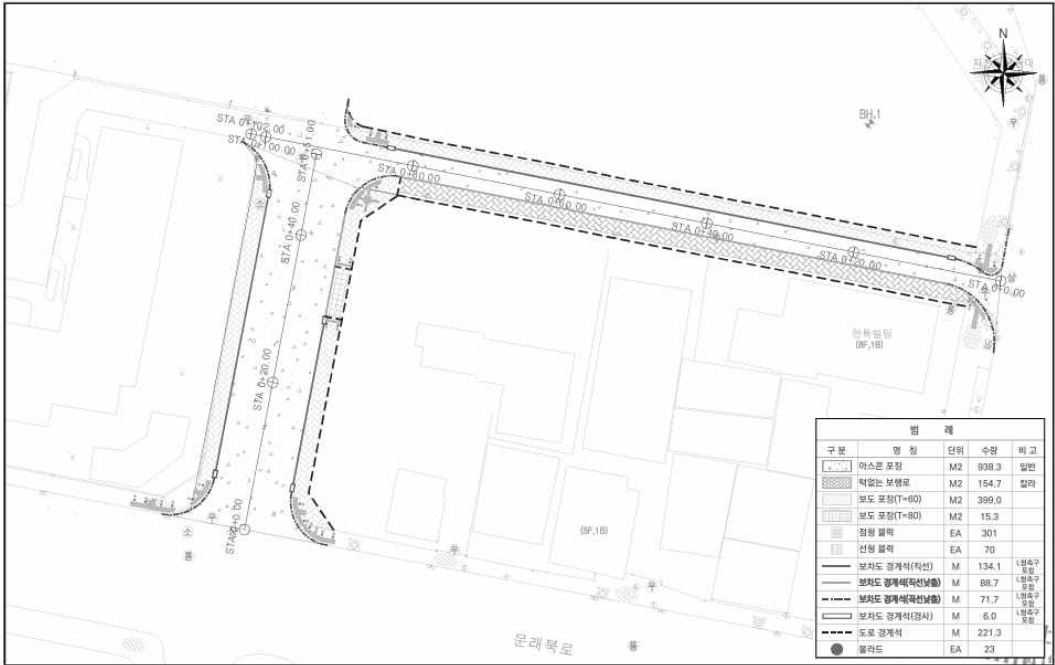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6.11.30.
- 바.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5층)
- 사.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구분
1	양평동1가	13-21	대	63.1	삼화인쇄주식회사	법인
2	양평동1가	13-22	대	31.7	삼화인쇄주식회사	법인
3	양평동1가	13-25	대	219.6	삼화인쇄주식회사	법인
4	양평동1가	13-35	도	31.9	서울시	시유지
5	양평동1가	19-2	도	1,127.4	서울시	시유지
합계		5 필지		1,473.7	-	

자. 관계도면(도시계획과 비치도서 참고)



◆ 관악구공고 제2026-1451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172호(2025.4.3.)로 조성계획(변경)결정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86-7 일대

다. 면 적 : 1,748,152.90㎡(원신지구 51,453,70㎡)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불임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5)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지구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						경						면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설 지구	계	1,748,152.90	501,281.63	64	32,541.66	86,613.01	861	861	1,748,152.90	501,568.04	64	32,541.66	86,613.01	881	증 286.41㎡ (증 207기)							
	소계	1,748,152.90	501,281.63	64	32,541.66	86,613.01	861	861	1,748,152.90	501,568.04	64	32,541.66	86,613.01	881	증 286.41㎡ (증 207기)							
	독산지구	102,137.20	16,302.32	4	81.00	81.00	113	113	102,137.20	16,302.32	4	81.00	81.00	113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481.24	12,951.44	146	146	103,306.80	44,931.36	5	4,481.24	12,951.44	146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34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11	6,213.50	1,160.87	-	-	-	11								
	덧골지구	2,115.00	246.25	-	-	-	13	13	2,115.00	246.25	-	-	-	13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49	37,874.90	9,235.41	-	-	-	49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33	47,205.30	9,100.28	-	-	-	33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	1,145.00	33.36	-	-	-	-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13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12	23,409.00	5,548.55	-	-	-	12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30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4	57,402.50	4,329.67	-	-	-	4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39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31	22,425.20	4,664.72	-	-	-	31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8	7,634.30	295.05	-	-	-	8								
양지구	10,586.00	2,453.24	-	-	-	37	37	10,586.00	2,453.24	-	-	-	37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56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	409.70	409.70	-	-	-	-									

구	분	변				경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남향술길지구	25,838.20	3,533.79	1	42.94	42.94	-	남향술길지구	25,838.20	3,533.79	1	42.94	42.94	-				
	원신지구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원신지구	51,453.70	9,426.14	1	246.80	246.80	43	증 286.41㎡ (증207기)			
	약수암지구	44,928.30	9,833.53	5	211.54	267.88	8	약수암지구	44,928.30	9,833.53	5	211.54	267.88	8				
	신우지구	9,401.20	-	-	-	-	-	신우지구	9,401.20	-	-	-	-	-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인현지구	5,030.00	1,541.91	-	-	-	32	인현지구	5,030.00	1,541.91	-	-	-	32				
	남현지구	14,446.20	-	-	-	-	-	남현지구	14,446.20	-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시 설 륙 (법정 40%)		(501,281.63 / 1,748,152.90) × 100 = 28.67%						(501,568.04 / 1,748,152.90) × 100 = 28.69%						증 286.41㎡				
건 폐 율 (법정 10%)		(32,541.66 / 1,748,152.90) × 100 = 1.86%						(32,541.66 / 1,748,152.90) × 100 = 1.86%										

2. 총괄표 (시설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1,748,152.90	501,281.63	64	32,541.66	86,613.01	861	1,748,152.90	501,568.04	64	32,541.66	86,613.01	881	증 286.41㎡ (증 207)				
	소 계	179,328.43	139,852.18	-	-	-	2	179,560.37	140,084.12				2	증 231.94㎡				
	도로	153,073.78	113,597.53	-	-	-	2	153,305.72	113,829.47				2	증 231.94㎡				
	광장	26,254.65	26,254.65	-	-	-	-	26,254.65	26,254.65					-				
	조경 시설	28,137.72	28,137.72	-	-	-	21	28,137.72	28,137.72				21	-				
	휴양 시설	46,661.57	46,661.57	1	125.00	125.00	504	46,716.04	46,716.04	1	125.00	125.00	509	증 54.47㎡ (증 57)				
	유흥 시설	12,951.34	12,951.34	-	-	-	59	12,951.34	12,951.34	-	-	-	59	-				
	운동 시설	82,678.17	82,678.17	13	8,971.43	21,926.87	215	82,678.17	82,678.17	13	8,971.43	21,926.87	215	-				
	교양 시설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				
	편의 시설	20,314.88	20,314.88	16	2,242.85	3,714.47	7	20,314.88	20,314.88	16	2,242.85	3,714.47	7	-				
	관리 시설	2,809.22	2,809.22	11	963.26	1,054.02	43	2,809.22	2,809.22	11	963.26	1,054.02	58	- (증 157)				
	그 밖의 시설	900.00	900.00	-	-	-	-	900.00	900.00					-				
	녹지 및 기타	1,207,395.02	0.00	-	-	-	-	1,207,108.61						감 286.41㎡				
	시설 륜 (법정 40%)	(501,281.63 / 1,748,152.90) × 100 = 28.67%						(501,568.04 / 1,748,152.90) × 100 = 28.69%						증 286.41㎡				
	건 폐 륜 (법정 10%)	(32,541.66 / 1,748,152.90) × 100 = 1.86%						(32,541.66 / 1,748,152.90) × 100 = 1.86%										

관악산근린공원(원산지)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85-1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응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양자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응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양자물 (기)			
계	기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51,453.70	9,426.14	1	246.80	246.80	43	증 286.41㎡ (증 207기)			
		4,498.94	4,498.94	-	-	-	-	4,730.88	4,730.88	-	-	-	-	증 231.94㎡			
소	계	4,498.94	4,498.94	-	-	-	-	4,730.88	4,730.88	-	-	-	-	증 231.94㎡			
		4,498.94	4,498.94	-	-	-	-	4,730.88	4,730.88	-	-	-	-	증 231.94㎡			
도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경	1,857.31	1,857.31	-	-	-	-	1,857.31	1,857.31	-	-	-	-	-			
		1,857.31	1,857.31	-	-	-	-	1,857.31	1,857.31	-	-	-	-	-			
휴	양	925.73	925.73	-	-	-	13	980.20	980.20	-	-	-	18	증 54.47㎡ (증 57기)			
		925.73	925.73	-	-	-	-	980.20	980.20	-	-	-	-	증 54.47㎡ (증 57기)			
유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통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은 통 시 설	1,439.49	1,439.49	-	-	9	1,439.49	1,439.49	-	-	9	-
교 양 시 설	-	-	-	-	-	-	-	-	-	-	-
편 의 시 설	76.30	76.30	-	-	-	76.30	76.30	-	-	-	-
관 리 시 설	341.96	341.96	1	246.80	246.80	1	341.96	246.80	246.80	16	- (증 15기)
녹 지 및 기 타	42,313.97	-	-	-	-	42,027.56	-	-	-	-	감 286.41㎡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51,453.70	9,426.14		1	246.80	246.80	43	증 286.41㎡ (증 207기)
기반 시설	소계			4,498.94	4,498.94								4,730.88	4,730.88						증 231.94㎡
	도로			4,498.94	4,498.94								4,730.88	4,730.88						증 231.94㎡
	소계			1,857.31	1,857.31								1,857.31	1,857.31						
조경 시설	맞이마당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조형 파고라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파고라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초정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농기구 보관소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작업대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토양미생물 관찰시설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구분	시 설 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퇴비장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잔디마당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생태연못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창포원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계류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계단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목교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데크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토양미생물 관측원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화단1	어	신림동 산85-19	202.23	202.23						어	신림동 산85-19	202.23	202.23						
휴양 시설	화단2	저	신림동 산85-19	29.68	29.68						저	신림동 산85-19	29.68	29.68						
	소 계			925.73	925.73					13			980.20	980.20					18	증 54.47㎡
	쉼터	버-1	신림동 산86-6	61.80	61.80						버-1	신림동 산86-6	61.80	61.80						

구분	시 설 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쉼터	버-2	신림동 1713-6	747.17	747.17						버-2	신림동 1713-6	747.17	747.17						
	휴게쉼터	버-3	신림동 신85-1	86.76	86.76						버-3	신림동 신85-1	86.76	86.76						
	휴게쉼터	버-4	신림동 신85-1	30.00	30.00						버-4	신림동 신85-1	30.00	30.00						
	휴게소										서-1	신림동 신85-25	39.69	39.49						신설
	휴게소										서-2	신림동 신85-25	9.13	9.13						신설
	휴게소										서-3	신림동 신85-25	5.65	5.65						신설
	시각 파고라	①	쉼터 버-2	-	-					1	①	쉼터 버-2	-	-					1	
	파고라									9	⑤	휴게소 서-1	-	-					1	신설
	평의자	②	쉼터 버-2	-	-					9	②	쉼터 버-2	-	-					9	
	등의자	③	쉼터 버-2	-	-					3	③	쉼터 버-2	-	-					3	
	등의자										⑥	휴게소 서-2	-	-					2	신설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의자										⑦	휴게소 서-3	-	-						2	신설
	소 계			1,439.49	1,439.49					9			1,439.49	1,439.49						9	
운동 시설	체력단련시 설	④	쉼터 바-2	-	-					9	④	쉼터 바-2	-	-						9	
	테니스장	처	신림동 산85-19	1,439.49	1,439.49						처	신림동 산85-19	1,439.49	1,439.49							
	소계			76.30	76.30								76.30	76.30							
편의 시설	주차장	커	신림동 산86-6	76.30	76.30							커	신림동 산86-6	76.30	76.30						
	소 계			341.98	341.96			246.80	246.80	1			341.98	341.98			246.80	246.80	16		
	관리소	1	신림동 산86-6	246.80	249.80			246.80	246.80		1	신림동 산86-6	246.80	246.80			246.80	246.80			
	관리실	2	신림동 산85-19	95.16	95.16					1	2	신림동 산85-19	95.16	95.16						1	
	공원등										⑧	신림동 산85-25임	-	-					15	신설	

구분	시설명	전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㉑	신림동 산85-25입	-	-						(85M)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42,313.97									42,027.56								감 286.41㎡		
	녹지			42,313.97									42,027.56								감 286.41㎡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2,357.32) 2,473.36	(4,498.94) 4,730.88				
당초 변경	소 계				(332.93) 332.93	(1,020.93) 1,020.93				
당초	소로	3류	1	2.5	29.74	69.04	진입로	공원 경계	쉴터 버-2	
당초		3류	2	3.0	116.06	333.52	진입로	목교 더	산책로 42	
당초		3류	3	3.0	187.13	618.37	진입로	공원 경계	소로 3-2	
당초 변경	소 계				(2,024.39) 2,140.43	(3,478.01) 3,709.95				
당초	산책로	-	1	1.0	75.38	71.45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1	
당초		-	8	2.0	53.46	118.79	산책로	데크 러	소로 3-2	
당초		-	9	0.8-2.0	95.14	86.58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9	
당초		-	10	0.8	28.90	21.27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34	
당초		-	11	1.2	11.21	14.00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당초		-	12	0.8	8.88	7.84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당초		-	13	1.0	14.36	15.48	산책로	산책로 1	계류 타	
당초		-	14	0.6-1.2	23.06	20.39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8	
당초		-	15	0.8	26.35	21.00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	16	2.0	30.11	73.5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8	
당초		-	17	2.0	24.76	58.9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32	
당초		-	18	3.5-4.8	142.61	454.46	산책로	공원 경계	소로 3-2	
당초		-	19	3.5-6.0	39.62	150.8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8	
당초		-	20	1.4	16.84	23.48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8	
당초		-	23	1.5	79.15	117.96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18	
당초		-	24	2.0	58.92	125.13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3	
당초		-	25	1.5-2.0	36.60	52.60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24	
당초		-	26	1.5-2.2	108.70	187.29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3	
당초		-	27	1.2	32.20	38.72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3	
당초		-	28	1.5	14.90	30.20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4	
당초		-	29	1.5	28.01	53.28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0	2.0	25.87	58.57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1	1.5	22.26	42.06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	32	2.5	68.26	161.91	산책로	산책로 24	소로 3-2	
당초		-	34	1.5	19.35	27.50	산책로	소로 3-2	데크 러	
당초		-	35	1.2	32.67	39.21	산책로	소로 3-3	쉼터 버-2	
당초		-	36	1.2	88.84	106.6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8	
당초		-	37	1.2	134.79	161.75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	38	1.2	115.34	138.63	산책로	소로 3-3	공원경계	
당초		-	39	1.2	11.65	14.12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9	
당초		-	40	1.5	61.43	92.17	산책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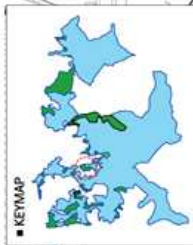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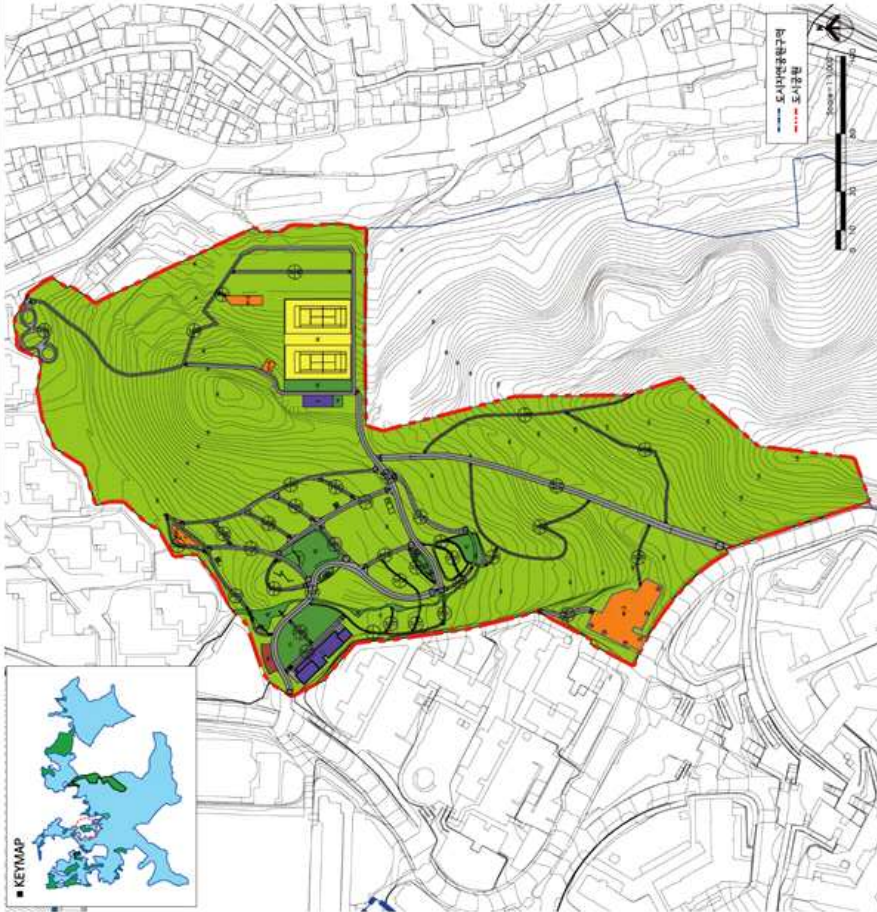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	41	1.3	4.56	5.93	산책로	섬터 버-3	산책로 42	
당초		-	42	1.5~2.0	392.30	704.41	산책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당초		-	43	1.5~2.0	97.91	181.9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42	
신설		-	44	2.0	91.42	182.70	산책로	단지 내	공원경계	
신설		-	45	2.0	4.59	9.19	산책로	단지 내	산책로 44	
신설		-	46	2.0	12.31	24.62	산책로	산책로 44	공원경계	
신설		-	47	2.0	7.72	15.43	산책로	산책로 44	공원경계	

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근린공원

■ 범례

구분	부속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용(㎡)	면적비 (%)	공약률	비고
기타	입지	51,453.70	9,139.73	-	1	246.80	246.80	23
기타	소계	4,498.94	4,498.94	-	-	-	-	-
조경	조경	4,498.94	4,498.94	-	-	-	-	-
조경	조경	1,857.31	1,857.31	-	-	-	-	-
조경	조경	534.60	534.60	-	-	-	-	-
조경	조경	20.90	20.90	-	-	-	-	-
조경	조경	6.20	6.20	-	-	-	-	-
조경	조경	12.50	12.50	-	-	-	-	-
조경	조경	24.00	24.00	-	-	-	-	-
조경	조경	4.80	4.80	-	-	-	-	-
조경	조경	0.80	0.80	-	-	-	-	-
조경	조경	24.00	24.00	-	-	-	-	-
조경	조경	515.70	515.70	-	-	-	-	-
조경	조경	154.10	154.10	-	-	-	-	-
조경	조경	134.70	134.70	-	-	-	-	-
조경	조경	115.90	115.90	-	-	-	-	-
조경	조경	4.00	4.00	-	-	-	-	-
조경	조경	24.90	24.90	-	-	-	-	-
조경	조경	32.30	32.30	-	-	-	-	-
조경	조경	16.00	16.00	-	-	-	-	-
조경	조경	202.23	202.23	-	-	-	-	-
조경	조경	29.68	29.68	-	-	-	-	-
조경	조경	925.73	925.73	-	-	-	-	13
조경	조경	61.80	61.80	-	-	-	-	-
조경	조경	747.17	747.17	-	-	-	-	-
조경	조경	86.76	86.76	-	-	-	-	-
조경	조경	30.00	30.00	-	-	-	-	-
조경	조경	-	-	-	-	-	-	1
조경	조경	-	-	-	-	-	-	9
조경	조경	-	-	-	-	-	-	3
조경	조경	1,439.49	1,439.49	-	-	-	-	9
조경	조경	1,439.49	1,439.49	-	-	-	-	-
조경	조경	76.30	76.30	-	-	-	-	-
조경	조경	76.30	76.30	-	-	-	-	-
조경	조경	341.96	341.96	-	-	-	-	1
조경	조경	246.80	246.80	-	-	-	-	1
조경	조경	95.16	95.16	-	-	-	-	1
조경	조경	42,313.97	42,313.97	-	-	-	-	-
조경	조경	42,313.97	42,313.97	-	-	-	-	-



◆ 서초구공고 제2026-1543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28-10, 29-7번지
신사역C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초구 잠원동 28-10번지, 29-7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28-10, 29-7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아래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잠원동 주민센터(☎02-2155-7550)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잠원동 28-10, 29-7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서초구 잠원동 28-10, 29-7번지 신사역C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28-10번지, 29-7번지	3,635.4	-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게재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도서 및 도면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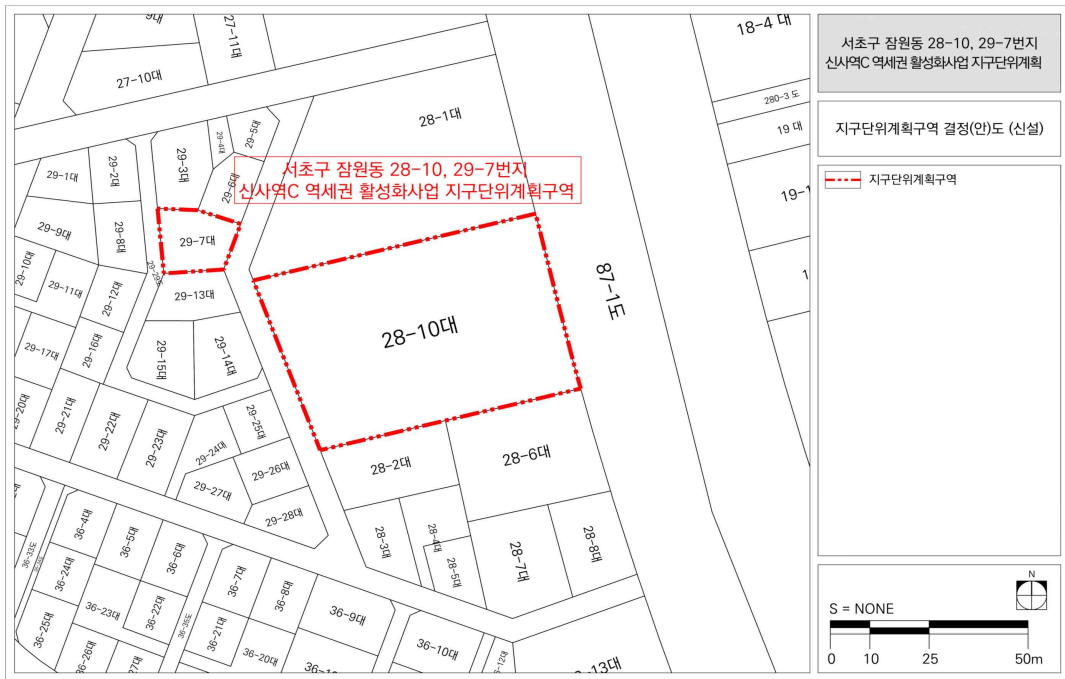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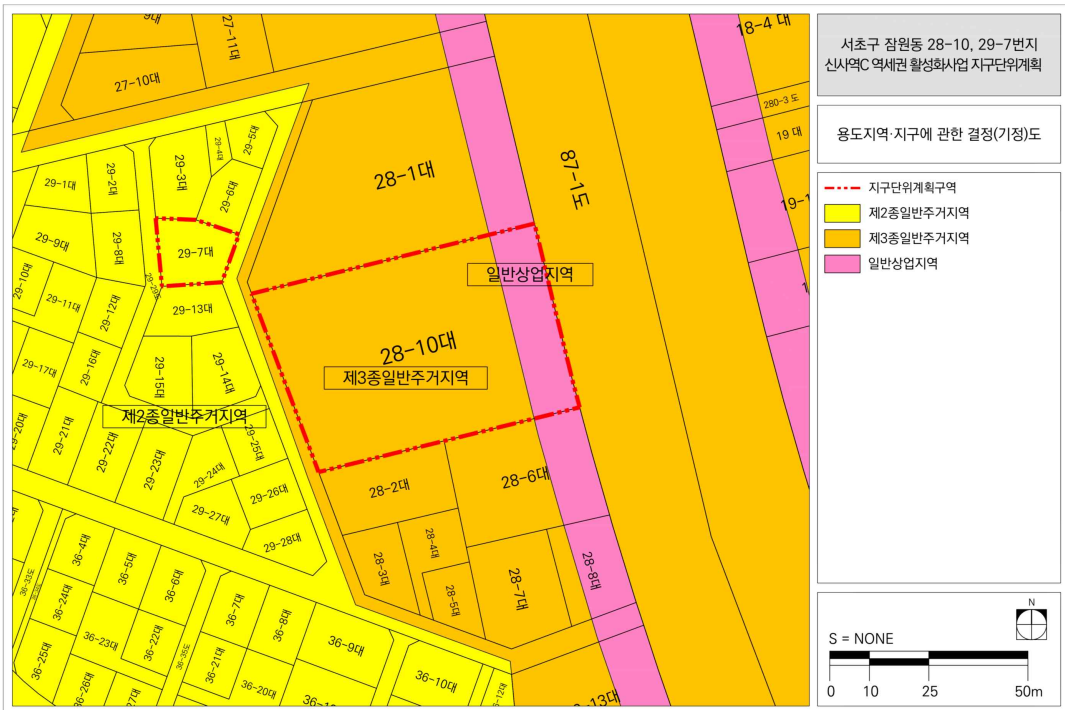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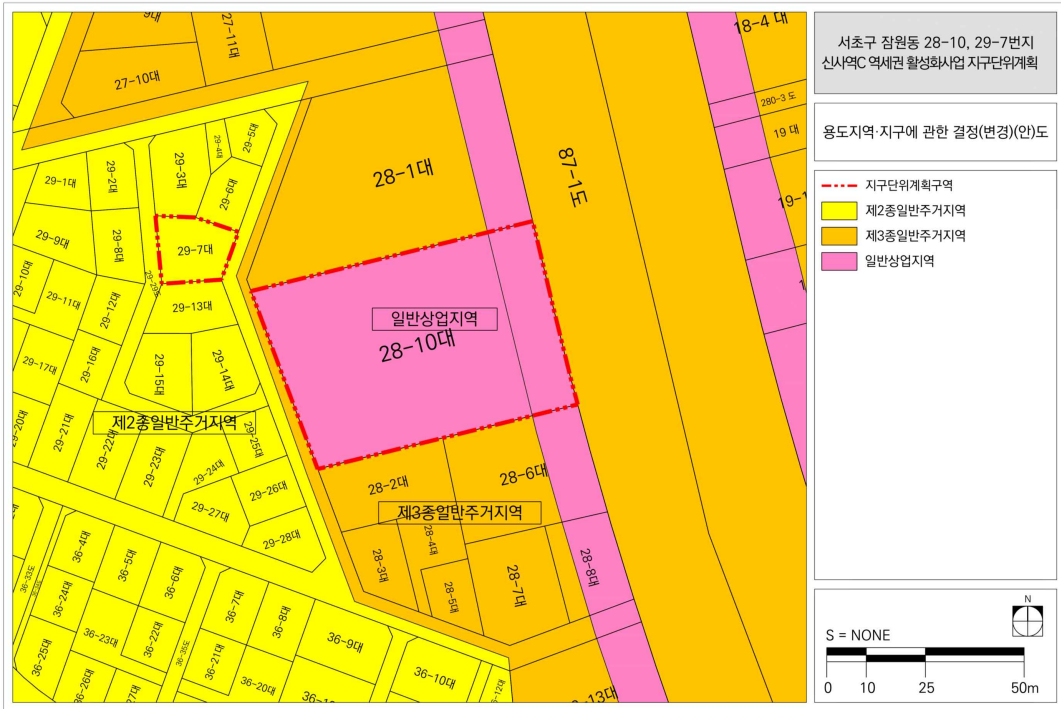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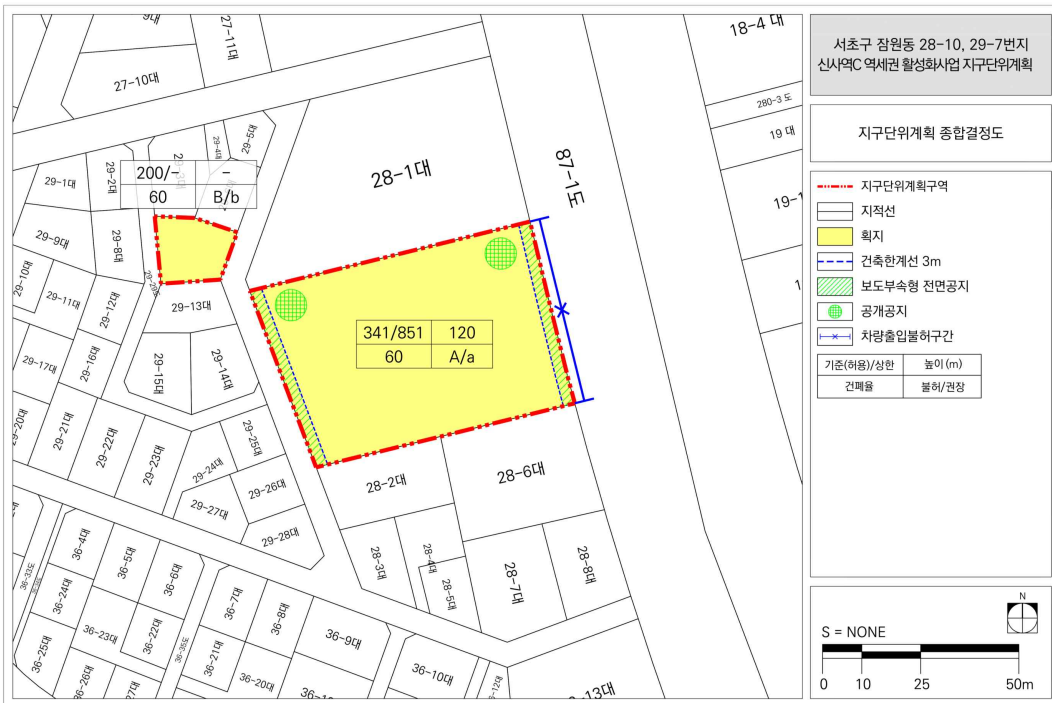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4)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서초구공고 제2026-1559호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2호(2024.8.22.)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최초)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소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다. 공원면적: 5,500.0m²

2. 조성계획 결정(최초)

가. 목 적 :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주변녹지와 연계성을 강화한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게, 여가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조성내역

- 기반시설 : 광장 및 도로 (882.0m²)
- 휴양시설 : 휴게소 (41.0m²)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173.0m²)
- 녹지및기타 : 녹지 (4,404.0m²)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2.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소공원 조성계획도

신반포4차아파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초구 잠원동 70 일대)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버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5,500.00	1,096.00				27
기반 시설	소 계	882.00				
	도 로	665.00				신 설
	광 장	217.00				신 설
조경 시설	-	-				신 설
유역 시설	-	-				3
휴양 시설	41.00	41.00				7
교양 시설	-	-				
운동 시설	173.00	173.00				6
편익 시설	-	-				
관리 시설	-	-				11
녹지 및 기타	4,404.00					신 설
시 설 율 (법정 20%)	$(1,096.00 / 5,500.00) \times 100 = 19.93\%$					
건 폐 율 (법정 20%)	-					

2. 시설조서

구분	최초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담면적	연면적		
기본시설	합계		5,500.00	1,096.00					27	
	소계		882.00	882.00					-	
	도로	점원동 70	665.00	665.00						신설
	광장	가 점원동 70	217.00	217.00						신설
조경시설	소계		-	-					3	
	연식파고라	① 점원동 70	-	-					1	신설
	파고라	② 점원동 70	-	-					2	신설
소계			41.00	41.00					7	
휴양시설	휴게소	나 점원동 70	41.00	41.00						신설
	등의자	③ 점원동 70	-	-					7	신설

구 분	최 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단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 계		173.00	173.00					6
	체력단련장	점원동 70	173.00	173.00					
	체력단련시설	④ 점원동 70	-	-					6
관리 시설	소 계		-	-					11
	공원안내관	⑤ 점원동 70	-	-					1
	공원등	⑥ 점원동 70	-	-					8
	CCTV	⑦ 점원동 70	-	-					2
	소 계		4,404.00						
복지 및 기타	복지 및 기타	점원동 70	4,404.00						
									신 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규	합 계				169.6	665.00				
신규	산책로	소 계			169.6	665.00				
신규	산책로	-	1	4.0	142.3	581.00	산책로	광장 가	공원경계	
신규		-	2	2.0	22.9	73.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규		-	3	2.0	4.4	11.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조성계획도

신반포4차 소공원



■ 조성계획시설표

구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급률(%)	비고
기타 시설	소계		5,500.00	1,095.00	27	
	산-1	산책로	882.00	882.00	-	-
	산-2	산책로	665.00	665.00	-	-
	산-3	산책로	581.00	581.00	-	-
기타 시설	소계		73.00	73.00	-	-
	산-1	산책로	73.00	73.00	-	-
	산-2	산책로	73.00	73.00	-	-
	산-3	산책로	73.00	73.00	-	-
기타 시설	소계		217.00	217.00	-	-
	산-1	산책로	217.00	217.00	-	-
	산-2	산책로	217.00	217.00	-	-
	산-3	산책로	217.00	217.00	-	-
기타 시설	소계		41.00	41.00	-	-
	산-1	산책로	41.00	41.00	-	-
	산-2	산책로	41.00	41.00	-	-
	산-3	산책로	41.00	41.00	-	-
기타 시설	소계		173.00	173.00	-	-
	산-1	산책로	173.00	173.00	-	-
	산-2	산책로	173.00	173.00	-	-
	산-3	산책로	173.00	173.00	-	-
기타 시설	소계		4,404.00	4,404.00	-	-
	산-1	산책로	4,404.00	4,404.00	-	-
	산-2	산책로	4,404.00	4,404.00	-	-
	산-3	산책로	4,404.00	4,404.00	-	-

◆ 송파구공고 제2026-14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198호(1997. 6. 1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46호(2025. 4. 24.)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87호(2025. 10. 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송파구 고시 제2026-74호(2026. 6. 4.)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연결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 완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
- 명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하보도 연결공사

다. 사업의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시설 규모(m)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너비	천장높이	연장	
신규	도로 (지하도로)	송파구 신천동 15번지 일대	1,886	증)26	1,912	7.0	3.8~3.4	8.6	올림픽로 지하보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9층
- 성 명: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

마.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공사준공 이후 우리 구(도로관리과)로 무상귀속
 - ※ 지하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연결통로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에 따라 상가관리 운영주체가 부담.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7. 24.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형태
					기정	변경	변경후		
1	송파구 신천동	12	도	5,509.6	583.9	증)1.5	585.4	서울시	단독
2	송파구 신천동	15	도	21,361.8	198.0	증)24.5	222.5		
3	송파구 신천동	16	도	5,117.2	89.5	-	89.5		
4	송파구 신천동	27	도	15,298.3	58.9	-	58.9		
5	송파구 신천동	34	도	7,572.6	523.6	-	523.6		
6	송파구 신천동	94	도	3,753.5	432.1	-	432.1		
계				58,613.0	1,886.0	26.0	1,912.0	-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지오이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47	서울시계 내 한강 (선유도~밤섬)	6.71㎡ (고무보트1척)	서울복합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26.08.03. ~ 2026.08.28.	' 26. 7. 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 당산철교)	441.5㎡ (서울101호, 강산5호)	항로표지 등 점검	2026.07.27. ~ 2026.07.31.	' 26. 7. 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4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구역)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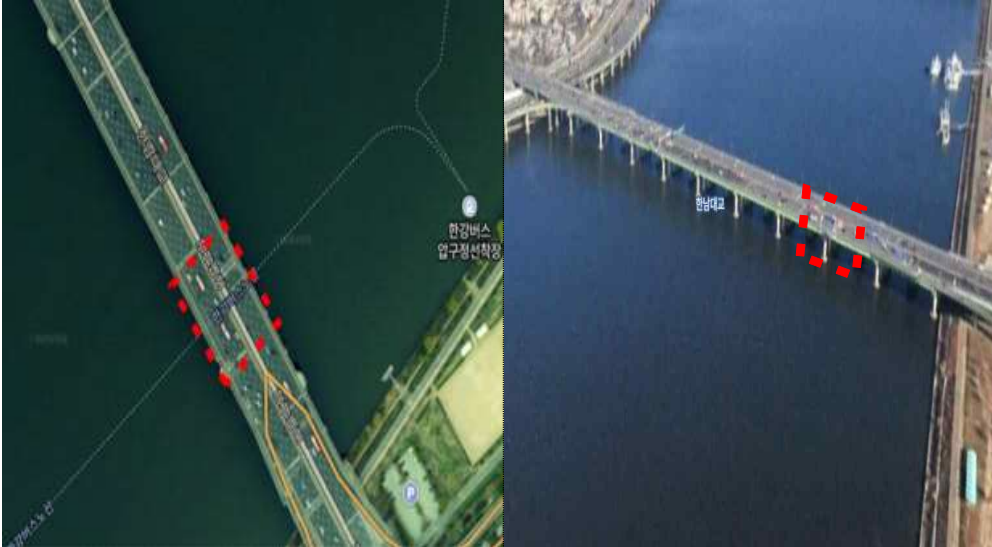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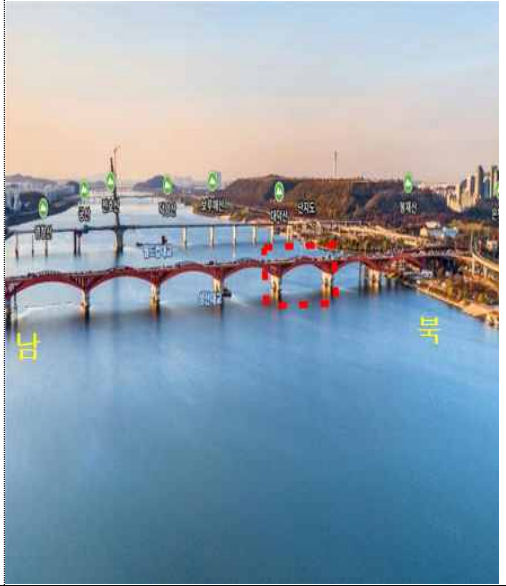
1.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신규 지정

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지명	위치	구역	지정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한강	한남대교 하부	교각번호 P16~P18	2026. 8. 1. ~ 2029. 7. 31. (3년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성산대교 하부	교각번호 P6~P7			

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위치도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2026. 8. 1. ~ 2029. 7. 31. (3년간)	한남대교(강남구 신사동) 교각번호 P16~P18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2	강	한강	2026. 8. 1. ~ 2029. 7. 31. (3년간)	성산대교(마포구 망원동) 교각번호 P6~P7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다.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내에서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라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20	30	50

※ 위험구역 내에서 운항방법

- 위험구역 진입 시 신속하게 해당 구역을 벗어날 것
- 위험구역 내 정박, 정류, 계류 및 계선 금지
- 지그재그 운항 등 한강버스 운항 방해행위 금지
- 그 밖에 충돌 위험, 항로 혼잡 등 수상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한강수상보안관이 지시하는 사항

－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운항방법 예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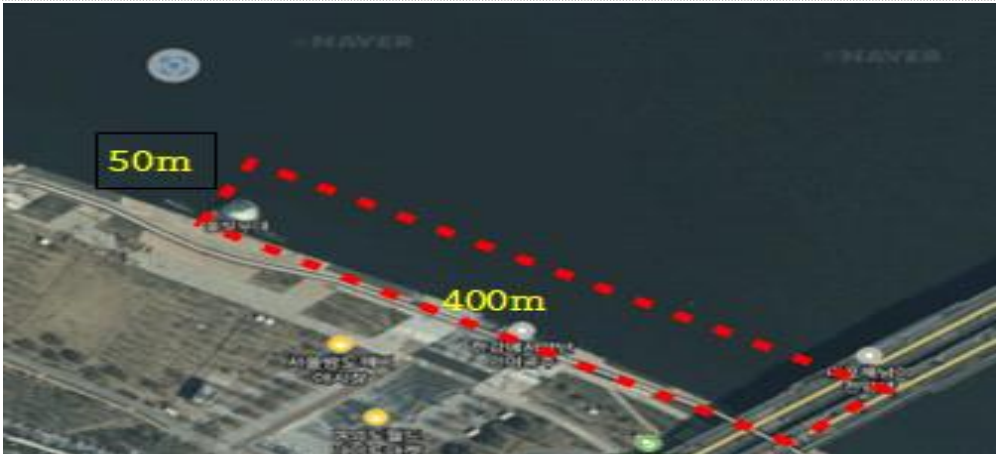
- ▶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交通安全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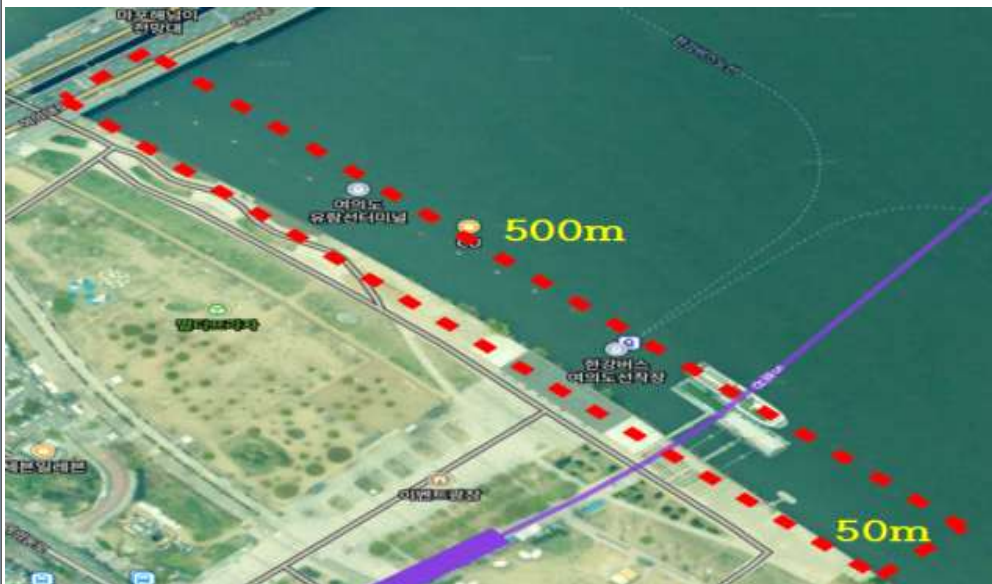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및 재지정

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명	위치	구역	금지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 하류 (400m)	한강 둔치로부터 50m까지	2026. 8. 1. ~ 2029. 7. 31. (3년간)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마포대교 ~ 상류측 (5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채빛) ~ 반포이크루즈선착장 하류 (160m)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2026. 8. 1. ~ 2029. 7. 31. (3년간)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하류 (영등포구 여의도동 84-1 ~ 85-1) 40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2	강	한강	2026. 8. 1. ~ 2029. 7. 31. (3년간)	마포대교에서 상류측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50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3	강	한강	2026. 8. 1. ~ 2029. 7. 31. (3년간)	세빛섬(채빛) ~ 반포이크루즈선착장 하류 (서초구 반포동 650 ~ 649-1) 16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다.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60

< 예 외 경 우 >

- ▶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544.64㎡ (기선 1척, 부선 4척)	정박대기	' 26. 8. 1. ~ ' 26. 8. 31.	' 26. 7. 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선데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901호	서울시계 내 한강 (여의도동 84-1)	1,764.155㎡ (기선2척, 부선2척)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빅뱅 20주년 X 한강 콜라보레이션	2026.08.14. ~ 2026.08.21.	' 26. 7. 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3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펠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북단 쥬씨엔한강랜드 수리소 하류 100m	(선박36척) 8,462.20㎡	공사대기	' 26. 8. 1. ~ ' 26. 8. 21.	' 26. 7. 27.
			(선박4척) 1,764.16㎡		' 26. 8. 1. ~ ' 26. 8. 13.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33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7. 30. ~ 2026. 08. 12.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8. 13. ~ 2026. 08. 26.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년월	비송 산권	주민/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달 번호	공시 승달	공시 승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6	0047-87	1	730317-****-***	승*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6-13 20:20	50,000	2026-06-30	2026-08-31	1078835-342901	2026-07-06	수취인불명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6527	서울특별시서초구나들길로3, 0213,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북서한강공원 원내 자연나들목 주변
2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6	0047-92	1	610924-****-***	이*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6-17 17:01	50,000	2026-06-30	2026-08-31	1078835-342902	2026-07-10	폐문부재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410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당로14길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이촌한강공원 원내 한나들목 내부
3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6	0047-96	1	470604-****-***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6-24 16:54	50,000	2026-06-30	2026-08-31	1078835-342904	2026-07-03	주소불명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5066	서울특별시서초구가남로37가길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북서한강공원 원내 죽곡강변 주변
4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6	0047-99	1	940122-****-***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6-24 23:13	50,000	2026-06-30	2026-08-31	1078835-342947	2026-07-13	폐문부재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21034	인천광역시서초구장계로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북서한강공원 원내 수차장 주변
5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7	0048-03	1	160111-****-***	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6-10 16:14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347718	2026-07-10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34836	대전광역시서초구대종로529번길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반포한강공원 원내 슬로프 주변
6	10-2 8870 6	[시일]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조치용 관련위반과태료	2026-06-07	0048-05	1	820406-****-***	MA**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6-11 18:53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347419	2026-07-13	폐문부재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401	서울특별시서초구대신관로11길	61143 57	영문공원을 과	반포한강공원 원내 장소교 주변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연월일	사전 불지 연월일	비송 산권	주민/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달 번호	공시 승달	공시 승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12	1	930920-1-****	문*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15 20:24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425	2026-07-06	주소불명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059	서울특별시서초구와우산로26길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다보령공원주변
8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14	1	840315-1-****	J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17 18:55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417	2026-07-13	폐문부제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34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월로30길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다보령공원주변
9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15	1	790729-1-****	박*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0 18:20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707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10362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다보령공원주변
10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17	1	830422-1-****	J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1 13:35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416	2026-07-13	폐문부제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344	서울특별시서초구화남로39길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수면대1주변
11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20	1	880109-1-****	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3 18:55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715	2026-07-10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660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2대보령공원주변
12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8-28	1	040116-1-****	문*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6 20:54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 347426	2026-07-10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8646	서울특별시서초구시금천로	61143 57	영문공공과	반포한강공원내다보령공원주변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번호	비송 잔액 단위	주민/ 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달 번호	공시 승달	공시 승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7-07	004829	1	041121-****	육*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6 20:51	50,000	2026-07-01	2026-08-26	1078835347708	2026-07-10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8646	서울특별시시립친구금하로	6114357	영문출과	반포한강공원내다보광장2주변
1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7-07	004834	1	611113-****	강*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2 12:16	5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49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202	서울특별시시마포구마포대로24길	6114357	영문출과	반포한강공원내트레일라주차장 주변
1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7-07	004836	1	611010-****	홍*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7 22:50	5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33	2026-07-15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26499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부른면	6114357	영문출과	강서한강공원내화전교차로
1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7-07	004838	1	570604-****	최*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08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23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6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42길	6114357	영문출과	여의도한강공원내제1주차장 주변(목삼경)
1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07-07	004841	1	801220-****	박*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20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76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4612	서울특별시시중구다산로39길	6114357	영문출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광장 주변(메트담요)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번호	비송 단위 번호	주민/ 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인 번호	공시 승인	공시 승일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8	10-2 8870 6	[시외버스]서울특별시한강공원내이벤트공간주변(삼정빌딩) 원포전꽃이영 관려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53	1	720309 -**** ***	김*원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33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 350054	2026-07-13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527	서울특별시 시영동로443-32	61143-57	영문 총괄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공간 주변(삼정 빌딩)
19	10-2 8870 6	[시외버스]서울특별시한강공원내이벤트공간주변(김치전) 원포전꽃이영 관려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57	1	820613 -**** ***	최*택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35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 350125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62	서울특별시 시영동로443-2길	61143-57	영문 총괄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공간 주변(김치 전)
20	10-2 8870 6	[시외버스]서울특별시한강공원내이벤트공간주변(김밥) 원포전꽃이영 관려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58	1	780405 -**** ***	이*식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36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 350095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405	서울특별시 시영동로443-50길	61143-57	영문 총괄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공간 주변(김밥)
21	10-2 8870 6	[시외버스]서울특별시한강공원내이벤트공간주변(노대/북부이) 원포전꽃이영 관려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62	1	750907 -**** ***	홍*익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37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 350134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59	서울특별시 시영동로443-가길	61143-57	영문 총괄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공간 주변 (노대/북부 이)
22	10-2 8870 6	[시외버스]서울특별시한강공원내이벤트공간주변(커피/음료) 원포전꽃이영 관려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67	1	720312 -**** ***	홍*호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42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 350137	2026-07-13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570	서울특별시 시영동로443-537길	61143-57	영문 총괄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공간 주변(커피/음료)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번호	비송 잔액	주민/ 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과목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인 번호	공시 승인	공시 승인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내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에 관한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70	1	660915 -**** ***	양*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46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89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6981	서울특별시 시영전차 육서한강 로	6114357	영문 공공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계산주차장 주변 (남표지)
2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내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에 관한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74	1	780327 -**** ***	김*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8:49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56	2026-07-15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14528	부천시원 미구계남 로301번길	6114357	영문 공공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계산주차장 주변 (음로)
2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내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에 관한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81	1	750117 -**** ***	김*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7 19:17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50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12980	경기도하 남시역남 로15번길	6114357	영문 공공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크레 페)
2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내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에 관한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94	1	780405 -**** ***	이*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6 19:13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96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405	서울특별시 시영전차 구가마신 로50길	6114357	영문 공공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남표)
2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내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에 관한위반과태 로	2026-07-07	004898	1	750907 -**** ***	홍*이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6 19:14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35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59	서울특별시 시영전차 구여의대 방로43가 길	6114357	영문 공공 과	여의도한강 공원내 이벤트광장 주변 (순대떡북 이)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번호	비송 잔액	주민/ 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인 번호	공시 승인	공시 승인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28	10-2 8870 6	[시일반]서울 특별시한강공 원모전중앙공 관권위반과태 로	2026 -07	0049 04	1	720312 -**** ***	홍*호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 -26 19:17	70,000	2026- 07-02	2026- 08-31	1078835 350138	2026- 07-13	기타	제2026- 336호	1	2026- 07-23	2026- 07-30	2026- 08-12	07570	서울특별시 시강서구 공평대로53 가길	61143 57	영문 공평 출입 과	여인도한강 공원내 이벤트중앙 (카페/음료)
29	10-2 8870 6	[시일반]서울 특별시한강공 원모전중앙공 관권위반과태 로	2026 -07	0049 06	1	660915 -**** ***	양*진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 -26 19:21	70,000	2026- 07-02	2026- 08-31	1078835 350090	2026- 07-14	기타	제2026- 336호	1	2026- 07-23	2026- 07-30	2026- 08-12	06981	서울특별시 시동작구 혹서한강 로	61143 57	영문 공평 출입 과	여인도한강 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담교처)
30	10-2 8870 6	[시일반]서울 특별시한강공 원모전중앙공 관권위반과태 로	2026 -07	0049 10	1	780327 -**** ***	김*주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 -26 19:23	70,000	2026- 07-02	2026- 08-31	1078835 350057	2026- 07-15	기타	제2026- 336호	1	2026- 07-23	2026- 07-30	2026- 08-12	14528	부천시원 미구계남 로301번길	61143 57	영문 공평 출입 과	여인도한강 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음료)
31	10-2 8870 6	[시일반]서울 특별시한강공 원모전중앙공 관권위반과태 로	2026 -07	0049 13	1	801220 -**** ***	박*민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 -28 19:01	70,000	2026- 07-02	2026- 08-31	1078835 350077	2026- 07-14	기타	제2026- 336호	1	2026- 07-23	2026- 07-30	2026- 08-12	04612	서울특별시 시중구다 신로39길	61143 57	영문 공평 출입 과	여인도한강 공원내 계정광장 주변
32	10-2 8870 6	[시일반]서울 특별시한강공 원모전중앙공 관권위반과태 로	2026 -07	0049 25	1	720309 -**** ***	김*원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 -28 19:10	70,000	2026- 07-02	2026- 08-31	1078835 350055	2026- 07-13	기타	제2026- 336호	1	2026- 07-23	2026- 07-30	2026- 08-12	07527	서울특별시 시양천로4 43-32	61143 57	영문 공평 출입 과	여인도한강 공원내 이벤트중앙 주변 (삼점 상)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불지 번호	비송 단년	주민/ 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인 번호	공시 승인	공시 승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포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0049-28	1	820613-**** ***	최*택	형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2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26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62	서울특별시서영동포구신길로42길	61143-57	영문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관장 주변(김치진)
34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포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0049-29	1	780405-**** ***	이*식	형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2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97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405	서울특별시서영동포구가마산로50길	61143-57	영문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관장 주변(김밥)
35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포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0049-33	1	750907-**** ***	홍*익	형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5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36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359	서울특별시서영동포구여의대방로43가길	61143-57	영문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관장 주변(순대/떡볶이)
36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포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0049-38	1	720312-**** ***	홍*호	형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8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139	2026-07-13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570	서울특별시강서구공향대로537길	61143-57	영문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관장 주변(커피/음료)
37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포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로	2026-07-07	0049-42	1	660915-**** ***	양*진	형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2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91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6981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한강로	61143-57	영문총괄과	여의도한강공원내이벤트관장 제2주차장 주변(담꼬치)

세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연월	사전 불지 연월	반송 수년	주민/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록번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승인 번호	공시승인	공시 승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38	10-2 8870 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도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9-45	1	780327 -**** ***	김*주	횡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6-28 19:15	70,000	2026-07-02	2026-08-31	1078835-350058	2026-07-15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14528	부천시원미구계남로301번길	6114357	영등포구청과	여인도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음로)
39	10-2 8870 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구원도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로	2026-07-07	2026-0049-46	1	921126 -**** ***	남*우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26-06-22 23:00	50,000	2026-07-03	2026-08-31	1078835-353480	2026-07-14	기타	제2026-336호	1	2026-07-23	2026-07-30	2026-08-12	07803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영로	6114357	영등포구청과	점원한강공원내 간판들목 안전시대(서울마포타워)5498이들차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33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위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7. 30. ~ 2026. 08. 12. (14일)
5.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제대상	과제년월	과제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 승합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 승합일	공시 시각일	공시 종료일
1	부과고지	831102- *****	J1****IN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6	000430	2026-06- 15	2026-07- 31	Y	2026-06- 26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	부과고지	700704- *****	MU*****AN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456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07	이사불명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	부과고지	911002- *****	ZH****NG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466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07	수령인불명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4	부과고지	701022- *****	강*미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67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폐문부재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5	부과고지	020806- *****	곽*은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474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6	부과고지	900520- *****	김*근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75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7	부과고지	750117- *****	김*선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476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8	부과고지	710219- *****	김*성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81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폐문부재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9	부과고지	920822- *****	김****나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82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0	부과고지	891112- *****	김*지	10-288706	[시]일반서물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물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8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제대상	과제년월	과제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 승합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 승합일	공시 시각일	공시 종료일
11	부과고지	741102- *****	김*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7	000485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4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2	부과고지	000223- *****	김*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486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3	부과고지	720309- *****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488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4	부과고지	991221- *****	김****무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이륜차	2026-07	000489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5	부과고지	960118- *****	김*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490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6	부과고지	640619- *****	박*숙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497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7	부과고지	850401- *****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00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8	부과고지	980323- *****	변*학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509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07	수차이통령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19	부과고지	940621- *****	손*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511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09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0	부과고지	630716- *****	안*성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원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6-07	00051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4	폐문부채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제대상	과제년월	과제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 승합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 승합일	공시 시각일	공시 종료일
21	부과고지	920904- *****	양+응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17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2	부과고지	010710- *****	위+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사행위	2026-07	000520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3	부과고지	870108- *****	이+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3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4	부과고지	930630- *****	이+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34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폐문부재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5	부과고지	920630- *****	이+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35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폐문부재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6	부과고지	930406- *****	이+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536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7	부과고지	571221- *****	임+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537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8	부과고지	890806- *****	장+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이물차	2026-07	000538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29	부과고지	600217- *****	전+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사행위	2026-07	000539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0	부과고지	931012- *****	정+원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54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제대상	과제년월	과제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 승합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 승합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31	부과고지	911223- *****	정*정*옥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7	000544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2	부과고지	020110- *****	정*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이물차	2026-07	000545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3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3	부과고지	950907- *****	주*빈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48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4	부과고지	820613- *****	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5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5	부과고지	860405- *****	최*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물차	2026-07	000567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6	부과고지	721214- *****	한*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73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7	부과고지	830628- *****	한*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물차	2026-07	000578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8	부과고지	731204- *****	홍*원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580	2026-07- 01	2026-08- 31	Y	2026-07- 10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39	부과고지	960506- *****	고*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이물차	2026-07	000586	2026-07- 06	2026-08- 31	Y	2026-07- 16	폐문부재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40	부과고지	720309- *****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영관권위반과테포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90	2026-07- 06	2026-08- 31	Y	2026-07- 15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 승합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 승합일	공시 시각일	공시 종료일
41	부과고지	690102- *****	감*정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유반과테포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93	2026-07- 06	2026-08- 31	Y	2026-07- 16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42	부과고지	640619- *****	박*숙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유반과테포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599	2026-07- 06	2026-08- 31	Y	2026-07- 16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43	부과고지	820613- *****	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유반과테포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7	000612	2026-07- 06	2026-08- 31	Y	2026-07- 16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44	부과고지	930129- *****	정*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유반과테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6-07	000627	2026-07- 10	2026-08- 31	Y	2026-07- 22	기타	2026-07- 24	2026-07- 30	2026-08- 12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공고 제2026-9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1. 공고기간: 2026. 7. 30.~2026. 8. 13.(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처분 대상	상호(성명)	주식회사 더원플래닛		사업자등록번호		408-88-0004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당길 4-2, 1층 (초지동)						
	대 표 자	원윤숙		주민등록번호		800429-2*****		
계약 내용	계 약 명	2026년 도서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 기간	2026. 1. 1.~2026. 12. 31.			계약 금액	2,880,000원		
처분 내용	처분 원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2026. 3. 31. 폐업 후 계약의무 불이행)						
	처분 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7호 가목						
	처분 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부서명	인재기획과	담당자	김우람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전화번호	02-3488-2055	
		전자우편	urams@seoul.go.kr			팩스번호	02-3488-2346	
	제출기한		2026년 8월 13일까지					

3.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4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동대문구청(치수과)
 -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7-16
 - 면 적: 10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장평교 진출입시설 개선공사 관련 지반조사
 - 내 역: 시추조사 1공(굴착깊이 20m, 굴착지름 76mm)
5. 점용기간: 2026.7.27. ~ 2026.11.1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금천구청장(치수과)
 -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0-2, 340-5, 614-45, 금천구 시흥동 565-3, 566-2,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8, 철산동 608
 - 면 적: 42.94㎡
4. 점용의 목적 : 차단기 6개, 태양광시설 3개, CCTV시설 3개 등 설치
5. 점용기간: 2026.7.28.~2031.7.27.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